

연구조사
NO. 24-01

www.agrix.go.kr



2024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제2권 농자재 관련부문 발취

2024. 1.



 농림축산식품부
KAMICO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발췌본) 이용 안내

1. 본 사업시행지침서(발췌본)는 농림축산식품부 주요 지원사업(용자사업 포함)에 대한 내용 중 우리 조합이 농기자재 관련분야 일부를 발췌하여 수록하였습니다.
2. 사업시행지침서 책자는 농림축산식품 사업 중에서 농업인, 농업법인, 관련 분야 업체 등을 대상으로 공모하는 사업 위주로 작성되었으며, 사업 수행자가 정해진 사업이나 지자체·공공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등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사업은 제외되었습니다.
3. 사업지침이 개정 중에 있는 사업은 지침서는 책자에 수록되지 않았으며 개정 완료 후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아그릭스)에 게시되오니, 자료가 필요할 경우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을 방문하여 확인한 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사업시행지침서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지침서의 연락처나 가까운 시·군·구, 읍·면·동,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 농업기술센터, 농협·산림조합,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지사 등 관련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사업시행지침서의 사업비, 지원내용 등은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사업시행지침서의 상세내용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주요사업의 주요사항을 요약하여 책자로 발간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Contents

제 2 권

(발췌본 요약)

■ 생산기반(공통) ■

-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사업 3
- 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지원사업 15

■ 원예작물, 유통 ■

- 스마트팜 ICT 융복합확산사업(시설보급, 컨설팅) 27
-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신재생에너지시설) 54
-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82
- 발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91
-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127
-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 152
- 특용작물(인삼)생산시설현대화 사업 166
- 유통시설현대화 177
-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지원 188
-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202

■ 축산 ■

- 축산분야 ICT 융복합확산사업 225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249

■ 농생명산업 ■

-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 지원 265

■ 해양수산분야 ■

- 친환경에너지보급 및 용수관리사업 287
 - 양식장 친환경에너지보급(히트펌프&인버터) 287
 - 수산가공분야 에너지절감시설 보급 308

■ 참고자료 ■

- ▶ 농기계보증제도 안내 329
- ▶ 보증서 양식 330

생 산 기 반 (공통)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I. 사업 개요

□ 목 적

- 농기계 보급 증가에 따라 도로주행 농기계의 안전사고를 사전 방지함으로써 농업인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
- 도로주행 농기계의 안전장치 부착으로 농업인 피해 사전 예방
 - * 경운기 및 트랙터 운행시 주행속도가 느리고 야간에 식별이 잘 안되어 자동차와 추돌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함

□ 사업내용

- 경운기, 트랙터 도로 주행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 * 등화장치 : 저속차량 표시등, 방향지시등

□ 지원 자격 및 요건

- 경운기 또는 트랙터를 보유하고 있는 농업인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 : 저속차량 표시등(100천원/개), 경운기 방향지시등(300천원/세트)
- 지원 기준 : 국고 40%, 지방비 60%(자부담 포함 가능)
- '24년 예산 : 2,000백만원(국고 40%, 지방비 60%(자부담 포함 가능))

□ 사업 신청

- 신청서(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신청

□ 대상자 선정

- 시·군·구에서 신청내용을 확인·검토하여 사업비 내에서 지원대상자 선정 및 부착지원 실시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사무관 김남진 주무관 강민우	044-201-1840 044-201-1841
시·군·구	친환경농업과 등	농기계 담당자	(해당 지자체 문의)

Ⅱ.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시·도(시·군·구)

2. 지원자격 및 요건

- 대상자 선정 요건
 - 경운기 및 트랙터의 공급이 많으며, 교통사고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
 - 중·소도시로 교통량이 많은 농촌지역
 -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률이 높은 지역
- 지원 요건
 - 국고 40%, 지방비 60%(자부담 포함 가능)

3. 지원대상

- 지원 대상자 : 경운기 또는 트랙터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
 - * 동일 기종 2대 이상 보유시 각각 지원 가능
 - * 농기계 안전교육 등 농업기계화 사업과 연계하여 우선지원 가능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 저속차량 표시등, 경운기 방향 지시등
 -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공급은 신규 부착으로 한정(신제품 교체, 파손·망실 등으로 인한 단순 교체는 부착지원에서 제외)
- 제품 선정
 - 국가공인시험기관에서 농기계 등화장치 시험을 받은 제품으로 선정
 - * 농기계 등화장치 대상 선정 시·도(시·군·구)에서는 제품 선정시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받은 제품 여부를 확인
 - * 기타 세부사항은 [별표 1](등화장치 규격)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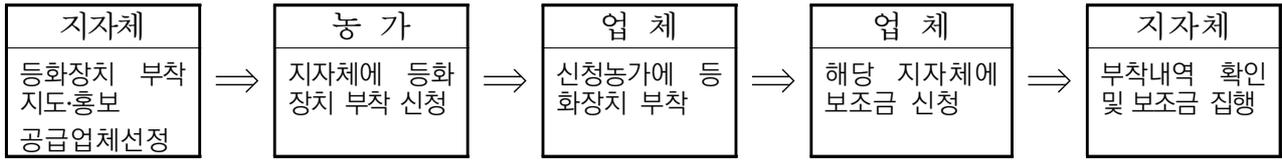
- 시·도(시·군·구)에서 사업 단위지역(마을)에 사업량이 일정량(최소 10개 이상)이상 되도록 사업자 선정이 필요(설치비용 절감)
 - * 사업주관기관은 국가공인시험기관 성적서 등의 성능 및 기대 특성 등을 비교 검토하여 제품을 선정
 - * 농업인이 보유한 농업기계당 등화장치 1개 부착을 원칙으로 함(단, 경운기는 방향지시등을 추가로 설치 할 수 있음)
- 농기계 등화장치 제품 선정시 [별표 1] 등화장치 규격 기준에 맞게 명시하여야 하며 규격 외 요구조건은 명시하지 말 것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 원(농업인안전재해보험) :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1,080백만원
 - 사업비 : 2,000백만원(20,000대×100천원)
 - * 국고보조 : 800백만원(2,000백만원 × 40%)
 - 지원단가
 - * 저속차량표시등 : 100천원/개
 - * 경운기방향지시등 : 300천원/세트(사업비내에서 부착지원 가능)
-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공급
 -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공급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사후봉사이행 보증서를 발급받은 제조업체 또는 해당 제조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추고 있으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후관리업소가 실시
 - 도로 주행 중 진동 등으로 인해 파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등화장치의 고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함
 -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공급자는 농업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품설명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사본 등을 제공
-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홍보 및 교육
 -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공급 사업비 집행 잔액을 홍보 및 교육에 지원할 수 있음

Ⅲ. 사업 신청 및 선정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 업무 흐름도



1. 사업 신청

농림축산식품부

- 지원조건,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사업신청 절차·방법, 세부계획 수립·시행 방법 등을 포함한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전년도 12월)
- 내역사업별 차년도 시·도 가내시 통보(당년도 9월)

시·도

- 사업시행지침을 시·군·구에 시달(전년도 12월)
- 사업계획서[별지]를 작성하고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신청(전년도 12월)
- 내역사업별 차년도 시·군·구 가내시 통보(당년도 9월)

시·군·구

- 사업수요를 고려하여 시·도에 사업 신청

2. 사업자 선정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지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사업선정기준(사업수요, 농기계 보유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도별 사업량을 확정하고, 시·도에 통보함(당년도 1월)

시·도

- 농림축산식품부가 확정하여 통보한 사업량을 고려하여 시·군·구별 사업량을 통보함(당년도 1월)

IV. 사업 시행 및 관리

1.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시·도

- 시·도지사는 사업시행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현황 및 사업비 집행실태 등을 현지점검하고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특히, 사업비의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시·군·구

- 등화장치 부착 전에 철저한 검수로 불량품이 공급되지 않도록 확인을 강화하고 부착 후에는 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함
-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공급자는 등화장치의 조작 및 활용방법에 대한 사전 지도와 야간운행시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지도 강화
- 집행 잔액 등을 활용하여 농업인에 대해 사업 홍보 및 교육 실시 가능

농촌진흥청·농협중앙회

- 농촌진흥청장 및 농협중앙회장은 도로 주행 농기계의 안전사고를 예방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등화장치 미 부착 운행에는 사고 위험이 높으므로 등화장치 등 안전장치를 필히 부착 운행할 수 있도록 지도·홍보 강화

2. 자금배정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서 제출한 자금수요를 근거로 시·도별 국고보조금액을 교부결정하고, 보조금을 교부

시·도

- 시·군별 자금수요를 파악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고 배정을 요청함
- 농림축산식품부가 교부결정한 국고보조금액 범위 내에서 시·군별 국고보조금액을 교부결정하고 자금을 배정

시·군·구

- 자금수요를 파악하여 시·도에 제출하고 배정을 요청함
- 보조금 교부 목적, 보조사업 내용 및 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3. 정산 및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등화장치를 부당공급(허위자료 제출, 불공정 거래행위, 검정 제품과 다른 제품 공급, 기타 정당한 공급으로 인정할 수 없는 행위 등) 및 국가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을 받은 제품과 상이한 제품 공급 등으로 확인·적발된 경우에는 3년간 공급자에서 제외

* 부당공급자 등으로 확인된 후 그 사업을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양수인도 부당공급자로 간주

시·도

- 시·도지사는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상황을 확인하고 현지 확인시 하자 발생이나 농업인의 불만이 있을 경우 보완(시정) 조치
- 시·도지사는 보조금의 정산결과를 익년도 1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여야 함[서식 별도 통보]

시·군·구

- 사업추진기관은 등화장치 부착 전에 철저한 검수로 불량품이 공급되지 않도록 확인을 강화하고 부착 후에는 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함
-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공급자는 등화장치의 조작 및 활용방법에 대한 사전 지도와 야간운행시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지도 강화
-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관리대장(아래 양식)을 작성 및 보관

〈저속차량표시등〉

대 상 자			농기명	설 치 일 자	농기계 종 류	대수 (대)	사업량 (개)	단가	사업비 (원)	비 고
시·군	읍·면	리·동								
경주시	양남면	석읍리	박00	20160620	경운기	1	1	100,000	100,000	
					경운기	1	2	100,000	200,000	
					트랙터	1	1	100,000	100,000	

〈방향지시등〉

대 상 자			농기명	설 치 일 자	농기계 종 류	대수 (대)	사업량 (세트)	단가	사업비 (원)	비 고
시·군	읍·면	리·동								
경주시	양남면	석읍리	박00	20160620	경운기	1	1	000,000	000,000	

V. 평가 및 환류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시·도지사는 사업완료 후 즉시 아래 양식으로 결과 제출(익년 1.20일까지)

〈예산 집행내역〉

시·도 (시·군·구)	예산액(원)					비고
	배정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불용액반납일	

〈등화장치 부착내역〉

시·도 (시·군·구)	등화장치 부착 (개, 세트)				비고
	종류	소계	경운기	트랙터	
	소계	000	000	000	
	저속차량표시등(개)				
	방향지시등(세트)				

〈등화장치 부착 홍보 및 교육 집행내역〉

시·도 (시·군·구)	홍보 및 교육 집행내역(원)				비고 (상세 집행내역)
	소계	홍보	교육	기 타	
					ex) 홍보 현수막 10ea, 리플렛 5,000 부, 교육 운영비* 등

* 교육 운영비의 경우 교육 시행 결과 및 상세 집행 내역 필요(시·군 관리)

[별표 1] 등화장치 규격

등화장치 규격

구분	저속차량표시등	방향지시등
구성품	등화장치(PCB, 전구, 내·외부 구조, 부착판 등) 내·외부 사진 첨부	방향지시등 1세트(PCB, 전구, 조작장치, 배선, 커넥터, 부착판 등) 내·외부 사진 첨부 ※방향지시등 1세트는 등4개(부착장치 포함), 조작장치, 배선 등으로 구성할 것
부착방식	농업인 스스로 부착 가능한 볼트형(나사형)으로 공급되어야 함(자석식은 제외)	방향지시등은 운행중에 고장(파손, 탈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부착해야 함(볼트체결)
전원공급 방식	태양광 충전 방식으로 완전 충전시 최소 6시간 가동 및 점멸 가능 할 것	경운기에 장착된 배터리 및 제너레이터 전원으로 가동(태양광 충전방식은 완전충전시 최소6시간 가동)
등광색	황색의 구조일 것	황색의 구조일 것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3 참고]
등의 광도	1등당 광도는 50칸델라 이상 1,050칸델라 이하일 것	1등당 광도는 50칸델라 이상 500칸델라 이하일 것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6의 17, 뒷면방향지시등(카테고리-2a) 참고]
점멸주기	매분 40회 이상 80회 이하의 일정주기{on(1)-off(2)}로 점멸하는 구조일 것	매분 60회 이상 120회 이하의 일정한 주기로 점멸하거나 광도가 증감되는 구조일 것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3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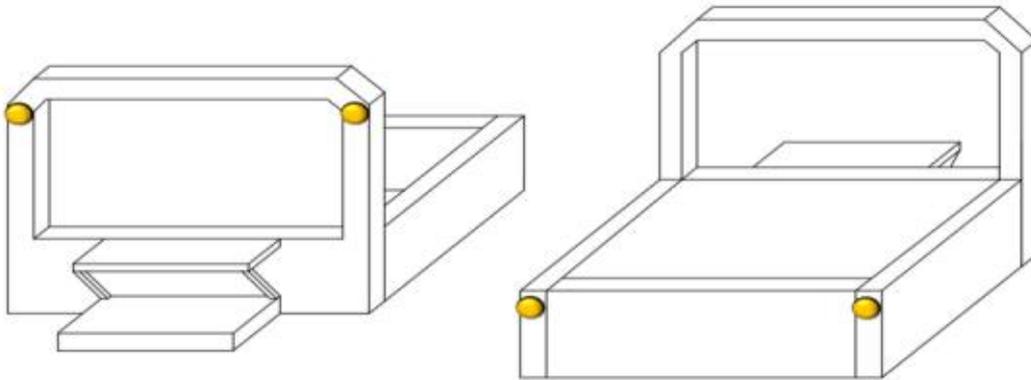
구분	저속차량표시등	방향지시등
등의 형태(모양)	원형(설치 밑면이 원형인 원통모양)의 섬광방식일 것 높낮이는 20cm 이상 조절이 가능한 구조일 것	방향지시등의 발광부는 원형 또는 사각형 구조이면서 유효면적은 22cm ² 이상 일 것 [※유효면적은 SAE J 588, 6.4.3 참조]
부착위치	기체 중심선이나 기체중심선의 왼쪽에 설치할 것(방향지시등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방향지시등을 설치할 경우 저속차량표시등은 기체 중심선에 설치,	부착위치 및 설치방법은 붙임 기준을 준수 할 것 조작장치는 경운기 핸들에 또는 트레일러 등받이 우측에 부착하고 배선은 경운기 트레일러 하부에 설치하며 커넥터로 연결과 분리가 용이한 구조일 것
기능	수동 및 자동의 on-off 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	방향지시등 조작장치로 좌측등(2개) 점멸(동시), 우측등(2개) 점멸(동시), 전체(4개) 점멸(동시)을 각각 조작 할 수 있는 구조일 것 ※전체(4개) 상시 점멸가동되고 좌측 또는 우측 점멸을 조작할 경우 전체(4개) 점멸은 멈추고 조작한 방향(좌측 또는 우측) 등만 가동하는 구조일 것
기타	등화장치 부착 후 고장 등 하자 발생 시 사후봉사가 가능하고 부품 구입·교환 등이 용이한 제품 일 것	등화장치 부착 후 고장 등 하자 발생 시 사후봉사가 가능하고 부품 구입·교환 등이 용이한 제품 일 것

[별표 2] 방향지시등 부착위치 및 설치방법

방향지시등 부착위치 및 설치방법

□ 방향지시등 부착위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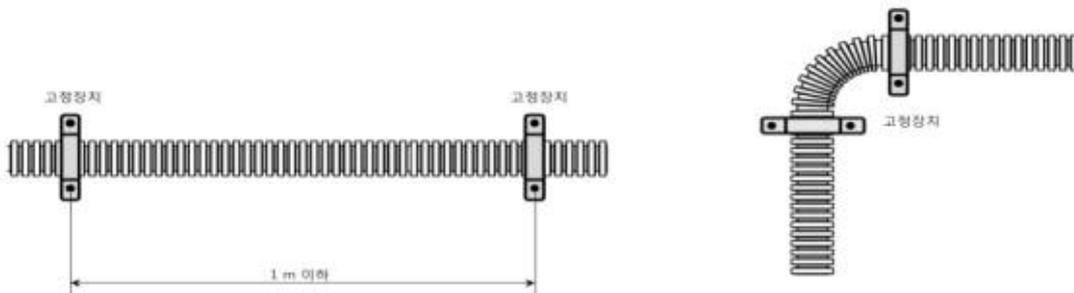
- 개수 : 트레일러 후방 및 전방에 각 2개씩 설치
- 부착위치
 - 전방 : 트레일러 적재함 전방 최 외측 최상단에 발광면이 전면부를 향하도록 설치하되 발광면의 중심이 지면에서 2,300 mm를 넘지 않을 것
 - 후방 : 적재함 후방 최 외측에 발광면이 후방을 향하도록 설치하되 발광면의 중심이 지면에서 350 mm이상 1,500 mm이내 일 것.(단, 개방문에는 부착할 수 없다.)



〈전후방 방향지시등 설치 예시〉

□ 배선의 재질 및 설치방법

- 등화장치 전선의 단락, 까짐, 파손 예방을 위하여 배선보호용 절연 주름관을 이용하여 설치한다.
- 배선설치는 길이 1 m당 1개 이상의 고정장치를 이용하여 설치하고, 배선이 90° 이상 절곡되는 부분에는 2개 이상의 고정장치를 이용하여야 한다.



〈배선설치 및 고정 예시〉

[별지] 사업계획서 (시·도 명)

사업 계획서 (시·도 명)

사업개요

- 사업명 :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사업
- 사업량 :
- 사업비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추진계획

- 사업대상자 선정
- 등화장치 제품 선정
-
-

사업 내역

사업명	사업량 (개)	단가 (천원)	사업비 (천원)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농업기계 등화 장치 부착지원							

추진일정

-
-
-

2024년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I. 사업 개요

□ 목적

- 노후화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으로 우량비료 생산 기반 구축
- 퇴비 품질 향상을 통한 안전 농산물 생산 유도

□ 사업내용

- 퇴비 생산시설 및 제품생산·관리장비 지원

□ 지원 자격 및 요건

-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및 별표6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등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 :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및 제품생산·관리장비
- 지원 기준 : 국비보조 20%, 국비용자 30%, 지방비 20%, 자부담 30%
 - 용자조건 :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농·축협 연리 2.0%(3년 거치, 3년 상환), 민간(개인)업체 연리 3.0%(3년 거치 3년 상환)
- '24년 예산 : 50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용자 75, 자부담 75)
 - 지원 한도 : 250백만원/개소

□ 사업 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 사업신청서(붙임 서식1) 등을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시·군에 신청
 - * 기타 제출양식은 사업대상자 선정 공고 시 별첨
- 대상자선정 : 사업계획의 적정성, 필요성 등을 기준으로 선정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사무관 이흥숙 주무관 유진빈	044-201-1892 044-201-1893

Ⅱ. 주요 내용

1. 사업대상자

-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민간(개인)업체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및 별표6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통해 가축분퇴비 및 퇴비를 3년 이상 공급하고 '21.1.1.부터 '24년 사업자 선정 시점까지 비료관리법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단체 등)
 -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미참여 업체는 당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할 경우, 지원한도 이내 지원가능
- 자연순환농업활성화 및 공동자원화시설 등 가축분뇨처리지원 관련 사업을 '21.1.1.부터 '24년 사업자 선정 시점까지 지원받은 업체 배제
-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을 '19~'23년 지원받은 업체 배제
- 사업신청(농식품부에 제출) 후 신청을 철회한 경우와 사업대상자(예비대상자 포함)로 선정된 후 사업을 포기한 경우, 사업포기서를 제출한 다음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사업을 이월한 후 포기한 사업자는 5년)

3. 지원대상 및 자금의 용도

- 생산시설
 - 발효시설(교반식·통풍식), 축분전처리장(신축, 증·개축), 후숙창고(신축, 증·개축), 악취방지시설, 포장시설(자동 포장라인 및 상차로봇) 등 품질개선 및 환경오염 방지와 관련된 시설
- 제품생산·관리장비
 - 부속도측정기, 수분측정기, 퇴비살포기, 휠로더, 페이로더, 농업용로더, 굴착기, 지게차 등 생산현장 장비로써 생산과정, 품질관리, 환경오염 저감에 사용되는 장비
 - * 지원 제외 : 압롤카, 압롤박스, 차량, 크레인 등 운반장비 및 이 사업의 목적과 관련 없는 시설, 장비

4.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지원형태 : 축산발전기금(가축분뇨처리지원 내역사업)
- 사업규모
 - 사업량 및 사업비 : 2개소 이상, 500백만원(국비보조 50, 국비용자 75, 지방비 50, 자부담 75)

- 지원비율(%) : 국비보조 20%, 국비융자 30, 지방비 20, 자부담 30
- 용자조건 :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농·축협 연리 2.0%(3년 거치 3년 상환), 민간(개인)업체 연리 3.0%(3년 거치 3년 상환)
- * 예산 여건에 따라 국비 용자조건이 변경될 수 있음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개소당 지원한도 : 250백만원/개소

구분	국비보조	국비융자	지방비	자부담
250백만원	50	75	50	75
(100%)	(20)	(30)	(20)	(30)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미참여업체 지원한도 150백만원

- 사업대상자는 개소당 지원한도 범위 내 필요한 개·보수시설 신청
 - 시설규모가 개소당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자부담으로 설치 가능
 - 시설 개체 시 한도액의 100%를 지원하고 보수의 경우는 한도액의 80% 이상 지원할 수 없으며, 기존시설 철거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 사업주관기관은 개소당 한도액 범위 내 사업대상자 신청에 따라 사업량(개소) 증가, 규격 등을 조정할 수 있음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서상 사업비와 실제 설치비가 상이할 경우 금액이 작은 비용을 지원대상 사업비로 적용
- 사업주관기관의 건축 및 토목기술직 공무원이 감독 및 공사감리 실시
 - 설계비 및 공사감리비는 별도로 사업비에 책정되어 있지 않으며, 시설 개·보수 사업임을 감안하여 외부 전문가 의뢰 시 비용은 사업대상자가 부담
- 사업주관기관은 제품의 종류, 사양 등에 따라 설치비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및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및 가축분유기질비료협동조합(이하 “비료협동조합”) 등에서 제품의 가격 및 사양 정보와 기준 등을 종합하여 사업대상자에게 제공하되 시설 및 장비는 품목별로 발효시설 2.5억원, 후숙시설 2억원, 악취방지시설 2억원, 포장시설 2.5억원(로봇시설 2억원) 범위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달청 구매 입찰 단가 등 객관적으로 증빙이 가능한 경우 초과 사용 가능
- 정부지원 농업기계로 등록된 품목(농업기계 구입지원 사업 시행지침 참조)은 한국농기계협동조합의 사후관리보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

Ⅲ. 사업 신청 및 선정

1. 사업 공고 및 신청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사업목적, 사업량 및 세부사업내용이 반영된 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하고 사업대상자 수요조사(사업 신청) 실시

지자체

- 시·도는 시행지침 및 수요조사 등을 시·군·구에 안내하고, 시·군·구는 사업 신청 접수 후 시·도에 신청
 - 주요 신청내용: 목적, 신청기간, 대상자 자격, 신청방법, 선정절차 등
 - 시·도는 시·군·구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농식품부에 신청

보조사업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제1항의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사업신청서(붙임 서식1) 등을 작성하여 시·군에 신청
 - * 기타 제출양식은 사업대상자 수요조사 시 별첨

2. 사업자 선정

지자체

- 시·군·구는 사업신청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농정심의회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도에 제출
- 시·도는 시·군·구에서 제출한 사업신청서 등에 따라 시·도 내 사업대상자 우선 순위를 정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 선정방식 : 시·도 농정심의회를 통하여 서면·현장평가 등
 - 선정기준 : 사업의 필요성, 계획의 적정성, 사업주체 역량 등
 - 농식품부 제출 :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정해 제출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추천 → 농림축산식품부 선정
- 농식품부는 사업신청이 예산 범위 이내일 경우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시·도 추천 대상자를 선정하되, 초과될 경우 심사대상자 수를 한정할 수 있으며, 시도에서 제출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대상자 선정

- 심사평가단 구성·평가를 통해 결정한 사업 후보자 중 사업대상자 및 사업 예비대상자 선정
 - 심사평가단 구성: 비료(퇴비·가축분퇴비) 및 환경분야 전문가 10명 내·외로 구성
 - 평가방법: 서면·현장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위원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사업 후보자 결정(종합평가 60점 미만의 사업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 선정기준: 최근 3년('21~'23) 사업실적, 필요성, 자부담 능력 등 양질의 퇴비 생산 계획이 명확히 수립된 대상자를 선정, 악취방지관련 시설 설치 계획 수립 사업자 우선 선정
 - * 유기질비료 공급물량이 '22년 대비 '23년 증가한 시·도에서 신청한 사업대상자에게 가산점 부여가능
 - ** 최근 3년간의 지자체 내 사업 포기 실적, 예산 집행률 등을 고려하여 가감점 부여가능

3. 세부계획수립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시·도(시·군)를 통해 제출된 사업계획서 검토 후 필요시 보완 조치

지자체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로부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 제6항의 별지 제3호 서식(붙임 서식2)에 따라 대출신청 자료를 받아 사업대상자별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시·군 농정심의회의 공개 심의를 거쳐 확정
 - 사업주관기관은 세부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농촌진흥청·농협경제지주·비료협동조합 등과 협조(현장 및 심의회 참석)
- 사업시행 중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포기서가 제출되면 시·군·구는 사업변경계획을 검토하여 시·도에 변경승인요청을 하고, 시·도는 변경승인을 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사업의 포기로 보조사업자를 다시 선정해야하는 경우는 시·군·구는 농정심의회를 거쳐 신청을 하고, 시·도는 사업의 필요성, 예산 집행가능성, 시·도 내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고 시·도 농정심의회를 거쳐 확정
 - * 다만, 사업자선정 절차의 차순위자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는 경우 생략할 수 있음

보조사업자

- 사업대상자는 사업대상 확정 통보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세부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자부담 우선 집행계획 등 자금조달 계획 등 포함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사업주관기관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 및 사업포기서 제출

IV. 사업 시행 및 자금배정

1. 사업시행

지자체

가. 친환경퇴비 시설·장비 등의 구입 정보 제공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구매코자 하는 시설·장비에 대한 제품특성 및 가격 비교 등을 할 수 있도록 (사)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및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비료협동조합 등을 통한 제조업체별 가격 및 제품사양 정보와 기준 등을 사업대상자에게 제공

나. 시공업체 등 선정 및 계약체결

- 사업주관기관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 공인기관에서 공인한 제품과 농촌진흥청의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를 받은 제품을 우선 구입
- 사업주관기관은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사업추진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시 경쟁 입찰을 실시토록 하고, 계약 청약자와 낙찰자를 공개하며, 유찰시 수의계약 방식을 통해 체결
- 사업주관기관은 설치업체로 하여금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사업대상 업체에게 교부토록 하고 보험증권 사본을 사업주관기관에 제출
 - 보험가입금액은 계약금액의 2% 이상, 보험기간은 최소 1년 이상

다. 착공·시공 및 감리

< 착공·시공 >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 또는 설치업체로 하여금 사업계획과 설계도 등에 따라 착공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도 사업을 착공하지 못할 경우 사업대상자 변경 또는 사업비 반납조치 가능

< 공사감리 >

- 사업주관기관의 건축 및 토목기술직 공무원 감독 및 감리
- 사업주관기관은 부실시공 또는 불공정행위를 발견한 경우 당해 설치업체에 대해 설치중지, 하자보수, 재설치 명령 등을 취하고, 향후 사업참여 제한
- 사업주관기관은 설치 등 사업이 완료되면 완료 검사 및 정산 실시

보조사업자

- 사업대상자는 사업 시행 전 해당 시·군을 통해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
- 사업대상자는 설치업체와 계약체결 시 사업주관기관이 제공하는 서식에 따라 계약서 작성

2.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서 매달 20일까지 보조금과 융자한도액을 신청한 예산 요구액에 한하여 예산 배정

지자체, 대출취급기관

가. 사업자금 배정신청

- 사업주관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에 따라 다음달 말까지 집행 가능한 최소한의 보조금 및 융자한도액을 사업대상자로부터 신청 받아 매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배정 신청
- 시·도는 보조금 및 융자한도액 배정요구를 하였으나, 정부의 자금 형편상 그 달에 전액이 배정되지 못한 경우 사업주관기관은 미 배정액을 차기분에 포함하여 배정 요구

나. 사업자금 집행 및 정산

- 사업자금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집행
- 사업주관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비 정산 실시
- 정산서에는 국비보조, 지방비, 국비융자, 자부담으로 구분하고, 사업비 집행액은 정산서 내역이 포함된 증거서류 등 확인
- 사업주관기관은 기성고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하되 시험가동 후 하자가 발생한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 조치토록 하고, 조치사항 미이행 시 보조금 회수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금 교부결정 내역 및 융자한도액을 대출취급기관에 통지하고, 대출취급기관은 사업대상자별 실제 대출금액을 사업주관기관에 통지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비를 집행할 경우 설치업체 등에 통보하고,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설치업체 등의 통장에 대금을 입금한 입금확인서 제출
-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의 위임을 받아 설치업체 등의 계좌에 직접 입금 조치할 수 있음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융자금 대출이 불가능하거나 사업대상자가 융자금 대출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융자금을 자부담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시·도(시·군·구)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농림축산식품부로 보고하여야 함
- 대출취급기관은 사업대상자의 부동산담보, 제3자 담보, 후취담보 및 농림축산업자 신용보증 제도 적극 활용

V. 이행점검 및 평가 단계

1.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자의 사업추진실적 지도·점검
 - 집행실적 점검 : 공문제출(매월)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
 - 점 검 반 : 농림축산식품부(주관), 해당 시·도 합동 점검
 - 점검항목 : 사업 진척도, 사업자금의 적정 집행내역

지자체, 대출취급기관

- 시·도(시·군)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4조에 의거 사업대상자의 사업추진상황 등을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지원 자금이 사업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사후관리 강화
 - 시·도는 시·군·구 추진상황 및 이행상태 점검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반기별)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장부를 비치한 후, 시설투자비, 운영비, 수익금, 경영성과 등을 기재토록 지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관리

구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부터	까지		
시설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시설	2024	2033	○중앙관서의 장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없이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교환 대역 담보제공 불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5조 등
장비	○ 제품관리 장비	2024	2028		

○ 보 고

보 고 사 항	보고기한	보고기관	비 고
○ 2024년 사업 추진 실적 보고	2024.12.31한	시·군(도) → 도 (농식품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법령 보고사항 2024년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시행지침
○ 2024년 사업 정산 보고	2025.2.15한		
○ 2024년 사업대상자 선정 보고	2023.12월중		
○ 2025년 사업 수요조사	2024.4월		
○ 2024년 사업비 집행실적 점검보고(매월)	익월 5일 (월말 기준)		
○ 2024년 사업 추진 상황 보고(매 분기)	분기 익월 5일 (분기말 기준)		
○ 2024년 사업 성과 측정 결과 보고	2025.1.31한		

《제 재》

- 사업주관기관 및 대출취급기관은 사업자가 지원자금의 상환완료기간까지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고, 시설·장비 등을 가동하지 않거나 용도의 사용할 때 자금 회수 등 조치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는 등 사업비를 부당하게 지원받은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 및 제63조의4에 따라 부당사용금액에 대한 회수조치 및 일정기간 사업 제한

2. 성과측정단계

- 1등급 이상 가축분퇴비·퇴비 생산업체 비율(%)
 - 측정산식 : 생산업체의 1등급 이상(특등급, 1등급) 가축분퇴비 및 퇴비 비율 측정
* 1등급이상 생산업체수/전체지원업체수×100(한 업체에서 가축분퇴비, 퇴비 2종 생산시 생산업체수를 2개로 계산)
 - 측정시기 : '24년도 4/4분기 (조사 : 시장·군수·구청장)
 - 측정방법 : 2022년 유기질비료 표준사업지침에 따른 품질등급 평가시 최종 품질등급

[참고] 2022년 유기질비료 표준사업지침 내 품질등급 평가내용

IV.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5. 이행점검단계
《품질관리 및 유통단속》
가. 품질검사 및 품질등급 평가
(3) 품질등급 평가

3. 사업평가 및 환류

가. 사업평가

- 지원업체 평가 실시
 - 평가대상 : 사업대상업체
 - 평가기간 : 2024년 1월~12월
 - 평가내용 : 퇴비 공급계획 대비 실적, 품질 및 유통관리, 운영실태 등
 - 평가방법 : 농식품부 및 시·도의 연 2회 점검결과(40% 반영)와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평가결과(60% 반영)를 종합하여 상·중·하로 분류

나. 환류

- 농림축산식품부 평가전담부서의 농림사업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 방향과 제도개선 사항 환류

VI. 202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5년도 사업수요조사

- 2024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함

2. 202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사업신청 : 2024년도 농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함
- 지원대상 : 생산시설, 제품생산·관리장비 등 2024년도 지침에 의함

3. 202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심의 안내

- 사업신청 : '24. 4월
 -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 : '24. 5~12월 심의를 거쳐 우선순위 부여 및 선정
- * 세부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원예작물, 유통



I. 사업 개요

□ 목 적

- ICT 시설기반 구축 자동화온실 등에 시설물 자동·원격제어를 통한 온·습도 관리 등 최적 생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환경제어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팜 시설 지원
- FTA 등 개방화에 대응하여 원예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하여 원예작물의 품질개선 및 안정적인 수출기반 구축
-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한 에너지절감자재 지원

□ 사업내용

- 시설원예 분야 스마트팜 ICT 융복합 시설보급 및 컨설팅 지원
- 원예시설 현대화를 위한 측고인상, 관수관비, 환경관리, 기타(무인방제기, 전동운반기, 레일카, 파쇄기) 자재·설비 등 지원
- 에너지절감시설(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등) 설치 지원

□ 지원 자격 및 요건

- 채소·화훼·특용작물*(육묘장 포함) 자동화, 고정식 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특용작물 : 버섯, 인삼, 약용채소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품목

- 시설원예 분야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원예시설 현대화를 위한 자재·설비, 에너지 절감시설

- 지원 기준 : 국비 25%, 지방비 30%, 용자(이차보전) 25%, 자부담 20%(컨설팅 : 국비 100)
- '24년 예산 : 64,958백만원(국비 16,453, 지방비 19,231, 용자(이차보전) 16,453, 자부담 12,821)

사업 신청

- 장소 :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
- 신청기간 : 사업 시행 전년도 8월까지

대상자 선정

- 시·군 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자 선정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서기관 김승동 주무관 송병각	044-201-2256 044-201-2259
지방자치단체 (시·군)	농업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등)	-	-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스마트팜 시설보급·컨설팅) 채소·화훼·특용작물*(육묘장 포함)을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 특용작물 : 버섯, 인삼, 약용채소
- (시설원예현대화) 고정식 시설에서 채소·화훼류(육묘장 포함)를 재배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에너지절감시설) 채소·화훼·버섯류(육묘장 포함)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관련 내용 〉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총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단,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 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2. 지원자격 및 요건

- (스마트팜 시설보급·컨설팅) 채소·화훼·특용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고정식이며 자동화된 재배시설에서 채소·화훼·특용작물을 재배하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 * 컨설팅 전담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전점검 컨설팅, 설치점검 컨설팅을 반드시 실시
- (시설원예현대화) 원예시설(채소류·화훼류)은 신청일 기준 경영정보등록 1년 이상인 경영체
 - 화훼류 신수출전략품목육성 지원 신청자는 신청일 기준 경영정보등록 1년 이상인 자로 화훼 공판장(농협·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유사도매시장 등)에 출하실적이 있거나 수출실적이 있는 농업경영체

- (에너지절감시설)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로서 고정식 재배시설에서 냉난방이 필요한 채소·화훼·버섯류를 재배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 지원제외 대상자 〉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배제된 자 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라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른 지원제한을 3회 이상 받은 자
■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정수급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에 따른 집행잔액 등 반납금, 제77조제3항에 따른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른 환수금, 제78조제4항에 따른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또는 회수금, 제85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	생산자단체 중 소비자 판매 등 농업인과 직접적으로 생산이 경합되는 시설을 운영하는 조합 공동사업법인·품목조합연합회 등
■	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 * 파프리카, 참외, 백합, 절화, 친환경, 가지, 오이, 고추, 난, 딸기 등
■	신청일 현재 사업포기·이월로 시설원예분야 사업의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은 다음의 경우 지원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지원제외 대상자가 아닐 시 우선 지원

스마트팜 시설보급·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화된 온실 개보수(시설원예현대화사업)와 동시에 추진하는 경우 ○ 태풍화재 등 재해 피해 농업인농업법인(시장·군수 종합검토 필요) ○ 화훼류 중 신수출전략품목* 재배 농업인농업법인(화훼류 재배농가에 한함) * 수국, 프리지아, 알스트로메리아, 칼라, 심비디움, 춘란, 호접란, 선인장(다육식물 포함), 스타티스, 리시안서스, 거베라 등 11개 품목
시설원예 현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화된 지원 대상시설을 교체하는 경우 ○ 순환식 양액재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태풍화재 등 재해 피해 농업인농업법인(시장·군수 종합검토 필요) ○ 화훼류 중 신수출전략품목* 재배 농업인농업법인(화훼류 재배농가에 한함) * 수국, 프리지아, 알스트로메리아, 칼라, 심비디움, 춘란, 호접란, 선인장(다육식물 포함), 스타티스, 리시안서스, 거베라 등 11개 품목
에너지절감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환식 수막재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태풍화재 등 재해 피해 농업인농업법인(시장·군수 종합검토 필요)

* (공통사항) 정부지원대상 ‘생산·유통조직’에 참여하는 경영체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

○ 시장·군수는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음의 경우 평가 시 가점 부여(중복적용 가능)

스마트팜 시설보급·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작물재해보험(원예시설) 가입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격 시설 ○ GAP 농산물 및 친환경농산물, 저탄소농축산물 인증 농가 ○ 발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 ○ 지역 푸드플랜 참여(또는 참여 약정) 또는 노후온실단지 기반 조성사업 참여 ○ 스마트팜 실증단지 검인증 기자재 ○ 스마트팜청년창업보육센터 수료생
시설원예 현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전문생산단지에 소속된 농업경영체 ○ 농작물재해보험(원예시설) 가입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격 시설 ○ GAP 농산물 및 친환경농산물, 저탄소농축산물 인증 농가 ○ 발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 ○ 지역 푸드플랜 참여(또는 참여 약정) 또는 노후온실단지 기반조성사업 참여 * 다만, 시장·군수는 비순환식 양액재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군 전체 사업비 예산 범위내에서 30% 이하로 지원
에너지절감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작물재해보험(원예시설) 가입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격 시설 ○ GAP 농산물 및 친환경농산물, 저탄소농축산물 인증 농가 ○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소속 농가 또는 수출농가 * 최근 3년간 총생산량의 60% 이상 수출 시에 한함 ○ 발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 ○ 지역 푸드플랜 참여(또는 참여 약정) 또는 노후온실단지 기반 조성사업 참여 ○ 고효율 에너지기기 공동보급사업 또는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

3. 지원 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

○ (스마트팜 시설보급·컨설팅) 시설원예 분야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 센서장비 : 외부 온도·풍속·강우·조도 등과 시설 내부 온습도, CO₂, 토양수분, 배지수분, 양액 EC/PH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장비
- 영상장비 : 영상모니터링 장비 등
- 제어장비 : 환풍기, 천창, 측창, 차광커튼, 보온커튼, 광량, CO₂, 강우 및 양액재배시설 등을 제어하기 위한 장비

* ICT 기반구축 시설·장비(시설원예현대화 장비, 에너지절감 자재 지원 대상)와 제어장비 동시 설치 지원 가능(동시 설치 시에 한해 ICT 융복합 확산사업으로 신청 가능)

- 정보시스템 : 온실 내 센싱, 제어정보의 모니터링, 제어 및 분석 시스템, _화재 경보기(ICT 융복합 장비 설치 시 추가지원 가능)
 - * 정보시스템을 통한 ICT 융복합 시설관리 및 생산·경영관리는 필수
 - * 센서와 제어장비 설치 시에는 스마트 온실 센서·구동기 노드 및 온실 통합 제어기 간 RS485 기반 모드버스 인터페이스(KS X 3267), 스마트 온실을 위한 센서 인터페이스 표준(KS X 3266)과 구동기 인터페이스 표준(KS X 3265)의 최신 개정판을 따라야 함
- 통신주(스마트팜으로부터 1km까지 지원)
- 사업자별 사업계획 확정결과에 따라 ICT 융복합 시설에 대한 보조 지원
 - * 농가별 사업계획은 사전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사업을 수행하는 물품납품 또는 공사시공 업체는 농식품부(전담기관)의 규격 및 서비스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시설원예현대화) 채소·화훼류 온실·공정육묘장 시설현대화, 지자체 공동구매, 화훼류 신수출전략품목 육성을 위한 고품질 주년생산 및 난류 온실 개선 시설·설비

<p>채소류·화훼류 온실·공정육묘장 시 설현대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고인상 : 기존온실의 측고인상에 필요한 자재·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고인상 후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적설심·풍속)에 부합하는 시설에 한해 지원 ○ 관수관비 : 양액재배시설, 농업용 정수시설, 양액재활용시설, 점적관수, 자동관수, 탄산가스발생기 ○ 환경관리 : 자동개폐기, 환풍기, 순환팬, 제습기, 차광차열시설, 보광시설, 온습도조절기 ○ 기 타 : 무인방제기, 전동운반기, 레일카, 파쇄기, 빗물저장시설, 방충망* * 수출 농산물 재배용 온실에 한해 지원(단, 총사업비 500만원 이상 시에만 가능)
<p>지자체 공동구매 품 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골조(KS 규격제품), 장기성 필름 * (골조) 내재해 설계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에 한해 지원 (장기성필름) 내재해 설계기준에 부합하는 시설 또는 원예시설 재해보험 가입시설에 한해 지원 * 지자체가 직접 공동구매를 수행하거나, 농업인과 출하약정을 맺은 농협 또는 조공법인을 지정하여 공동구매 수행 가능(자재구입 및 시공시 유의사항에 따른 공동구매절차 준수) * 단, 사업신청 시 공동구매 추진계획을, 설치 후에는 추진실적을 농식품부에 제출해야하며, 장기성 필름 지원 농가는 폐비닐처리 증빙자료도 제출
<p>화훼류 신수출전략 품목 육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화조절시설(저온설비 등), 하절기온도하강설비, 온도하강 차광시스템, 연작장해 경감용 베드시설, 휴작기 종구저장시설, 근권냉난방기, 습식유통설비 등 ○ 난류(호접란·심비디움) 미국수출 검역절차에 따른 온실개선 시설·설비 : 이중출입문(2개의 문이 동시에 열린 상태가 되지 않도록 자동으로 닫히는 출입문), 재배벤치(바닥으로부터 46cm 이상 높이, 벤치다리 동판 설치 등)

- 〈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제외 대상시설 〉
- 토지구입 및 부지조성 비용, 시설·장비 임차료, 전기인입시 기본거리(200m) 초과분
 - 단동형·이동형 비규격 온실 현대화 지원을 원칙적 제외하나, 단동형·이동형 온실에 적합한 작물은 재배특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가 종합검토 후 지원여부 결정
 - 전기·유류·가스 냉난방기, 농기계(트랙터, SS분무기, 예취기 등), 저온유통 차량, 소모성 자재(배지, 상토) 등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시설 및 장비 등
 - 배지, 상토는 양액재배시설 설치 시 최초 1회에 한해 지원 가능
 - 예냉·저장·선별시설 등(용자지원 전환)

○ (에너지절감시설)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순환식수막재배시설, 열회수형 환기장치, 배기열 회수장치

- * 총사업비 500만원 미만으로 지원되는 다겹보온커튼 또는 보온덮개는 중요재산에서는 제외되나, 시·군에서 동 사업으로 지원되는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대책(철거·보관·재설치 계획 등)을 수립하고 철저한 이행을 담보할 시에만 지원 가능

4. 지원형태 및 방법

- 국고재원
 - 보조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용자(이차보전)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형태: 국비(자치단체자본보조) 25%, 지방비 30, 용자(이차보전) 25, 자부담 20
 - 지방비 분담 비율은 시·도가 30%, 시·군이 70%씩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 여건에 따라 별도 협의하여 편성 가능
 - * 용자(이차보전) 일부 지방비 대체 가능, 자부담은 지방비 대체 불가
 - 용자(이차보전) 금리 : 고정(2.0%), 변동(시중금리* -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 시중금리 :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
 - * 컨설팅 : 국비(민간경상보조) 100%
 - 용자(이차보전)의 경우 자금 사정에 따라 지원 비율(총사업비의 25%) 대비 적게 편성될 수 있음
- 사업시행기관: 시장·군수·자치구
-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사업예정지가 행정구역상 시·군·자치구를 달리할 경우 농가의 주소지 또는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자치구에 신청하고,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은 타 시·군·자치구 주소지 거주자가 차별 받지 않도록 주의
- 컨설팅 비용(2시간 1회, 5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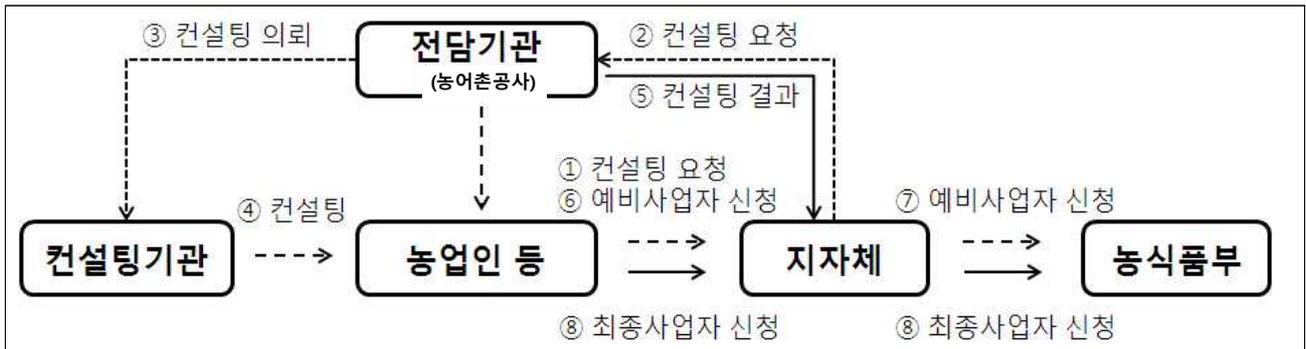
5. 지원한도액 기준(범위) 및 기준단가

- (스마트팜 시설보급·컨설팅) 200백만원 한도(총 사업비 1백만원 미만은 지원 제외)
 - * ICT 기반구축을 위한 시설·장비(시설원예현대화 지원대상, 에너지절감자재 지원대상)와 제어 장비를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미적용
 - * 표준사업비(0.33ha 기준) : 복합환경관리 20백만원, 단순환경관리 7백만원
 - * 사업집행 시 실 단가를 적용하되, 사업시행기관장 책임 하에 철저한 검토·확인(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 타 지자체 사례 등)을 거쳐 집행하되, 원가계산서는 필요시 활용
- (시설원예현대화) 사업집행 시 실단가를 적용하되, 사업시행기관장 책임하에 철저한 검토·확인(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 타 지자체 사례 등)을 거쳐 집행하고 원가계산서는 필요한 경우에만 활용
- (에너지절감시설) 본 지침에 제시된 단가는 예시로 사업집행 시에는 실 단가를 적용하되, 사업주관기관장 책임하에 철저한 검토·확인(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 타 지자체 사례 등)을 거쳐 집행하고, 원가계산서는 필요한 경우에만 활용

설비형식	기준단가	지원내용
다겹보온커튼	수평권취식 13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분흡수 방지를 위한 코팅 보온재를 포함한 5겹 이상의 보온 재료를 사용한 보온커튼(항온법 기준 보온율 70% 이상) * 단, 저온성 작물 또는 제주도 등 품목별·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3겹 보온커튼으로 대체가 가능할 경우 지자체 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3겹 보온커튼으로 지원 가능(보온율 기준 미적용) ○ 알루미늄스크린의 겹수를 포함한 5겹 이상의 보온 재료를 사용한 다층 보온커튼(항온법 기준 보온율 55% 이상)
	예인식·외부권취식 11천원/㎡	
	알루미늄스크린 11천원/㎡	
순환식 수막재배시설	5천원/㎡	○ 비순환식 수막재배시설 제외
열회수형 환기장치		○ 열회수형 환기장치 개별지원
자동보온덮개	2.5천원/㎡	○ 작물별·시설별 특성에 맞는 제품 지원
배기열 회수장치		

- * 다겹보온커튼과 자동보온덮개의 기준단가 단위(㎡)는 설치되는 커튼 또는 보온덮개의 면적을 의미, 나머지 시설의 기준단가 단위(㎡)는 설치되는 온실의 면적을 의미
- * 총 사업비 기준 1백만원 미만 사업 지원 제외

Ⅲ. 사업추진체계



※ 사업신청, 대상자선정, 자금신청·배정, 사후관리 등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운용 병행

※ 스마트팜 장비지원 대상자는 컨설팅 의무 대상이고, 시설원예현대화 장비 및 에너지절감 장비 지원 대상자는 컨설팅 의무 대상에서 제외(필요시 진행 가능)

1. 예비사업자 선정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 예비사업자 선정 요청(전년도 7월)
- 시·도에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 및 시·도별 (가)내시 통보(전년도 9월)

시·도

- 시·군에 예비사업자 선정 요청(전년도 7월)
- 시·군에서 제출한 예비사업자 선정결과 검토 후 농식품부에 제출(전년도 8월)
- 시·군에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 통보(전년도 9월)
-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를 바탕으로 소요 예상 지방비를 본예산으로 편성 (전년도 9월)

시·군·자치구

- 사업대상 농업인·농업법인 대상 사업계획, 신청방법, 중도포기 시 제재사항 등 안내
- 농업인 등이 제출한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등을 검토 후 시·도에 제출(전년도 8월)

- 검토시 사업 신청자의 사업요건 충족 여부, 사업자 선정 제외 대상자 여부,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중복·편중지원 여부,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확인(「기본규정」 제35조)
-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총사업비 산정액에 대해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등), 이전 지원 실적 등을 통해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원가계산서는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만 확인
 - *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시행사업, 지자체 공동구매, 사전 컨설팅감사를 통해 사업비의 적정성 검토 완료 시 원가계산서를 통한 사업비 적정여부 확인 절차 생략 가능
 - * 원가계산서는 원가계산전문기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동시 등록기관)에서 발급 받아 사용하고, 원가계산서 발급비용(부가세 포함)은 총사업비에 반영이 가능하며, 단품 30만원, 시설공사 6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 사업수행자가 동일 가격의 물품 또는 공사를 다수 사업자에게 납품 시 최초 발급한 원가계산서를 이후 사업에 활용 가능
- 스마트팜 시설보급은 컨설팅 전담기관(한국농어촌공사)에 사전컨설팅을 의뢰하고, 컨설팅기관에서 컨설팅 후 제출한 사전컨설팅 결과보고서(사전점검)를 바탕으로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검토
- 사업신청자에게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 통보(전년도 9월)
-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를 바탕으로 소요 예상 지방비를 본예산으로 편성(전년도 10~12월) * 사업자 선정기준표(별첨 1)에 따라 평가하여 지원순위 결정

사업대상자

[공통사항]

-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은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전년도 3~8월)
- 사업신청 시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총사업비 산정액에 대한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등) 첨부
 - * 감리비는 총사업비에 반영하여 신청
- 용자(이차보전) 희망농가는 농협은행(농·축협 포함)을 통해 대출가능 여부 및 금액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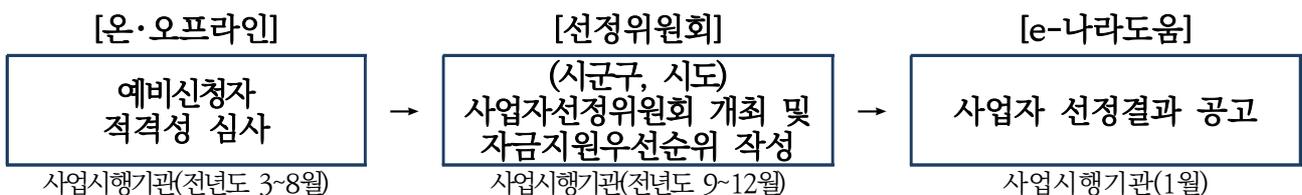
[스마트팜 시설보급]

-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은 시·군·자치구에 사전컨설팅을 요청하고,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전년도 3~8월)
 - 사업신청 시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총사업비 산정액에 대한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등)를 첨부
- 컨설팅 전담기관(한국농어촌공사)은 컨설팅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컨설팅기관 선정(전년도 상반기)
 - ICT 융복합 시설의 규격·서비스 기준, 관련 ICT 융복합 기업 등 안내
 - ICT 시설 활용도 제고 및 효과 확산을 위해 농가, 지자체 담당자 등 대상으로 주기적인 교육 실시(연중)
- 컨설팅기관은 농업인 등 대상으로 ICT 융복합 시설 및 종류 등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시·군 및 전담기관에 제출(전년도 8월)
 - 컨설팅 시 농업인 등의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을 지원

[시설원예현대화]

- 화훼류 신수출전략품목육성 사업 신청시 출하약정서를 시·군에 제출

2. 최종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요청(전년도 12월)
- 시·도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시·군·구 평가 결과*(매년 1월 평가계획 별도 통지, 농식품부 → 시·도)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전년도 12월 또는 1월)

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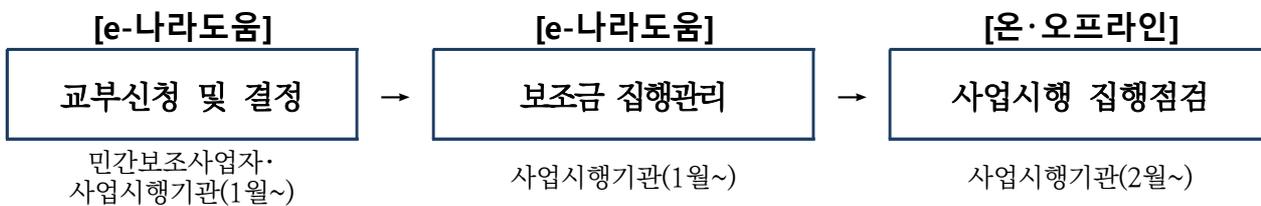
- 기 선정된 예비사업자가 본 시행지침의 지원자격·요건, 우선 지원요건 및 사업자 선정기준 등에 따라 선정되었는지를 재검토하고, 사업 추진의사를 확인 후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전년도 12월)
- 시·군의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결과와 농식품부 예산확정 결과를 검토하여 시·군 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전년도 12월 또는 1월)

시·군

- 기 선정된 예비사업자가 본 시행지침의 지원자격·요건, 우선 지원요건 및 사업자 선정기준 등에 따라 선정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사업 추진의사를 확인 후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시·도에 보고(전년도 12월)
 -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시 시·군 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취지 및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우선하여 선정(전년도 9월~12월)
- 시·도로부터 배정된 예산에 따라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최종 통지 (전년도 12월 또는 1월)
 - 지원계획, 사업시행요령 등을 사업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신속한 사업 착수 지도
-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지원금이 3천만원 이상인 보조사업은 사전 현장점검 실시

3. 자금배정 및 집행 단계

자금배정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의 자금배정 요청을 근거로 소요자금을 배정·교부하고(별지 제4호 교부결정 통지서) 대출취급기관에 소요자금 한도액 배정
- 시·도에서 보조금 이월 및 이차보전 대출기간 연장(재연장) 요청 시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승인

시·도,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국고보조금 및 이차보전 실수요액을 파악하여 사용예정 전월 15일까지 농식품부에 자금배정 요구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농식품부 또는 시·도에서 배정·교부된 소요자금을 시장·군수 또는 사업자에게 배정·교부(별지 제4호 교부결정통지서)

자금집행

시·도, 시·군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자금사용 및 지원비율의 적정성 등 확인
 - 기계·장비에 대한 공인인증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및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사후관리보증서 등 발급 여부 확인(원가계산전문기관의 원가계산서는 필요시 확인)
- 시·군은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 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보조금 지원비율(국고·지방비)에 따라 환수 조치
 - * 사업대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시 사전 변경승인
- 시장·군수는 원활한 정책자금(이차보전) 대출을 위해 사업실적과 그 실적이 본지침 및 증빙요건(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적합 여부 확인 후 기성고(준공) 확인서(별첨 2) 발급
 -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여 사업실적 범위 내에서 대출 실행 추진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12월 15일까지 당해연도 정책자금 대출기간 연장 신청 시 심사대상* 등을 면밀히 검토 후 그 내용을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12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다음해 6월 15일까지 재연장 신청 시 심사대상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지 확인·점검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내용을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6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 ① 신청자에 대해 회계연도 내 대출 실행을 못하는 타당한 사유 ② 연장승인 시 대출 실현 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실적, 신용수준, 융자담보확보 여부 등) ③ 지원 대상사업의 추진 가능성(원인행위 여부 등) 등
 - ** 연장기간 및 연장 신청시점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변경 시 사전 안내)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자금집행관련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 등에 따라 수행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8조 제2항 “농식품사업자금 집행의 원칙” 등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원칙 안내
 - * 자부담을 선집행(100%)해야 하며, 자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자부담 금액의 50%를 선집행하고, 사업량의 50%에 해당할 때부터 기성고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집행시마다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합한 금액의 집행 비율 이상 자부담 금액 집행

농협은행(농축협)

- 사업자금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시장·군수로부터 통보된 사업 기성고(준공) 확인서와 사업자의 신용 및 담보능력 등을 감안하여 대출
 - 농림축산식품부 요청 시 시·도별 융자금 대출실적 제출
- 시설 준공 후 융자금으로 사업비 정산 시 공사비와 감리용역비 대출을 동시에 실행하여 시공자와 감리자에게 각각 지급
 - * 사업자로부터 지급에 관한 동의를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자에게 지급할 때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때 지급 가능

사업대상자

- 최종사업자 선정결과 확인 즉시 사업 착수 준비를 하고, 시·군에 사업비(국비, 융자(이차보전), 지방비) 배정·교부를 요청하며, 융자(이차보전) 대출 신청
- 당해 연도 보조금 및 융자(이차보전) 대출기간 연장 필요 시 그 사유 및 소요기간,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12월 15일까지 시·군에 연장신청
 - 융자(이차보전) 대출기간 연장 승인 시 다음해 6월말까지 대출 실행을 하여야 하며,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인·허가 등 행정절차, 담보물권 확보, 대출서류 준비 등으로 대출기간 재연장(8월말까지)이 필요한 경우, 6월 15일까지 시·군에 재연장 신청
 - * 연장기간 및 연장 신청 시점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변경 시 사전 안내)
 - 다만, 예상하지 못한 상황 발생 등에 따라 사업이 지연된 경우 농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추가 1년 연장 가능

4. 사업 시행 단계

공통사항

- 지원대상 기계·장비는 반드시 공인인증시험기관에서 시험성적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사후관리보증서를 발급받은 제품을 사용
 - 사업수행자(시공업체 등)는 납품하는 기계·장비에 대하여 아래 서류를 제출
 - ① 공인인증시험기관에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를 시·군에 제출
 - * 시험성적서를 통해 제품의 성능, 품질 등을 구체적인 수치, 문구 등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예시 : 특허증, 조달청 우수제품지정증서 등은 허용 불가), 시험성적서를 발급하는 공인인증시험기관이 없는 제품은 제출 생략
 - ②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급받은 사후관리보증서를 사업대상자(원본)와 시·군(사본)에 제출
 - ③ 필요시 원가계산전문기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동시 등록기관)에서 발급받은 원가계산서를 시·군에 제출(한국농어촌공사 위탁시행사업, 지자체 공동구매, 사전 컨설팅감사를 통해 사업비의 적정성 검토 완료 시 제외)
 - * 원가계산서 발급비용(부가세 포함)은 사업비에 포함하되 단품 30만원, 시설공사 6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 사업수행자가 동일 가격의 물품 또는 공사를 다수 사업자에게 납품 시 최초 발급한 원가계산서를 이후 사업에 활용 가능

설계·시공감리

- 시장·군수는 주요 시설의 설계·시공감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효율성 및 안전성이 높은 시설로 계획
 - 관정은「지하수법」, 전기시설은「전기공사업법」등 관계규정에 따라 시설을 설계·시공, 기타 시설·장비 등은 관계규정에 의한 시공 적격업체 선정
 - 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적격업체를 통해 추진
 -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체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온실 설치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를 통해 추진
 - * 기존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시설원예사업에 참여한 업체 중 '19년 이후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면허를 취득한 업체는 전문건설업 면허 취득 전 시행한 온실 설치공사 실적을 인정
- 시장·군수는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0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감리 시행

자재구입 및 시공 시 유의사항

시·군

[공통사항]

- 시장·군수는 지원단가 및 내역 등은 반드시 지역실정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적용 하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 산출근거를 확인
- 시장·군수는 공인인증시험기관 등으로부터 효율·성능이 인정된 제품이 보급·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수행자(시공업체 등)가 제출한 시험성적서와 사후관리보증서를 확인
- 시장·군수는 사업별 시공주체 선정 시 심의회 등의 검토를 거쳐 정하고, 선정된 시공업체는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불법 하도급 행위 발생 시 선정박탈 및 향후 5년간 시공업체 선정에 참여 불가(선정업체 및 하도급업체)
- 시장·군수(또는 사업대상자)는 주요 기계·장비의 공동구매(단가계약) 장려
 - 작업공정상 전문기술을 요하는 경우는 전문업체를 통해 시공을 추진하되, 농가 부담 최소화를 위해 시장·군수가 공동 입찰·계약 등을 통해 수행
 - 시공업체 선정·계약 시 사업대상자 입회, 응찰 및 낙찰업체 등 공개
 - * 지자체가 직접 공동구매를 수행하거나, 농업인과 출하약정을 맺은 농협 또는 조공법인을 지정하여 공동구매 수행 가능
- 사업대상자는 물품 납품업체 및 공사 시공업체와 계약서(별지 제5-1, 2호 서식)를 체결한 후 물품 구매 및 공사 추진

[시설원예현대화]

- 측고인상 시에는 측고인상 이후 해당시설이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적설심·풍속)을 상회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구조기술사가 발급한 구조계산서를 제출
 - * 구조계산서 발급 비용은 총사업비에 포함하여 지원
- 사업대상자는 물품 납품업체 및 공사 시공업체와 계약서(별지 제5-1, 2호 서식)를 체결한 후 물품 구매 및 공사 추진
- 농협 또는 조공법인을 지정하여 공동구매하는 경우 다음 절차 준수
 - * 수요조사 → 모집공고(농협) → 견적서 제출 → 공급가격 결정 협의회(지자체, 농협, 농민단체, 농업인, 업체) → 단가계약 체결(농협-업체) → 공급(농협)

사업계획 변경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시·도에서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예산 등을 고려하여 변경 승인

시·도

- 시·도지사는 시·군 단위 총사업비 증감 등의 경우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 실적 보고 시 농식품부에 보고
- 시·도지사는 배정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변경사항 발생으로 국고지원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등으로 시·도 단위 예산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농식품부에 승인 요청

시·군

[공통사항]

- 사업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포기하여 사업대상자 교체가 필요한 경우 지원요건을 만족하는 대상자로 교체·선정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 실적 보고 시 시·도에 보고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군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변경·승인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 실적 보고 시 시·도에 보고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 중 시·도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국고 지원이 추가로 필요 시 농식품부와 사전협의하여 시·도에 변경 승인을 요청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에 대해 사업목적과 지원기준 범위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도에 사업계획 변경안 승인 요청

[스마트팜 시설보급]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를 교체·선정한 경우 그 결과를 컨설팅 전담기관에 통보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사업착수 전 사업계획 변경 필요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준수하여 시·군에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제출
- 사업대상자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때는 그 내역을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 신청

사업 포기

- 사업대상자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 즉시 시·군에 사업 포기서를 제출
- (포기) 포기일 이후 3년간 모든 시설원예분야 사업 지원 제한
- (이월) 준공일 이후 2년간 모든 시설원예분야 사업 지원 제한
- 사업대상자의 귀책 사유 없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업의 포기·이월이 발생한 경우 지원 제한에서 제외
 1. 천재지변이나 중대 재해 발생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2. 3개월 이상 치료해야 하는 부상 또는 질병이 있는 경우
 3. 보조되는 지방비의 미편성 또는 지연 편성
 4. 공공사업으로 인한 토지수용으로 사업예정지가 변경되거나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5. 9월 이후 대체사업자로 선정되어 이월된 경우
 6.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시장·군수가 인정한 경우

5.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점검시기 : 분기별 1회 이상,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사업추진실태 점검
- 점검내용 및 방법 : 사업계획 이행, 추진상황 등을 현장점검 또는 서면평가
 - 일정규모(10억원) 이상 사업자 집중관리(추진상황, 애로사항 수렴 등)
- 점검결과 조치 : 사업계획 및 추진 상 미비점 등 보완조치 등

시·도, 시·군

[공통사항]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추진 실적을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하고,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 이행
 - 점검결과는 별지 제7호 서식을 준용하여 농식품부에 보고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사업 관리절차 이행
- 시장·군수는 공사가 완료된 시설·장비별로 사업계획 및 설계·시방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준공검사 실시
 - 검사 시 전문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 전문기관의 기술지원을 받아 검사 실시
- 보조금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조치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중요재산	사후관리기준기간		처분제한기준
■ 온실	준공일	10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 설비시설	준공일	7년	
■ 주요기계·장비	납품일	5년	

-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담보제공 등 처분 필요 시 시·도지사 승인 후 처리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정산결과를 ‘별지 제8호 및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다음해 3월 20일까지 농식품부 보고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 종료 후 포기·이월사업자 발생 시 ‘별지 제9-2호 서식(신설)’에 따라 사업지원 제한자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매년 시설원예 분야 사업자 선정 시 해당 대장을 활용하여 지원 여부를 검토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사후관리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등 준용

[스마트팜 시설보급]

- 시장·군수는 설치점검 컨설팅을 요청한 농업인 등에 대해 컨설팅 전담기관(한국농어촌공사)에 설치점검 컨설팅을 의뢰

사업대상자

[공통사항]

- 사업대상자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이행
- 사업장을 개방하여 인근지역 농가 및 농업인들의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
- 규정된 표찰 설치로 사업성과 홍보 및 확대보급 유도(별첨 3)
- 시·군에서 지원시설 운영현황·효과 등에 대한 자료 요청 시 충실히 작성 제출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담보제공 등 처분 필요 시 시·도지사에게 처분 승인 요청

[스마트팜 시설보급]

- 농식품부(농어촌공사)의 스마트팜 빅데이터 수집·활용에 필요한 환경정보, 제어정보, 생육정보, 수확량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사업대상자는 시설·장비 설치 완료 후 시·군에 설치점검 컨설팅 요청

스마트팜 컨설팅 전담기관

- 사전컨설팅, 시설설치 컨설팅, 확인점검 컨설팅에 대한 추진현황 점검 및 확인
- 농식품부 점검일정에 따라 합동 현지방문·점검

스마트팜 컨설팅기관

- 사업대상자별 시설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설치확인 사항을 포함하여 단계별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전담기관 및 시·군에 제출

제재 및 처벌내용

시·도, 시·군

[공통사항]

- 시장·군수는 사업자 선정* 후 불가피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또는 착수는 하였으나 사업자 선정 후 6개월 이상 진행사항이 미미하여 향후 사업완료시점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대상자를 지체 없이 다시 선정하여 추진

* 농식품부의 예산 확정 통보일(공문 시행일) 기준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사업실적 부진 및 부실집행, 무단 용도변경 확인 시 예산지원 축소 또는 기 교부액 회수 조치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사업 중도포기(사유 없는 사업 미착수 포함),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계획 변경, 사업계획 미승인 변경 등 위반행위 확인 시 사업비 배정 취소 또는 기 교부액을 회수하고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조치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의 해당기간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 및 중도회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농식품사업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대출취급기관으로 하여금 부정수급 및 중도회수에 해당하는 대출금을 회수할 것을 요청
 - 관련규정에 따라서 일정기간 농식품사업 참여제한 조치 후 농식품부에 보고
 - * 사업수행자(업체) 보조금 부정수급 연관 시 위 규정을 준용하여 농림사업 참여제한 조치
 - 부정수급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확정받은 보조사업수행업체도 수행 배제

[시설원예현대화]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사후 출하약정(출하권 위임계약) 미이행 등 위반행위 확인 시 사업비 배정 취소 또는 기 교부액을 회수하고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조치

농협은행(농·축협)

- 대출취급기관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 사유 및 중도회수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그 사유 및 부정수급·중도회수 개시일을 시·군 등에 통지
- 대출취급기관은 시·군의 요청에 따라 부정수급 및 중도회수에 해당하는 대출금을 회수 조치하고 농식품부 및 시·도(시·군)에 통보

6. 사업평가 및 환류 단계

- 농식품부(지자체)는 사업종료 다음해 상반기 중 전년도 사업성과 평가
 - 공통사항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등

- 전담기관 및 지자체는 시설 설치 전후 생산성 향상 평가결과 농식품부 제출
- 우수사례에 대하여 집중적인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 방향과 제도 개선사항을 환류
- 당해 연도 집행실적 등을 다음해 시도(시·군)별 예산 배정 시 반영

IV. 2025년도 사업신청 수요 조사 및 기타 사항

1. 2025년도 사업수요 조사

- 시·도지사는 2025년도 추진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24.3월)
- 농식품부는 시·도 수요조사 결과를 기초로 2025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 제출
 - * 사업추진절차 : 수요조사(~'24.3월) → 사전컨설팅(~'24.8월) → 예비사업대상자 선정(~'24.9월) →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24.12월) → 사업추진('25.1월~)

2. 202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 대상자 선정 안내

- 신청서 제출기관 : 시장·군수
- 제출기한 : '24. 8월
- 신청자격 : '24년도 신청자격 확인(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추후 통보)
 - * '25년도 사업추진 요령은 '24년도 사업내용을 참조하고, 여건변화에 따라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추후 통보)

3. 농어업재해대책 지원

-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재해지원 관련법령에 따른 자연재해로 인하여 스마트팜 ICT융복합 확산사업(시설보급) 자금을 지원받은 농가가 농가단위 농작물 피해율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1년(30%이상~50%미만) 또는 2년(50%이상)의 동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가능(2022.12.11.부터 시행)
 - * 농가단위 피해율 산출 및 상환연기·이자감면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 등 농림축산식품부의 관련규정을 따름
 -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 제10조의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 방식을 준용

V. 주요변경사항

현행(2023)	변경(2024)	변경사유
<p>II. 사업시행 주요내용</p> <p>1. 사업대상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팜 시설보급·컨설팅) 채소·화훼·특용작물(육묘장 포함)을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시설원예현대화) 고정식 시설에서 채소·화훼류를 재배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에너지절감시설)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p>II. 사업시행 주요내용</p> <p>1. 사업대상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팜 시설보급·컨설팅) 채소·화훼·특용작물(육묘장 포함)을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시설원예현대화) 고정식 시설에서 채소·화훼류(육묘장 포함)를 재배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에너지절감시설) 채소·화훼·버섯류(육묘장 포함)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대상 명확화
<p>3. 지원 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시스템 : 온실 내 센싱, 제어 정보의 모니터링, 제어 및 분석 시스템, 화재경보기(ICT 융복합 장비 설치 시 추가지원 가능) * 정보시스템을 통한 ICT 융복합 시설관리 및 생산·경영관리는 필수 * 센서와 제어장비 설치 시에는 스마트 온실을 위한 센서 인터페이스 표준(KS X 3266, 2022)과 구동기 인터페이스 표준(KS X 3265, 2022)을 따라야 함 	<p>3. 지원 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시스템 : 온실 내 센싱, 제어 정보의 모니터링, 제어 및 분석 시스템, 화재경보기(ICT 융복합 장비 설치 시 추가지원 가능) * 정보시스템을 통한 ICT 융복합 시설관리 및 생산·경영관리는 필수 * 센서와 제어장비 설치 시에는 스마트 온실 센서·구동기 노드 및 온실 통합 제어기 간 RS485 기반 모드버스 인터페이스(KS X 3267), 스마트 온실을 위한 센서 인터페이스 표준(KS X 3266)과 구동기 인터페이스 표준(KS X 3265)의 최신 개정판을 따라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팜 ICT기자재 국가표준 확산지원사업’에 따른 인터페이스 표준 현행화
<p>4. 지원형태 및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형태: 국비(자치단체자본보조) 25%, 지방비 30, 융자(이차보전) 25, 자부담 20 - 지방비 분담 비율은 시·도가 30%, 시·군이 70%씩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여건에 따라 별도 협의하여 편성 가능 - 융자(이차보전) 금리 : 고정(2.0%), 변동(시중금리-2.0%) / 	<p>4. 지원형태 및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형태: 국비(자치단체자본보조) 25%, 지방비 30, 융자(이차보전) 25, 자부담 20 - 지방비 분담 비율은 시·도가 30%, 시·군이 70%씩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여건에 따라 별도 협의하여 편성 가능 - 융자(이차보전) 금리 : 고정(2.0%), 변동(시중금리-2.0%) / 	

현행(2023)	변경(2024)	변경사유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용자(이차보전)의 경우 자금 사정에 따라 지원 비율(총사업비의 25%) 대비 적게 편성될 수 있음	○ 이차보전의 경우 용자 실행률을 고려하여 실제 총 사업비 대비 적게 편성되므로 민원 예방을 위해 명시
5. 지원한도액 기준(범위) 및 기준단가 ○ (에너지절감시설) 본 지침에 제시된 단가는 예시로 사업집행 시에는 실 단가를 적용하되, 사업주관기관장 책임하에 철저한 검토·확인(3개 업체 이상의 견적서 등 사업비 산출근거 구비)을 거쳐 집행하고, 원가계산서는 필요한 경우에만 활용	5. 지원한도액 기준(범위) 및 기준단가 ○ (에너지절감시설) 본 지침에 제시된 단가는 예시로 사업집행 시에는 실 단가를 적용하되, 사업주관기관장 책임하에 철저한 검토·확인(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 타 지자체 사례 등)을 거쳐 집행하고, 원가계산서는 필요한 경우에만 활용	○ 검토·확인 서류를 타 지원시설과 통일하여 불필요한 비용 제거 등 민원 편의 제고
Ⅲ. 사업추진체계 2. 최종사업자 선정단계 [시·군] * 시·군 담당자는 사업신청 및 사업자 선정 결과 등을 반드시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관리(시·도 담당자는 Agrix 입력 상황 지속 점검)	Ⅲ. 사업추진체계 2. 최종사업자 선정단계 [시·군] <삭 제>	○ 미사용 중인 시스템 관리 의무 삭제
4. 사업 시행 단계 [설계·시공·감리] ○ 시장·군수는 총 사업비 기준 5천만원 이상 사업의 경우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공사감리 시행	4. 사업 시행 단계 [설계·시공·감리] ○ 시장·군수는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0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감리 시행	○ 감리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 명확화하여 감리 기준 완화
4. 사업 시행 단계 [사업 포기] ○ (포기) 포기일 이후 3년간 모든 시설원예분야 사업 지원 제한 ○ (이월) 준공일 이후 2년간 모든 시설원예분야 사업 지원 제한 * 9월 이후 대체사업자로 선정되어 이월된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 단, 농식품부로부터 천재지변이나	4. 사업 시행 단계 [사업 포기] ○ (포기) 포기일 이후 3년간 모든 시설원예분야 사업 지원 제한 ○ (이월) 준공일 이후 2년간 모든 시설원예분야 사업 지원 제한 ○ 사업대상자의 귀책 사유 없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업의 포기·이월이 발생한 경우	○ 비의도적 사업포기(이월)자 면책 유형 구체화

현행(2023)	변경(2024)	변경사유
<p>중대한 재해, 본인의 질병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 받는 경우 중도회수 사유로 보지 않음</p>	<p>지원 제한에서 제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천재지변이나 중대 재해 발생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2. 3개월 이상 치료해야 하는 부상 또는 질병이 있는 경우 3. 보조되는 지방비의 미편성 또는 지연 편성 4. 공공사업으로 인한 토지수용으로 사업예정지가 변경되거나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5. 9월 이후 대체사업자로 선정되어 이월된 경우 6.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시장·군수가 인정한 경우 	
<p>5.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단계 [시·도, 시·군] <공통사항></p> <p><신 설></p>	<p>○ 시장·군수는 회계연도 종료 후 포기·이월사업자 발생 시 '별지 제9-2호 서식(신설)'에 따라 사업 지원 제한자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매년 시설원에 분야 사업자 선정 시 해당 대장을 활용하여 지원 여부를 검토</p>	<p>○ 사업지원 제한자 관리 강화(경북 정부합동감사 지적 사항 보완)</p>
<p>※ 기타</p>	<p>○ 사업예산·시행 연도 현행화, 컨설팅 사업 주관기관 조정(농정원→농어촌공사), 서식 수정 등</p>	

2024년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신재생에너지시설)

I. 사업 개요

□ 목 적

-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의 농업분야 적용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 사업내용

- 신재생에너지시설(지열냉난방시설, 폐열재이용시설, 공기열냉난방시설, 목재 펠릿난방기) 설치

□ 지원 자격 및 요건

- 냉난방이 필요한 고정식 시설에서 채소·화훼·버섯류를 재배·생산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또는 시·군 자치구
- 돼지·닭·오리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 농가(지열 및 폐열에 한함)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품목

- 지열·지중열·폐열 등 신재생에너지시설

- 지원 기준 : 국고 30~60%, 지방비 20~30, 융자(이차보전) 10~20, 자부담 10~20

- '24년 예산 : 26,005백만원(국비 13,401, 지방비 6,280, 융자(이차보전) 3,675, 자부담 2,649)

□ 사업 신청

- 장소 :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
- 신청기간 : 사업 시행 전년도 8월까지

□ 대상자 선정

- 시·군 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자 선정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서기관 김승동 주무관 송병각	044-201-2256 044-201-2259
한국농어촌공사	에너지사업부	부 장 이윤철 차 장 김형원	061-338-5371 061-338-5380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①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업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총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단,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 ② 돼지·닭·오리 사육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지열·폐열 시설 설치 시에 한함)
- ③ 시·군·자치구(지열·폐열·공기열 시설 설치 시에 한함)
- ④ 과거 정부 지원 사업으로 지열·폐열·공기열 시설을 설치한 농업인·농업법인(지열·폐열·공기열 시설 개보수 시에 한함)

2.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자격

- ①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고정식 재배시설에서 냉난방이 필요한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또는 재배 예정*이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 * 신규 온실 설치 예정자는 설계업체 또는 시공업체와의 계약서 첨부
- ② 돼지·닭·오리 사육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고정식 시설에서 냉난방이 필요한 돼지·닭·오리 사육 또는 사육예정*이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돼지·닭·오리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 완료
 - * 신규 축사 설치 예정자는 설계업체 또는 시공업체와의 계약서 첨부
- ③ 시·군·자치구(지열·폐열·공기열 시설 설치 시에 한함)
 - 농업인의 교육·연구 및 영농편의 도모를 위해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 * 농업인과 경합되는 채소·화훼류 등 농작물을 직접 재배하는 경우는 지원 불가

④ 과거 정부 지원 사업으로 지열·폐열·공기열 시설을 설치한 농업인·농업법인

- 고정식 재배시설에 과거 농진청, 농식품부, 산자부 등의 지원 사업으로 지열·공기열 냉난방시설 또는 폐열 재이용시설을 설치한 농업인·농업법인이 해당시설을 개보수하고자 하는 경우

〈 지원제외 대상자 〉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배제된 자 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라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른 지원제한을 3회 이상 받은 자
-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정수급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에 따른 집행잔액 등 반납금, 제77조제3항에 따른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른 환수금, 제78조제4항에 따른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또는 회수금, 제85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 생산자단체 중 소비자 판매 등 농업인과 직접적으로 생산이 결합되는 시설을 운영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품목조합연합회 등
- 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
 - * 파프리카, 참외, 백합, 절화, 친환경, 가지, 오이, 고추, 난, 딸기 등
- 신청일 현재 사업포기·이월로 시설원예분야 사업의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우선지원요건

-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은 다음의 경우 지원자격과 일반지원요건을 충족하고 지원제외 대상자가 아닐 시 최우선 지원
 - 순환식 수막재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생산·유통 통합조직 참여 경영체
 - 태풍·화재 등 재해 피해 농업인·농업법인(시장·군수 종합검토 필요)
- 시장·군수는 지원자격과 일반지원요건을 충족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가 시 가점 부여(중복적용 가능)
 - 농작물재해보험(원예시설) 가입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격 시설
 - GAP 농산물 및 친환경농산물, 저탄소농축산물 인증 농가
 -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소속 농가 또는 수출농가
 - * 최근 3년간 총생산량의 60% 이상 수출 시에 한함
 - 발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 지역 푸드플랜 참여(또는 참여 약정) 또는 노후온실단지 기반조성사업 참여

- 고효율 에너지기기 공동보급사업 또는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
- 스마트팜청년창업보육센터 수료생,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의 ‘친환경농업 집적지구’ 참여가능

일반지원요건

〈공통사항〉

- 냉난방시설 설치 시 반드시 기존 난방시설을 존치 또는 보조난방시설을 설치하여 정전 등으로 인한 시스템 가동 중단 및 기온 급강하 등에 따른 피해 사전 예방(보조난방시설은 지원 불가)
- 시설물 화재보험(공제)에 가입하여 화재·낙뢰 등 피해에 대비(권장)
- 확보 부지(규모·위치 등), 고정식 재배시설 규모·단열기준 등이 사업추진에 적정한지 여부는 한국농어촌공사 현장조사 시 확인(지열·공기열·폐열시설 설치 시)

가. 사업부지 확보

- 지열(개보수 포함) 냉난방시설 및 폐열 재이용시설
 - 시설부지는 신청자 소유의 토지를 원칙으로 하나, 10년 이상 해당 토지 임대계약 체결 시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
 - * 단, 부득이한 사유(예: 부부, 직계가족, 동일 경영체 소속 등)가 인정되는 경우 10년 이상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
 - 사업신청자는 소음·진동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 토지경계 등의 문제가 없는 부지에 한해 신청 가능(주민 등의 시설 설치 동의서 등 증빙자료 제출)
 - * 토지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업신청자는 현황측량 성과도를 첨부하여 신청 서류 보완
- 지열 냉난방시설 설치 시 수평밀폐형은 온실 재배면적의 160% 이상, 수직밀폐형과 수직개방형(SCW)은 온실 재배면적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을 사업신청자가 사전에 확보 완료
 - 별도의 매설 공간이 없는 온실은 온실 내부에 굴착장비가 투입되어 지열교환용 파이프 매설작업이 가능해야 함 * 작물 재배·수확기간 조정 가능여부 확인
- 폐열 재이용시설 설치 시 사업신청자는 발전소 온배수 등 폐열 이송관로 부지 등을 사전에 확보 완료

〈지원 제외대상〉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기간 연수(年數) 이내 개발될 예정인 지역 내 토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반드시 확인)

나. 사업비 확보

- 지열(개보수 포함)·공기열 냉난방시설 및 폐열 재이용시설
 - 사업비(자부담·국고용자)를 이미 확보했거나, 사업자 선정 즉시 사업 착수가 가능한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신용조사서 등 증빙자료 제출)

다. 고정식 재배시설 규모

○ 지열 냉난방시설 및 폐열 재이용시설

- 농작물 재배온실 : 면적 1,000m² 이상

* 단, 단동형 파이프식 온실은 면적이 0.3ha 이상이며, 내재해형 기준을 충족하고,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주변여건,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만 가능

- 버섯, 인삼 등을 재배하는 원예특작시설 : 연면적 600m² 이상

- 무창계사 : 30천 마리 이상 사육시설

- 무창오리사 : 5천 마리 이상 사육시설

- 무창분만돈사, 무창임신돈사 : 1천 마리 이상 사육 사업장

○ 공기열 냉난방시설

- 농업인·농업법인별 농작물 재배온실 면적 : 1,000m² 이상

라. 고정식 재배시설 단열기준(지열·공기열·폐열 시설만 해당)

○ 농작물 재배온실 (아래 중 어느 하나의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

- 온실의 외부 피복재는 외피복 1중, 내부 피복재는 다겹(2중) 이상

- 2중 보온커튼과 수막시설 설치

○ 패널구조형 원예특작시설

- 무창계사·돈사·오리사, 버섯재배사 등 원예특작시설의 패널 구조는 최소 두께 50mm 이상(측벽 및 천장 포함) 또는 동등한 단열성능(열관류율) 이상

마. 재배품목

○ 난방을 필요로 하는 작물

- 사업계획서상의 재배 예정작물을 실제 재배과정에서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장·군수 승인 후 추진(이 경우 반드시 난방을 필요로 하는 작물을 선택하며, 지원이 불가능한 작물로의 변경은 불가)

* 작물별 생육온도 기준(별첨 2) 고려,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작물은 전문가 의견 반영·결정

바. 지열·공기열 냉난방시설 및 폐열 재이용시설 개보수

○ 용량증설 : 최대부하용량의 90% 미만으로 지원된 시설

* 적용대상 : 지열·공기열 냉난방시설, 폐열 재이용시설

○ 성능개선 : 하자관리기간(준공 이후 3년) 종료된 시설 또는 유류대비 에너지비용 절감률*이 50% 미만인 시설

* 현재 냉난방비용(연간 전력요금) / 유류난방 가정 시 난방비용

** 적용대상 : 지열 냉난방시설, 폐열 재이용시설, 공기열 냉난방시설

3. 지원 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

○ 지열 냉난방시설, 폐열 재이용시설, 목재펠릿 난방기, 공기열 냉난방시설

*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전가유류 난방기 지원 제외

시설 구분	지원 범위
지열·폐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목, 천공, 그라우팅, 열교환기, 폐열 이송관로, 스케일 제거장치, 히트펌프, 배관, 기존난방 연계 설비, 전기 용량 증설, 제어, 시스템 보호를 위한 기계실 등 시설 성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설비 * 전기인입시 기본거리 200m 초과분 한전납입금 제외 · 축산시설은 내부 공급관(덕트) 설비공사 추가(기존 환기시스템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야 하며 연계를 위한 공사는 제외)
지열·폐열 (성능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자관리기간 종료 이후 노후화, 파손, 고장 등으로 인한 성능저하를 보수(교체)를 통해 회복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설비에 한하여 지원 * 사후관리기간(5년) 이내 주요장비는 회복 불가능한 파손고장을 제외하고 보수만 가능(교체 불가)
목재펠릿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실외부 : (공통) 연료저장탱크, 기계장치 연결밸브, 전기배선, 설치 인건비, (온수) 축열 탱크(필요시) · 온실내부 : 급수분배기, 배관, 팬코일, 송풍기, 온도센서, 순환모터 등
공기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히트펌프, 전기 용량 증설, 배관시설, 팬코일유니트, 제어시설, 축열조 탱크 등 성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설비 * 전기인입시 기본거리 200m 초과분 한전납입금 제외

4. 지원형태

○ 국고재원

- 보조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특회계)

- 용자(이차보전)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사업기간(지열·폐열 신규설치) : 2년(1년차 50%, 2년차 50%)

○ 지원비율

구 분		국고		지방비	자부담
		보조	용자		
공기열냉난방시설		40%	20%	30%	10%
신재생 에너지시설	목재펠릿난방기	30%	20%	30%	20%
	지열·폐열냉난방시설	60%	10%	20%	10%

- 지방비 분담 비율은 시·도가 30%, 시·군이 70%씩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 여건에 따라 별도 협의하여 편성 가능

- 용자(이차보전) 일부 지방비 대체 가능, 자부담은 지방비 대체 불가(폐열 예외)

- 용자(이차보전) 금리 : 고정(2.0%), 변동(시중금리*-2.0%)** /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 시중금리 :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사업시행기관 : 시장·군수·자치구

-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사업예정지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할 경우 농가의 주소지 또는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에 신청하고,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은 타 시·군·자치구 주소지 거주자가 차별 받지 않도록 주의

5. 지원 기준단가

〈 공통사항 〉

- 지침에 제시된 단가는 예시 기준으로 사업집행 시에는 실 단가를 적용하되, 사업주관기관 장 책임 하에 철저한 검토·확인(3개 업체 이상의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사업비 산출근거 구비)을 거쳐 집행

가. 지열·공기열 냉난방시설 및 폐열 재이용시설 신규설치

○ 지역별 최저온도와 시설특성을 감안하여 산출된 시설 부하용량(kW)에 따라 지원

- 시설특성: 재배작물 온도조건, 양계·양돈 필요 온도를 검토

- 공기열(공기 대 공기) 히트펌프 지원기준

* 한파 시 난방능력 확보가 필요한 경우 히트펌프의 한랭시조건 난방능력을 히트펌프 설치용량으로 반영 할 수 있으며 표준조건 난방용량 규격 기준 최대 160%까지 적용가능

- 사 업 비: 시설 부하용량(kW) × 적용단가

* 공기열(공기 대 공기) 히트펌프의 '시설 부하용량'은 표준조건 총 난방용량을 기준으로 적용

○ 기준단가

설비형식		기준단가	히트펌프 적용기준
지 열	수직밀폐형	1,638천원/kW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등록된 신재생에너지설비(KS) 인증 제품 사용
	수평밀폐형	1,260천원/kW	
	개방형(SCW형)	1,508천원/kW	
폐 열	1,280천원/kW ~ 1,520천원/kW		

설비형식		기준단가	히트펌프 적용기준
공기열	공기 대 공기(공급)	617천원/kW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 등 공인인증시험기관에서 '농업용냉난방기 검정방법'에 따른 성능인증시험을 받은 제품인면서, 한랭지 난방효율(COP2) 2.0 이상인 제품
	공기 대 물(공급)	865천원/kW	

* 폐열 재이용시설은 열원이송거리에 따라 적용단가를 조정 가능

*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를 위한 계측시스템(전력량계, 부하량 및 열량측정장치) 구축을 위한 설비 반영 시 기준단가의 5%까지 가산 가능

* COP(성적계수) : 에너지효율의 지표(투입전력 대비 생성 열에너지의 비율)

나. 지열·공기열 냉난방시설 및 폐열 재이용시설 개보수

○ 용량증설(지열·공기열·폐열)

- 지역별 시설 부하용량(kW)* 기준 대비 부족한 용량을 지원

* 온실 부하계산결과를 기준하여 부족한 용량(히트펌프 정격 난방용량 기준) 또는 지열교환기 전산해석 결과 부족한 용량(지열고갈 등으로 인한 용량 증설)

- 사업비 : [시설 부하용량(kW) - 기보급 시설용량(kW)] × 적용단가

○ 성능개선(지열·폐열)

- 과거 지열 냉난방시설 또는 폐열 재이용시설 보급 이후 시설물의 노후화, 파손, 고장 등으로 인한 성능저하를 회복하기 위한 보수 및 교체 지원을 위한 실제 소요 사업비

- 사업신청 시점에 실소요 사업비 산출이 어려운 경우(매설부 등) 개략사업비를 기준으로 산정

○ 기준단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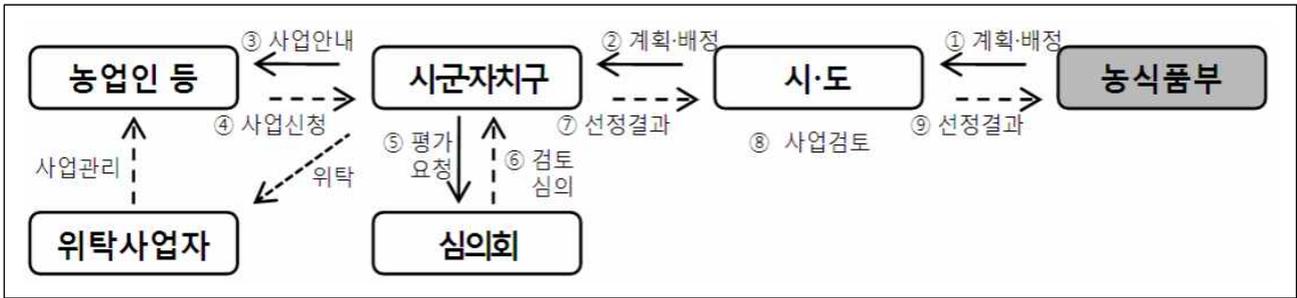
- 용량증설 : 지열 신규 설치 단가와 동일

- 성능개선 : 실소요 비용(개략사업비 306백만원/ha)

다. 목재펠릿난방기

설비형식	지원내용
온수형·온풍형 난방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인기관의 성능시험을 통과하여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인터넷 홈페이지(www.kamico.or.kr)에 게시한 '농업용 목재 펠릿 전용 난방기(열효율이 표시된 제품)' ○ 난방기 열효율 : 온수 80%, 온풍 70% 이상 제품 * 설치비 : 온수형 300만원, 온풍형 150만원 이하/661㎡

Ⅲ. 사업추진체계



※ 사업신청, 대상자선정, 자금신청·배정, 사후관리 등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운용 병행

1. 예비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 예비사업자 선정 요청(전년도 7월)
- 시·도에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 및 시·도별 (가)내시 통보(전년도 9월)

시·도

- 시·군에 예비사업자 선정 요청(전년도 7월)
- 시·군에서 제출한 예비사업자 선정결과 검토 후 농식품부에 제출(전년도 8월)
 - * 지열·공기열 냉난방시설 및 폐열 재이용시설 현장조사 확인서 및 사업성 검토의견서 첨부
- 시·군에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 통보(전년도 9월)
-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를 바탕으로 소요 예상 지방비를 본예산으로 편성 (전년도 10~12월)

시·군

- 사업대상 농업인·농업법인 대상 사업계획, 신청방법, 중도포기 시 제재사항 등 안내
- 농업인 등이 제출한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2-1 또는 2-2호 서식) 등을 검토 후 시·도에 제출(전년도 8월)
 - 지열·공기열 냉난방시설 및 폐열 재이용시설 신청(개보수 포함) 시 시·군은 한국농어촌공사에 현장조사 지원을 의뢰하여 조사 시행 후 현장조사 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 및 사업성 검토의견서(별지 제7호 서식)를 첨부하여 제출

- 검토 시에는 신청자가 사업요건을 충족하는지, 사업자 선정 제외 대상자 여부,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중복·편중지원 여부,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확인(「기본규정」 제35조)

(단, 부지 및 사업비 확보 요건은 미충족 시 조건부 예비사업자로 신청 가능*)

* 추후 최종사업자 선정단계에서 부지 및 사업비 확보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신청

- 사업신청자에게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 통보(전년도 9월)
-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를 바탕으로 소요 예상 지방비를 본예산으로 편성(전년도 9월)
- * 사업자 선정기준표(별첨 1-1, 1-2)에 따라 평가하여 지원순위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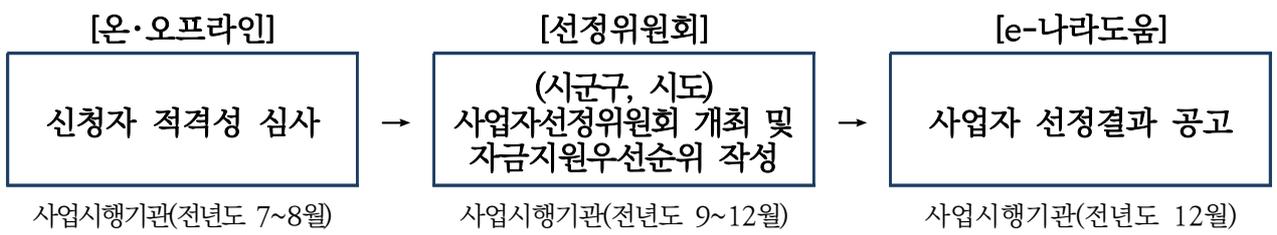
사업대상자

-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은 사업신청 전 총사업비 산정액에 대한 한국농어촌공사 등의 적정성 검토(지열·폐열·공기열에 한함)를 받은 후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2-1 또는 제2-2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전년도 7월~8월)
 - 사업신청서 작성 시 난방부하를 산출하고 시설용량과 사업비를 결정하여 신청
 - 사업신청 시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총사업비 산정액에 대한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를 첨부
 - * 원가계산서는 시·군 등에서 제출 요구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 첨부하고, 원가계산서 발급 비용 및 감리비는 총사업비에 반영하여 신청
- 용자 희망농가는 거래 농협은행(농·축협 포함)을 통해 대출가능 여부 및 금액 확인

한국농어촌공사

- 시·군 요청 시 현장조사를 지원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전년도 7월~8월)

2. 최종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요청(전년도 12월)
- 시·도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시·군·구 평가 결과(매년 1월 평가계획 별도 통지, 농식품부 → 시·도)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전년도 12월 또는 1월)

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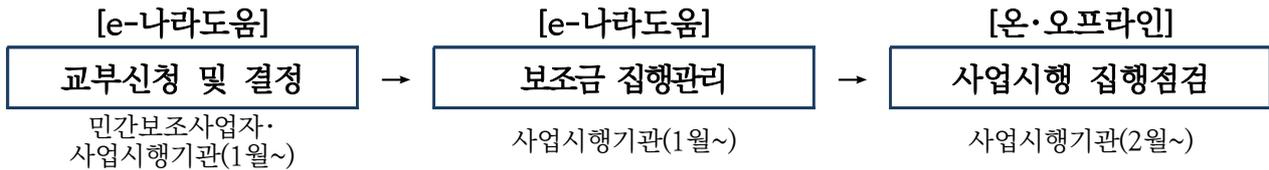
- 기 선정된 예비사업자가 본 시행지침의 지원요건 및 사업자 선정기준 등에 따라 선정되었는지 검토 및 사업 추진의사 확인 후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전년도 12월 또는 1월)
 - 조건부 예비사업자의 경우 보고 시 지원요건 충족여부 입증자료 제출
 - * 특히, 사업비 확보 요건 충족여부를 증빙자료 등 통해 반드시 확인
- 시·군 최종사업자 선정결과 및 지원예산 등을 반영하여 시·군별 사업량 및 지원 예산 확정 통보(전년도 12월 또는 1월)

시·군

- 기 선정된 예비사업자가 본 시행지침의 지원요건 및 사업자 선정기준 등에 따라 선정되었는지 검토 및 사업 추진의사 확인 후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시·도에 보고(전년도 12월 또는 1월)
 -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시 시·군 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취지 및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우선하여 선정(전년도 9월~12월)
 - 조건부 예비사업자의 경우 보고 시 지원요건 충족여부 입증자료 제출
 - * 특히, 사업비 확보 요건 충족여부를 증빙자료 등 통해 반드시 확인
- 시·도로부터 배정된 예산에 따라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통지(전년도 12월 또는 1월)
 - 지원계획, 대출방법, 사업시행요령 등을 사업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신속한 사업 착수 지도
-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지원금이 3천만원 이상인 보조사업은 사전 현장 점검

3. 자금배정 및 집행 단계

자금배정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의 자금배정 요청을 근거로 소요자금을 배정·교부하고(별지 제4호 교부결정 통지서), 대출취급기관에 소요자금 한도액 배정
- 시·도에서 보조금 이월 및 용자금 대출기간 연장(재연장) 요청 시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승인

시·도,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국고보조금 및 용자금 실수요액을 파악하여 사용예정 전월 15일까지 농식품부에 자금배정 요구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농식품부 또는 시·도에서 배정·교부된 소요자금을 시장·군수 또는 사업자에게 배정·교부(별지 제4호 교부결정통지서)

자금집행

시·도, 시·군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자금사용 및 지원비율의 적정성 등 확인(일괄 위탁사업의 경우 교부금을 위탁시행기관에 교부)
 - 기계·장비에 대한 공인인증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및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사후관리보증서 발급 여부 반드시 확인, 원가계산전문기관의 원가계산서는 필요시 확인
- 시장·군수는 준공검사 후 사업비를 정산하고 위탁시행사업의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의 준공 완료 보고 후 사업수지예산서에 따라 사업비를 정산

- 시·군은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 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보조금 지원비율(국고·지방비)에 따라 환수 조치
 - * 사업대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시 사전 변경 승인
 - 위탁시행사업 추진 시 사업대상자가 별도 비용(자부담)으로 작성한 설계도서를 활용한 경우 설계비용은 설계요율만큼 사업비에서 제외하여 비율에 따라 정산
- 시장·군수는 원활한 융자금 대출을 위해 사업실적과 그 실적이 본 지침 및 증빙 요건(영수증·세금계산서 등) 등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후 기성고(준공) 확인서(별첨 3) 발급
 -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여 사업실적 범위 내에서 대출 실행 추진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12월 15일까지 당해연도 융자금 대출기간 연장 신청 시 심사대상* 등을 면밀히 검토 후 그 내용을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12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다음해 6월 15일까지 재연장 신청 시 심사대상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지 확인·점검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내용을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6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 ① 신청자에 대해 회계연도 내 대출 실행을 못하는 타당한 사유 ②연장승인 시 대출 실현 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실적, 신용수준, 융자담보확보 여부 등) ③지원대상 사업의 추진 가능성(원인행위 여부 등) 등
 - * 연장기간 및 연장 신청 시점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변경 시 사전 안내)
 - 다만, 예상하지 못한 상황 발생 등에 따라 사업이 지연된 경우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추가 1년 연장 가능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자금집행관련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등에 따라 수행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58조제2항 “농식품사업자금 집행의 원칙” 등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원칙* 안내
 - * 자부담을 선집행(100%)해야 하며, 자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자부담 금액의 50%를 선집행하고, 사업량의 50%에 해당할 때부터 기성고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집행시마다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합한 금액의 집행 비율 이상 자부담 금액 집행

농협은행(농축협)

- 사업자금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시장·군수로부터 통보된 사업 기성고(준공) 확인서와 사업자의 신용 및 담보능력 등을 감안하여 대출
 - 농림축산식품부 요청 시 시·도별 용자금 대출실적 제출
- 시설 준공 후 용자금으로 사업비 정산 시 공사비와 감리용역비 대출을 동시에 실행하여 시공자와 감리자에게 각각 지급
 - * 사업자로부터 지급에 관한 동의를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자에게 지급할 때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때 지급 가능

사업대상자

- 최종사업자 선정결과 확인 즉시 사업 착수 준비를 하고, 시·군에 사업비(국고보조, 용자(이차보전), 지방비) 배정·교부를 요청하며, 용자 대출을 신청
- 당해 연도 보조금 및 용자금(이차보전) 대출기간 연장 필요 시 그 사유 및 소요기간,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12월 15일까지 시·군에 연장신청
 - 용자(이차보전) 대출기간 연장 승인 시 다음해 6월말까지 대출 실행을 하여야 하며,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인·허가 등 행정절차, 담보물권 확보, 대출서류의 준비 등으로 대출기간 재연장(8월말까지)이 필요한 경우, 6월 15일까지 시·군에 재연장 신청
 - * 연장기간 및 연장 신청 시점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변경 시 사전 안내)

4. 사업 시행 단계

공통사항

- 지원대상 기계·장비는 반드시 공인인증시험기관에서 시험성적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사후관리보증서를 발급받은 제품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원가계산전문기관에서 원가계산서를 발급 받은 제품 사용
 - 사업수행자(시공업체 등)는 납품하는 기계·장비에 대하여 아래 서류를 제출
 - ① 공인인증시험기관에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를 시·군에 제출
 - * 시험성적서를 통해 제품의 성능, 품질 등을 구체적인 수치, 문구 등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예시 : 특허증, 조달청 우수제품지정증서 등은 허용 불가), 시험성적서를 발급하는 공인인증시험기관이 없는 제품은 제출 생략
 - ②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급받은 사후관리보증서를 사업대상자(원본)와 시·군(사본)에 제출

- ③ 필요시 원가계산전문기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동시 등록기관)에서 발급받은 원가계산서를 시·군에 제출(한국농어촌공사 위탁시행사업, 지자체 공동구매, 사전 컨설팅감사를 통해 사업비의 적정성 검토 완료 시 제외)
 - * 원가계산서 발급비용(부가세 포함)은 사업비에 포함하되 단품 30만원, 시설공사 6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 사업수행자가 동일 가격의 물품 또는 공사를 다수 사업자에게 납품 시 최초 발급한 원가계산서를 이후 사업에 활용 가능

설계·시공·감리

- 시장·군수는 주요 시설의 설계·시공·감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효율성 및 안전성이 높은 시설로 계획
 - 관정은「지하수법」, 전기시설은「전기공사업법」등 관계규정에 따라 설계·시공
 - 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적격업체를 통해 추진
 -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체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온실 설치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를 통해 추진
 - * 기존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시설원예사업에 참여한 업체 중 '19년 이후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취득한 업체는 전문건설업 면허 취득 전 시행한 온실 설치공사 실적을 인정
- 시장·군수는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0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감리 시행

자재구입 및 시공 시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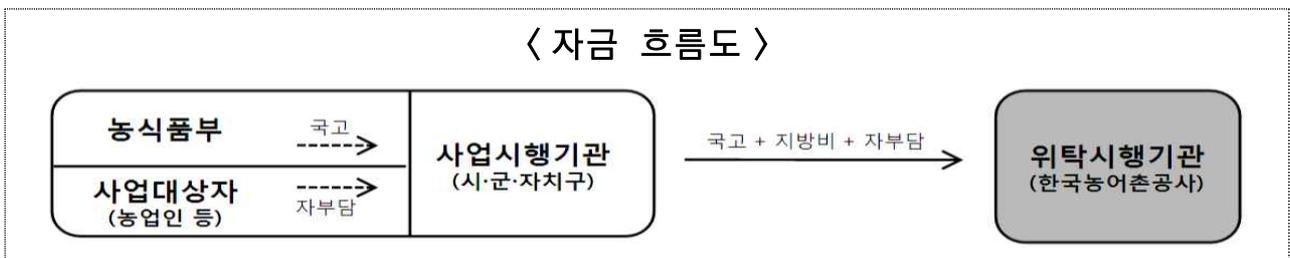
시·군

- 시장·군수는 지원단가 및 내역 등은 반드시 지역실정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적용 하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 산출근거(원가계산서 등) 확인
- 시장·군수는 공인인증시험기관 등으로부터 효율·성능이 인정된 제품이 보급·활용 될 수 있도록 사업수행자(시공업체 등)가 제출한 시험성적서와 사후관리보증서를 확인
- 시장·군수는 사업별 시공주체 선정 시 필요한 경우 심의회 등의 검토를 거쳐 정하고, 선정된 시공업체는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불법 하도급 행위 발생 시 선정박탈 및 향후 5년간 시공업체 선정에 참여 불가(선정업체 및 하도급 업체)
- 시장·군수(또는 사업대상자)는 주요 기계·장비의 공동구매(단가계약) 장려

- 작업공정상 전문기술을 요하는 경우는 전문업체를 통해 시공을 추진하되, 농가 부담 최소화를 위해 시장·군수가 공동 입찰·계약 등을 통해 수행
 - * 지자체가 직접 공동구매를 수행하거나, 농업인과 출하약정을 맺은 농협 또는 조공법인을 지정하여 공동구매 수행 가능
 - 업체 선정·계약 시 사업대상자 입회, 응찰 및 낙찰업체 등 공개
- 사업대상자는 물품 납품업체 및 공사 시공업체와 계약서(별지 제11, 12호 서식)를 체결한 후 물품 구매 및 공사 추진

지열·폐열·공기열 냉난방시설

- 기본방향: 한국농어촌공사 위탁 시행
- 시·군은 농식품부로부터 받은 보조금과 지방비, 농가에서 예치한 자부담을 위탁 사업자인 한국농어촌공사로 일괄 이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사업비 집행
 - 자부담은 사업시행년도 5월까지 이체해야하며, 자부담 미이체시 시·군은 지원요건을 만족하는 대상으로 교체·선정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보고('25년 사업대상자부터 적용)
 - '지열 히트펌프'에 한하여 지자체 대행 또는 농업인 직접구매 가능
 - * 단, 지열 성능개선사업의 경우는 지자체 대행만 가능
 - ** 농업인 직접구매 시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7조에 의거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을 보조금 교부조건으로 제시
 - 지열·폐열 시설(신규 설치) 지원사업은 2개년도 사업(1년차 50%, 2년차 50%)으로 시행



시·도, 시군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를 대행하여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의 내용에 따라 사업 시행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농업인 등)의 자부담을 예치 받고, 위탁시행기관(한국농어촌공사)으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국비, 지방비, 자부담을 함께 일괄 교부
 - 자부담은 설계비(총사업비의 5%)에 해당하는 금액만 우선 예치 받아 교부할 수 있으며, 이때 남은 자부담은 설계완료 전까지 예치 받아 교부해야 함
 - ‘지열히트펌프’를 지자체 대행 구매 또는 농업인 직접 구매 시, 구매비용 및 경비(조달수수료 등)는 보조금 집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시·군에서 집행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시행사항을 감독
- 사업대상자가 별도 비용(자부담)으로 작성한 설계도서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는 관리·감독을 하고 설계도서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 승인
 - 한국농어촌공사의 기술검토위원회에 설계적정성 검토를 요청하고, 결과를 확인. 공사비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조달청에 설계적정성 검토를 의뢰
 - * 설계적정성 검토에서 확정된 내용은 변경 불가하며, 변경 시 설계적정성 검토 재의뢰
 - 설계도서에 특허 또는 신기술 등 독점적 실시권한이 포함된 경우 신기술(특허) 사용협약 등 사업추진 방법을 검토하여 결정
 - * 독점 배타적 기술이 포함되어 사업대상자가 시공사를 임의 결정할 수 없도록 관리
- 시장·군수는 사업기간 중 사업시행을 적극지원하며, 사업이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 시·군 담당공무원은 준공검사에 입회하여 확인
 - 공사가 완료된 시설·장비별로 사업계획 및 설계·시방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준공검사를 실시하며, 검사 시 전문적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 전문기관의 기술지원 요청

한국농어촌공사(위탁시행기관)

- 한국농어촌공사는 시·군으로부터 사업을 수탁 받아 시행
 -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사업비를 요청하고 설계도서가 완성된 이후 사업수지예산서를 시·군의 승인을 받아 확정
 - 시·군으로부터 사업비를 교부받아 사업 진도율에 따라 집행
 - 지자체 대행 또는 농업인이 직접 ‘지열히트펌프’를 구입할 경우에는, 승인된 설계도서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지자체 및 사업자 상호간 협의
- 사업대상자가 별도 비용(자부담)으로 작성한 설계도서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적정성 검토 및 시·군의 관리·감독을 위한 기술지원을 실시

-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및 각 지역본부는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조직 구성·운영
 - 사업 위탁시행 기간 중 전반적인 관리감독, 감리, 하자관리 담당
- 한국농어촌공사의 설계·감리에 소요되는 비용인 엔지니어링 사업비, 사업관리비는 「농어촌정비법」의 기준을 준용
 - 세부설계, 공사감리 및 사업관리비 효율표

구분	5억원 이하	10억원	20억원	30억원	50억원	100억원
합계	8.83	7.98	7.35	7.10	6.89	6.64
세부설계	2.436	2.201	2.009	1.929	1.850	1.760
공사감리	5.302	4.791	4.465	4.333	4.244	4.119
사업관리	1.093	0.987	0.876	0.838	0.796	0.761

- * 공기열 냉난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상기 효율의 75% 적용
 - 설계, 감리, 사업관리비 등 대상액이 확정되면 사업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집행
 - 공사비가 대상액 중간에 있을 때의 효율은 직선보간법에 따라 계산

○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 준공 후 해당 시·군에 준공 완료 보고

<한국농어촌공사 역할 및 단계별 추진사항>

가. 사업전담반 주요 역할

- 사업 각 단계별 시·군 지원 및 사업신청자에 대한 자문과 위탁사업 시행
- 시·도(시·군)에서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 변경 요청에 따른 적정성 검토 의뢰 시 현장조사 등을 통해 변경계획의 적정성을 검토
- 건설관련 법령·규칙과 이에 준하는 기준, 공법 등에 의거 시설물의 품질·강도·안전·성능 등 유지를 위한 설계조건의 한계(최저한계) 적용으로 적정 성과품 보장
- 시공 시 공법, 품질, 성능 등의 적정성 및 공사 시공자가 사용하는 자재가 관계법령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 기타 공사감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및 준공 후 하자 관리 등

나. 업무 추진단계

```

    graph LR
      A[사업신청] --> B[설계단계]
      B --> C[공사발주]
      C --> D[시공관리]
      D --> E[준공단계]
      E --> F[하자관리]
      style A fill:#fff,stroke:#000
      style B fill:#fff,stroke:#000
      style C fill:#fff,stroke:#000
      style D fill:#fff,stroke:#000
      style E fill:#fff,stroke:#000
      style F fill:#fff,stroke:#000
    
```

다. 단계별 업무 내용

1) 사업 신청 단계

-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서 작성을 지원
 - 시·군의 현장조사 업무 지원요청에 따라 기술지원 실시
 - 소요 사업비 산출 및 사업에 필요한 현장조건 등을 확인
 - 사업시행 지침에 따라 대상 시설, 토지 및 환경조건 검토(토지이용계획원 확인)
 - 지열공 예정 위치의 입지조건 확인(기계실과의 거리, 주변 환경, 토지 확보 여부, 천공에 대한 민원발생 가능성 등)
 - 주변 500m 이내 타 지열설비와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존재유무 확인하여 의견 제출
- * 선정부지가 적합하지 못할 경우 해당 문제점을 시·군에 통보하여 후속조치

2) 설계 단계

- 설계 완료 후에는 설계적정성 검토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의 기술검토위원회의 검토를 받음(설계도서는 한국농어촌공사의 기술심의규정에 따라 검토)
- 사업대상자인 농업인(농업법인)을 상대로 설계도서를 설명하고 확인을 받음

3) 발주 단계

- 공사의 성질 규모 등에 따라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발주방법 결정, 발주공고, 업체 선정 등 발주시행

4) 시공 단계

- 도급공사 시행 시 「건설산업기본법」 관계 규정에 의거 등록된 전문건설업체를 통해 시공
- 시설설치·관리 등에 관한 기준은「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75호)」에 준하여 시공기준을 마련
 - * 시공기준은 사업시행지침, 시방기준 순서에 의하며, 고시에 없거나 다른 경우 지침과 시방기준에 의함
- 실시설계 단계에서 관련법에 의한 협의·인허가 등의 취득 및 협의결과 반영 여부 확인
- 공사시행 과정 중 설계도면, 시방서,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시행되는지의 여부확인(시공계획서 검토·확인, 시공상세도 승인, 현장시공 확인 및 검측, 주요기자재 및 지급자재의 검수관리 등 공사감독업무지침에 따른 시공관리)
- 관련 법령에 의한 품질관리, 안전관리, 하도급 관리 및 기술자 배치 확인
- 공사 중지 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
 - 설계도서·시방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맞지 아니하게 그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 안전관리 의무, 환경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 공사의 일부가 완료되어 기성검사 요청 시 기성검사원 및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기성검사 실시
 - 기성검사 입회자 : 사업대상자, 시·군 담당자

- 기타사항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및 「공사감독업무지침」, 「시설공사검사업무지침」 등 한국농어촌공사 관련 규정에 의함

5) 준공 단계

- 준공검사 요청 시 공사감리자의 확인이 있는 시공회사의 준공계 및 준공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준공검사 실시
 - 준공검사 입회자 : 사업대상자, 시·군 담당자
- 사업대상자 및 시·군 담당자, 사업위탁시행기관(한국농어촌공사) 입회하에 시운전 실시, 이상 유무 확인 후 사업 준공 정산

6) 하자관리 단계

-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하자검사를 실시하며, 검사지적사항 발생 시 계약상대자에게 보완 시공 등 조치
 -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의함
- 하자보수 공사 완료 시 검사 실시
-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최종검사 실시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 시장·군수에게 설계, 감리, 사업의 시행 등과 하자관리를 위한 계약대행을 신청

사업계획 변경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시·도에서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예산 등을 고려하여 변경 승인

시·도

- 시·도지사는 시·군 단위 총사업비 증감 등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 실적 보고 시 농식품부에 보고
 - 단,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시행사업의 경우 사업비 또는 사업대상자 변경 등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농식품부에 보고
- 시·도지사는 배정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변경사항 발생으로 국고지원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등으로 시·도 단위 예산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농식품부에 승인 요청

시·군

- 사업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포기하여 사업대상자 교체가 필요한 경우 지원요건을 만족하는 대상자로 교체·선정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 실적 보고 시 시도에 보고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군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변경·승인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 실적 보고 시 시도에 보고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 중 시도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국고 지원이 추가로 필요 시 농식품부와 사전협의하여 시도에 변경 승인을 요청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에 대해 사업목적과 지원기준 범위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도에 사업계획 변경안 승인 요청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사업착수 전 사업계획 변경 필요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준수하여 시·군에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 제출
- 사업대상자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때는 그 내역을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 신청

한국농어촌공사(위탁시행기관)

-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시행 시 사업비를 초과하지 않는 설계 변경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자율적으로 변경·승인하고, 이를 시군에 보고
-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시행 시 사업비를 초과하는 사업계획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시군의 승인을 받아 시행(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위·수탁 협약 시 별도로 정함)

사업 포기

- 사업대상자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 즉시 시·군에 사업 포기서를 제출
- (포기) 포기일 이후 3년간 모든 시설원예분야 사업 지원 제한

- (이월) 준공일 이후 2년간 모든 시설원예분야 사업 지원 제한
- 사업대상자의 귀책 사유 없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업의 포기·이월이 발생한 경우 지원 제한에서 제외
 1. 천재지변이나 중대 재해 발생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2. 3개월 이상 치료해야 하는 부상 또는 질병이 있는 경우
 3. 보조되는 지방비의 미편성 또는 지연 편성
 4. 공공사업으로 인한 토지수용으로 사업예정지가 변경되거나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5. 9월 이후 대체사업자로 선정되어 이월된 경우
 6.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시장·군수가 인정한 경우

5.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점검시기 : 반기별 1회 이상,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사업추진실태 점검
- 점검내용 및 방법 : 사업계획 이행, 추진상황 등을 현장점검 또는 서면평가
 - 일정규모(10억원) 이상 사업자 집중관리(추진상황, 애로사항 수렴 등)
- 점검결과 조치 : 사업계획 및 추진 상 미비점 등 보완조치 등

시·도,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추진 실적을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하고,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 이행
 - 시설원예분야 지원사업 추진상황을 별지 제8호서식을 준용하여 농식품부에 보고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사업 관리절차 이행
- 시장·군수는 공사가 완료된 시설·장비별로 사업계획 및 설계·시방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준공검사 실시
 - 검사 시 전문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 전문기관의 기술지원을 받아 검사 실시

○ 보조금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조치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중요재산	사후관리기준기간		처분제한기준
■ 온실	준공일	10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 설비시설	준공일	7년	
■ 주요기계·장비	납품일	5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담보제공 등 처분필요 시 시도지사 승인 후 처리

* 500만원 미만으로 구입한 다겹보온커튼 등 소모성 기자재의 경우 중요재산에서 제외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정산결과와 별지 제10호 서식의 포기·이월 사업자 명단을 다음해 3월 20일까지 농식품부 보고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 종료 후 포기·이월사업자 발생 시 '별지 제10-2호 서식(신설)'에 따라 사업지원 제한자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매년 시설원예분야 사업자 선정 시 해당 대장을 활용하여 지원 여부를 검토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사후관리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등 준용

한국농어촌공사(위탁시행기관)

- 설치완료 후에도 하자관리 등 전문기술지원 실시
 - 준공 후 하자발생 시 현장기술지원 및 업체 하자보수 지시 등 시행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이행
- 사업장을 개방하여 인근지역 농가 및 농업인들의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
- 규정된 표찰 설치로 사업성과 홍보 및 확대보급 유도(별첨 5)
- 시·군에서 지원시설 운영현황·효과 등에 대한 자료 요청 시 충실히 작성 제출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담보제공 등 처분 필요 시 시·도지사에 처분 승인 요청

제재 및 처벌내용

시·도, 시군

- 시장·군수는 사업자 선정* 후 불가피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또는 착수는 하였으나 사업자 선정 후 6개월 이상 진행사항이 미미하여 향후 사업완료시점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대상자를 지체 없이 다시 선정하여 추진
 - * 농식품부의 예산 확정 통보일(공문 시행일) 기준
 - 위탁시행사업의 경우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되고 회계연도 내 사업진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사업 지속 추진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사업실적 부진 및 부실집행, 무단 용도변경 확인 시 예산지원 축소 또는 기 교부액 회수 조치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사업 중도포기(사유 없는 사업 미착수 포함),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계획 변경, 사업계획 미승인 변경 등 위반행위 확인 시 사업비 배정 취소 또는 기 교부액을 회수하고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조치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 및 중도회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농식품사업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대출취급기관으로 하여금 부정수급 및 중도회수에 해당하는 대출금을 회수할 것을 명하며,
 - 관련규정에 따라서 일정기간 농식품사업 참여제한 조치 후 농식품부에 보고
 - * 사업수행자(업체) 보조금 부정수급 연관 시 위 규정을 준용하여 농림사업 참여제한 조치
 -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유죄판결을 확정받은 보조사업수행업체도 수행배제

농협은행(농축협)

- 대출취급기관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 사유 및 중도회수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그 사유 및 부정수급·중도회수 개시일을 시군 등에 통지
- 대출취급기관은 시군의 명에 따라 부정수급 및 중도회수에 해당하는 대출금을 회수 조치하고 농식품부 및 시·도(시·군)에 통보

사업대상자

- 위탁시행사업 추진 시 사업자 선정 후 불가피한 사유로 6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시 사업 착수 가능시기를 명시한 소명자료를 시·군에 제출

6. 사업평가 및 환류 단계

- 농식품부(지자체)는 사업종료 다음해 상반기 중 전년도 사업성과 평가
 - 공통사항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등
 - 전담기관 및 지자체는 시설 설치 전후 생산성 향상 평가결과 농식품부 제출
- 우수사례에 대하여 집중적인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 방향과 제도 개선사항을 환류
- 당해 연도 집행실적 등을 다음해 시·도(시·군)별 예산 배정 시 반영

IV. 2025년도 사업신청 수요 조사 및 기타 사항

1. 2025년도 사업수요 조사

- 시·도지사는 2025년도 추진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24.3월)
- 농식품부는 시·도 수요조사 결과를 기초로 2025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 제출
- 지열 냉난방시설 및 폐열 재이용시설 사업대상자는 사업대상부지, 용자실행 등 사전준비
 - 사업대상자 부지 소유 관계(임대차 등), 설치부지 적정여부, 가설계도면 확인, 농협은행 발행 '신용조사서' 구비(지역·품목농협 확인서 사용 불가) 등
- * 사업추진절차 : 수요조사(~'24.3월) → 사전컨설팅(~'24.8월) → 예비사업대상자 선정(~'24.9월) →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24.12월) → 사업추진('25.1월~)

2. 202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 대상자 선정 안내

- 신청서 제출기관 : 시장·군수
- 제출기한 : '24. 8월
- 신청자격 : '24년도 신청자격 확인(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추후 통보)
 - * '25년도 사업추진 요령은 '24년도 사업내용을 참조하고, 여건변화에 따라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추후 통보)

3. 농어업재해대책 지원

-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재해지원 관련법령에 따른 자연재해로 인하여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사업 자금을 지원받은 농가가 농가단위 농작물 피해율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1년(30%이상~50%미만) 또는 2년(50%이상)의 동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가능(2022.12.11.부터 시행)
 - * 농가단위 피해율 산출 및 상환연기·이자감면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 등 농림축산식품부의 관련규정을 따름
 -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 제10조의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 방식을 준용

V. 주요변경사항

현행(2023)	변경(2024)	변경사유
<p>Ⅲ. 사업추진체계</p> <p>1. 예비사업자 선정단계</p> <p>사업대상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은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센터, 한국농어촌공사 등의 자문을 받아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2-1 또는 제2-2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전년도 7월~8월) 	<p>Ⅲ. 사업추진체계</p> <p>1. 예비사업자 선정단계</p> <p>사업대상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은 사업신청 전 총사업비 산정액에 대한 한국농어촌공사의 적정성 검토(지열·폐열·공기열에 한함)를 받은 후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2-1 또는 제2-2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전년도 7월~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사업자 선정 전 사전조사 절차 명확화
<p>4. 사업 시행 단계</p> <p>설계·시공·감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군수는 총 사업비 기준 5천만원 이상 사업의 경우 반드시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공사감리 시행 	<p>4. 사업 시행 단계</p> <p>설계·시공·감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군수는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0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감리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리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 명확화하여 감리 기준 완화
<p>4. 사업 시행 단계</p> <p>지열·폐열·공기열 냉난방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방향: 한국농어촌공사 위탁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은 농식품부로부터 받은 보조금과 지방비, 농가에서 예치한 자부담을 위탁사업자인 한국농어촌공사로 일괄 이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사업비 집행 - 자부담은 설계비(총사업비의 5%)에 해당하는 금액만 우선 예치하여 이체할 수 있으며, 이때 남은 자부담은 설계완료 전까지 이체해야 함 <p>한국농어촌공사(위탁시행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농어촌공사의 설계·감리에 소요되는 비용인 엔지니어링 사업비, 사업관리비는「농어촌정비법」의 기준을 준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설계, 공사감리 및 사업관리비 요율표 	<p>4. 사업 시행 단계</p> <p>지열·폐열·공기열 냉난방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방향: 한국농어촌공사 위탁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은 농식품부로부터 받은 보조금과 지방비, 농가에서 예치한 자부담을 위탁사업자인 한국농어촌공사로 일괄 이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사업비 집행 - 자부담은 사업시행년도 5월까지 이체하여야 하며, 자부담을 미이체시 시·군은 지원요건을 만족하는 대상으로 교체·선정하고 그 결과를 사도에 보고('25년 사업대상자부터 적용) <p>한국농어촌공사(위탁시행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농어촌공사의 설계·감리에 소요되는 비용인 엔지니어링 사업비, 사업관리비는「농어촌정비법」의 기준을 준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설계, 공사감리 및 사업관리비 요율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집행률 및 포기자 관리를 위해 자부담 조기납부 의무화

현행(2023)							변경(2024)							변경사유
구분	5억원 이하	10억원	20억원	30억원	50억원	100억원	구분	5억원 이하	10억원	20억원	30억원	50억원	100억원	
합계	8.83	7.98	7.35	7.10	6.89	6.64	합계	8.83	7.98	7.35	7.10	6.89	6.64	
세부설계	2.436	2.201	2.009	1.929	1.850	1.760	세부설계	2.436	2.201	2.009	1.929	1.850	1.760	
공사감리	5.302	4.791	4.465	4.333	4.244	4.119	공사감리	5.302	4.791	4.465	4.333	4.244	4.119	
사업관리	1.093	0.987	0.876	0.838	0.796	0.761	사업관리	1.093	0.987	0.876	0.838	0.796	0.761	
* 공기열 냉난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50% 적용							* 공기열 냉난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상기 요율의 75% 적용							
4. 사업 시행 단계 사업 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기) 포기일 이후 3년간 모든 시설원예분야 사업 지원 제한 ○ (이월) 준공일 이후 2년간 모든 시설원예분야 사업 지원 제한 * 9월 이후 대체사업자로 선정되어 이월된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 단, 농식품부로부터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 본인의 질병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받는 경우 중도회수 사유로 보지 않음 							4. 사업 시행 단계 사업 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기) 포기일 이후 3년간 모든 시설원예분야 사업 지원 제한 ○ (이월) 준공일 이후 2년간 모든 시설원예분야 사업 지원 제한 ○ 사업대상자의 귀책 사유 없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업의 포기·이월이 발생한 경우 지원 제한에서 제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천재지변이나 중대 재해 발생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2. 3개월 이상 치료해야 하는 부상 또는 질병이 있는 경우 3. 보조되는 지방비의 미편성 또는 지연 편성 4. 공공사업으로 인한 토지수용으로 사업예정지가 변경되거나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5. 9월 이후 대체사업자로 선정되어 이월된 경우 6.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시장·군수가 인정한 경우 							○ 비의도적 사업포기(이월)자 면책 유형 구체화
5.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단계 시·도, 시·군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 종료 후 포기·이월사업자 발생 시 '별지 제10-2호 서식(신설)'에 따라 사업지원 제한자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매년 시설원예분야 사업자 선정 시 해당 대장을 활용하여 지원 여부를 검토 							○ 사업지원 제한자 관리 강화 (경북 정부합동감사 지적 사항 보완)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예산·시행 연도 현행화, 서식(별지 1호) 작성 사항 일부 수정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I. 사업 개요

□ 목 적

- 자급률 지속하락과 잦은 기상이변에 따른 생산량 감소에 대비하여 비가림 재배 시설 지원을 통한 고추 생산기반 확충

□ 사업내용

- 관수시설(점적관수, 스프링클러, 관정), 환경관리시설(자동개폐기, 차광망)을 포함한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

□ 지원 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품목 : 고추 재배 전용 비닐하우스 지원
- 지원 기준 : 국고 50%(보조 20, 융자(이차보전)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기준면적: 시설면적 660m² 이상, 기준단가: 25천원/m²

* '23년부터 융자를 이차보전(융자금에 대한 이자 지원)으로 전환하며 각 시·도(시·군)에 실배정된 융자(이차보전) 한도내에서 지원

- '24년 예산 : 10,395백만원(국비 2,079, 융자(이차보전) 810, 지방비 3,119, 자부담 4,387)

□ 사업 신청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시·군(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에 제출
- 신청시기·방법 : '24.3.(25년 예비사업대상자), '24.9.(25년 사업대상자), 지자체(시·군) 방문신청 또는 우편·팩스

□ 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지원 자격·요건에 따라 사업취지 및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우선 선정(시·군)
- 시·도로부터 배정 받은 예산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최종 통지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서기관 이남윤 주무관 방혜정	044-201-2236 044-201-2237

II. 주요 내용

1. 사업대상자

- 고추비가림재배시설에서 건고추용 고추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농업법인

* 단, 기존 건고추용 고추 재배 농업인 외 귀농업인 및 타 작물 재배경험 농업인의 경우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한 건고추 재배기술교육 등 이수 여부 확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농식품부 훈령 제422호) 제35조제9항에 따라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충족

- 농산물자조금을 납부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의무자조금 도입시)

-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건고추용 고추를 재배하면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 우선 지원(평가 시 가점 부여)

- 상반기(사업연도 6월 이전) 내 준공 가능 사업대상자

- 발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

- 고추종합처리장·농협과 계약재배 실적 우수

- 발기반정비사업지구 또는 사업계획지구 내 사업희망

- 친환경농산물·GAP 인증,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3. 지원대상

- 관수시설(점적관수, 스프링클러, 관정 등), 환경관리시설(자동개폐기, 차광망, 환풍기 등)을 포함한 고추비가림재배시설*(난방·보온시설 제외)

* 「고추비가림하우스 설계도서(농촌진흥청)」 또는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에 관한 규정(농식품부 고시 제2022-104호)」의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 적설심 및 풍속”에 적합한 시설

** 온실 자동화를 위한 환경제어시스템 등은 ‘스마트팜ICT 융복합 확산사업’으로 지원 가능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시설 완공 후 5년간 건고추용 고추 재배 목적에 한하여 사용
 - 다만, 의무사용 기간 중 연작장해 방지 또는 가격하락에 따른 재배포기 등의 사유 발생 시 타 작물 재배 가능
 - * 타 작물 재배기간은 의무사용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최대 2회(2년)로 제한
 - 자경용* 양파 육묘를 위해 건고추용 고추 재배를 조기 종료(8월)할 수 있으며, 이는 건고추용 고추 재배기간에 포함하여 관리
 - * 타인에게 제공(무상제공 포함)할 목적의 양파 육묘 시 건고추용 고추 재배기간에서 제외 및 목적외 사용으로 처리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국고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형태 : 국고(보조 20%, 융자(이차보전)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 융자금 일부 지방비 대체 가능, 자부담은 지방비 대체 불가
 - 융자금리: 고정(2.0%), 변동(시중금리*-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
 - ***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경우「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농식품부 예규)」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 농가단위 피해율 수준에 따라 상환연기·이자감면 차등 지원 가능 (관련 : 농어업재해대책법,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간접지원 대상 농업정책자금 고시)
 - 농가단위 피해율 30% 이상 50% 미만 : 상환연기·이자감면 1년
 - 농가단위 피해율 50% 이상 : 상환연기·이자감면 2년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사업시행기관 : 시장·군수
 -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사업예정지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할 경우 사업 예정지 관할 시·군에 신청
 - * 해당 시·군으로부터 지방비 확보 및 지원 가능성 사전 확인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가단위 지원면적: 시설면적 660㎡ 이상
- 사업비 예산단가: 25천원/㎡
 - 사업주관기관장 책임 하에 철저한 검토·확인(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 원가 계산서 등)을 거쳐 사업비 집행시 실 단가 적용 가능

7. 제재사항

- 사업대상자 확정 후 6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또는 추진상황이 미미하여 연내 사업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대상자를 지체없이 다시 선정
-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다음 해부터 3년간 지원 제한

Ⅲ. 사업 신청 및 선정



※ 사업신청, 대상자선정, 자금신청·배정, 사후관리 등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병행 관리

1. 사업 공고 및 신청('25년 사업대상자)

- '24년 사업대상자는 '23.9월 예비사업자로 선정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및 관계기관에 사업시행지침 시달('23.12월)

시·도

- 시·군·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함)에 사업시행지침 및 기본계획 시달('23.12월)

시·군

- 고추 재배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신청방법, 제재사항(중도포기 및 목적 외 사용 등) 등 안내, 교육 및 홍보 병행('24.1월)
-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접수·검토('24.1월)

사업대상자

-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시·군 제출('24.1월)
- 용자 희망자는 거래 농협은행을 통해 대출가능 여부 및 가능 금액을 확인

사업계획 변경 절차 등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 변경 필요 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준수하여 시·군에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제출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신청서에 대해 사업목적과 지원기준·범위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군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시·도에 보고
 - 시·도지사는 시·군 단위 총사업비 증감 또는 사업대상자 변경 등의 경우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농식품부에 보고
- 사업대상자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할 때는 그 내역을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 신청

2. 자금배정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의 사업자금 신청을 근거로 소요자금 배정, 대출취급기관에 소요자금 한도액 배정
- 시·도에서 용자(이차보전) 대출기간 연장(재연장) 요청 시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승인

시·도,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국고보조금 및 용자(이차보전) 실수요액을 파악하여 사용 예정 전월 15일까지 농식품부에 자금배정 요구
- 시장·군수는 보조금 집행시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자금사용 및 지원비율의 적정성 등 확인
 - 기계·장비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품질보증서 발급 여부 확인
- 시장·군수는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지원 비율(국고·지방비·자부담 등)에 따라 환수 조치
 - * 사업대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시 사전 변경승인
- 시장·군수는 원활한 용자(이차보전) 대출을 위해 사업실적과 그 실적의 적합여부(지침 및 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검토 후 기성고(준공) 확인서 발급
 - 사업실적 범위 내에서 용자(이차보전) 실행토록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12월 15일까지 당해연도 용자(이차보전) 대출기간 연장 신청 시 그 내용을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12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다음해 6월 15일까지 재연장 신청 시 그 내용을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6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이 지침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기타 자금집행 관련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운용규정」, 「농림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규정」 등에 따라 수행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사업자금집행의 원칙) 등 관련규정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원칙 등을 사업대상자에게 안내
 - * 「농림축산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의2에 따라 자부담 선집행(100%)이 원칙
 -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사업대상자의 신용·자부담능력 등을 고려, 자부담 비율(20% 이상)·금액(2억원 이상) 충족 시 자부담 금액의 50%를 선집행하면 기성고 및 자부담 금액 등을 감안하여 국고 집행 가능
 - 사업비 지원형태에 따른 보조·용자(이차보전)·자부담 비율에 따라 보조금 우선 집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농식품부장관이 통보한 자금한도 배정액 범위 내에서 사업지침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에 자금 지급

농협은행(농·축협)

- 사업자금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시장·군수로부터 통보된 사업 기성고(준공) 확인서와 사업자의 신용 및 담보능력 등을 감안하여 대출
 - 매월 10일까지 전월 말일 기준으로 시·도별 용자(이차보전) 실적을 농식품부에 제출
- 시설 준공 후 용자금으로 사업비 정산시 공사비와 감리용역비 대출을 동시에 실행하여 시공자와 감리자에게 각각 지급
 - * 사업자로부터 지급에 관한 동의를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자에게 지급할 때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만 지급 가능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농림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규정” 등 규정에 따라 자금 집행 적정 여부를 검증한 후 집행

3.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통해 고추 재배여부를 확인하되, 연작장해 방지 등을 위해 타작물 재배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수정으로 보조금 교부목적 외 사용에 대한 중앙관서 장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

시·도,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시설 완공 후 5년간 건고추용 고추 재배 여부 확인, 미 재배시 보조금 환수 등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

사업대상자

-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 등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이행

V. 주요 변경사항

현행(2023)	변경(2024)	비고
	II. 주요내용 7. 제재사항 ○ 사업대상자 확정 후 6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또는 추진상황이 미미하여 연내 사업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대상자를 지체없이 다시 선정 ○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다음 해부터 3년간 지원제한	<신설> 사업 추진 지연 및 중도포기로 인한 사업비 불용을 방지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 의무개시일(사업대상자 확정 후 6개월 이내) 설정 및 사업포기자에 대한 제재규정 신설
IV. 세부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1. 세부계획 수립 <사업 착수>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되면 사업자에게 지원계획, 대출방법 등을 즉시 통지하고 사업 착수 조치	IV. 세부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1. 세부계획 수립 <사업 착수>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되면 사업자에게 지원계획, 대출방법 등을 즉시 통지하고 사업 착수 조치 ○ 시장·군수는 사업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사업대상자 확정 후 6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또는 추진상황이 미미하여 연내 사업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대상자를 지체없이 다시 선정	지자체에서 사업 추진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사업 추진 지연 방지

2024 발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사업

I. 사업 개요

□ 목 적

- 발작물 주산지 중심으로 품질 경쟁력 및 생산혁신 역량을 갖춘 조직화·규모화된 공동경영체를 육성하고, 생산유통통합조직과 계열화를 통해 시장교섭력 확보 및 지역 단위의 자율적 수급조절에 기여

□ 사업내용

- 발작물공동경영체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조직에 생산자 조직화·규모화를 위한 역량강화, 생산비 절감,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 컨설팅, 농기계류, 시설·장비 등 맞춤형 지원

□ 지원 자격 및 품목

- (사업주관기관 요건) 원예산업발전계획이 수립 및 승인된 지자체이며, 해당 사업신청 품목이 전략(육성) 품목으로 지정
- (사업대상자 요건)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지역·품목조합, 조합 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

* 신청 품목 총 취급액이 10억원 이상이고, 조직화 취급액이 3억원 이상인 경영체

- (지원품목) 채소류 주산지 지정 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 품목 또는 원예 농산자조금(의무·임의) 품목 중 해당 사업에서 지원하는 품목, 기타 지자체 특화(육성) 원예농산물 품목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내용 : 공동경영체별 10억원(1년차 1.5억, 2년차 8.5억원)

- 재원비율 : 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세부내역

- 역량강화 : 생산농가의 교육·컨설팅 비용(총 사업비의 5% 이상)

- 생산비절감 : 공동영농에 필요한 농기계류 및 장비

- 품질관리 : 저온저장고, 건조, 선별 및 포장, 가공 등 시설 및 장비
- 주산지협의회 운영
- '24년 총사업비 : 19,180백만원(국비 9,680, 지방비 7,600, 자부담 1,900)
 - 공동경영체 지원 : 19,000백만원(국비 9,500, 지방비 7,600, 자부담 1,900)
 - 행정경비 : 180백만원(국비 100%)
 - * 예산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업신청

- 사업대상자 모집 공고에 따라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 시·군·구는 사업계획서 검토·심의 후 시·도에 제출하며 시·도는 사업신청 서류 취합 및 적합 여부 등을 최종 검토 후 농식품부 및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로 제출

□ 대상자 선정

- 서면 및 발표평가, 세부사업계획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총괄)	사무관 정수연 주무관 이유리	044-201-2219 044-201-2220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관련 부서	-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유통기획부	차장 육심환 주임 이슬기	061-931-1012 061-931-1022

Ⅱ.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가. 사업 주관기관 : 지자체(시·군·구, 시·도)

- 발작물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자체 단위 계획수립 및 해당 품목 생산자단체(개별 경영체)를 시·군단위 공동경영체 방식으로 구성
- * 공동경영체 : 발농업 경영의 효율성 제고 및 산지유통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시·군 단위로 생산단계(품종 및 재배방식 통일, 농기계 공동이용, 공동출하) 및 공동상품화(공동선별, 포장, 가공, 저장 등) 등 공동경영기반을 갖추고, 생산농가의 조직화·규모화를 위해 출하출하조직, 생산유통통합조직 등으로 계열화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경영체

나. 지원대상 조직 : 경영체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지역조합,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 * 관련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7조 및 제8조,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4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3

2. 지원자격 및 지원품목 요건

가. 사업 주관기관 요건 : 지자체(시·군·구, 시·도)

- 지자체 또는 품목단위 원예산업발전계획 수립, 선정된 계획에 포함된 지자체 - 원예산업발전계획 내 사업신청 품목이 전략(육성) 품목으로 지정 필요
- * 사업신청 품목이 원예산업발전계획 내 전략(육성) 품목으로 미지정된 경우, 사업자 선정 결과 무효 처리
- ** 단, 먹거리 계획(푸드플랜 패키지) 협약체결 시·군 계획에 포함된 사업자는 지원대상 품목, 지원대상 조직 공통요건 등 충족 필요하며, 평가·선정은 별도로 가능

나. 지원대상 품목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원예농산물(채소류 주산지 지정 품목) 또는 농산자조금(의무·임의자조금) 품목 중에서 해당 사업으로 지원하는 품목

- 지자체에서 지역 특화품목으로 육성하는 기타 원예농산물 품목
 - * 단, 「채소류 주산지 지정 기준」에 따라 주산지로 지정된 지자체(시군)는 해당 고시문, 주산지로 미지정된 지자체(시군)는 '21년 기준 면적 및 출하량(생산량) 등 관련 증빙자료 제출 필요
 - ** 무, 배추, 마늘, 양파, 고추 지원 품목은 채소류 주산지 지정기준(고시 포함)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경우라도 자조금 지원 품목으로 선택하여 신청 가능
 - *** 수급안정 등 발작물 정부 정책 방향을 고려, 별도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선정평가 추진

<채소류 주산지 지정 기준(고시 제2022-102호, 시행 '22.9.30.)>

품목	주산지 지정 기준		
	지역	면적	출하량(생산량)
봄배추	시·군·구	150ha 이상	7,300t 이상
여름배추	시·군·구	450ha 이상	20,741t 이상
가을배추	시·군·구	120ha 이상	11,802t 이상
겨울배추	시·군·구	450ha 이상	32,899t 이상
양배추	시·군·구	210ha 이상	9,962t 이상
봄무	시·군·구	70ha 이상	2,732t 이상
여름무	시·군·구	250ha 이상	8,537t 이상
가을무	시·군·구	150ha 이상	11,431t 이상
겨울무	시·군·구	1,000ha 이상	56,180t 이상
고추	시·군·구	500ha 이상	1,155t 이상
마늘	시·군·구	300ha 이상	3,948t 이상
양파	시·군·구	190ha 이상	12,481t 이상
대파	시·군·구	250ha 이상	7,197t 이상
생강	시·군·구	100ha 이상	1,200t 이상
당근	시·군·구	100ha 이상	3,342t 이상
참깨	시·군·구	250ha 이상	125t 이상
땅콩	시·군·구	100ha 이상	266t 이상
버섯류	시·군·구	(연면적) 30ha 이상	-
특작류	시·군·구	50ha 이상	-

<농산자조금 지원 품목(2022년 12월 기준)>

구분	지원 품목
의무자조금	인삼, 백합, 키위, 배, 파프리카, 사과, 감귤, 참외, 절화, 포도, 마늘, 양파, 복숭아, 차
임의자조금	가지, 오이, 풋고추, 블루베리, 단감, 무·배추, 고추, 딸기

다. 지원대상 조직 요건 : 경영체

(1) 공통요건

- 공동경영체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지역조합,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하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
 - ** 지원대상 조직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79조 등 준용
 - *** 단, 먹거리 계획(푸드플랜 패키지) 협약체결 시군 계획에 포함된 사업자도 공통요건 충족 필요
- 사업량은 전년도 기준 경영체의 신청 품목 총 취급액 10억원 이상이면서 조직화 취급액 3억원 이상을 충족하는 조직
- 사업신청일 기준 자본금이 3억원 이상이고, 법인 운영실적 2년 이상인 조직

(2) 개별요건

- 신청 품목이 의무자조금 품목으로 포함되어있는 경우, 경영체 참여농가 중 자조금 납부 대상 농가는 자조금 100% 납부 필수
 - * 납부 면제 농가 및 출하농가 실적이 없는 농가를 제외한 모든 농가는 납부 증명서 제출 필수
 - ** 의무자조금 납부대상자는 의무자조금단체의 납부확인서 확인 및 첨부 제출(선정 서면평가 시 추가 가점 부여)

라. 지원제한(경영체, 지자체)

- 본 사업에 기 지원받은 경영체가 사업 신청하는 경우 본 사업 회계연도 종료 후 동일 품목은 4년('20년~'23년 사업자), 타 품목은 2년('22년~'23년 사업자) 이내 지원 불가
 - * 단, 발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종합평가 결과 '미흡' 경영체는 동일품목 5년, 타 품목 3년간 사업 참여 제한
- 생산농가와 단순 계약재배만 실시하고 영농지도·감독, 공동생산 및 상품화 등을 지원하지 않고, 마케팅 활동만 하는 경우 지원 불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한 경우에는 적발 다음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사업신청 시 허위서류 등을 제출한 지자체 및 경영체는 사업 다음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후 사업 포기한 경영체, 지방비 및 사업부지 미확보 경영체는 해당 보조사업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마. 가·감점 사항

- '23년도('22년도 실적) 정부로부터 출자출하조직, 생산유통통합조직(육성형 포함)으로 승인(등록)된 경우 가점 차등 부여
- * 단, 기존 산지유통혁신조직(~'22년)에서 생산유통통합조직으로 별도 요건 없이 전환된 경우는 제외
- ** 본 사업 지원 품목으로 인정되는 경우 가점 반영하며, 중복으로 가점 인정 불가
- 기 지원받은 경영체가 사업 회계연도 종료 후, 동일 품목으로 4년이 경과하거나 타 품목으로 2년이 경과하여 사업 신청하는 경우 감점 부여
-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지원사업, 유통시설현대화 사업 등 타 정부지원 시설 보조사업자가 공모 해당연도에 수행중인 경우 감점 부여
- 사업자 선정평가 시 시·도 기준으로 지원받은 발작물 경영체의 최근 2년 평균 실적행 등을 반영하여 가감점 부여(단, 최근 2년 이내 시·도 지원실적 없는 경우 해당없음)
- 사업자 선정 평가 시 '22년도 노지채소수급안정사업에 참여한 조직에 가점 부여
- 사업자 선정 평가 시 '23년(22년 실적)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운영실태 평가 결과 수출전문단지로 최우수, 우수 등급으로 선정된 조직에 가점 부여
- 의무자조금 납부 등 발작물 정책방향 고려 등 가감점 운영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선정평가 계획 수립 시 반영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가. **역량강화** : 생산농가의 조직화, 생산성 향상 및 운영활성화 등을 위한 교육·컨설팅, 주산지협의회 운영 비용(단, 총 사업비(10억)의 5%이상 배정 필수이며 사업계획 변경 시에도 반드시 준수)
- **교육** : 농가조직화, 재배·생산기술, 농기계 조작·관리, GAP 인증 취득, 국내 선진지 견학비용 등
- * GAP 인증 취득에 필요한 농가교육만 지원(인증에 필요한 분석비는 '주산지 GAP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지원사업'으로 지원 가능)
- **컨설팅(자문포함)** : 공동경영체 운영체계 수립(공동경영체 운영위원회 설치, 제도·규약 마련, 사업전략 등), 생산역량혁신 계획수립(품종선택, 재배방법, 영농기술, 작부체계, 농기계공동운영, 경영비 절감 등), 시설설치(인허가, 설계방향, 시설 도입·배치 등), 경영(사업여건에 따른 적정 취급량 및 운영활성화 방안 등) 등

- * 단순 경영컨설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경영체 업무지원, 성과평가자료 관리·작성 등)
- * 초기·정착·심화 단계에 맞는 역량강화 교육 및 컨설팅을 1년차에 반드시 포함
- * 신제품 교육 관련하여 종자(소모성 지원) 농가 지원 제외(자체자금으로 사용)
- **주산지협의체 운영(예산에 따른 역할 및 구성 계획 반영, 필수 구성)**
 - * 지자체 주도로 생산자 조직, 생산유통통합조직(육성형 포함), 자조금단체, 교수, 전문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주산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회의비 등

나. 생산비 절감 : 공동영농 단계에 필요한 기계류(일부 자재 포함)

- 공동농기계 : 파종기, 정식기, 방제기, 이식기, 수확기, 굴취기, 탈피기, 박피기, 제초기, 절단기, 복토기, 트랙터, 방제기 등
- 공동기자재 : 톤백, 대형 수확상자, 인테이너 등 대규모 관련 필요 기자재는 총 사업비(10억) 10%이하로 제한하며 관련 기자재는 선정평가 및 세부사업계획 심의를 통해 최종 허용 여부 검토
 - * 원칙적으로 플라스틱 파レット, 플라스틱 상자 등 소규모 소모성 기자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 공동영농에 필요한 기계류 여부는 사업자 선정평가, 현장점검 및 세부사업계획 검토·심의를 시 과잉 보유 장비로 판단되는 경우 지원 불가
 - * 공동영농에 필요한 기계류는 사적 소유가 되지 않도록 경영체가 생산농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체계적으로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직접 관리 필요(향후 사후관리 점검대상)
 - * 참여농가의 여성농업인이 다수인 경우, 품목과 농가 특성에 따라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 권장
 - * 농기계류 구매 시에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

다. 품질관리

- 생산 시설·장비 : 공동육묘장 등
- 공동선별 및 포장 시설·장비 : GAP인증 시설, 선별장(저온 선별장 포함), 공동선별기, 포장장, 출하장, 전처리장(큐어링 시설, 가공공장 포함), 자동포장기, 투입·선별·포장기, 랩핑기 결속기, 봉합기, 제함기, 컨베이어, 파렛타이저, 디파렛타이저, 세척기, 건조기, 소포장기 등
- 가공시설·장비 : 신선편이시설(세척, 급식 식자재 등), 가공시설(잼, 주스, 퓨레, 마늘박피, 절임배추, 김치 등), 급속냉동기 등

- 기타 저장 및 유통시설·장비 등 : 저온저장고, 집하장, 비가림 시설, 지게차, 농산물 수송차량(냉장·냉동차량 등 심의를 통한 제한적 승인), 위생시설(소독실, 에어샤워기 등) 등
- 공사 : 토목, 건축, 전기·통신·소방공사
 - 감리비 및 토목(포장) 공사비로는 사용 가능하나, 설계비(인허가비포함), 부지매입비 및 부지 기반정비(질성토·성토·옹벽 등) 비용 사용 불가
 - * 농가조직화 및 규모화에 필요한 사무실, 회의실, 교육장은 총 사업비 10% 이내로 제한하며, 선정평가 및 세부사업계획 검토·심의 시 최종 허용 여부 검토
- 기타시설 : 6차 산업 관련한 시설·장비는 총 사업비 10% 이내로 제한하며 선정평가 및 세부사업계획 심의를 통해 최종 허용 여부 검토
 - * 발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예시에 없는 시설·장비도 설치할 수 있으나, 단가 산출근거 및 목적·사유를 명확하게 제시가 필요하며 선정평가 및 세부사업계획 검토·심의를 통해 최종 허용 여부 검토
 - * 공동영농에 필요한 시설·장비 여부는 사업자 선정평가, 현장점검 및 세부사업계획 검토·심의 시 과잉 보유 장비로 판단되는 경우 지원 불가
 - * 원칙적으로 기존 보유 시설에 대한 증축, 보완 등 개보수를 우선 지원
 - * 사업 예정부지가 담보로 제공되어 있거나, 근저당 설정 등 재산권에 제한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단, 정책자금 담보제공은 예외)
 - * 등기가 불가능한 가설 건축물은 지원 불가

4.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예산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사업량 및 지원형태
 - 사업량 : 신규 19개소 내외(사업 예산범위 내에서 순위에 따라 선정)
 - * 최종 예비선정 사업대상자가 예산 범위 내 사업량을 초과하는 경우 익년도 사업대상자로 자동 선정 불가(익년도 사업신청, 선정평가 등 절차에 따라 동일하게 처리)
 - 지원형태 및 재원비율 : 자치단체자본보조 / 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 지방비 분담 비율은 시·도 30%, 시·군 70%를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 별도 규정(조례, 규칙)에 있는 경우 조정 가능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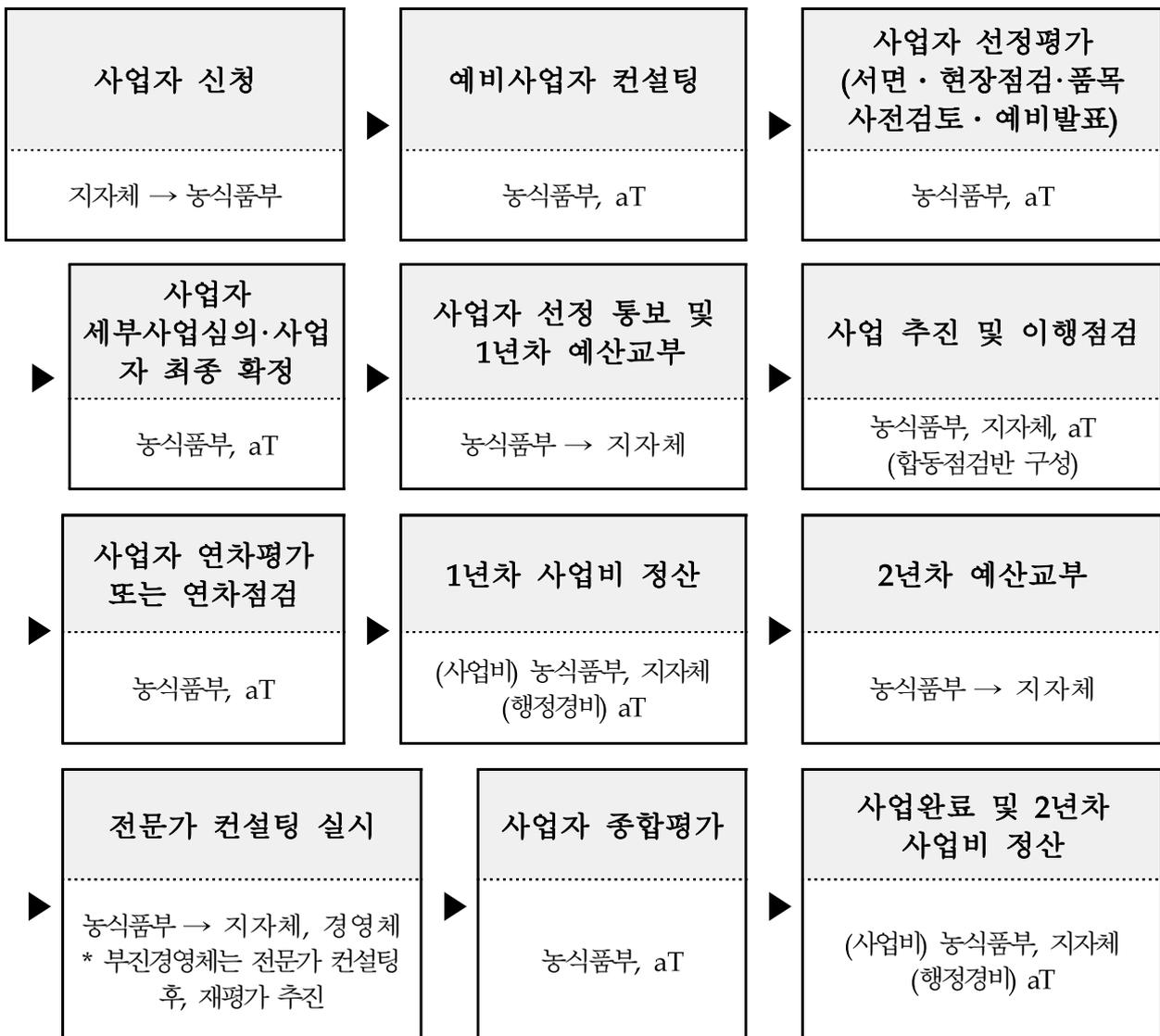
○ 지원한도 : 공동경영체별 10억원(1년차 1.5억, 2년차 8.5억)

○ 지원기간 : 2년(선정 후 사업 개시 연도부터 적용)

* 1년차 사업 종료 전 경영체에 대한 연차평가를 실시하여 지속지원 여부 결정, 추진실적 부진경영체로 선정된 경우 추후 재연차평가 실시하여 2년차 사업비 계속 지원 및 지원 유예(1회) 또는 중단(중단되는 경우 1년차 사업비 회수) 조치 확정

6. 사업추진체계

가. 사업 추진절차



나. 사업 추진주체

구 분	역 할
농식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 수립 및 점검 등 사업 총괄 ○ 예산 배정 및 교부 등 운영, 사후관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 선정 및 평가 운영 ○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등 사전 검토 ○ 사업대상자 예비 및 전문가 컨설팅 ○ 사업추진 이행점검 등 관리·감독 ○ 사업완료 대상자 사후관리 지원
지자체(시도 및 시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 검토 등 사업 신청 및 추진 ○ 사업계획 변경 승인(단, 지자체 기준) 및 검토 ○ 사업 정산 및 사업자 관리·감독 등 ○ 사업완료 대상자 사후관리 주관
경영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 사업 정산 및 사후관리

다. 사업운영 주요 현황

- 사업자 선정 : 별도 세부계획 수립 후 추진
 - 서면평가, 현장점검(필요시), 품목부서 사전검토(필요시), 발표평가, 사업대상자 우선순위 결정, 세부사업계획 심의 및 확정 등 절차를 거쳐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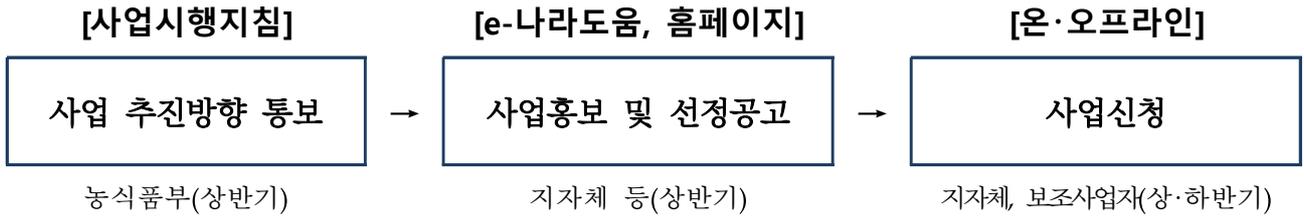
- 사업운영 평가 : 별도 세부계획 수립 후 추진
 - 1년차 사업대상자 연차평가(또는 연차점검)를 통해 사업 계속 지원 여부 판단하며, 2년차 사업대상자 종합평가를 통해 사업운영 성과 측정, 우수경영체 선정, 인센티브 등

- **경영체 컨설팅 운영** : 별도 세부계획 수립 후 추진
 - 예비사업자 컨설팅: 신규 사업대상자 공모 신청 후 평가선정 전에 예비 지원 조직을 대상으로 사업 주요 내용 안내 및 사업계획 수립 관련 자문* 지원
 - * 사업 신청 전에 사업계획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기계, 장비, 시설 등 과다 신청 사전 방지하여 사업 세부운영계획의 타당성, 적정성 등 사업효과 제고 도모
 - 부진경영체 컨설팅: 1년차 사업자 연차평가 결과 부진경영체로 선정된 경우 경영체의 문제점을 재진단하고 시설개선·경영관리·농가조직화 등 분야별 컨설팅 지원
 - 전문가 컨설팅: 2년차 사업자를 대상으로 경영체별 문제점을 진단하고 시설 개선·경영관리·농가조직화 등 분야별 컨설팅 지원

- **사업 점검 및 사후관리** : 별도 세부계획 수립 후 추진
 - 현장점검 : 사업을 추진 중인 경영체를 대상으로 정기점검(상·하반기 1회 농식품부·aT 합동점검)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사업 운영 현황 관리 등 점검
 - * 정기점검 미실시 하는 경우 시도 자체 점검계획 수립·실시 후 농식품부에 상·하반기 제출
 - 사후관리 점검 : 사업 완료한 경영체를 대상으로 사후관리 정기점검(상·하반기 1회 농식품부·aT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중요재산 현황, 경영성과 파악, 부정 운영 행위, 안전 사고 관리 등 점검
 - * 상·하반기 농식품부·aT 합동 정기점검 미실시 하는 경우 시도 자체 점검계획 수립·실시 후 농식품부에 상·하반기 제출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대상 선정기준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확정하여 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통보(상반기)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 사업대상 선정기준 등을 포함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농식품부에 보고 및 제출(상반기)
- 사업공모를 위한 지자체, 농협 등 관련 유관기관 및 경영체 대상 사전 홍보 등 운영(연중)

사업자

- 예비사업자 컨설팅 신청(상·하반기)
 - 차년도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사업계획서 제출 이전에 해당 시·군에 예비사업자 컨설팅 신청서 제출
- 사업 신청(상·하반기)
 - 지원자격 및 지원 품목 등 요건을 갖춘 경영체는 사업계획서 및 각종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시·군에 신청

[발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사업 계획 수립 방향]

(1) 「발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장은 반드시 '원예산업발전계획'을 수립

(2) 주산지협의체 구성

- 구성 :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하되 신청 품목의 생산, 기반조성, 상품화, 유통, 마케팅에 참여하는 실질적인 주체로 구성
- 협의체의 역할
 - ① 지자체 발작물 공동경영체 육성계획 수립 방향 설정
 - ② 사업계획 검토, 자문, 우선순위 결정에 참여
 - ③ 사업지원 대상자 선정에 참여
 - ④ 사업 추진단계 및 종료 후 평가 참여
 - ⑤ 기타 사업추진 자문 등 사업성과를 극대화하는 데 필요한 활동

(3) 계획수립 방향

- 신청품목의 시·군(또는 시·도) 특화도가 높고 발전 가능한 품목 선정
- 지역 단위, 발작물 공동경영체 단위로 발전 목표 설정
- 목표달성을 위한 생산(농가)-상품화(공동경영체)-유통(생산유통통합조직) 등이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모델 제시
- 개별조직 단위 분산지원을 지양하고 지역 전략품목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농가-공동경영체-생산유통통합조직이 계열화된 주체를 중심으로 지원계획 수립
- 발작물 농가조직화 및 생산역량 혁신(생산비용 절감, 생산성 향상, 품질향상 등)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둔 세부사업계획 수립

(4)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기초현황 분석
 - 시·군 내 발작물 생산·유통 현황, 신청품목의 생산(생산구조, 경지정리 등) 및 유통(생산유통통합조직 주체, 유통경로별 비중 등) 여건 분석
 - 신청품목에 대한 사업주체 현황 및 여건분석(출자출하조직, 생산유통통합조직, 기타 생산자조직 등)
 - 신청품목 관련 생산·유통 시설 현황 및 활용도 분석(보유현황, 가동현황, 생산량 대비 과부족 등)
 - 관련 상위계획(원예산업발전계획 및 시군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분석(상위계획 중 해당 품목 관련 내용, 향후 연계 방향)

- 세부 사업 추진 계획
 - 신청 품목에 대한 생산·유통 중장기 육성목표 및 핵심 추진계획
 - 농가조직화, 신상품 개발, 품질향상, 노동력 절감 등 부문별 세부 사업계획 (사업내용, 예산집행 계획)
 - 계획에 따른 부문별 성과 목표
- 농정 거버넌스 구축 계획
 - 신청 품목에 대한 주산지 협의체 운영계획

시·군

- 예비사업자 컨설팅 신청서를 취합하여 시·도에 제출(상반기)
 - 지원대상 사업자 자격 및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 한해 신청서 제출
- 주산지협의체 구성(사업신청 전)
 - 시·군은 지자체 중심으로 시·군, 생산유통통합조직, 생산자 조직, 농업기술센터, 대학, 자조금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주산지협의체’를 구성
- 사업계획서 검토 및 시·도에 제출(상반기)
 - 시·군은 주산지협의체에서 사업계획서 및 관련 신청서를 검토·심의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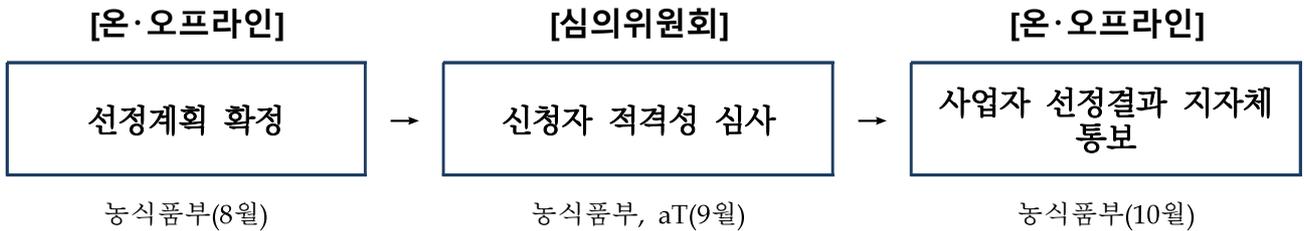
시·도

- 예비 사업자 컨설팅 신청서를 취합하여 aT에 제출(상·하반기)
 - 지원대상 사업자 자격 및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 한해 신청서 제출
- 사업계획서 검토 및 aT에 사업신청서 제출(상·하반기)
 - 시·도는 시·군의 품목·조직단위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선정기준 등에 적합한 공동경영체의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를 aT에 제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 사업대상자 신청 접수 현황 및 사업자 선정평가 세부추진계획 농식품부에 보고 및 제출(상·하반기)

2. 사업자 선정 단계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 시·도에서 제출된 사업신청서에 대해 단계별 평가 실시(상·하반기)
- * 선정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40조(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관련 법령 준용
- 사업대상자는 평가단계별 통과기준 이상 시 선정

< 1단계 : 기본요건 검토 >

- 사업신청자의 기본요건 및 관련 제출서류 등을 검토

< 2단계 : 서면평가 >

- 주 관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평 가 자 : 선정위원회(5인 내외)
- 평가방식 :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서면평가 실시
- 평가대상 : 사업신청 기본요건 등 충족한 개별 경영체 및 해당 지자체(시·도, 시·군)
- 평가내용 :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추진 역량 및 농정거버넌스 기반 등
- 평가결과 : 선정위원회 위원이 부여한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 시,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
- * 현장점검 : 서면평가 단계에서 선정위원회가 평가대상자의 생산자 조직화 현황 및 보유 시설·장비, 부지 등 사업 여건 파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현장점검 실시
- * 품목·기계 등 관련 부서 사전검토 : 평가대상자의 사업추진 방향, 역량강화, 생산비절감, 품질관리 등 전반적인 사업계획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전검토 실시

< 3단계 : 발표평가 >

- 주 관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평 가 자 : 선정위원회(5인 내외)
- 평가방식 : 사업계획 설명 후 질의 및 응답 등 발표평가
- 평가대상 : 서면평가를 통과한 개별 경영체 및 해당 지자체(시·도, 시·군)
- 평가내용 :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추진 역량 및 농정거버넌스 기반 등
- 평가결과 : 서면평가(40%)와 발표평가(60%) 배점을 합산하여 70점 이상 경영체를 대상으로 우선순위로 예비 사업대상자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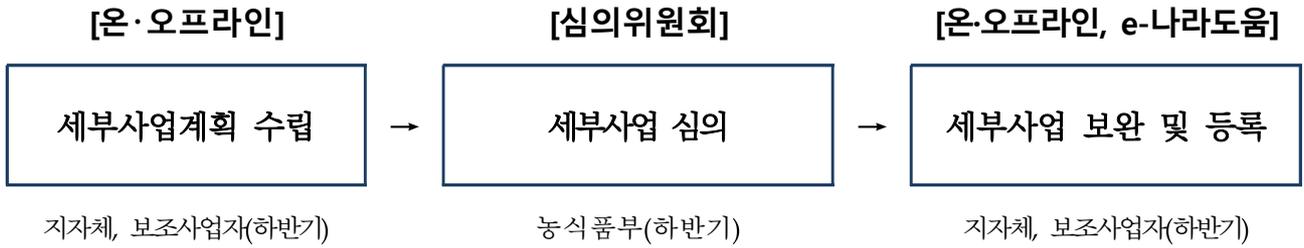
농림축산식품부

- 해당 사업신청 품목별 사업계획의 타당성, 적정성 등 내부 검토 후 선정 평가에 반영하여 예비사업자로 최종 확정(상·하반기)
 - aT로부터 제출된 선정 심사 평가결과를 기초로 최종 확인 후 예비 사업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에 통지
- * 사업계획서가 부실하거나 정책방향과 일치하지 않는 사업계획서는 농식품부 선정 심사에서 제외
- * 품목·기계 등 관련 부서 사전검토 : 평가대상자의 사업추진 방향, 역량강화, 생산비절감, 품질관리 등 전반적인 사업계획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전검토 실시

사업자·지자체

- 예비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해당 지자체(경영체)는 세부사업계획 심의 자료를 보완하여 최종 aT로 제출(상·하반기)
- * 세부사업계획 심의 시 사업계획 보완 미이행, 서류 미비 등 부적정한 경우가 확인된 경우 최종 사업대상자로 미선정 가능

3. 세부계획 수립



사업자

- 세부사업계획 제출(하반기)
 - 사업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추진 방향, 연차별·용도별 투자계획 및 항목별 사업 규모가 포함된 세부사업계획서 및 증빙(견적서 및 설계도면 등)을 시·군에 제출

시·군

- 세부사업계획 검토 및 시·도에 제출(하반기)
 - 시·군은 주산지협의체에서 세부사업계획서를 검토·심의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

시·도

- 세부사업계획서 검토 및 aT에 제출(하반기)
 - 시·도는 시·군의 품목·조직단위 세부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aT에 제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 분야별 전문가에 의한 세부사업계획 심의(하반기)
 - 주 관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평 가 자 : 심의위원회(분야별 전문위원으로 구성)
 - 심의방식 : 세부사업계획 설명 후 질의·응답 대면심의

- 심의대상 : 예비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개별 경영체 및 해당 지자체(시·도, 시·군)
- 심의내용 : 사업 추진 방향, 기계·시설 활용계획, 사업규모 및 단가의 적정성 등
- 심의결과 : 예비 사업대상자는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세부 사업계획 재수립 후 농식품부 최종 제출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로부터 예비사업대상자의 세부사업계획을 내·외부 전문가(aT)를 통하여 검토하고 확정 후 해당 지자체에 최종 사업대상자로 통지(하반기)
- 세부사업계획 검토 결과 보완 필요시에는 계획 승인 시 부대의견을 포함 통보
 - * 경영체(시군)는 승인 받은 세부사업계획 임의변경 불가하며, 농식품부(시도) 승인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연차 평가 시 패널티 부여 및 차년도 사업비 삭감 등의 제재 조치
- 지자체에서 보완하여 제출한 최종 세부사업계획에 의거 사업 추진 및 관리

〈 세부사업계획서 변경 승인 〉

[변경 승인 원칙]

- * 경영체는 승인받은 세부사업계획서 임의변경 금지
- ** 시·군(시·도)은 경영체의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한 경우 지체없이 시·도(aT·농식품부)로 보고
- *** 농식품부 승인사항에 대해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연차평가(또는 연차점검) 시 패널티 부여 및 차년도 사업비 삭감, 지원중단 등 조치

[변경 승인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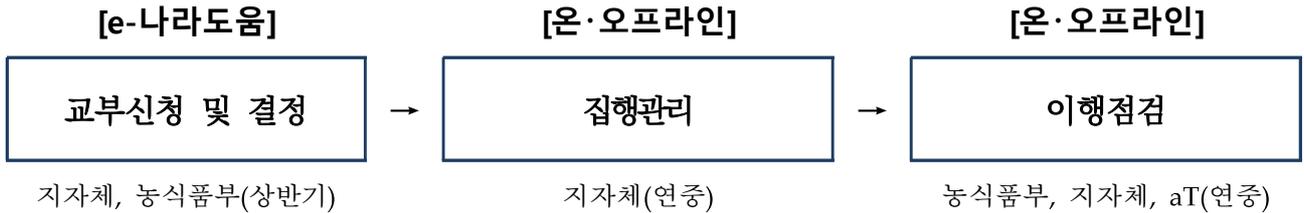
내 용	조치사항	
대표자 변경 등 단순 정정 사항	시·군 승인 → 시·도 보고	
단순 자부담을 추가하거나 건축 또는 상품화설비 변경 등 경미한 사항	시·군 제출 → 시·도 승인 → aT·농식품부 보고	
사업계획 및 세부 사업비 산출내역 변경 시 (총 사업비 10억 기준)	변경액 기준: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 항목 간 변경되는 증액분의 합계	
	총 사업비의 30% 이하	시·군 제출 → 시·도 승인 → aT·농식품부 보고
	총 사업비의 30% 초과	시·도 요청 → aT 검토 → 시·도 제출 → 농식품부 승인(필요시 대면 검토 가능)
사업 주요내용 변경 시(사업부지, 품목변경, 주요 건축 설계·내용 등) 또는 연간 시·도 승인 3회 초과 시(4회부터)	시·도 요청 → aT 검토 → 시·도 제출 → 농식품부 승인(필요시 대면 검토 가능) (단순 부지면적 증가 등은 제외)	

[변경 승인 관련 참고 사항]

- *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은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증감)할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업비 산출근거(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총 사업비(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 가능(단, 자부담 추가로 총사업비가 실제 늘어나는 경우 시도 승인 후 보고 필요)
-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에 따르면 보조금 교부 이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아래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월 가능
 -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 사업계획 사후변경 승인은 사업추진에 타당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불가
- * 해당 사업연도의 낙찰차액, 예산절감 등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 사업소요 필요성 등 사전검토 및 당해연도 사업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월하여 집행 불가(집행잔액으로 반납처리)

IV. 사업 시행 및 관리

1. 교부결정 및 집행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자별 예산 배정액을 확정하여 지자체 통보(하반기)
- 사업대상자별 최종 세부시행계획(단, 신규사업자) 검토 및 보조금 교부 결정(상반기)

사업자

- 최종 세부시행계획서(연차별 집행계획 포함)를 시·군에 제출(하반기)
- 지자체에서 교부 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 및 운영(연중)
- 단, 선정 후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업포기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지자체

- 시·군은 사업자의 계획서를 검토 후 세부시행계획서(사업계획 및 사업비 집행계획 등 포함)를 수립하여 시·도에 제출(하반기)
- 당해연도 배정액 확정 후 시·도는 교부요청 금액을 e나라도움에 입력하고 농식품부에 교부 신청(상반기)
- 농식품부에서 당해연도 교부 받은 보조금을 경영체에 즉시 교부(집행) 등 운영 및 사업 추진상황 관리(연중)
-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포기서를 첨부하여 농식품부 및 aT에 제출
 - * 해당 사업자는 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 보조금을 교부받은 지자체는 「발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사업시행 지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수하여 보조금을 집행

2. 사업 진행단계

가. 이행점검

농림축산식품부, aT

- 정기점검(상·하반기 1회 합동점검) 또는 수시점검 실시
- 이행점검 계획을 협의 및 수립하여 지자체에 안내
 - 사업비 집행 실적, 분야별 사업추진 상황, 협의체 운영현황, 현장 애로사항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시·군(또는 시·도)에 요구

지자체

- 정기점검(상·하반기 각 1회 농식품부 합동점검), 수시점검
 - 사업별 운영현황 보고서 사전 제출(aT) 및 점검(합동 또는 수시) 지원
- 합동 정기점검 미실시 하는 경우 시도에서는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
 - 사업 추진이 부진하거나 운영이 부실한 시군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 강구

사업자

- 사업 운영 및 중요재산 시설 관리 철저 및 경영체별 사업추진 현황 보고서 작성 등 이행점검 협조

나. 연차평가(단, 추진상황에 따라 연차점검으로 대체 등 별도계획 수립후 추진 가능)

사업자

- 1년차 사업자는 10월 말까지 사업비 집행실적, 농가조직화 현황 등을 포함한 '사업 추진실적(연차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지자체

- 지자체는 사업자가 작성한 '사업 추진실적(연차평가) 보고서'를 취합하여 농식품부 및 aT에 제출

- 시·도는 이행점검 계획에 따라 사업추진 현황 보고서 및 증빙자료 등을 농식품부에 제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 1년차 사업 추진실적(연차평가) 보고서 발표평가(11월) 및 결과보고(농식품부)
 - 주 관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평 가 자 : 내·외부 전문가(4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
 - 참석대상 : 개별 사업자 및 해당 지자체(시·군)
 - 평가내용 : 사업비 집행실적, 공동경영기반 확대, 조직화 확대 등
 - 평가진행 : 사업자가 1년차 사업추진 보고 후 질의 및 응답

농림축산식품부

- 패널티 부여, 2년차 사업비 삭감 또는 지원중단 등 지원여부 결정
-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자에게 패널티 부여, 2년차 사업비 삭감 또는 지원중단 등 지원여부 결정 및 지자체 연차평가 결과 통보

다. 부진경영체 컨설팅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 연차평가 결과 부진경영체에 대한 컨설팅 추진계획을 농식품부에 제출 및 경영체별 문제점에 대한 전문가별(조직화·시설) 의견을 반영하여 농식품부에 결과보고

농림축산식품부

- 부진경영체에 대한 부진경영체 컨설팅 계획 지자체에 안내
- 전문가별 의견 등 컨설팅 결과 지자체로 안내 및 재연차평가 계획 알림

지 자 체

- 지자체는 부진경영체의 경영체 현황자료 등 aT로 사전 제출

라. 전문가 컨설팅

농림축산식품부

- 2년차 사업자를 대상으로 컨설팅 계획을 aT 및 지자체로 안내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 분야별 외부전문가(자문단) 구성 및 장소 섭외 등 전문가 컨설팅 세부추진 계획 농식품부로 제출 및 결과보고

사 업 자

- 사업자는 경영체별 현황자료 및 자문요청 자료 등을 지자체로 제출

지 자 체

- 시·도는 컨설팅 추진 계획에 따라 경영체별 현황 및 자문요청 자료 등을 검토 및 취합하여 aT에 사전 제출

마. 종합평가

사 업 자

- 2년차 사업자는 다음해 1월 말까지 사업비 집행실적, 농가조직화 현황 등을 포함한 '사업 추진실적(종합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지 자 체

- 지자체는 사업자가 작성한 '사업 추진실적(종합평가) 보고서'를 취합하여 농식품부 및 aT에 제출
- 시·도는 이행점검 계획에 따라 사업추진 현황 보고서 및 증빙자료 등을 농식품부에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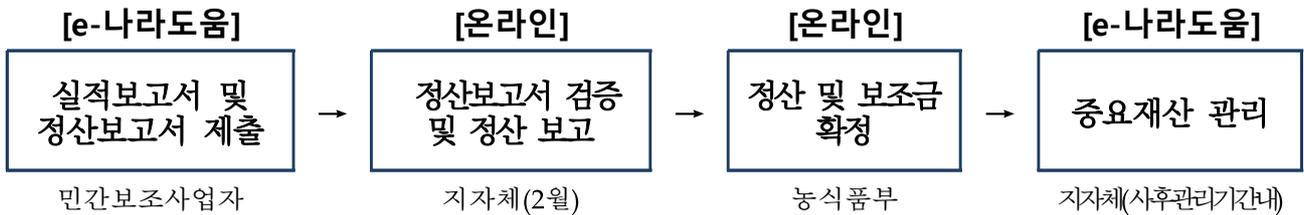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 2년차 사업 추진실적(종합평가) 보고서 평가(1월) 및 결과보고
 - 주 관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평 가 자 : 내·외부 전문가(4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
 - 평가내용 : 사업실적, 공동경영기반 확대 실적, 농정거버넌스 운영실적 등
 - 평가진행 : 평가보고서 및 증빙자료에 대한 서면 평가

농림축산식품부

-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조직 선정 등 안내 및 우수조직 및 지자체에 인센티브 제공 가능

3.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가. 실적보고 및 정산

사업자

- 사업자는 사업 완료, 회계연도 종료 등으로 보조사업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포함)를 해당 시·군에 제출
 - 보조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를 검증받은 후 제출
- 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보조사업실적보고서 제출 전까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2(중요재산의 부기등기)에 따라 부기등기 조치 후 시·군에 등기서류 등 제출

지 자 체

- 지자체는 사업 완료, 회계연도 종료 등으로 보조사업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사업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농식품부로 별도 서식으로 보조사업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포함) 제출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2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따라 시군 등의 사업부서장은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설비·장비 등에 대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중요재산의 현황을 e나라도움에 등록, 관리대장 및 지원 이력을 등록·관리
- e나라도움에 보조사업 정보공시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반드시 공시하여야 하며, 중요재산 등록은 재산을 취득한 경우 15일 이내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된 중요재산에 대하여 반드시 1개월 이내 공개 등 관리 철저

나. 사후관리

사 업 자

- 사후관리기간은 부동산 및 부동산의 종물의 경우 취득 후 10년 경과한 해의 12.31.까지,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의 경우 취득 후 5년이 경과한 해의 12.31.까지로 정하고 있어 성실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사업종료된 경영체는 5년간 경영성과(운영실적) 파악에도 지자체 협조
- 사후관리기간 내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중요재산을 목적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시·도지사 등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재산처분의 제한)
- 다만, 부득이하게 중요재산에 대한 담보의 제공 등이 필요할 경우 해당 사업시행기관에 승인을 요청해야함(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7조, 중요재산 처분의 제한)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교부목적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제공에 대한 승인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제1항제8호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

지 자 체

- 산지유통 관련 시설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시는 정도에 따라 보조금 회수조치(보조금 교부 결정 시 회수조건을 명기)
- 시장·군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매년 1회 이상 사업자가 제출(또는 열람 및 발급)한 등기부등본을 검토하여 근저당 설정 등 확인 및 현지 지도·점검, 운영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단, 사후관리 점검 시 대체 가능)
- 사업자가 원물조달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정책자금 용자 실행을 위해 담보제공 승인을 요청할 경우 지자체장의 승인을 득해야 함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제1항제8호)
- “중요재산의 범위 및 사후관리 기간적용” 등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을 준용하며, 사후관리기간은 부동산 및 부동산의 종물의 경우 취득 후 10년 경과한 해의 12.31.까지,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의 경우 취득 후 5년이 경과한 해의 12.31.까지로 정함
- 지자체는 사업이 종료된 공동경영체의 사후관리 5년간 경영성과(운영실적) 파악하여 상하반기 사후관리카드 및 관련 서류 농식품부에 보고
- 지자체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되며,
-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기본규정」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5에 따라 환수 조치

- 지자체는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에 반드시 통보
- 기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국고보조금통합관리 지침 등 제반 관련 규정을 준용
- 사후관리 점검
 - 점검목적 : 시설,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현황 및 경영성과 파악, 부정운영 행위, 안전사고 관리 등 점검
 - 점검대상 : 사업 완료한 경영체
 - 점검시기 : 상·하반기 정기점검(또는 시도 자체점검) 및 수시점검
 - 점검방식 : 사후관리카드 및 관련 서류에 따른 현장 및 서면점검
 - 점 검 반 : 농식품부·aT 등 합동점검 및 시도 자체점검
 - 사후관리 점검은 농식품부(aT), 지자체 세부추진계획 수립하여 별도 추진

다. 사업 제재 및 처벌

- 지원대상자가 거짓으로 신청하였거나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지원의 제한을 받음
- 농식품부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 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 포기한 공동경영체 및 사업에 대한 지방비 확보를 하지 못한 지자체는 해당 보조사업 3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 보조금 부정수급 유형 〉

○ 부정수급 유형

가. 주요 빈발 유형

구 분		내 용
허위 신청	허위 인력	근로자, 원생, 가족 등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나 등원하지 않은 원생을 허위로 등록하여 보조금 허위 신청
	허위 소득·재산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자가 보조금 허위 신청 (소득·재산 미신고, 축소신고)
	기타	허위 사업계획서 제출 및 증빙서류 작성 등으로 보조금 지급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보조금 허위 신청
허위 출결		보육시간, 근로시간, 훈련시간 등 출석일수 허위신고, 대리출석 등 보조금 지급요건에 출결이 포함되는 경우의 허위 출결
가격 부풀리기		공사비, 장비 구입비 등의 가격을 부풀려서 보조금 과다 수령
정산서류 조작		고정 지출 증빙자료를 중복 사용, 폐업 사업처 세금계산서 사용 등
부적정 계약거래		보조사업자 가족간 거래 및 직원 명의의 거래업체 등 특정관계 거래처와 계약을 통해 보조금 부정 집행
자부담 회피·대납		보조사업자의 자부담금을 업체가 대납한 뒤 가격 부풀리기를 통해 보조금을 (정당한보조금+자부담금)보다 과다하게 수령
바우처카드 허위 결제		바우처카드를 부당 소지하고 서비스 제공 없이 허위 결제, 서비스 제공 시간보다 과다 청구, 해외출국자 결제 등
목적외 사용		보조금을 정해진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
중요재산 임의처분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등을 중앙관서의 장 승인 없이 무단으로 처분(대여, 양도, 담보 등)
기타 (협의를 부정수급)		위의 유형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협의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광의의 부정수급	행정착오	시스템 오류, 행정 담당자의 실수 등 행정상 착오로 인한 보조금 오지급
	행정시차	보조금 수급 자격요건 등의 변동 정보가 행정 담당자에게 실시간으로 도달되지 않아 발생하는 일시적인 보조금 오지급
	사정변경	보조금 신청 당시에는 수급요건을 충족했으나, 이후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보조금 지급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기타	그 외 보조사업자 등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하는 부적정 지급

〈 보조금 부정수급 유형 〉

나. 단계별 유형

구 분	사 례
선정	보조사업자, 보조금수령자 등의 선정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정수급 ex) 허위 신청, 중복 선정, 선정업무 담당자와 선정 대상자의 결탁 등
집행	보조금 교부 뒤 해당 보조사업의 수행 및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수급 ex) 가격 부풀리기, 자부담 대납, 바우처카드 허위결제, 허위 출결, 목적외 사용 등
사후관리	보조사업 종료 및 보조금 집행이 완료된 후의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정수급 ex) 중요재산 임의처분 등

다. 보조금법상 유형

구 분	내 용
허위수급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지급 받은 경우
다른 용도 사용	보조금을 교부 목적과 무관한 다른 용도로 사용
법령등 위반 및 요건 미충족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및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중요재산 임의처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으로 취득되거나 효용이 증가한 재산을 무단으로 사후 처분한 경우 * 다만 해당 유형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어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명령만 가능하고, 제재부가금·수행배제 등의 제재처분은 불가
광의의 부정수급	보조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후적인 사정변경으로 인한 환수, 정산 결과 발견된 초과액 환수 등이 필요한 경우 * 다만 해당 유형에 대해서는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명령만 가능하고, 제재부가금·수행배제 등의 제재처분은 불가

라. 행위주체별 유형

구 분	사 례
공무원	부패, 태만, 부적정한 재량행위, 담당자 착오, 행정시스템 오류/미비 등
보조 사업자	허위신청 및 수급, 중복신청 및 수급, 사업비 부풀리기 및 자부담회피, 목적 외 사용, 인력 허위 등재, 지출내역 중복증빙, 사업 쪼개기, 무단담보, 무단임대 등
보조금 수령자	허위신청 및 수급, 중복신청 및 수급, 수급자격자 명의도용·대여 등
제3자	자부담 대납, 계약업체와 부정수급 공모 등

〈 보조금 부정수급 제재 절차 안내 〉

○ 보조금 부정수급 제재 절차

- 검·경의 수사결과, 감사기관 감사결과, 사업시행기관의 현장점검 등으로 보조사업자 등의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
- 보조금 교부 취소 및 반환, 제재부가금 등 징수, 사업수행 배제, 명단공표, 벌금 등 부과 (보조금법 및 시행령 등 관련 규정)

조치 사항	업무 내용	업무 주체	보조금법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중앙관서의 장 (소속 관서장 또는 지자체의 장에게 위임 가능)	법 30조
↓			
보조금 반환 (보조사업자) 보조금 환수 (보조금수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부결정 취소시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 및 이로 인해 발생한 이자 반환 명령 ◦ 보조금수령자의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 명령 	중앙관서의 장 (소속 관서장 또는 지자체의 장에게 위임 가능)	법 31조
↓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환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 부과 ◦ 체납시 체납기간에 따라 가산금 징수(최대 5%) 	중앙관서의 장	법 33조의2
↓			
보조사업 수행 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부 결정 취소 횟수에 따라 보조사업 5년범위에서 수행배제 또는 지급제한 	중앙관서의 장	법 31조의2
↓			
명단 공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정수급자 명단 등을 해당 중앙관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 	중앙관서의 장	법 36조의2
↓			
강제 징수 (반환금 등 미납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환금, 제재부가금, 가산금 미납시 강제징수 ◦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 	중앙관서의 장, 지자체의 장인 보조사업자	법 33조의3
↓			
신고포상금 (신고 등이 있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정수급 보조사업자 등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 	중앙관서의 장	법 39조의2

V. 평가 및 환류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및 연차·종합평가

- 보조사업자는 당해 회계연도 종료된 경우 3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 **(연차평가)** 1년차 사업대상자에 대한 연차평가는 10월 말까지 '사업 추진실적(연차평가) 보고서'를 통해 패널티 부여, 2년차 사업비 삭감 또는 지원 중단 등 계속 지원 여부 결정
 - 부진경영체에 대한 컨설팅 및 재연차평가 실시
- **(종합평가)** 2년차 사업대상자에 대한 종합평가는 시·군에서 다음해 1월 말까지 '사업 추진실적(종합평가) 보고서'를 통해 우수조직 선정 및 인센티브 제공 가능
- aT는 세부 평가 기준을 포함한 연차·종합평가 세부추진계획을 농식품부와 협의·수립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
- *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에 의한 서면 또는 발표평가 실시

2. 평가결과 등 환류

- 농식품부는 종합평가 결과가 우수한 조직에 대해서는 마케팅지원사업,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 등 관련 사업 지원 시 우대
 - 예산범위 내에서 종합평가 결과 우수조직 및 지자체에 해외연수 기회, 장관표창 등 인센티브 제공 가능
-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 운영 및 관리 개선 필요한 경우 연구용역 등 별도 계획수립 후 추진

3. 기타

- aT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발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정책협의회 또는 워크숍 주관·운영 별도 수립 실시
- * 기본계획 수립, 사업대상자 선정 및 행정경비 등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다양한 이슈를 협의하고 정책성과를 높이기 위한 관계자 의견 수렴, 문제에 따른 개선 방안 도출

VI. 주요 변경사항

현행(2023)	변경(2024)	변경사유
<p>〈II.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가. 사업 주관기관 : 지자체(시·군·구, 시·도) ○ 발작물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자체 단위 계획수립 및 해당 품목 생산자단체(개별 경영체)를 시·군단위 공동경영체 방식으로 구성 * 공동경영체 : 발농업 경영의 효율성 제고 및 산지유통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시·군 단위로 생산단계(품종 및 재배 방식 통일, 농기계 공동이용, 공동출하) 및 공동상품화(공동선별, 포장, 가공, 저장 등) 등 공동경영기반을 갖추고, 생산농가의 조직화·규모화를 위해 참여 조직, 통합마케팅 조직 등으로 계열화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경영체</p>	<p>〈II.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가. 사업 주관기관 : 지자체(시·군·구, 시·도) ○ 발작물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자체 단위 계획수립 및 해당 품목 생산자단체(개별 경영체)를 시·군단위 공동경영체 방식으로 구성 * 공동경영체 : 발농업 경영의 효율성 제고 및 산지유통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시·군 단위로 생산단계(품종 및 재배 방식 통일, 농기계 공동이용, 공동출하) 및 공동상품화(공동선별, 포장, 가공, 저장 등) 등 공동경영기반을 갖추고, 생산농가의 조직화·규모화를 위해 출자 출하조직, 생산유통통합조직 등으로 계열화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경영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변경 - 원예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 육성 통합 지침에 따라 개편된 내용 반영
<p>〈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사업 주관기관 요건 : 지자체(시·군·구, 시·도) ○ 지자체 또는 품목단위 원예산업발전계획 수립, 선정된 계획에 포함된 지자체 - 원예산업발전계획 내 사업신청 품목이 전략(육성) 품목으로 지정 * 사업신청 품목을 원예산업발전계획은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후에 별도 확인 예정으로 전략(육성) 품목 지정이 안되어 있을 경우, 사업자 선정 결과 무효 처리 ** 단, 먹거리 계획(푸드플랜 패키지) 협약체결 시·군 계획에 포함된 사업자는 지원자격 및 요건, 품목 등을 별도로 정하는 평가·선정 가능</p>	<p>〈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사업 주관기관 요건 : 지자체(시·군·구, 시·도) ○ 지자체 또는 품목단위 원예산업발전계획 수립, 선정된 계획에 포함된 지자체 - 원예산업발전계획 내 사업신청 품목이 전략(육성) 품목으로 지정 필요 * 사업신청 품목을 원예산업발전계획은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후에 별도 확인 예정으로 전략(육성) 품목 지정이 안되어 있을 경우, 사업자 선정 결과 무효 처리 ** 단, 먹거리 계획(푸드플랜 패키지) 협약체결 시·군 계획에 포함된 사업자는 지원대상 품목, 지원대상 조직 공통요건 등 충족 필요하며, 평가·선정은 별도로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목적인 품목지원 및 조직화에 따라 제한 요건 수정

현행(2023)	변경(2024)	변경사유
<p>나. 지원대상 품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 [표. 채소류 주산지 지정기준(현재고시)] - [표. 채소류 주산지 지정기준(고시 예정안)] - [표. 농산자조금 지원 품목(2022년 7월 기준)] 	<p>나. 지원대상 품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에서 지역 특화품목으로 육성하는 기타 원예농산물 품목 - 〈삭제〉 - [표. 채소류 주산지 지정기준(고시 제 2022-102, 시행 '22.9.30)] - [표. 농산자조금 지원 품목(2022년 12월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 완화를 통해 다양한 경영체의 사업 참여 독려 ○ 변경된 고시안 및 자조금 품목 내역 반영
<p>라. 지원제한(경영체, 지자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업에 지원받은 경영체가 동일 품목으로 지원하는 경우 사업 회계연도 종료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19년 사업자부터) 지원 불가 <p>* 〈신설〉</p>	<p>라. 지원제한(경영체, 지자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업에 기 지원받은 경영체가 사업 신청하는 경우 본 사업 회계연도 종료 후 동일 품목은 4년('20년~'23년 사업자), 타 품목은 2년('22년~'23년 사업자) 이내 지원 불가 <p>* 단, 발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종합평가 결과 '미흡' 경영체는 동일품목 5년, 타 품목 3년간 사업 참여 제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지원 받을 우려가 있는 경영체 및 이전 참여시 미흡했던 경영체에 제한 요건 추가
<p>마. 가·감점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도('21년도 실적)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참여조직, 통합마케팅조직(지역연합조직, 품목광역조직), 산지유통혁신조직으로 선정된 경우 가점 차등 부여 <p>* 〈신설〉</p> <p>* 단, 본 사업 지원 품목으로 인정되는 경우 가점 반영하며, 중복으로 가점 인정 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지원받은 경영체가 사업 회계연도 종료 후, 4년 경과 후 동일 품목으로 지원하는 경우 감점 부여 ○ 기 지원받은 경영체가 타 품목으로 지원하는 경우 감점 부여 ○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지원사업, 유통시설현대화 사업 등 타 정부지원 시설 보조사업자가 공모 해당연도에 수행중인 경우 감점 부여 	<p>마. 가·감점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년도('22년도 실적) 정부로부터 출자출하조직, 생산유통통합조직(육성형 포함)으로 승인(등록)된 경우 가점 차등 부여 <p>* 단, 기존 산지유통혁신조직(~'22년)에서 생산유통통합조직으로 별도 요건 없이 전환된 경우는 제외</p> <p>** 본 사업 지원 품목으로 인정되는 경우 가점 반영하며, 중복으로 가점 인정 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지원받은 경영체가 사업 회계연도 종료 후, 동일 품목으로 4년이 경과하거나 타 품목으로 2년이 경과하여 사업 신청하는 경우 감점 부여 ○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지원사업, 유통시설현대화 사업 등 타 정부지원 시설 보조사업자가 공모 해당연도에 수행중인 경우 감점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예농산물 생산유통통합조직 육성 통합지침에 따라 개편된 내용 반영 ○ 상기 지원제한 변경에 따른 감점 사항 수정

현행(2023)	변경(2024)	변경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 선정평가 시 시·도 기준으로 지원받은 발작물 경영체의 최근 2년 평균 실적행 등을 반영하여 가감점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 선정평가 시 시·도 기준으로 지원받은 발작물 경영체의 최근 2년 평균 실적행 등을 반영하여 가감점 부여 (단, 최근 2년 이내 시·도 지원실적 없는 경우 해당없음) 	
<p>〈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p> <p>가. 역량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산지협의회 운영(예산에 따른 역할 및 구성 계획 반영, 필수 구성) * 지자체 주도로 생산자 조직, 통합마케팅 조직, 자조금단체, 교수, 전문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주산지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회의비 등 	<p>〈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p> <p>가. 역량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산지협의회 운영(예산에 따른 역할 및 구성 계획 반영, 필수 구성) * 지자체 주도로 생산자 조직, 생산유통 통합조직(육성형 포함), 자조금단체, 교수, 전문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주산지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회의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예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 육성 통합 지침에 따라 개편된 내용 반영
<p>4.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량 및 지원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량 : 신규 19개소 내외(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순위에 따라 선정) * 〈신설〉 	<p>〈4.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량 및 지원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량 : 신규 19개소 내외(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순위에 따라 선정) * 최종 예비선정 사업대상자가 예산 범위 내 사업량을 초과하는 경우 익년도 사업대상자로 자동 선정 불가(익년도 사업신청, 선정평가 등 절차에 따라 동일하게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내 사업추진을 위해 선정 과정시 유의사항을 명확히 제시
<p>〈Ⅲ.사업추진체계〉</p> <p>1. 사업신청단계</p> <p>[발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사업 계획 수립 방향]</p> <p>(3) 계획수립 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품목의 시·군(또는 시·도) 특화도가 높고 발전 가능한 품목 선정 ○ 지역 단위, 발작물 공동경영체 단위로 발전 목표 설정 ○ 목표달성을 위한 생산(농가)-상품화(공동경영체)-유통(통합마케팅조직) 등이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모델 제시 ○ 개별조직 단위 분산지원을 지양하고 지역 전략품목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농가-공동경영체-통합마케팅조직이 계열화된 주체를 중심으로 지원계획 수립 	<p>〈Ⅲ.사업추진체계〉</p> <p>1. 사업신청단계</p> <p>[발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사업 계획 수립 방향]</p> <p>(3) 계획수립 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달성을 위한 생산(농가)-상품화(공동경영체)-유통(생산유통통합조직) 등이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모델 제시 ○ 목표달성을 위한 생산(농가)-상품화(공동경영체)-유통(통합마케팅조직) 등이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모델 제시 ○ 개별조직 단위 분산지원을 지양하고 지역 전략품목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농가-공동경영체-생산유통통합조직이 계열화된 주체를 중심으로 지원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예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 육성 통합 지침에 따라 개편된 내용 반영

현행(2023)	변경(2024)	변경사유
<p>○ 발작물 농가조직화 및 생산역량 혁신 (생산비용 절감, 생산성 향상, 품질향상 등)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둔 세부사업계획 수립</p> <p>(4)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p> <p>○ 기초현황 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 내 발작물 생산·유통 현황, 신청품목의 생산(생산구조, 경지정리 등) 및 유통(통합마케팅 주체, 유통경로별 비중 등) 여건 분석 - 신청품목에 대한 사업주체 현황 및 여건분석(통합마케팅조직, 참여조직, 기타 생산자조직 등) 	<p>○ 발작물 농가조직화 및 생산역량 혁신 (생산비용 절감, 생산성 향상, 품질향상 등)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둔 세부사업계획 수립</p> <p>(4)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p> <p>○ 기초현황 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 내 발작물 생산·유통 현황, 신청품목의 생산(생산구조, 경지정리 등) 및 유통(통합생산유통 주체, 유통경로별 비중 등) 여건 분석 - 신청품목에 대한 사업주체 현황 및 여건 분석(출자출하조직, 생산유통통합조직, 기타 생산자조직 등) 	
<p><1. 사업신청단계> [시·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산지협의회 구성(사업신청 전) - 시·군은 지자체 중심으로 시·군, 통합마케팅조직, 생산자 조직, 농업기술센터, 대학, 자조금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주산지협의회'를 구성 	<p><1. 사업신청단계> [시·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산지협의회 구성(사업신청 전) - 시·군은 지자체 중심으로 시·군, 생산유통통합조직, 생산자 조직, 농업기술센터, 대학, 자조금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주산지협의회'를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동
<p><3. 세부계획 수립> [표. 세부사업계획서 변경 승인] [변경 승인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자 변경 등 경미한 사항 : 시·군 승인 → 시·도 보고 ○ 경미한 사항으로 자부담을 추가하거나 건축 또는 상품화설비 등 설계 변경 시 : 시·군 제출 → 시·도 승인 → aT·농식품부 보고 <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주요내용 변경 시(사업부지, 총사업비, 품목변경, 주요 건축 설계·내용 등) : 시·도 요청 → aT 검토 → 시·도 제출 → 농식품부 승인(필요시 대면 검토 가능) 	<p><3. 세부계획 수립> [표. 세부사업계획서 변경 승인] [변경 승인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자 변경 등 단순 정정 사항: 시·군 승인 → 시·도 보고 ○ 단순 자부담을 추가하거나 건축 또는 상품화설비 변경 등 경미한 사항 : 시·군 제출 → 시·도 승인 → aT·농식품부 보고 <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주요내용 변경 시(사업부지, 품목변경, 주요 건축 설계·내용 등) 또는 연간 시·도 승인 3회 초과 시(4회부터) : 시·도 요청 → aT 검토 → 시·도 제출 → 농식품부 승인(필요시 대면 검토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계획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

현행(2023)	변경(2024)	변경사유
<p>[변경 승인 관련 참고 사항] (...) * <신설></p>	<p>[변경 승인 관련 참고 사항] (...) * 해당 사업연도의 낙찰차액, 예산절감 등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 사업소요 필요성 등 사전검토 및 당해연도 사업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월하여 집행 불가(집행잔액으로 반납처리)</p>	
<p><Ⅳ.사업 시행 및 관리> 2. 사업 진행단계 나. 연차평가</p>	<p><Ⅳ.사업 시행 및 관리> 2. 사업 진행단계 나. 연차평가(단, 추진상황에 따라 연차점검으로 대체 등 별도계획 수립후 추진 가능)</p>	<p>○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평가안 개선 가능</p>
<p><Ⅴ.평가 및 환류> 2. 평가결과 등 환류 ○ 농식품부는 종합평가 결과가 우수한 조직에 대해서는 산지유통종합평가(무이자 인센티브), 마케팅지원사업, 농산물 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 등 관련사업 지원 시 우대 - 예산범위 내에서 종합평가 결과 우수 조직 및 지자체에 해외연수 기회 등 인센티브 제공 가능</p>	<p><Ⅴ.평가 및 환류> 2. 평가결과 등 환류 ○ 농식품부는 종합평가 결과가 우수한 조직에 대해서는 마케팅지원사업, 농산물 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 등 관련사업 지원 시 우대 - 예산범위 내에서 종합평가 결과 우수 조직 및 지자체에 해외연수 기회, 장관 표창 등 인센티브 제공 가능</p>	<p>○ 원예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 육성 통합지침으로 개편됨에 따라 산지유통종합평가 미시행</p>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I. 사업 개요

□ 목 적

- 생산시설 현대화를 통한 고품질 과수 생산 및 재해예방 등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

□ 사업내용

- 관수관비시설, 우량품종갱신 등 고품질 생산을 위한 시설 및 재해예방시설 지원

□ 지원 자격 및 요건

- 원예산업발전계획의 생산유통통합조직 참여(다만, 미참여 농가는 지원년도 기준으로 2025년까지 한시적 지원) 경영체 또는 지역 푸드플랜에 참여 실적이 있는 경영체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 : 고품질 생산시설 및 재해예방시설 지원
- 지원 기준 : 보조 50%(국고 20, 지방비 30), 이차보전 30, 자부담 20
 - 이차보전 상환조건 : 고정 2.0%, 변동(시중금리 - 2.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24년 예산 : 94,938백만원(국비 27,125, 지방비 40,688, 융자(이차보전) 90,000, 자부담 27,125)

□ 사업 신청

- 장소 : 사업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주체에 제출하고, e나라도움 시스템에 사업등록
- 신청기간 : '23.10~12월

□ 대상자 선정

- 사업시행주체는 심사기준표에 의해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영체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해당 지자체에 추천하고, 지자체는 심의회 등을 개최하여 선정 완료 및 신청농가에 통보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사무관 장 미 주무관 성원우	044-201-2254 044-201-225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FTA기금관리팀	차장 서승완	061-931-1127
농협은행	농식품금융부	과장 신승곤	02-2080-7586

II. 주요내용

※ 사업신청, 대상자선정, 자금신청·배정, 사후관리 등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운용 병행

1. 사업대상자

- 지역(품목단위) 원예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하는 농가(또는 미참여) 또는 농업법인(이하 경영체), 사업시행주체·생산유통통합조직(공동이용시설에 한함)

[지원제외 대상자]

- 농업이외 종합소득금액(본인)이 37백만원 이상인 경영체는 지원 제외
 - * 사업신청 시점에서 농업이외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최근 연도의 소득기준으로 하되, 동 기준 적용시 불리한 퇴직자 등은 사업지원 당해연도 기준으로 신청자가 신고한 연금 수령 예상액 등 농업이외 소득을 계산하여 시·군 과수발전심의회 등에서 37백만원 미만자로 결정한 경우 지원 가능
 - * 다만, 다음 연도에 지자체 담당자가 사업 신청 연도 농업이외 소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득금액 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하고, 농업이외 소득이 37백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금을 반환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지원
- 폐업지원금을 지급받고 5년 이내 동일 품목을 재배하는 경영체는 지원 제외
- 농업경영체 미 등록 경영체('18년부터는 미등록 필지 포함), 5년 이내 동일 필지에 동일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는 사업대상자에서 지원 제외(다만, 동일사업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와 품종갱신을 단계적으로 나누어 실시하는 경우 및 자연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지원 가능)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제5항, 제79조제7항 규정에 해당되는 자
- 농정심의회 등에서 사업자 선정 심의 시에는 사업취지 및 목적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로 적절하지 않다고 심의·결정한 자는 지원 제외
 - * 중도포기자와 출하약정 위반자는 향후 3년간 FTA기금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단, 천재지변 등 농정심의회 등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
-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영체(의무자조금 단체가 결성된 품목에 한해 다음 해부터 적용)
 - * 사업대상 품목이 의무자조금 거출 시작된 품목인 경우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면제 대상인 경우 증빙서류 제출 시 지원 가능
- 가온시설* 재배 경영체(사업 지원 이후 5년간 자부담으로 가온시설 설치도 금지)
 - * 냉해 등 재해예방 목적이 아닌 수확기 조정을 위한 난방시설
- 2012년 3월 15일 이후 조성한 과원(다만, 지원사업의 종류가 재해예방시설의 경우 '21~26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 가능) * '재해예방시설'은 3. 지원대상 참고

2. 지원자격 및 요건

- 원예산업발전계획의 생산유통통합조직 참여(다만, 미참여 농가는 지원년도 기준으로 2025년까지 한시적 지원) 경영체 또는 지역 푸드플랜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경영체 고, 3년 이상 출하(사업시행주체와 지역 푸드플랜에 생산량의 80% 이상) 약정한 경영체

- 단, 전량 수출 경영체는 참여조직 등 출하 실적이 없더라도 지원자격 부여

- * 경영체가 속한 시군의 사업시행주체를 통해 신청하며, 생산 전량 수출 증빙을 위해 최근 3년간 재배면적(경영체 DB 기준), 생산(비상품 제외) 및 수출실적을 제시해야 함(내수 판매 적발 시 보조금 환수대상)

- 사업장 소재지 기준으로 관외 경작자도 지원 가능하며, 사업신청 및 선정시 차별하여서는 안됨

< 우선지원 >

- 친환경인증·GAP·계약재배·수출 등 참여 경영체, 농업재해보험 가입 경영체

- 과실전문APC운영협의회 회원조직에 출하하는 경영체

-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 또는 과수전업농 경영체

- 무병묘 관찰포 선정농가(출하실적 등에 관계없이 품종갱신, 기타사업 등 지원 가능)

- 식물방역법상 금지병해충 발생(화상병 등)으로 방제명령에 따라 폐원한 경영체(동일과원 또는 대체과원(동일면적)에 원예산업발전계획에 포함된 타 품목의 과수 식재 가능)

- 산지유통통합조직 참여 대상자

- 배 성장조절제(지베렐린·에세폰 등) 미처리 경영체

- * 성장조절제 미처리 경영체는 신청 시 미처리 약삭서를 작성하며, 사업시행주체는 미처리 여부를 현장 확인하고 시군 담당자에게 제출

- 농진청 등 국내에서 육성된 우량품종으로 갱신(고접포함)하는 경영체

- 지역 행복생활권 계획과 연계된 대상자 가점 부여

- 배(신고품종 한정)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 시 수분수 용으로 국내육성품종(황금, 화산, 추황배, 조이스킨 등)을 20% 이상 고접했거나 식재한 경영체

-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경영체(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 신청 심사표와 신용조사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가능한 경영체 우선지원

- * 심사결과 선정기준에 미달한 경영체에게는 행정기관에서 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사 의견제출 기회 부여

[선정기준 미달 경영체에 대한 재심사]

◆ 선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영체에 대하여는 시·군에 심사위원회를 두어 재심 요청이 가능하도록 체계 구축

- 사업성취 가능성, 신용도, 기술, 경영능력 등을 감안하여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재심사 후 대출기관에 통보

* 심사위원회 : 과수발전협의회, 농정심의회 활용 또는 행정지도기관관련단체 등으로 구성

3. 지원대상(지원사업의 종류)

○ 고품질생산 및 재해예방 등 경쟁력강화에 필요한 사업

- 관수관비시설, 관정개발, 농산물운반기(레일형), 무인방제시설, 방풍망시설, 배수 시설, 비가림시설, 비가림하우스(개보수 포함), 서리우박피해방지, 야생동물방지 시설, 작업로정비, 지주시설, 친환경과원관리, 품종갱신(기존 시설 활용 가능, 수분수 식재, 수분수 품종 고점 포함), 다겹보온커튼(기존 일반 비가림하우스의 동해 방지용), 환풍기, 공동이용설비, 재해예방용 농업용난방기, 냉해방지용 팬, 감귤원 원지정비(기존수목 굴취, 이랑조성, 우량품종 묘목식재(기존 수목의 이식 가능), 방풍수 정비), 기 지원시설·장비 중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한 시설·장비의 개보수

* 관수관비시설, 농산물운반기, 무인방제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다겹보온커튼, 공동이용설비, 환풍기, 재해예방용 농업용난방기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

* 예시사업 이외의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전승인 필요

* 재해예방시설: 관수관비시설, 방풍망시설, 서리우박피해방지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지주시설, 다겹보온커튼, 재해예방용 농업용난방기, 냉해방지용 팬 등 재해예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정하는 시설에 한정

- 다만, 전년도 연차평가 우수(2등급) 이상 사업시행주체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사업비의 20% 범위 내에서 아래 지역별·품목별 맞춤형사업 추진 가능

· 공동이용장비(SS기, 고소작업차, 승용제초기 등), 추가 사업(1개)

[경영체 지원제외 대상]

- 1) 직접투입재(비료·농약, 부직포설치, 타이벡 등 다공질필름 등)
- 2) 농기계(트랙터, 굴삭기, SS기, 온풍기, 예초기, 자주형 농산물운반기 등)
- 3) 소모성 자재 및 내구연한이 짧은 장비
- 4) 포도·감귤 등의 난방시설
- 5) 포도의 경우 난방기 사용 시 신규 가온시설이 될 수 있는 비가림 시설(자부담 확대로 가온시설 설치도 불가)

6) 기타 사업방향 및 목적과 상충되는 시설 및 장비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고품질 과실생산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구입 및 설치자금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지원조건)

○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보조 50%(국고 20, 지방비 30), 이차보전 30, 자부담 20

- 이차보전 상환조건 : 고정 2.0%, 변동(시중금리*-2.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용자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축협포함)

*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경우「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농식품부 예규)」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 농가 단위 피해율 수준에 따라 상환연기·이자감면 차등 지원 가능(관련 : 농어업재해대책법,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간접지원 대상 농업정책자금 고시)

- 농가단위 피해율 30% 이상 50% 미만 : 상환연기·이자감면 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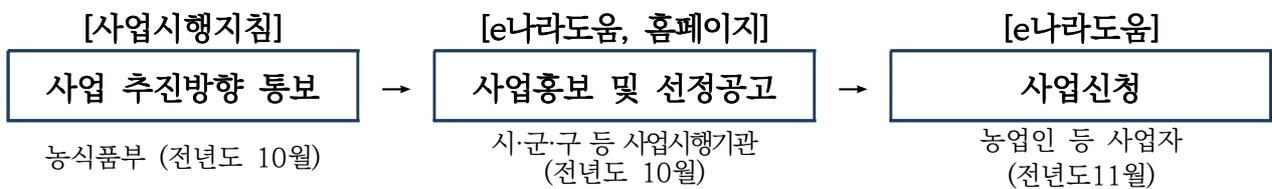
- 농가단위 피해율 50% 이상 : 상환연기·이자감면 2년

6. 지원한도액 기준

○ 사업별 지원 단가는 실 단가를 적용하되, 사업주관기관장 책임 하에 철저한 검토·확인(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 원가계산서, 타 지자체 사례 등)을 거쳐 집행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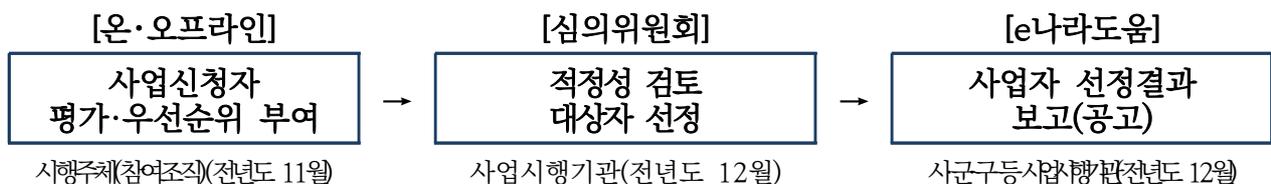
○ 농식품부는 전년도 10월 말까지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각 사업시행기관은 신속히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한다.

- 사업시행기관은 공고문에 e나라도움의 신청방법을 안내하고, 계약방법* 명시

* 보조사업 규모가 물품 및 용역구매 2천만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2억원 초과(전문공사 제외)인 경우 지자체·조달청을 통해 공개경쟁입찰을 하거나 사업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업체 선정

-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안내를 위하여 상담요원을 지정 운영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시행주체와 합동으로 원활한 보조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정보취약계층 업무대행 지원, 농식품사업의 교육·홍보 등의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 보조사업인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을 통해 공모등록하고 신청능가는 e나라도움에 사업을 신청(사업계획서 등록)해야 한다.
- 다만,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사업신청 대리 등록, 집행계획·정보입력·집행내역등록 등 e나라도움 업무대행자 지원을 받아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스템 사용 대리 신청, 피대리인 정보입력, 위임장,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 * 정보취약계층 :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고령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 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서[별표 1호 서식]를 작성하여 사업시행기관(지자체) 또는 사업시행주체(참여조직, 생산유통통합조직)에 제출(전년도 11월)하고, e-나라도움 시스템에 사업등록을 해야 한다.
- 용자 신청자는 거래농협을 통해 대출가능여부 및 가능액 확인하고, 용자금 3천만원 이상인 경영체는 대출신청자료[별표 1-2호 서식]를 제출
- 사업신청자가 농업인 등 농업경영체인 경우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 등록해야 한다.

2. 사업자 선정단계



가. 사업시행주체

- 지원대상 조직(사업시행주체, 참여조직 또는 생산유통통합조직)은 심사기준표에 의하여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영체를 우선순위를 정하여 해당 지자체에 추천(사업량, 중도포기자 등을 감안하여 추천)(전년도 11월말)
- * 시·군단위 사업시행주체는 사업시행주체가 우선순위 선정, 도단위 사업시행주체는 시·군통합(참여) 조직에서 우선순위 선정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용자금이 3천만원을 넘는 사업에 대해서는 대출신청자료 등을 제출토록 안내

- 사업자 선정 안내 시 보조사업 규모가 2억원 초과(물품 및 용역구매는 5천만원 초과)인 경우 지자체·조달청을 통해 공개경쟁입찰을 하거나 사업자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도록 계약방법을 명시
- 3천만원 미만의 지원금액을 신청한 경우는 사업신청자가 대출기관에 대출가능액을 확인하도록 안내

나. 시·군

-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비 가내시(안) 결정 후 사업시행주체에서 추천한 경영체 및 사업시행기관에 신청한 경영체 우선순위 적정성(선정순위 준수 등), 신용조사서 등을 검토한 후 농림축산식품심의회 등을 개최하여 내년도 사업대상자 선정 및 지원기준을 12월 20일까지 완료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보고하며, 보고 시 사업 계획 공고 및 선정위원회 심의 개최 결과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
 - 농정심의회 등에서 사업자 선정 심의 시에는 사업취지 및 목적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 시·군 담당자는 사업신청 및 사업자 선정 결과 등을 반드시 농림사업정보시스템 (AgriX)에 분기별로 등록·관리(e나라도움 연계시까지 병행 등록), 시·도 담당자는 입력 상황 지속 점검
- 영농철 이전에 공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당해연도 1월말까지 보조금교부결정 및 사업개시 통보를 완료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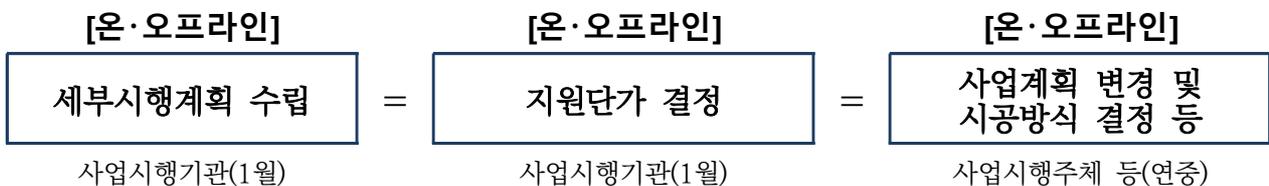
- 1) 심사기준표는 표준(안)을 활용하여 지역별, 사업별 여건에 맞게 보완하여 사용
- 2) 대상자의 필요사업량을 나누어 지원 금지, 미 이행시 사업계획 지원 제외 등 페널티
 - 예) A,B 경영체가 각각 소유한 500㎡의 포도과원에 대해서 비가림시설을 각각 500㎡을 신청 ⇒ A,B 경영체에 각각 250㎡씩 나눠 지원하는 것을 지양하고 우선순위가 빠른 경영체에게 필요사업량 500㎡을 모두 지원(나머지 경영체는 차기 지원)
- 3)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교부결정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수 있는 경영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사업 미개시, 포기자 발생 등을 대비하여 최대한 사업대상자 선정 후보자를 예비대상자로 선정하되 사업대상자 기준 30% 전후로 예비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함.

- 4) 특별한 사유없이 2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영체와 사업을 주어진 기간 내에(시군별로 사업완료 기간을 정함) 완료하지 않는 경영체는 선정이 자동으로 취소됨. 단, 천재지변 등 과수발전협의회 등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음.
- 5) 사업개시 및 완료여부 등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취소 및 유예기간을 부여하여야 함. 다만, 자부담금 우선집행(시공업체 계약금, 자재 구매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사업개시 여부에 대한 일제조사 실시를 생략할 수 있음
- 6) 선정 취소(미개시자 및 미 완료자) 또는 사업포기자 발생 시 우선순위에 따라 예비대상자에게 지원하여야 함. 또한 당해연도에 지원을 받지 못한 예비대상자는 가급적 다음연도에 업선하여 지원됨을 예고하여 행정 및 경영체의 투자 예측성 강화
- 7) 시·군은 시·군 통합조직 등 상위조직으로의 출하실적 등을 감안하여 참여조직 또는 생산유통통합조직단위로 사업비 배분
 - 참여조직 또는 생산유통통합조직은 신청서접수, 현장심사, 우선순위 선정, 출하 이행관리 등 담당
 - 시행주체는 참여조직 관리 및 통합마케팅 추진

〈요건 확인〉

- 관련기관 또는 경영체 등으로부터 계약체결, 이용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확인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의 G4C, 토지대장 등의 검색을 통해 확인

3.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가. 세부시행계획 수립

-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해당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여건에 맞도록 사업별 세부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시행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작성한 세부 시행계획 중 부적절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정정토록 지시

- 시·도지사는 사업별 세부시행계획서를 사업 확정 후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나. 지원단가 결정

- 세부사업별 지원단가는 객관적 자료(농협중앙회 계통구매단가, 종합물가정보, 원가 계산서 등)에 근거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한지를 시장·군수가 검토하여 결정
 - Agrix를 통해 타 시·군의 동일 사업 단가와 비교하는 등 매년 검토를 거쳐 반드시 조정하여야 함

다. 사업추진 컨설팅

- 전문가협의체 등을 통한 사업추진 컨설팅 계획 수립·보완 및 컨설팅 실시
 - 컨설팅 내용 : 사업계획 수립 참여 및 평가, 사업지원 대상자의 선정참여, 경영·기술지도, 현장애로 해결, 사업추진 지도·점검 등 사업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분야
- 컨설팅 비용의 지급 :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사업계획의 내용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검토하여 기금사업 운영비에서 지급
 - 비용지원분야 : 전문 컨설턴트의 활용, 사업평가 등 사업성과를 극대화하는데 필요한 비용

라. 사업계획 변경절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확정된 사업계획의 사업시행주체, 사업대상지역, 지원품목, 사업참여조직 등 주요 사항의 변경은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지원대상조직은 사업계획 선정시 승인된 생산자단체에 한하며, 참여조직 변경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 필요
 - 신규사업계획 평가시 승인된 품목에 한하며 품목변경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 필요
- 사업시행주체(지원대상조직)는 부득이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당해 사업주관 기관(시·도, 시·군)에 변경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범위내에서의 세부사업간 물량조정 및 지원단가 결정은 사업주관기관(시·군 또는 시·도)에서 검토하여 집행함

- 시·군 및 사업계획간 사업비 조정은 자체 조정 후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단, 연차평가결과 패널티 조직의 사업비 변경은 농식품부장관 승인 대상)
- 사업계획에 대한 기본방침이나 지시사항, 주요 사업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여야 함

마. 시공방식 결정 등

- 보조사업의 규모가 2억원 이상(물품 및 용역구매는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지자체·조달청을 통해 공개경쟁입찰을 하거나 보조사업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업체 선정(기본규정 제53조의2)
- 사업추진 시·군과 사업시행주체는 세부사업별로 시공주체(업체 또는 경영체)를 검토한 후 농정심의회 등에 승인요청, 농정심의회 등에서는 적정성(부실시공 우려 등) 등을 검토하여 승인여부 결정
- 시공업체를 통해서 시공하여야 하는 세부사업의 경우 경영체의 업체선정 편의 제공과 책임시공 등을 위하여 민간전문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통해 시공업체를 선정·공지(보조금 부당수령 관련 업체는 선정에서 제외, 명단 지속 관리)
 - 시공업체는 반드시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유자격자를 선정(비가립하우스는 반드시 전문업체를 통해 시공)
 - 지원을 받은 경영체는 선정·공지된 업체 중에서 자율적으로 업체를 선택하여 공사 추진
 - 선정된 시공업체는 반드시 직접시공을 하여야 하며, 하청시공 시 선정박탈 및 향후 5년간 시공업체 선정에 참여 불가(선정업체 및 하청업체)
- 조합 등 사업시행주체가 사업추진 경영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경우는 자재구입 및 시공을 공동입찰 또는 공동계약으로 일괄추진 가능
- 모든 시설은 각 지역별 내재해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등에 관한 규정,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 2022-104('22.9.30)호 전부개정 참고)
- 총 사업비 기준 5천만 원 이상 사업*은 반드시 시장·군수가 선정한 감리업체를 통해 공사감리** 시행하되, 감리 표준요율 내에서 사업비에 포함하여 집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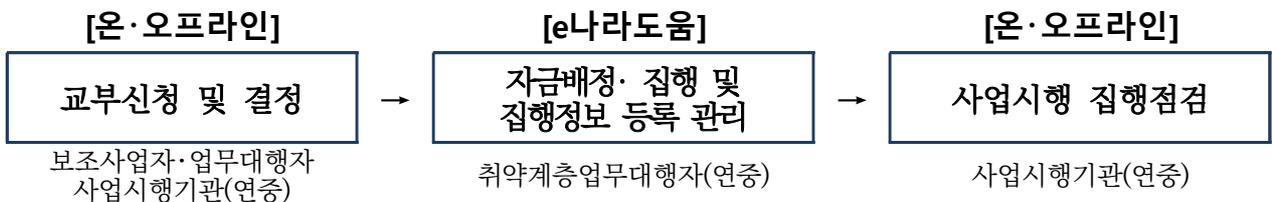
* II-3. 지원대상(지원사업의 종류)에 제시된 개별사업 기준, 총 사업비는 재원별 사업비를 합산한 총액을 말함 (국비+지방비+용자+자부담)

**「FTA기금 과수 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표준규격·설계·시방자료집」주요내용 준용 준수 및 내재해기준 충족 여부 등 감리 시행

바. 품종갱신사업 주의사항

- 우량품종갱신의 공급요목은 종자산업법에 의한 피해보상체계가 구축된 자체보증요목에 한정하여 지원하고, 시·도에서는 [별표 2호 서식]에 따라 다음연도 1월 말까지 실적보고
 - 배는 신고품종으로 갱신하는 경우 지원 제외
- '30년부터 무병묘 이용 의무화. 다만, 무병화묘 우선지원

4.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 사업대상자는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사업자 선정·확정통지를 받으면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비 중 자부담금을 보조금 전용 계좌에 입금 후 우선 집행
 - 다만,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금을 예탁교부받은 경우 자부담금 우선집행 원칙을 따르지 아니하고, e나라도움 운용원칙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해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대상자가 정보취약계층인 경우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전용계좌로 비예탁교부할 수 있으며, e나라도움 이용 관련 업무대행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대상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 (집행관리)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사업비의 집행관리를 해야 한다는 사항
 - * (사업별 지원원칙) 설계도와 시방서는「FTA기금 과수 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표준규격·설계·시방자료집」준용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의 여건 및 지역에 따라 변경 추진가능
 - * (계약) 1)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 제외)로서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 계약,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 가격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계약은 ①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 공개경쟁입찰 계약 ②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③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2)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인 사업인 경우 조달청의 조달서비스(위탁계약)를 신청하여 설계적정성 검토, 계약체결 등 수행
 - * (정산보고서 검증) 1) 농식품 보조금 3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정산보고서 검증 후 검증결과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2) 당해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 및 감사보고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 * (중요재산)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 업무대행자를 통한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 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 등록
- 사업대상자가 사업계획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만 보조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재사용 가능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대상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 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대상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자금배정〉

가. 시도(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경영체에게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8조 “농식품사업자금 집행 등”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함
 -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의 경우 경영체에게 직접 사업비를 집행하는 방안과 사업시행주체(품목조합, 지역농협, 법인 등)를 통하여 사업비를 집행하는 방안이 모두 가능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매월 사업자로부터 사업실적이 첨부된 자금배정신청서를 제출받아 사업추진상황을 확인하는 등 월별 소요자금을 정확히 파악한 후 사용 예정월의 전월 2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조금교부를 요구함
 -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서 자금교부 요청을 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할 때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 하며, 지원비율이 지켜지는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계획 변경 내용, 보조금 신청 및 집행상황 등을 수시로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및 e나라도움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함

* 시·군은 사업대상자, 자금집행상황 등을 Agrix에 분기별로 입력·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에 서는 부진한 시·군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 조치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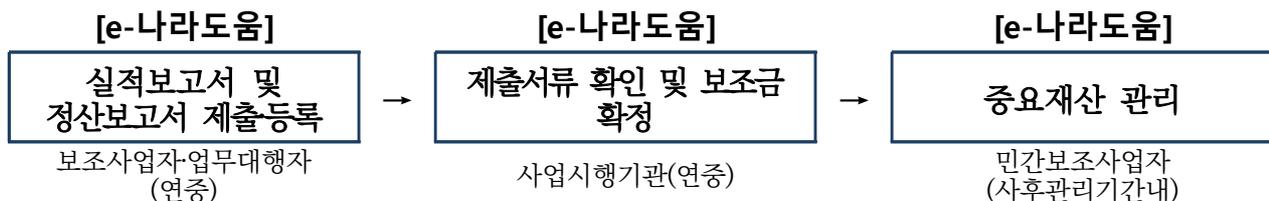
나. 대출취급기관

○ 대출취급기관이 지원대상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시장·군수)로부터 사업의 실적과 그 실적이 사업시행지침 및 증빙요건에 적합 한지를 확인 받아야 하며, 그에 적합한 실적에 상응하는 금액 범위내에서 대출을 실행하여야 함

○ 대출금은 지원대상자로부터 지급에 관한 동의를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이미 시설자금을 지급한 때에는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받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동 사실을 직접 서면으로 확인받은 후 지원대상자에게 지급 가능하다.

○ 해당 시·도지사(시장·군수)가 요청 시 과수시설현대화사업 용자금 대출 실행 실적을 통보하여야 함

5.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실적보고서는 경비를 재원별로 명확히 하여 정산보고서와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

- * (증빙자료) 1. 보조사업 전용 계좌를 통한 이체 및 이와 관련된 증빙자료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마친 자가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및 이와 관련한 증빙자료
 3. 보조사업 전용계좌와 연계된 보조사업 전용 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4.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계약에 대한 선수금 또는 정산금 요청 관련 서류 일체

- 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신청
- 정산보고서 검증 필요시 e나라도움에서 지정한 감사인에게 검증의뢰하거나 직접 감사인을 선정하여 검증결과 제출 가능
 - * 보조금을 보조사업 전용 계좌로 교부받은 보조사업자(비예치형)는 집행잔액, 이자 등을 해당 사업 시행기관에 직접 반납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시정·보완 요청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의 현황은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별지 제3호에 따르면 부가적으로 사진 등을 등록
- 보조금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보조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
 - * 등록된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해서는 e나라도움에서 자동으로 부기등기사항 검증, 다만, 비닐 하우스골조는 부기등기 대상에서 제외
- 사업시행기관은 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의 확정
- 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되며,
 -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의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기본규정」 제78조 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 사업시행기관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에 반드시 통보
- 농식품부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 이행점검단계 >

가. 사후관리

시·도(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화 방지 및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해 총괄부서와 사업부서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은 분기별 1회 이상 자체 점검하여야 하며, 년 1회 이상 시·도(시·군)간 교체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에 관한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사업주관기관에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함
-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사업완료검사를 하도록 한 후 정산하도록 함
 - 사업비 집행(인건비, 자재구입 등)은 반드시 금융기관 거래자료(무통장 입금표, 통장사본, 신용카드 등)로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여야 함(현금 거래 불가)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9조에 따라 추진
 - 3천만원 미만인 사업에 한해 사업비의 1/6 한도내에서 지원대상자 및 그 가족의 노무비도 1인에 한해 시장·군수의 확인하에 지급 가능
 - 사업비 정산 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반영하여야 함
 - * 환수할 경우 지원비율(국고·지방비·자부담 등)에 따라 환수 조치
- 사업주관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하며,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다음년도 3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지원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2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축물 등 부동산에 대한 ‘부기등기’를 실시하여야 함 (농어업경영체 육성법 제7조의2) * 비닐하우스골조는 제외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 부동산(토지, 건물, 비닐 하우스골조, 품종갱신 묘목 등)	준공일	10년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 부동산의 종물(건물내 기계설비)	준공일	7년간	
- 주요기계·장비·자재·품종 갱신 부속종물	구입일	5년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담보제공 등 처분시 농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 승인이 필요하며 임의로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도록 지자체, 금융기관(농업보조금 취급기관) 홈페이지 등에 농업보조 시설 및 장비 등 관리대장을 공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

-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받은 과원을 폐업할 경우 폐업지원금에서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으로 지원한 보조금을 차감하고 지급
- 대체과원은 동일 면적·동일 품목에 한하여 가능하고, 개발계획지구로 선정되었거나 보상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아니며, 기타사항은 과원폐업지원사업에 준하여 실시
- 식물방역법상 금지병해충 발생(화상병 등)으로 방제명령에 따라 폐원한 경영체의 중요재산이 방제과정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시·군 판단에 따라 손망실 처리(사용 가능한 중요재산은 관련규정에 따라 농업용으로 사후관리 실시)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사업추진현황, 정부지원자금의 활용현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추진 점검결과 지원 규모, 지원체계,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사업추진 지침, 계획 등에 반영 추진
- 사업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일정
 - 대상조직 : 시·도 및 시·군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
 - 점검반 : 농림축산식품부(주관), 시·도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점검항목

- 사업시행주체 추진실적, 적격 사업대상자 선정 여부, 출하약정 이행률, 사업단가 조정 여부, Agrix 입력 현황, 사업비 집행 적정성 등 세부 점검

* 사업점검 등 사후관리는 FTA기금운용규정 제29조에 의한 기금수탁관리자 및 유관기관 등과 합동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나. 제재 및 처벌내용

사업관리주체(시·도)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가 지원 자격에 미달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 및 용자금 지원받은 경영체에 대해서는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일정기간 동안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자금관리주체(농협)

- 자금취급기관은 다음의 부당사유 등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이행지 원기금운용규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사업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1) 대출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 2)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은 때
- 3) 관련법령을 위반한 때
- 4) 기타 약정사항 미 이행 등

IV. 평가 및 환류

1. 자체 평가

- 평가 주체 : 사업주관기관(시·도, 시·군)
- 중간평가(사업집행단계)
 - 평가 시기 : 사업착수 후 3~6월 중
 - 평가 방법 : 전문가 협의체, 전문 컨설팅 등을 활용
 - 평가 방향 :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문제점 발굴, 사업컨설팅
 - 평가결과 조치 : 당해연도 사업추진 및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등
- 사후평가(연차평가)
 - 평가 시기 : 당해연도 사업종료 후 3월 이내
 - 평가 방법 : 전문가 협의체, 지역농업 특화사업단, 전문 컨설팅 등을 활용
 - 평가 방향 : 사업목적 달성, 사업효과 분석, 제도개선사항 발굴
 - 평가결과 조치 :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 신규사업 발굴 등

2. 중앙 평가

- 평가 주체 : 농림축산식품부
- 중간평가(사업집행단계)
 - 평가 시기 : 사업 착수후 3개월 이후
 - 평가 방법 : 사업추진 현장점검
 - 평가 방향 : 사업계획 이행점검, 사업추진 컨설팅,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평가결과 조치 : 사업계획 수정 등 미비사항 보완조치 등
- * 사업점검 등 사후관리는 FTA기금운용규정 제29조에 의한 기금수탁관리자 및 유관기관 등과 합동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사후평가(연차평가)
 - 평가 시기 : 당해연도 사업종료 후 6월 이내
 - 평가 방법 : 민간평가기관 사업성과분석 용역
 - 평가 방향 : 사업목적 달성, 사업효과 분석, 제도개선사항 발굴
 - 평가결과 조치 : 예산 차등배분, 추가지원여부 판단, 예산지원 중단, 제도개선, 지원방향 개선, 평가결과 홍보, 과수산업발전계획 보완·승인 등
- * 사업추진상황 Agrix 미 입력 등 지침 미 준수시 사업평가를 통해 사업지원 제외 및 감점 등 조치

V. 202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5년도 사업수요조사

- 2025년도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영체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주체 및 시·군에 제출(2024.1.31일까지)
- 시·군은 사업 참여희망 경영체가 제출한 2025년도 사업신청 현황을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2024.2.28일까지)
- 시·도는 사업 참여희망 시·군이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한 2025년도 사업신청 현황에 대한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농식품부로 전송(2024.3.30일까지)
- 농식품부 사업담당부서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전송받은 사업신청 현황을 기초로 2025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2024.5.31일)
- FTA기금 관계자 워크숍 활용 수요조사 실시
 - 매년 하반기 중 FTA기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도, 시·군 등 지자체와 운영주체 관련자에게 과수경쟁력제고지원사업에 대한 설명 및 홍보와 함께 수요파악

2. 202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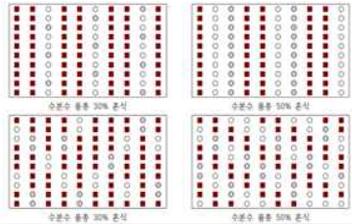
- 2024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VI. 주요 변경사항

※ 주요변경사항은 'II. 주요내용'의 변경(또는 신규사업)이 있을 경우에 작성

사업명	현행(2023)	변경(2024)	변경사유
과수품질안전다화	○ 최근 5년 이내 과수산업발전 계획의 사업시행주체(참여조직)·원예산업발전계획의 생산유통통합조직 참여 경영체 또는 지역 푸드플랜에 참여 실적이 있고, 3년 이상(생산량의 80% 이상) 출하 약정한 경영체	○ 최근 5년 이내 과수산업발전 계획의 사업시행주체(참여조직)·원예산업발전계획의 생산유통통합조직 참여(또는 미참여) 경영체 또는 지역 푸드플랜에 참여 실적이 있는 있고, 3년 이상(생산량의 80% 이상) 출하 약정한 경영체	
	○ 지역(품목단위) 원예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하는 농가 또는 농업법인(이하 경영체), 사업시행주체·생산유통통합조직(공동이용 시설에 한함)	○ 지역(품목단위) 원예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하는 농가(또는 미참여) 또는 농업법인(이하 경영체), 사업시행주체·생산유통통합조직(공동이용 시설에 한함)	
	<p>< 우선지원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인증·GAP·계약재배·수출 등 참여 경영체, 농업재해보험 가입 경영체 - (생략) - 식물방역법상 금지병해충 발생(화상병 등)으로 방제명령에 따라 폐원한 경영체(동일과원 또는 대체과원(동일면적)에 과수산업발전계획에 포함된 타 품목의 과수 식재 가능) 	<p>< 우선지원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인증 GAP·계약재배·수출 등 참여 경영체, 농업재해보험 가입 경영체 - (생략) - 식물방역법상 금지병해충 발생(화상병 등)으로 방제명령에 따라 폐원한 경영체(동일과원 또는 대체과원(동일면적)에 원예 과수산업발전계획에 포함된 타 품목의 과수 식재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품질생산 및 재해예방 등 경쟁력강화에 필요한 사업 - 관수관비시설, ~ (생략) ~ 서리우박피해방지, 야생동물방지 시설, 작업로정비, 지주시설, 친환경과원관리, 품종갱신(기존 시설 활용 가능), 다겹보온커튼(기존 일반 비가림하우스의 동해 방지용) ~ (생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품질생산 및 재해예방 등 경쟁력강화에 필요한 사업 - 관수관비시설, ~ (생략) ~ 서리우박피해방지, 야생동물방지시설, 작업로정비, 지주시설, 친환경과원관리, 품종갱신(기존 시설 활용 가능, 수분수 식재, 수분수 품종 고점 포함), 다겹보온커튼(기존 일반 비가림하우스의 동해 방지용), ~ (생략) ~ 	

사업명	현행(2023)	변경(2024)	변경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략) * (생략표) * 재해예방시설: 방풍망시설, 서리우박피해방지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지주시설, 다겹보온커튼, 재해예방용 농업용난방기, 냉해방지용 팬 등 재해예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정하는 시설에 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략) * (생략) * 재해예방시설: <u>관수관비시설</u>, 방풍망시설, 서리우박피해방지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지주시설, 다겹보온커튼, 재해예방용 농업용난방기, 냉해방지용 팬 등 재해예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정하는 시설에 한정 									
	<p><불입></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text-align: center; margin: 5px 0;">사업별 지원원칙</div>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세부 사업별</th> <th style="width: 85%;">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15. 품종 갱신</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과원의 갱신(대체)만 가능(신규 불가)하며, 기존 시설 활용 가능 ○ 종자산업법에 의한 피해 보상체계가 구축된 자체보증 묘목에 한정하여 지원하고, [별표 2호 서식]에 따라 1월말까지 실적보고 ○ 사업기간 : 2년차(1년차 30%, 2년차 70 배정) - 지역여건에 맞게 조정 가능 ○ 배는 신고품종으로 갱신하는 경우 지원 제외 ○ 묘목업체 자체보증 된 묘목을 사용 다만, 무병화묘 우선지원, '30년부터 무병화묘 의무화 </td> </tr> </tbody> </table>	세부 사업별	비 고	15. 품종 갱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과원의 갱신(대체)만 가능(신규 불가)하며, 기존 시설 활용 가능 ○ 종자산업법에 의한 피해 보상체계가 구축된 자체보증 묘목에 한정하여 지원하고, [별표 2호 서식]에 따라 1월말까지 실적보고 ○ 사업기간 : 2년차(1년차 30%, 2년차 70 배정) - 지역여건에 맞게 조정 가능 ○ 배는 신고품종으로 갱신하는 경우 지원 제외 ○ 묘목업체 자체보증 된 묘목을 사용 다만, 무병화묘 우선지원, '30년부터 무병화묘 의무화 	<p><불입></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text-align: center; margin: 5px 0;">사업별 지원원칙</div>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세부 사업별</th> <th style="width: 85%;">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15. 품종 갱신</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과원의 갱신(대체)만 가능(신규 불가)하며, 기존 시설 활용 가능 ○ 종자산업법에 의한 피해 보상체계가 구축된 자체보증 묘목에 한정하여 지원하고, [별표 2호 서식]에 따라 1월말까지 실적보고 ○ 사업기간 : 1~4년 - 예산은 사업기간 및 연부율을 고려하여 매년 신청·반영(이월하여 편성 금지) - 사업기간 및 연부율은 지역·품목·경영체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편성 - 지역여건에 맞게 조정 가능 ○ 배는 신고품종으로 갱신하는 경우 지원 제외 ○ 묘목업체 자체보증 된 묘목을 사용 다만, 무병화묘 우선지원, '30년부터 무병화묘 의무화 </td> </tr> </tbody> </table>	세부 사업별	비 고	15. 품종 갱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과원의 갱신(대체)만 가능(신규 불가)하며, 기존 시설 활용 가능 ○ 종자산업법에 의한 피해 보상체계가 구축된 자체보증 묘목에 한정하여 지원하고, [별표 2호 서식]에 따라 1월말까지 실적보고 ○ 사업기간 : 1~4년 - 예산은 사업기간 및 연부율을 고려하여 매년 신청·반영(이월하여 편성 금지) - 사업기간 및 연부율은 지역·품목·경영체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편성 - 지역여건에 맞게 조정 가능 ○ 배는 신고품종으로 갱신하는 경우 지원 제외 ○ 묘목업체 자체보증 된 묘목을 사용 다만, 무병화묘 우선지원, '30년부터 무병화묘 의무화 	
세부 사업별	비 고										
15. 품종 갱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과원의 갱신(대체)만 가능(신규 불가)하며, 기존 시설 활용 가능 ○ 종자산업법에 의한 피해 보상체계가 구축된 자체보증 묘목에 한정하여 지원하고, [별표 2호 서식]에 따라 1월말까지 실적보고 ○ 사업기간 : 2년차(1년차 30%, 2년차 70 배정) - 지역여건에 맞게 조정 가능 ○ 배는 신고품종으로 갱신하는 경우 지원 제외 ○ 묘목업체 자체보증 된 묘목을 사용 다만, 무병화묘 우선지원, '30년부터 무병화묘 의무화 										
세부 사업별	비 고										
15. 품종 갱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과원의 갱신(대체)만 가능(신규 불가)하며, 기존 시설 활용 가능 ○ 종자산업법에 의한 피해 보상체계가 구축된 자체보증 묘목에 한정하여 지원하고, [별표 2호 서식]에 따라 1월말까지 실적보고 ○ 사업기간 : 1~4년 - 예산은 사업기간 및 연부율을 고려하여 매년 신청·반영(이월하여 편성 금지) - 사업기간 및 연부율은 지역·품목·경영체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편성 - 지역여건에 맞게 조정 가능 ○ 배는 신고품종으로 갱신하는 경우 지원 제외 ○ 묘목업체 자체보증 된 묘목을 사용 다만, 무병화묘 우선지원, '30년부터 무병화묘 의무화 										

사업명	현행(2023)	변경(2024)	변경사유																																
	- (신설)	<p>[별첨]</p> <p><u>배 품종갱신시 품종별 적정 수분수 추천</u></p> <p><u>품종 및 식재 모식도</u></p> <p><input type="checkbox"/> 수분수 추천 품종</p> <table border="1" data-bbox="794 495 1182 1070"> <thead> <tr> <th>품종명</th> <th>적정 수분수</th> </tr> </thead> <tbody> <tr> <td>조이스킨</td> <td>추황배, 슈퍼골드</td> </tr> <tr> <td>신고</td> <td>추황배, 화산, 원황, 만황</td> </tr> <tr> <td>추황배</td> <td>화산, 원황, 슈퍼골드</td> </tr> <tr> <td>슈퍼골드</td> <td>추황배, 화산</td> </tr> <tr> <td>황금배</td> <td>추황배, 화산, 만황, 설원</td> </tr> <tr> <td>화산</td> <td>추황배, 원황, 슈퍼골드, 예향, 스위트코스트</td> </tr> <tr> <td>원황</td> <td>추황배, 화산, 만황, 창조, 스위트코스트</td> </tr> <tr> <td>신화</td> <td>추황배, 원황, 만황, 창조, 스위트코스트</td> </tr> <tr> <td>만황</td> <td>화산, 원황, 창조, 스위트코스트, 만풍배</td> </tr> <tr> <td>창조</td> <td>화산, 만황, 스위트코스트</td> </tr> <tr> <td>스위트코스트</td> <td>화산, 원황, 만황, 창조</td> </tr> <tr> <td>한아름</td> <td>만풍배, 만황, 스위트코스트</td> </tr> <tr> <td>만풍배</td> <td>만황, 창조, 설원, 스위트코스트</td> </tr> <tr> <td>설원</td> <td>만풍배</td> </tr> <tr> <td>그린시스</td> <td>만풍배, 설원</td> </tr> </tbody> </table> <p><input type="checkbox"/> 배나무 수분수 식재의 여러 형태</p> <p><u>모식도</u></p> <p>■ (주품종), ○·◎ (수분수 품종)</p> 	품종명	적정 수분수	조이스킨	추황배, 슈퍼골드	신고	추황배, 화산, 원황, 만황	추황배	화산, 원황, 슈퍼골드	슈퍼골드	추황배, 화산	황금배	추황배, 화산, 만황, 설원	화산	추황배, 원황, 슈퍼골드, 예향, 스위트코스트	원황	추황배, 화산, 만황, 창조, 스위트코스트	신화	추황배, 원황, 만황, 창조, 스위트코스트	만황	화산, 원황, 창조, 스위트코스트, 만풍배	창조	화산, 만황, 스위트코스트	스위트코스트	화산, 원황, 만황, 창조	한아름	만풍배, 만황, 스위트코스트	만풍배	만황, 창조, 설원, 스위트코스트	설원	만풍배	그린시스	만풍배, 설원	
품종명	적정 수분수																																		
조이스킨	추황배, 슈퍼골드																																		
신고	추황배, 화산, 원황, 만황																																		
추황배	화산, 원황, 슈퍼골드																																		
슈퍼골드	추황배, 화산																																		
황금배	추황배, 화산, 만황, 설원																																		
화산	추황배, 원황, 슈퍼골드, 예향, 스위트코스트																																		
원황	추황배, 화산, 만황, 창조, 스위트코스트																																		
신화	추황배, 원황, 만황, 창조, 스위트코스트																																		
만황	화산, 원황, 창조, 스위트코스트, 만풍배																																		
창조	화산, 만황, 스위트코스트																																		
스위트코스트	화산, 원황, 만황, 창조																																		
한아름	만풍배, 만황, 스위트코스트																																		
만풍배	만황, 창조, 설원, 스위트코스트																																		
설원	만풍배																																		
그린시스	만풍배, 설원																																		

사업명	현행(2023)	변경(2024)	변경사유																																																																								
	<p>[별표 제 1호 서식] FTA기금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안) ※ 작성하시기 전에 뒷면에 작성요령 등을 읽어보시고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table border="1" data-bbox="379 510 772 981"> <tr> <td rowspan="3">신청인</td> <td colspan="2">주소</td> <td rowspan="2">생년월일</td> <td rowspan="2">TEL</td> <td rowspan="2">HP</td> </tr> <tr> <td>성명</td> <td></td> </tr> <tr> <td>소속 (법인명)</td> <td>전화번호</td> <td></td> <td></td> <td></td> </tr> <tr> <td>사업예칭지</td> <td colspan="5">소재지</td> </tr> <tr> <td rowspan="2">과수재배현황</td> <td>과종</td> <td>재배면적(m)</td> <td>생산액(상량(kg))</td> <td>과수수령</td> <td></td> </tr> <tr> <td>사립신청</td> <td>세부사립명 (m/m)공</td> <td>자원단가 (천원)</td> <td>사업비(천원)</td> <td>비고 (품종, 생산액, 수확시기 등)</td> </tr> <tr> <td colspan="6"> <p>농림축산식품부야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 제6조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신청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사업신청과 관련된 본인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사업신청과 관련된 본인의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사업신청과 관련된 본인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p> <p>위와 같이 FTA기금 농림축산식품사업예칭지를 확충하고년도고품질 생산시설현대화사업을 신청합니다. 2) . . . 신청자 주소 성명 (인) ○○사업예칭지(생년월일)구하 ○○사업예칭지(생년월일)구하</p> <p>첨부서류 1. 사업신청경계상표 2. 대졸신청(응용)3천원 이상 3. 사업장 토지 중량류(토지)장 지역도 농림부 또는 농업정책등록장 4. 간접비용(농업)의 작업하는 소득에 증명(세무서에서 발급) 5. (전량수출경계) 최근3년간(생(바)품) 및 수출 실적 <붙임>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p> </td> </tr> </table>	신청인	주소		생년월일	TEL	HP	성명		소속 (법인명)	전화번호				사업예칭지	소재지					과수재배현황	과종	재배면적(m)	생산액(상량(kg))	과수수령		사립신청	세부사립명 (m/m)공	자원단가 (천원)	사업비(천원)	비고 (품종, 생산액, 수확시기 등)	<p>농림축산식품부야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 제6조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신청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사업신청과 관련된 본인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사업신청과 관련된 본인의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사업신청과 관련된 본인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p> <p>위와 같이 FTA기금 농림축산식품사업예칭지를 확충하고년도고품질 생산시설현대화사업을 신청합니다. 2) . . . 신청자 주소 성명 (인) ○○사업예칭지(생년월일)구하 ○○사업예칭지(생년월일)구하</p> <p>첨부서류 1. 사업신청경계상표 2. 대졸신청(응용)3천원 이상 3. 사업장 토지 중량류(토지)장 지역도 농림부 또는 농업정책등록장 4. 간접비용(농업)의 작업하는 소득에 증명(세무서에서 발급) 5. (전량수출경계) 최근3년간(생(바)품) 및 수출 실적 <붙임>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p>						<p>[별표 제 1호 서식] FTA기금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안) ※ 작성하시기 전에 뒷면에 작성요령 등을 읽어보시고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table border="1" data-bbox="799 477 1174 981"> <tr> <td rowspan="3">신청인</td> <td colspan="2">주소</td> <td rowspan="2">생년월일</td> <td rowspan="2">TEL</td> <td rowspan="2">HP</td> </tr> <tr> <td>성명</td> <td></td> </tr> <tr> <td>소속 (법인명)</td> <td>전화번호</td> <td></td> <td></td> <td></td> </tr> <tr> <td>사업예칭지</td> <td colspan="5">소재지</td> </tr> <tr> <td rowspan="2">과수재배현황</td> <td>과종</td> <td>재배면적(m)</td> <td>생산액(상량(kg))</td> <td>과수수령</td> <td></td> </tr> <tr> <td>사립신청</td> <td>세부사립명 (m/m)공</td> <td>자원단가 (천원)</td> <td>사업비(천원)</td> <td>비고 (품종, 생산액, 수확시기 등)</td> </tr> <tr> <td colspan="6"> <p>농림축산식품부야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 제6조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신청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사업신청과 관련된 본인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사업신청과 관련된 본인의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사업신청과 관련된 본인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p> <p>위와 같이 FTA기금 농림축산식품사업예칭지를 확충하고년도고품질 생산시설현대화사업을 신청합니다. 2) . . . 신청자 주소 성명 (인) ○○사업예칭지(생년월일)구하 ○○사업예칭지(생년월일)구하</p> <p>첨부서류 1. 사업신청경계상표 2. 대졸신청(응용)3천원 이상 3. 사업장 토지 중량류(토지)장 지역도 농림부 또는 농업정책등록장 4. 간접비용(농업)의 작업하는 소득에 증명(세무서에서 발급) 5. (전량수출경계) 최근3년간(생(바)품) 및 수출 실적 <붙임>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p> </td> </tr> </table>	신청인	주소		생년월일	TEL	HP	성명		소속 (법인명)	전화번호				사업예칭지	소재지					과수재배현황	과종	재배면적(m)	생산액(상량(kg))	과수수령		사립신청	세부사립명 (m/m)공	자원단가 (천원)	사업비(천원)	비고 (품종, 생산액, 수확시기 등)	<p>농림축산식품부야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 제6조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신청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사업신청과 관련된 본인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사업신청과 관련된 본인의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사업신청과 관련된 본인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p> <p>위와 같이 FTA기금 농림축산식품사업예칭지를 확충하고년도고품질 생산시설현대화사업을 신청합니다. 2) . . . 신청자 주소 성명 (인) ○○사업예칭지(생년월일)구하 ○○사업예칭지(생년월일)구하</p> <p>첨부서류 1. 사업신청경계상표 2. 대졸신청(응용)3천원 이상 3. 사업장 토지 중량류(토지)장 지역도 농림부 또는 농업정책등록장 4. 간접비용(농업)의 작업하는 소득에 증명(세무서에서 발급) 5. (전량수출경계) 최근3년간(생(바)품) 및 수출 실적 <붙임>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p>						
신청인	주소		생년월일	TEL				HP																																																																			
	성명																																																																										
	소속 (법인명)	전화번호																																																																									
사업예칭지	소재지																																																																										
과수재배현황	과종	재배면적(m)	생산액(상량(kg))	과수수령																																																																							
	사립신청	세부사립명 (m/m)공	자원단가 (천원)	사업비(천원)	비고 (품종, 생산액, 수확시기 등)																																																																						
<p>농림축산식품부야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 제6조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신청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사업신청과 관련된 본인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사업신청과 관련된 본인의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사업신청과 관련된 본인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p> <p>위와 같이 FTA기금 농림축산식품사업예칭지를 확충하고년도고품질 생산시설현대화사업을 신청합니다. 2) . . . 신청자 주소 성명 (인) ○○사업예칭지(생년월일)구하 ○○사업예칭지(생년월일)구하</p> <p>첨부서류 1. 사업신청경계상표 2. 대졸신청(응용)3천원 이상 3. 사업장 토지 중량류(토지)장 지역도 농림부 또는 농업정책등록장 4. 간접비용(농업)의 작업하는 소득에 증명(세무서에서 발급) 5. (전량수출경계) 최근3년간(생(바)품) 및 수출 실적 <붙임>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p>																																																																											
신청인	주소		생년월일	TEL	HP																																																																						
	성명																																																																										
	소속 (법인명)	전화번호																																																																									
사업예칭지	소재지																																																																										
과수재배현황	과종	재배면적(m)	생산액(상량(kg))	과수수령																																																																							
	사립신청	세부사립명 (m/m)공	자원단가 (천원)	사업비(천원)	비고 (품종, 생산액, 수확시기 등)																																																																						
<p>농림축산식품부야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 제6조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신청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사업신청과 관련된 본인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사업신청과 관련된 본인의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사업신청과 관련된 본인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p> <p>위와 같이 FTA기금 농림축산식품사업예칭지를 확충하고년도고품질 생산시설현대화사업을 신청합니다. 2) . . . 신청자 주소 성명 (인) ○○사업예칭지(생년월일)구하 ○○사업예칭지(생년월일)구하</p> <p>첨부서류 1. 사업신청경계상표 2. 대졸신청(응용)3천원 이상 3. 사업장 토지 중량류(토지)장 지역도 농림부 또는 농업정책등록장 4. 간접비용(농업)의 작업하는 소득에 증명(세무서에서 발급) 5. (전량수출경계) 최근3년간(생(바)품) 및 수출 실적 <붙임>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p>																																																																											

<붙임>

사업별 지원원칙

- ◇ 설계도와 시방서는 과원의 여건 및 지역에 따라 변경하여 사업추진 가능
 - 다만, 모든 시설은 각 지역별 내재해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2-104호, 2022.9.30. 전부개정 참고)
- ◇ 주요 기계·장비는 가급적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보증을 받은 기계·장비를 구입하여야 한다.

세부사업별	비 고
1. 관수관비시설	
2. 관정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수법 제8조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 신고 ○ 지하수법시행령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3년주기 농업용수 수질검사 ○ 기준채수량은 지역별 여건에 따라 30%이내에서 시군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3. 농산물운반기	○ 레일형 농산물운반기에 한정 지원
4. 무인방제시설	
5. 방풍망시설	
6. 배수시설	
7. 비가림시설	○ 비밀폐식으로 가온가능시설은 제외
8. 비가림하우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을 영위하는 전문업체를 통해서 시공 ○ 포도는 시설포도로 구조변경이 가능한 경우에는 설치 불가
9. 다겹 등 보온커튼 (기존 일반 비가림하우스의 동해방지용)	○ 기존 일반형 비가림하우스에 재배되는 노지포도 등의 동해 방지용으로 지원, 난방 금지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필요
10. 서리우박피해방지	
11. 야생동물방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조망은 폭설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가급적 개폐식으로 설치 ○ 카바이트를 사용하여 폭음을 내는 조수류 퇴치기 지원 금지
12. 작업로정비	
13. 지주시설	
14. 친환경과원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소당 20ha 이상, 개별 경영체단위 지원 금지 ○ GAP의 경우, GAP인증 단체 또는 조직에 한함 ○ IPM, GAP 과원관리에서 농약구입 지원 제외('24년부터 적용) ○ GAP 과원관리 지원기간은 사업시작시점부터 최대 3년 ○ 컨설팅(병해충 예찰 포함)은 반드시 진행하며, 사업비에 포함하여 진행 ○ 농약 및 자재 등은 검증기관을 통해 성능, 품질이 검증된 제품을 사용 * 농약 및 자재 등 물품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개경쟁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며, 임의로 분리발주 등 수의계약을 통해 진행 불가

세부사업별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도지사는 신규 친환경과원관리사업에 대해 과수분야스마트팜 단지형 사업설명회 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교육문화정보원에 2월 말까지 신청 [별표 3호 서식]
15. 품종갱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과원의 갱신(대체)만 가능(신규 불가)하며, 기존 시설 활용 가능 ○ 종자산업법에 의한 피해보상체계가 구축된 자체보증 묘목에 한정하여 지원하고, [별표 2호 서식]에 따라 1월말까지 실적보고 ○ 사업기간 : 1~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은 사업기기간 및 연부율을 고려하여 매년 신청·반영(이월하여 편성 금지) - 사업기간 및 연부율은 지역·품목·경영체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편성 ○ 배는 신고품종으로 갱신하는 경우 지원 제외 ○ 묘목업체 자체보증 된 묘목을 사용 다만, 무병화묘 우선지원, '30년부터 무병화묘 의무화
16. 공동이용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수목파쇄기, 꽃가루은행, 석회유황합, 식품영양제조기 등 ○ 영농조합 등 법인격의 생산자단체만 가능
17. 재해예방용 난방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방기에서 약 15m 거리에 설치된 온도센서의 지시값(온실내 부온도)을 최고 10℃까지만 상승하도록 컨트롤박스를 설정한 후 봉인(일련번호가 있는 것으로 봉인하고, 수리시 지자체에 신고 후 재봉인)
18. 감귤원 원지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귤원 원지정비(기존수목 굴취, 이랑조성, 우량품종 묘목식재(기존 수목의 이식 가능), 방풍수 정비)
19. 지역·품목별 맞춤형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 연차평가 우수(2등급) 이상 사업시행주체는 사업비의 20%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추진
- 공동이용장비 (고소작업대, 농업용 굴삭기, 승용제초기, SS기, 다목적 운반기, 운반차량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이용장비는 사업시행주체(참여조직)의 임대나 농작업 대행에 필요한 장비를 3억원 이내에 지원 ○ 지역 내 영농여건, 농가수요, 농기계임대사업 추진여부, 전담운영인력, 보관방법 등에 대한 계획 수립 ○ 임대료는 농신청에서 발간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가이드'에서 제시한 금액을 참고하여 산정 ○ 공동이용장비 운영주체는 장비 관리대장과 장비 임대차 관리대장을 사무소에 상시 비치 [별표 4-3호 서식]
- 추가 사업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로 1개 사업에 한해 시·도지사가 승인하여 시행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생력화 등에 필요한 사업 - 로컬푸드, 직거래 등 정부 유통구조개선 정책과 부합하는 유통을 하는 경영체나, 친환경인증(친환경농업육성법)·글로벌GAP인증 경영체는 예외적으로 시행주체(참여조직)와의 출하실적(약정) 없이 지원 가능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

I. 사업 개요

□ 목 적

- 과수분야 ICT 시설장비를 통해 노동력을 절감하고 고품질 과수를 생산함으로써 과수산업 경쟁력 확보

□ 사업내용

- 과수분야의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시설 내 ICT 융복합 시설장비 정보 시스템 포함) 등 지원

□ 지원 자격 및 요건

- ICT 융복합 시설 적용이 가능한 과수재배 농업경영체

□ 지원내용 및 예산

- 사업별 지원단가는 실단가를 적용, 사업비 상한액 기준은 200백만원
- '24년 예산 : 980백만원(국비 280, 지방비 420, 이차보전 74, 자부담 280)

□ 사업 신청

- 장소 : 해당 시·군·구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고 e나라도움 시스템에 사업 등록
- 신청기간 : '24.3~4월

□ 대상자 선정

-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를 거쳐 농식품부에서 선정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사무관 장 미 주무관 성원우	044-201-2254 044-201-2255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통기획부	과장 김준수	044-931-1013

II.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ICT 융복합 시설 적용이 가능한 과수재배 농업경영체

- 사과, 배, 감귤 등의 작물이 식재되어 있고 관수 등이 가능한 과수원(시설·노지)
* 10,000㎡를 기본단위로 규모별로 적용(최소 1,000㎡ 이상)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농가)

- 조직단위로 신청한 농가, 수출 농가, 친환경·GAP·재해보험·계약재배 농가, 지역 단위 푸드플랜에 참여(또는 참여약정)하고 있는 농가, 산지유통혁신조직 시범사업(또는 참여약정), 생산유통통합조직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 등 가점부여

※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대상(먹거리계획 협약을 맺은 지자체)으로 선정된 지자체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량 범위내에서 사업성 및 요건 등 필수 사항만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사업대상자로 선정·지원

○ 지원제외 대상자

- 열대·아열대 과수 재배 경영체
- 과수(품목과 무관)를 가온시설*에서 재배하는 경영체

* 재해예방 목적이 아닌 수확기 조정을 위한 난방시설로, 사업 지원 이후 5년간 자부담 등을 통한 가온시설 설치도 금지

3. 지원대상

○ 과수분야의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시설 내 ICT 융복합 시설장비 정보시스템 포함)

- 온도/습도, 풍속, 강우, 토양수분 등과 병해충 예찰정보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 장비 및 영상모니터링 장비 등
- 관수, 시비, 농약살포 등의 제어를 위한 ICT 융복합 통합 제어장비 등
- 과수원의 센싱·제어정보의 모니터링, 제어 및 분석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 등

* 시설현대화 등의 농림사업에서 지원받은 동일 지역의 동류 시설장비의 경우, 중복지원 불가능하며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시스템 연계비용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가능함

※ 정보시스템을 통한 ICT 융복합 시설관리 및 생산·경영관리는 필수사항임

○ ICT 연계를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

- 관정, 관수관비시설, 무인방제시설, 서리피해방지, 양액시설, 자동개폐기, 환풍기 등 사업자 선정평가 결과 ICT장비 연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장비

* 상기 장비 등은 ICT장비와의 연계없이 단독으로 지원 불가

- 단, 노지를 시설로 바꾸기 위한 비가림시설, 비가림하우스는 지원 제외

*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원예시설현대화사업에서 지원되는 시설·장비에 한정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업경영체별 사업계획 확정결과에 따라 기존 소요액을 지원

* 농가별 사업계획은 사업자 선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ICT 융복합 시설업체에서는 농식품부의 규격 및 서비스 기준을 충족하고, 한국농기계조합의 품질보증을 득해야 함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지원조건)

○ 국고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비율 : 국고보조 20%, 이차보전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이차보전 : 고정 2.0%, 변동(시중금리* -2.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이차보전 및 자부담을 지방비로 대체 가능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경우「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농식품부 예규)」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 농가 단위 피해율 수준에 따라 상환연기·이자감면 차등 지원 가능(관련 : 농어업재해대책법,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간접지원 대상 농업정책자금 고시)

- 농가단위 피해율 30% 이상 50% 미만 : 상환연기·이자감면 1년

- 농가단위 피해율 50% 이상 : 상환연기·이자감면 2년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표준사업비 : 노지(20백만원/ha), 시설(복합환경관리 20백만원/0.33ha, 단순 환경관리 7백만원/0.33h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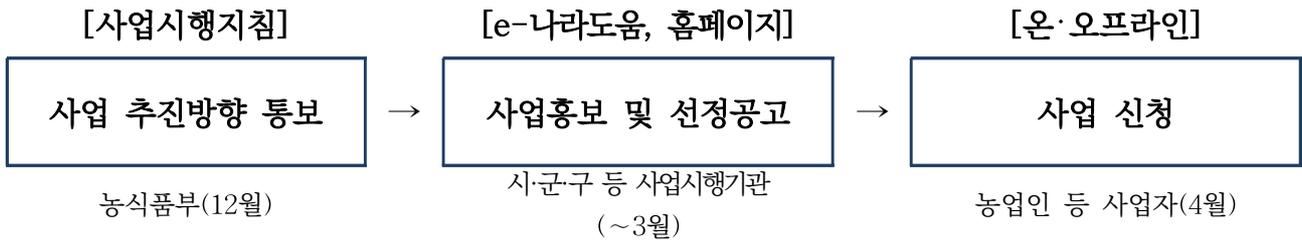
* 면적 및 시설 추가에 따른 사업비 증액은 규격 및 서비스 기준을 준수하고 사업자 선정평가 시 의견 및 실소요액을 반영

○ 사업비 상한액 기준 : 200백만원

※ ICT 연계를 위해 필요한 사업비는 상기 표준사업비 및 사업비 상한액 기준에 제외되며, ICT 연계를 위해 필요한 사업비 기준 및 집행 등은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원예시설현대화사업 지침 준용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 농식품부는 전년도 12월까지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각 사업시행기관은 3월까지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한다.
 - 사업시행기관은 공고문에 e나라도움의 신청방법을 안내
 -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안내를 위하여 상담요원을 지정 운영
- 사업시행기관은 원활한 보조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정보취약계층 업무대행 지원, 농식품사업의 교육·홍보 등의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 보조사업인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을 통해 공모등록하고 신청농가는 e나라도움에 사업을 신청(사업계획서 등록)해야 한다.
 - 다만,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사업신청 대리 등록, 집행계획·정보입력·집행내역등록 등 e나라도움 업무대행자 지원을 받아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스템 사용 대리 신청, 피대리인 정보입력, 위임장,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 * **정보취약계층** :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고령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 사업신청자는 해당 사업시행기관·시행주체에 사업신청서[첨부 1]를 제출(전년도 4월)하고 e나라도움 시스템에 사업등록을 해야 한다.
 - 이차보전 신청자는 거래농협을 통해 대출가능여부 및 가능액 확인하고, 이차보전금 3천만원 이상인 경영체는 대출신청자료를 제출
- 사업신청자가 농업인 등 농업경영체인 경우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 등록해야 한다.

- 평가단 구성 : 6명 내외로 구성
- 주요평가내용 : 사업계획 적정성, 사업 필요성, 성공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

□ 평가결과 조치

- 평가 기준에 따라 점수(총 26점)를 매기고, 최종 의견을 적합/보완/보류/부적합 중 하나로 표시
 - ‘적합’ : 적합한 사업대상
 - ‘보완’ : 일부 계획 보완 시 적합한 사업대상
 - * ‘보완’ 대상자는 평가 결과 통보 후 2주 이내에 보완 신청서를 시·군을 통해 제출해야 하며, 시·군은 이를 전담기관에 송부
 - ‘보류’ : 서류심사로는 적합성 평가가 어려워 2차 현장평가가 필요한 대상
 - ‘부적합’ : 사업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아 선정 불가

다. 현장평가

□ 서면평가 결과 ‘보류’ 의견을 받은 농가에 대하여 현장평가 실시

- 평가단 구성 : 6명 내외(이전 단계 평가 참여위원 포함)
- 주요평가내용 : 이전 단계 평가 시 확인이 어려웠던 부분을 정밀하게 확인

□ 평가결과 조치

- 보류되었던 평가지표의 점수를 최종 산정하고, 최종 의견(적합/보완/부적합)에 따라 선정 여부 결정

라. 최종선정

□ 최종 의견을 고려하여 적합한 대상 선정

- 최종 평가결과 적합한 대상자를 평균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선정
 - * 최종 평가결과 적합한 대상자 : ‘적합’ 평가를 받은 신청자, ‘보완’ 평가 이후 의견을 반영해 신청서를 보완 완료한 신청자, ‘보류’ 평가 이후 ‘적합’ 평가를 받거나 ‘보완’ 평가를 받은 후 신청서를 보완 완료한 신청자
 - * ‘보완’ 대상자는 평가 결과 통보 후 2주 이내에 보완 신청서를 시·군을 통해 제출해야 하며, 시·군은 이를 전담기관에 송부
- 평가결과 적합한 대상자이지만 선정이 되지 못한 경우 예비대상자로 운영하며, 선정 취소 또는 사업포기 발생 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 * 지자체는 사업자 선정 후 6월 이내 미착수 시 선정 취소 및 대체사업자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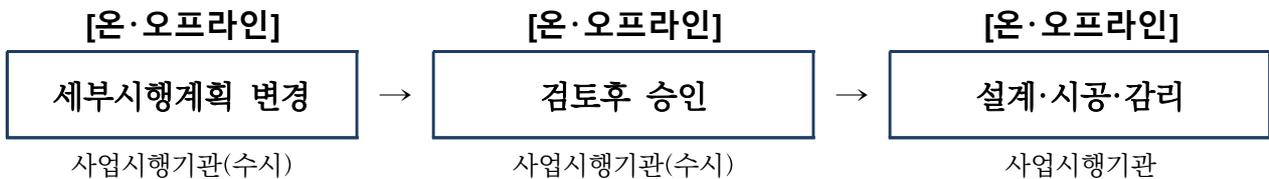
-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사업대상자에게 통보(8월)
 - 지원계획, 대출방법 등을 사업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신속한 사업 착수 지도
- <사업 포기자 지원 제한>**

* 최종 선정된 이후 중도 포기한 자는 향후 2년간 FTA기금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

마. 선정 농가 교육

- 전담기관은 사업대상자에 대해 ICT 장비 활용 관련 교육 실시(9~11월)

3.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설계·시공·감리

- 시장·군수는 주요 시설의 설계·시공·감리 시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효율성 및 안전성이 높은 시설로 계획
- 총 사업비 기준 5천만 원 이상 사업은 반드시 시장·군수가 선정한 감리업체를 통해 공사감리 시행하되, 감리 표준요율 내에서 사업비에 포함하여 집행
 - *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사업 II-3. 지원대상(지원사업의 종류)에 제시된 개별사업 기준, 총 사업비는 재원별 사업비를 합산한 총액을 말함(국비+지방비+이차보전+자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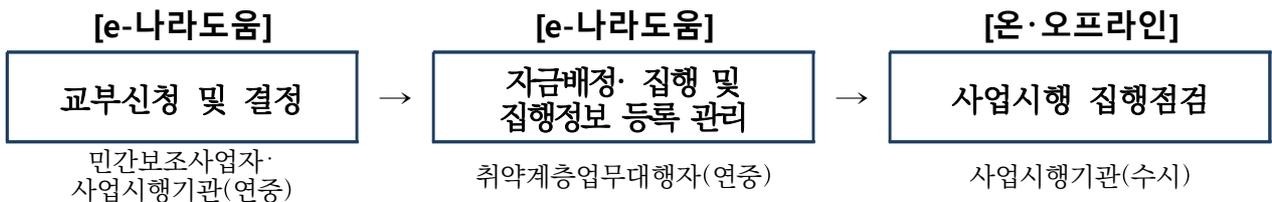
지자체

- 농업경영체(또는 조직)는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당해 시·군에 변경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 요청하고, 시장·군수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 여부 결정
-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의 세부시설간 물량조정 및 지원단가 총액 조정, 지원단가 내 품명과 세부단가 등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주관 기관(시·군 또는 시·도)에서 변경하여 집행
- 세부시설별 지원단가 및 내역 등은 반드시 농식품부의 규격 및 서비스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 적용하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산출근거를 첨부하여야 함
- 지원대상 기계·장비는 반드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품질보증 제품 사용

사업변경절차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지역, 지원품목, 조직 등의 변경사항 발생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군 예산 범위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시·도 및 전담기관에 제출(시·도는 농식품부로 제출)
 - * 전담기관에 제출할 때는 변경사업계획서를 포함하여 제출(개인정보는 암호화)
 - 시·군 단위 총사업비 증감이 있는 경우나 사업대상자 변경 등의 경우, 시·도는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변경안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로 제출
- 시·도 단위 전배가 필요한 경우,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예산 등을 고려하여 농식품부에서 변경 승인
- 사업시행주체(지원대상조직)는 부득이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당해 사업 주관기관(시·군)에 변경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사업계획 변경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계획 변경이나,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된 보조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며, 착공일 기준으로 3년간 동 사업 참여 제한

4.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 계획에 따른 사업비 중 자부담금을 보조금 전용 계좌에 입금 후 우선 집행
 - 다만,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금을 예탁교부받은 경우 자부담금 우선집행 원칙을 따르지 아니하고, e나라도움 운용원칙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해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보조사업자가 정보취약계층인 경우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전용계좌로 비예탁교부할 수 있으며, e나라도움 이용 관련 업무대행
- 사업시행기관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 (집행관리)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사업비의 집행관리를 해야 한다는 사항
 - * (계약) 1)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 제외)로서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 계약,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

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 가격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계약은 ①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 공개경쟁입찰 계약 ②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③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2)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인 사업인 경우 조달청의 조달서비스(위탁계약)를 신청하여 설계적정성 검토, 계약체결 등 수행

* (정산보고서 검증) 1) 농식품 보조금 3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정산보고서 검증 후 검증결과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2) 당해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 및 감사보고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 업무대행자를 통한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 등록
- 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만 보조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재사용 가능
- 사업시행기관은 보조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 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 사업시행기관은 보조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45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자금배정〉

〈자금집행 체계 및 절차〉

◇ 기성고(준공) 확인 신청(사업자→시장군수) ⇒ 보조금 및 이차보전금 신청 및 배정(지자체→농식품부) ⇒ 이차보전대출 신청 및 대출(사업자→대출기관) ⇒ 보조금신청 및 지급(지자체→농식품부) ⇒ 결산정산보고(지자체→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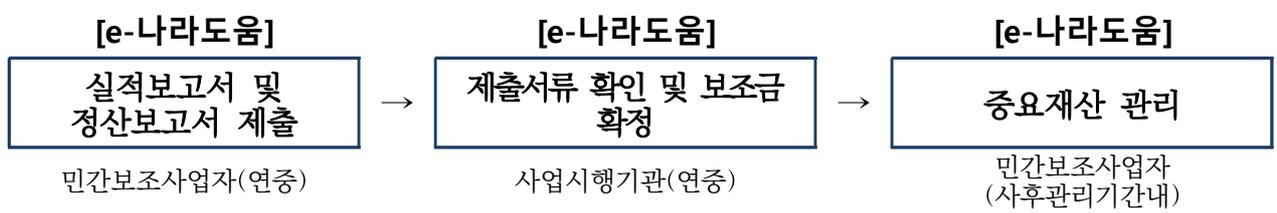
- 농식품부는 시·도의 사업자금 신청을 근거로 소요자금 한도액 배정

지 자 체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자금집행관련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과「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사업자금집행의 원칙” 등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기본규정」 제53조제2항에 따라 자부담 선집행(100%)이 원칙이나, 시장·군수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사업대상자의 신용 및 자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자부담 비율이 20% 이상이고, 자부담 금액이 20백만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 금액의 50%만 선집행하면 국고 집행 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 환급 품목에 대해서는 환급 받는 경우에는 사업비 정산할 때 부가세 환급금을 빼고 정산을 하고, 환급금은 지원비율(국고, 지방비, 자부담 등)에 따라 환수 조치
 - 단, 부가세 환급이 예상됨에 따라 환급될 금액만큼을 자부담에 더하여 사업비로 쓸 경우, 사업대상자는 해당 지자체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군수가 종합적으로 검토·결정하여 추진
- 기계·장비에 대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품질보증서 발급 여부 반드시 확인

5.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신청
 - 정산보고서 검증 필요시 e나라도움에서 지정한 감사인에게 검증의뢰하거나 직접 감사인을 선정하여 검증결과 제출 가능
 - * 보조금을 보조사업 전용 계좌로 교부받은 보조사업자(비예치형)는 집행잔액, 이자 등을 해당 사업 시행기관에 직접 반납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시정·보완 요청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의 현황은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별지 제3호에 따르면 부가적으로 사진 등을 등록
- 보조금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보조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
 - * 등록된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해서는 e나라도움에서 자동으로 부기등기사항 검증. 다만, 비닐 하우스골조는 부기등기 대상에서 제외

- 사업시행기관은 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의 확정
- 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되며,
 -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의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기본규정」 제78조 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 사업시행기관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에 반드시 통보
- 농식품부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이행점검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사업대상자의 사업추진 상황,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상황 등을 점검
 - 점검일정 : 연 2회(반기별 1회)
 - 점검반 : 농식품부, 전담기관(aT)과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점검내용
 - 사업계획 및 진척도, 시설장비 선정의 적합성, 지자체 및 자부담 조달계획 등
- * 점검결과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차년도 사업물량 우선배정 등

지자체

- 시장·군수(시·도지사)는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검정을 실시하고 사업비를 정산하여야 함
 - 사업비 정산은 사업자선정 결과를 활용하여 증빙서류에 의해 실시하고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사진촬영 등 근거자료 첨부
 - 사업비 정산 시 사업비 집행 실적(영수증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부당집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반납 조치

- 시장·군수(시·도지사)는 전담책임자를 지정함은 물론 정기적 실태조사, 현장점검 등을 통한 사후관리 감독 철저
 -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도록 지도
- 시장·군수(시·도지사)는 사업목표 달성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계획을 수립

전담기관

- 사업자선정 평가 관련 확인 및 점검
- 농식품부의 점검일정에 따라 합동으로 현지방문 점검 실시

《사후관리》

- 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 의무를 다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사업실시 규정 관계규정(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축물 등 부동산에 대한 ‘부기등기’를 실시하여야 함 (농어업경영체 육성법 제7조의2) * 비닐하우스골조는 제외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 부동산(토지, 건물, 비닐 하우스골조 등)	준공일	10년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
- 부동산의 종물(건물내 기계설비)	준공일	7년간	
- 주요기계·장바자재	구입일	5년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담보제공 등 처분시 농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 승인이 필요하며 임의로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도록 지자체, 금융기관(농업보조금 취급기관) 홈페이지 등에 농업보조 시설 및 장비 등 관리대장을 공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

《제재 및 처벌내용》

사업관리주체(시·도 및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자의 사업 실적부진 및 부실집행, 무단 용도변경을 확인 시에는 자금회수 및 예산지원 축소 등의 조치를 취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익년도 2월 20일 까지 농식품부에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 및 이차보전금의 부당사용 사유 등이 확인된 때에는 사업대상자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 환수하고, 「기본규정」제78조제6항, 제79조제7항에 따른 지원의 제한을 적용하여 일정기간 농림사업 참여 제한 조치후 농식품부 보고

* 업체와 연관된 부당사용의 경우는 업체도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농림사업 참여 제한 조치

IV. 평가 및 환류

농림축산식품부

- 주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평가시기 : 차년도 12월말 기준(구축 전후비교)
- 평가방법
 - 전담기관 및 시장·군수(시도지사)의 평가결과를 제출받아 현장평가
 - 평가내용 : 사업목표 달성여부, 사업성과 등
-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지자체별 물량 배정 조정 등의 조치

시·도(지자체)

- 주관기관 : 시장·군수(시도지사)
- 평가시기 : 구축후 1년 이내
- 사업목표 달성여부 평가 및 사업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 후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전담기관

- 사업성과 지표 개발 및 측정
- 운영현황조사 및 현장실사(주관기관 적극 협조)
 - 전담기관은 지자체의 자체평가결과를 기준으로 사업성과 지표에 따라 사업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V.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5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지사는 2025년도 추진할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 ('24.2월)
- 농식품부 사업담당자는 시·도 수요조사 결과를 기초로 2025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

2. 202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 신청서 제출기관 : 시장·군수
- 제출기한 : '24.4월(예비사업자)
- 신청자격 : '24년 지침 확인(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추후 통보)

3. 기타 사항

- 사업시행지침, 규격 및 서비스기준, 관련기업 안내 등에 대한 정보공유 및 의견 수렴은 정보공유 웹페이지(<http://www.smartfarmkorea.net>)를 활용

특용작물(인삼)생산시설현대화 사업

I. 사업 개요

□ 목 적

- 폭설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경감, 생력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으로 인삼 생산농가의 경쟁력 제고

□ 사업내용

-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시설, 무인방제시설, 점적 관수시설, 방풍망 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이식기, 파종기, 수확기, 비료살포기, 지주설치기 등 지원

□ 지원 자격 및 요건

- 2023년도에 직파했거나 2024년도에 인삼을 본 밭에 이식한(하려는) 농업 경영체
- 무인방제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이식기, 파종기 및 수확기는 기존 인삼이 식재된 농가에도 지원 가능
- GAP(친환경 포함) 인증 또는 GAP(친환경 포함) 인증 신청한 농업경영체 우선 지원(GAP, 친환경 미인증 농업경영체는 지원한도액 차등 지급)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
 - 철재 해가림 등 내재해시설 : 개소당 2ha이내(60백만원/ha)
 - 인삼재배용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시설 : 개소당 1ha이내(220백만원/ha)
 - 무인방제시설 : 개소당 2ha이내(15백만원/ha)
 - 인삼 점적관수시설 : 개소당 2ha이내(8백만원/ha)
 - 인삼 이식기·파종기·수확기, 인삼밭 쟁기, 두둑형성기, 비료살포기, 향타기 : 대당 5백만원 이내

○ 지원 기준 : 국고 20%, 지방비 30%, 용자(이차보전) 30%*, 자부담 20%

* '23년부터 FTA기금 내 용자만 농특회계 이차보전으로 전환

○ 2024년 예산 : 1,260백만원(국비 1,260, 지방비 1,890, 용자(이차보전) 675, 자부담 1,260)

□ 사업 신청

○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사업신청서 제출 시 의무자조금 납부확인서 또는 인삼경작확인서(또는 인삼경작신고서)를 제출

* 인삼경작확인서(또는 인삼경작신고서)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추후 의무자조금 납부확인서를 추가 제출

□ 대상자 선정

○ 시·도에서 사업계획을 심의 후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

- 인삼은 품목 특성상 이동경작, 원거리 경작이 많으므로 사업대상자 선정 시 사업대상자 인삼재배지의 지자체에서 대상자를 선정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사무관 김동훈 주무관 송미선	044-201-2238 044-201-2239
시·도	인삼산업 담당과	인삼산업 담당자	-
농협은행	농업금융부	팀 장 류상현 차 장 박정윤	02-2080-7561 02-2080-7568

II. 주요 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하 농업경영체)
 - 농업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생산자단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4호

[지원제외 대상자]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
- 인삼 의무자조금 단체에 가입하지 않거나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
- 「인삼산업법」에 따른 경작신고를 하지 않은 농가

2. 지원자격 및 요건

- 2023년도에 직파했거나 2024년도에 인삼을 본 밭에 이식한(하려는) 농업경영체
 - GAP(친환경 포함) 인증(GAP 인증 신청농가 포함), 농업재해보험 가입 농업경영체 우선 선정
 - 전년도 의무자조금을 납부한 농업경영체 또는 신규 인삼재배 농업경영체만 선정
 - * 의무자조금 납부 여부는 인삼농협 또는 의무자조금단체에 확인
 - * 신규 인삼재배 농업경영체는 사업완료시까지 의무자조금 납부 확인서 제출
- 무인방제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이식기, 파종기 및 수확기, 비료살포기는 기존 인삼이 식재된 농가에도 지원 가능
 - * 상기 시설 및 장비에 대해서는 식재년도에 자조금을 납부한 농가만 지원
- GAP(친환경 포함) 인증 또는 GAP(친환경 포함) 인증 신청한 농업경영체 우선 지원(GAP, 친환경 미인증 농업경영체는 지원한도액 차등 지급)
 - GAP, 친환경 미인증 농업경영체는 지원한도액의 90% 지원

3. 지원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

- 지원대상 :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시설, 무인방제시설, 점적 관수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이식기, 파종기, 수확기, 인삼밭 쟁기, 두둑형성기, 퇴비살포기, 비료살포기, 지주설치기
 - * 열거된 항목 이외는 지원 불가

-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재배시설은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설계도·시방서에 따라 설치(농림축산식품부 고시 : 제2022-104호, 2022.9.30)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기상이변을 감안하여 지자체장의 책임 하에 지역실정에 맞게 기준을 변경 적용 가능(기준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와 사전 협의)
 - 농기계로 등록된 품목은 한국농기계협동조합의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미보증 제품 지원 불가)
 -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시설 설치시 철재지주 구입 및 현물 확인 등 증빙자료를 근거로 사업비 집행이 가능함. 다만, 지원받은 경영체가 사업을 이행하지 않거나 포기할 경우 시·군에서 사업비 환수 조치
- 사용용도 : 고품질 인삼 생산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 및 구입 자금

4.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금융기관 자금(이차보전)
- 지원비율 : 국고보조 20%, 융자(이차보전)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융자(이차보전)* 조건 : 연리 2% 또는 변동금리,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 '23년부터 FTA기금 내 융자만 농특회계 이차보전으로 전환
- ※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경우「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농식품부 예규)」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 농가단위 피해율 수준에 따라 상환연기·이자감면 차등 지원 가능(관련 : 농어업재해대책법,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간접지원 대상 농업정책자금 고시)
 - 농가단위 피해율 30% 이상 50% 미만 : 상환연기·이자감면 1년
 - 농가단위 피해율 50% 이상 : 상환연기·이자감면 2년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철재 해가림 등 내재해시설 : 개소당 2ha이내(60백만원/ha)
- 인삼재배용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시설 : 개소당 1ha이내(220백만원/ha)
- 무인방제시설 : 개소당 2ha이내(15백만원/ha)
- 인삼 점적관수시설 : 개소당 2ha이내(8백만원/ha)

- 관정 관련 사업비는 최대 150만원 이내로 지원
- 방풍망시설 : 개소당 2ha이내(6백만원/ha)
- 야생동물방지시설 : 개소당 2ha이내(5백만원/ha)
- 도난방지시설 : 개소당 2ha이내(10백만원/ha)
- 이식기·파종기·수확기, 인삼밭 쟁기, 두둑형성기, 비료살포기, 지주설치기 : 대당 5백만원 이내
(5백만원 초과 기계 구입시라도 최대 5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 * 지원단가를 초과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 및 책임 하에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음
- * 다만, 기준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 서로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하는 2개 업체 이상의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구비
- * GAP(친환경 포함) 미인증 농가는 지원한도액의 90%만 지원

6. 유의사항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6항 각 호에 따른 보조사업 결격사유가 발생한 자 및 제79조제1항에 근거한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 제한기간 중에 있는 보조사업자는 선정단계에서 제외
(사업시행기관은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확인 및 필요시 현장 실태조사)
- 사업신청자의 주소지와 사업예정지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할 경우 사업 예정지 관할 시·군에 신청
(※ 단, 해당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와 지원 가능성 여부 사전 확인)
- * (국비지방비 매칭사업의 경우) 사업장(농지, 시설 등) 소재지 지자체나 시행기관은 사업희망자가 관할 지자체 내 거주지를 두고 있지 않은 이유로 신청이나 선정 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 사업비 집행·관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을 준수하고, 사업자금이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련증빙 서류 확인 등 사업비 집행 철저
- 본 시행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업목적, 지역실정 등을 감안, 지자체장이 검토·결정하여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각 시·도가 제출한 신청내용을 감안하여 각 시·도별 지원금액 배정 및 사업비 교부 결정(3월)

대출취급은행(농협은행)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비 배정(안)에 따라 대출안내 및 실행 준비(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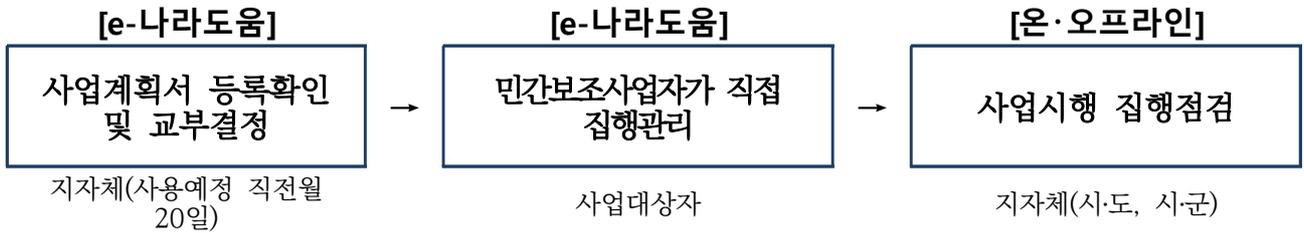
IV. 사업 시행 및 관리

1.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

지자체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배정된 지원금액 범위내에서 사업대상자를 확정하는 등 시·도(시·군)별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시행·추진
 - 시·도 사업계획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고(3월말), 보조금 교부신청과 지방비 확보 등 자금집행에 필요한 조치 이행
- 세부사업별 지원단가는 객관적 자료(농협중앙회 계통구매단가, 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에 근거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지를 시장·군수가 검토 후 결정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업신청자 중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사업대상자로 추가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조치(사업대상자 변경내역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추가로 선정할 사업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조속히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시공업체를 통해서 시공하여야 하는 세부사업의 경우 농업경영체의 업체선정 편의 제공과 책임시공 등을 위하여 민간전문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통해 시공업체 선정·공지
 - 시공업체는 반드시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유자격자를 선정
 - 지원을 받은 경영체는 선정·공지된 업체 중에서 자율적으로 업체를 선택하여 공사 추진
 - 선정된 시공업체는 반드시 직접시공을 하여야 하며, 하청시공 시 선정 박탈 및 향후 5년간 시공업체 선정에 참여 불가(선정업체 및 하청업체)

2.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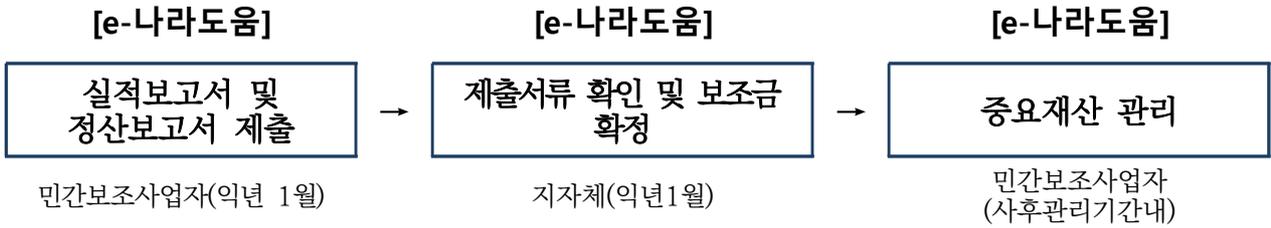
지자체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자금지원대상자에게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등 관련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8조 「사업자금 집행의 원칙」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 「농림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규정」 등 절차 이행
 - 경영체에게 직접 사업비를 집행하는 방식과 사업시행주체(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를 통하여 사업비를 집행하는 방식이 모두 가능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매월 사업자로부터 사업실적이 첨부된 사업비배정신청서를 제출받아 추진상황을 확인하는 등 월별 소요자금을 파악한 후 사용 예정 전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비 배정 요구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며, 지원비율 준수 여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는지 여부 확인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자금집행관련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 「농림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규정」 등에 따라 수행

대출취급기관(농협은행)

- 대출취급기관이 지원대상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시장·군수)로부터 사업의 실적과 그 실적이 사업시행지침 및 증빙요건에 적합 여부 확인

3. 이행점검단계



사업관리 및 지도 감독(시·도)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화 방지 및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
 -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해 총괄부서와 사업부서간 긴밀한 협조 체계 유지
-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에 대하여는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 강구
 - 사업실적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 집행, 무단용도 변경 확인 시에는 자금회수 및 예산 지원 축소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 시·군은 예산 이월·불용이 예상될 경우 이월·불용사유서 및 지출원인 행위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도를 경유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즉시 보고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부터 준공까지 지도·감독 철저

사업비 검정 및 정산(시·도)

- 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사업완료 검사 신청
- 시장·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사업완료 검사를 한 후 정산
 - 사업비 집행(인건비, 자재구입 등)은 반드시 금융기관 거래자료(무통장 입금표, 통장사본, 신용카드 등)로 관련 증빙자료 확인(현금 거래 불가)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하며,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익년도 1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4. 사후관리단계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특용작물(인삼) 생산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2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 관리절차 이행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제16조에 의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 건물 및 부속설비	준공일	10년간	○ 시장·군수 등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사후관리 기간 동안 철저히 관리를 하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은 농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매각·용도변경·양도·교환·대여·담보제공을 할 수 없음
- 주요기계 장비·자재	구입일	5년간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69조에 따라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없이 임의로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도록 지자체, 금융기관(농업보조금 취급기관) 홈페이지 등에 농업보조 시설 및 장비 등 관리대장을 공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

<제재 및 처벌내용>

사업관리주체(시·군, 시·도)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포기·이월 등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울 경우 즉시 시·군에 사업포기서 또는 이월요청서를 제출하도록 조치
- 시장·군수는 해당 사업대상자에 대해 별도 관리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을 제한
 - (포기) 포기일 이후 3년간 해당 사업 지원 제한
 - (이월) 준공일 이후 2년간 해당 사업 지원 제한

* 단, 농식품부로부터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 본인의 질병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받은 경우 해당되지 않음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가 지원 자격에 미달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받은 경영체에 대해서는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일정기간 동안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 조치 시행
- 보고체계 : 시·군·구 → 시·도 → 농림축산식품부

자금관리주체(대출취급기관)

- 대출취급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대출금 및 대출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용실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부당사용사유 등을 확인한 때에는 농식품부 등 사업자금 관리자와 사업관리기관에 통지하고 대출금을 회수하여야 하며, 이차보전금 신청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V. 평가 및 환류

1. 사업 성과지표 측정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의 실집행률, 사업포기율, 지방비 확보율, 과년도 국고보조통합관리시스템 정산율 등으로 정량 평가하여 차년도 예산 배정에 반영

2. 2025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지사는 붙임1호 서식을 참고하여 도별 2025년 사업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붙임2호 서식으로 농식품부로 제출(2024년5월말)
 - * 2024년 시·도(시·군)에서 대상자 수요조사 후 2024년 5월까지 공문 제출
-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자가 사업 포기 등 사업대상자 추가 선정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 통보(2024년10월말)
- 보고체계 : 시·군·구 → 시·도 → 농림축산식품부

I. 사업 개요

□ 목 적

- 선별포장시설 등 상품화시설을 지원하여 상품성 향상 및 부가가치 제고

□ 사업내용

- 기존 APC 선별시설 등 증설 보완, 전처리·후처리 설비, 제함기 등 지원

□ 지원 자격 및 요건

- 기존 운영 중인 APC시설(증설 및 보완 포함)에서 전처리·선별·후처리 설비, 제함기 등이 노후화되어 교체하고자 하는 2천톤 이상의 과일전문 APC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한도 : 700백만원 내외/개소
- 지원조건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24년 예산 : 1,700백만원(국비 510, 지방비 510, 자부담680)

□ 사업 신청

- 장소 : 신청조직은 사업계획서 작성 후 시·군에 제출
- 신청기간 : '24.1월

□ 대상자 선정

- 시·도지사가 자체 평가하여 우선순위 결정 후, 농식품부 주관으로 세부 심사·평가 실시 통해 최종 선정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사무관 장 미 주무관 성원우	044-201-2254 044-201-2255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유통기획부	대리 김준수	061-931-1013

II.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협(품목, 지역),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유통법인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 원예산업발전계획의 생산유통통합조직 중 사업시행주체의 유통사업에 참여하는 조직으로 사업부지를 확보한 사업자
- 연간 선별물량을 2천톤~8천톤 내외로 조달 가능하고 규모화 된 마케팅사업 운영이 가능한 조직(설립기간이 1년 이상된 법인)
- 집하·선별·포장장 면적이 330m² 이상
- 기존 운영중인 APC 시설(증설 및 보완 포함)에서 전처리·선별·후처리 설비, 제함기 등이 노후화되어 일부 또는 전부를 교체하고자 하는 조직
- 농업경영체가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 받으려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 우선선정 >

- * 과실전문APC 운영협의회에 참여하는 조직 우선선정
- * 수출전문조직(원예전문단지 지정) 우선선정
- * 해당 지자체(시·군·구)에서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 되었거나 지역 푸드플랜 계획을 수립한 지자체 또는 먹거리 계획 협약을 맺은 경우 선정 심사 시 가점부여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전처리·선별·후처리·가공 설비, 제함기 등의 교체·설치 공사
 - 선별·포장·가공 시설·장비류, 결속기, 봉합기, 제함기, 컨베이어, 경영지원시스템, ICT융복합 관련 시스템 등
- * 각 항목별 사업비 책정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산출근거(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단가)를 활용 하여 산출

4. 지원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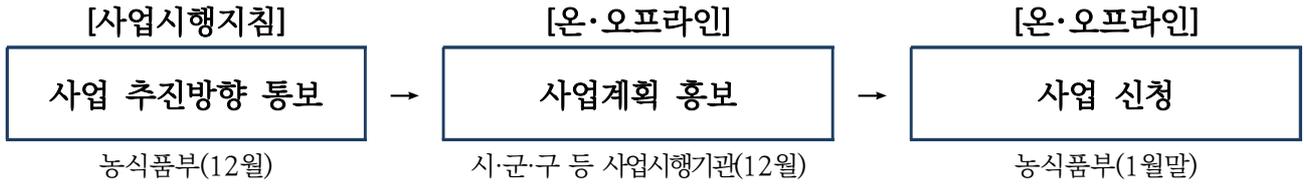
-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비율 : 국고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사업기간 : 1년

5. 지원한도액 기준

- 지원단가 : 700백만원 이내/개소
 - 사업자의 능력과 사업성 등에 따라 사업비 증감 가능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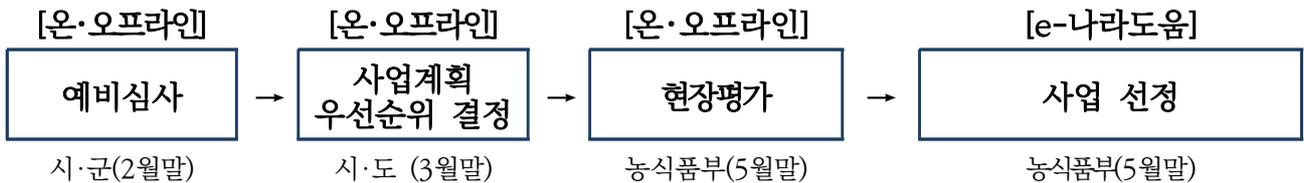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기본계획(사업시행지침 등)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전년도 12월말)

사업자(신청조직)

- 사업계획서를 작성 후 시·군에 제출(1월말)

2. 사업자 선정단계



시·군

- 사업자(신청조직)에서 신청한 사업계획서를 농정 관련 심의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시·도에 제출(2월말)
 - 신청시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지방자율) 신청시 첨부물로 제출

시·도

- 시·도 원예산업발전계획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자체평가기준으로 사업 계획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3월말)
 - 시·도지사는 신청자에 대한 심사결과를 과수 생산·유통지원사업계획서에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별지 1~3 서식>

* 간이설계도, 세부사업비 산출내역, 평가항목별 증빙자료 등 포함 제출

〈심사항목 외 시·도지사가 고려할 우선순위〉

- ① 우선지원대상 사업자 : 생산유통통합조직, 전국과실전문APC운영협의회 참여조직, 수출전문조직
 - * 투자 효율성, 지원방향의 일관성, 중복투자 방지, 운영능력이 검증된 사업자를 선정
- ② 조직원의 결속도가 높고, 공동출하 등 유통사업 실적이 있으며, 경영장부(경영일지)의 기록 실적이 양호하고, 재무제표를 구비하고 있는 법인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세부심사·평가 절차(별첨)에 따라 심사·평가를 실시하되, 선정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내·외부전문가에 의한 현장실사평가를 실시하여 사업대상자 선정(5월말)

세부 심사평가절차

가. 심사대상 사업계획 선정

-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대상 선정

나. 실무 사전검토

- 사업담당부서에서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요건 검토
 - 사업내용의 미비점, 사업대상자의 적정성, 사업비 산정, 중복투자 여부 등
- 검토결과 조치
 - 사업계획이 전반적으로 부실한 사업은 심사제외
 - 부분적으로 미흡한 과제는 보완요청
 - 검토의견은 현장실사 평가 자료로 제공

다. 심사 및 평가

- 전문 평가위원단을 구성하고 사업계획별 평가위원이 현장실사 평가 실시
 - 평가위원 지정 및 평가기준 제시 : 농림축산식품부
 - 평가단 구성 : 5명 내외로 팀 구성
 - 주요평가내용 : 사업계획의 적정성, 혁신성, 성공가능성 등
- 평가결과 조치
 - 총점 100점 기준으로 전체와 부분평균으로 나누어 각각 선정적용
 - 전체 평가항목 평균 : 70점 미만의 사업계획은 선정 제외
 - * 평균점수 : 평가위원별 합계점수의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
 - 평가단의 종합의견은 사업비 심의, 최종사업계획 선정 시 반영
 - * 심사평가기준 : [별지 3호 서식] 참조

라. 사업비 심의·조정

- 단계별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사업규모·단가 등을 보완하는 등 사업비 조정

마. 사업계획 최종선정

- 평가결과 및 사업비 조정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사업계획 선정

〈조건부 사업계획 선정〉

- 평가과정에서 제시된 미비점을 보완했을 경우 또는 보완이행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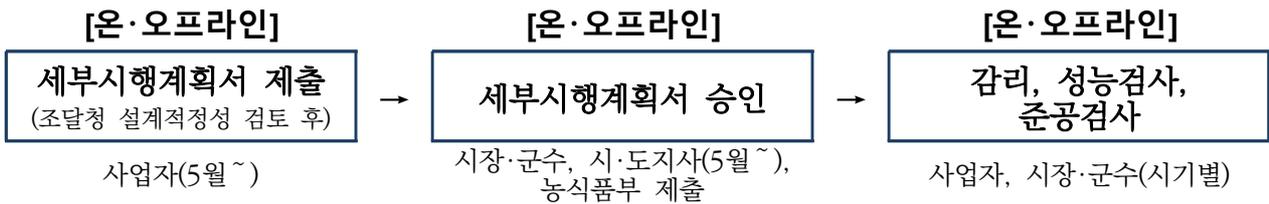
〈조건부 자금지원〉

- 사업계획 선정 시 제시된 사항을 이행했을 경우 자금배정

〈사업 포기자 지원 제한〉

-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포기연도로 부터 3년간 지원 제한

3.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세부계획수립》

사업자(신청조직)

- 사업자로 확정되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여건에 맞도록 세부시행계획서(월별 공정계획 포함)를 작성하여 시·군에 승인 요청
* 사업계획 및 월별 공정계획 수립(월별 공정계획서식)

시·군

- 시장·군수는 승인 결과 및 월별 공정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제출
-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시설공사로서 전기, 통신, 소방은 포함. 설계·감리비와 선별기 등 기계장비는 제외)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조달청에 설계 적정성 검토 요청(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도 포함)(재정사업관리규정 제57조)

시·도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승인한 세부시행계획 중 부적절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정정 지시할 수 있으며, 월별 공정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사업계획변경 절차》

시·도(시·군)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는 사업포기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사업포기에 따른 사업대상자 추가선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사업타당성 검토를 거쳐 실시
- 승인을 받은 세부시행계획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리
 - 대표자 변경, 기타 경미한 사항 : 시장·군수 승인(시·도에 보고)
 - 지원금액 범위내의 계획변경 : 시·도지사 승인(농림축산식품부 보고)
- * 단, 세부시행계획 변경 승인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자체 사업 타당성 검토를 반드시 실시하고, 사업대상자의 변경요청사유 및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감리》

- 지원대상 사업자는 시공업체 선정과 함께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감리업체(감독공무원)를 선정하고 감리를 실시하여 부실공사를 방지
 - 감리는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업체를 선정

《성능검사》

- 선별시설 : 공공기관(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종합검정(기기의 구조, 성능, 안전성 및 조작의 난이도를 검정)에 적합 판정된 모델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후에는 선별시설 전체에 대하여 전문기관(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의 성능시험을 받아야 하고(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검정기준 참조), 상품화설비(선별시스템) 전체 예산이 3억원 이상일 경우, 상품화 설비 전체에 대한 검수*를 공인기관(농업실용화재단 등)에 받아야 함

* 상품화설비 검수 : 계약 후 최종 제출된 설계서, 규격서, 내역서와 동일하게 설치되었는지 최종 검수 후 승인

- (설치 전) 종합검정 확인 → 선별기 설치 → (설치 후) 성능시험 → 검수 및 대금지급

* 투입, 세척, 포장시설도 종합검정에 적합판정된 모델 설치

- 주요 기계·장비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보증을 받은 기계·장비를 구입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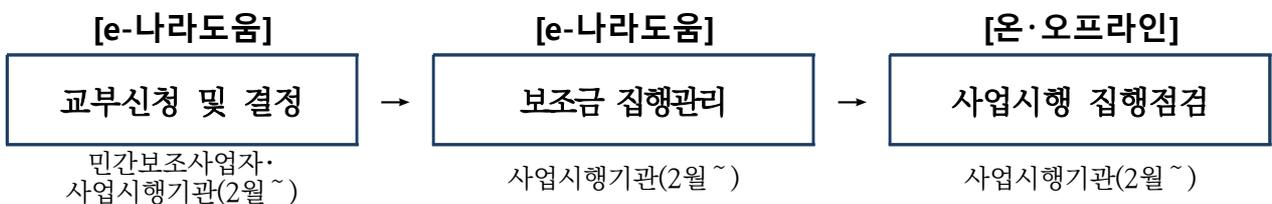
《준공검사》

- 준공검사는 기술직(기계직 등) 공무원이 직접담당 다만, 감리업체가 준공 검사를 실시한 경우는 기술직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준공검사 가능

《기타사항》

- 세부시설별 사업비 단가는 예시이므로 집행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할 경우 실제가격을 적용할 수 있음. 다만, 지역간·사업장간·유사 세부시설 등에 대한 객관성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고려(단가 산출명세서 처부)하여야 함

4.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 보조사업자는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사업자 선정·확정통지를 받으면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비 중 자부담금을 보조금 전용 계좌에 입금 후 우선 집행
 - 다만,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금을 예탁교부받은 경우 자부담금 우선집행 원칙을 따르지 아니하고, e나라도움 운용원칙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해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집행관리)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사업비의 집행관리를 해야 함

* (계약) 1)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 제외)로서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 계약,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계약은 ①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 공개경쟁입찰 계약 ②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③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2)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인 사업인 경우 조달청의 조달서비스(위탁계약)를 신청하여 설계적정성 검토, 계약체결 등 수행

* (정산보고서 검증) 1) 농식품 보조금 3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정산보고서 검증 후 검증결과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2) 당해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 및 감사보고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전자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e나라도움 운영 원칙 참고)

- 전자증빙서류를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사업시행기관의 사업담당자 문의하여 처리

* 사전교부형, 사후교부형, 「기본규정」 제53조2제8항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부터 농산물 등을 구입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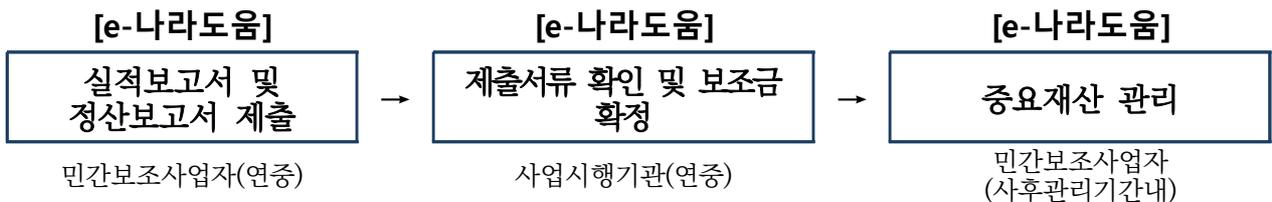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만 보조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재사용 가능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 및 사업시행기관은 집행현장점검의 시기와 방법을 명시

〈 자금배정단계〉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사업자금 집행의 원칙”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 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함.

5.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신청
 - 정산보고서 검증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민간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에서 지정한 감사인에게 검증의뢰하거나 직접 감사인을 선정하여 검증결과를 제출 가능
 - 예탁교부를 받은 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잔액, 이자 등을 반납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보완 요청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의 현황은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별지 제3호에 따르고 부가적으로 사진 등을 등록
- 보조금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보조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
 - * 등록된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해서는 e나라도움에서 자동으로 부기등기사항 검증
다만, 비닐 하우스골조는 부기등기 대상에서 제외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의 확정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공공기관 등 민간사업일 경우 농식품부장관, 자치단체사업일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되며,
 -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의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 사업시행기관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에 반드시 통보
- 농식품부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자(신청조직)

- 사업자는 시설물의 등기(법인 또는 공동명의)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산지유통센터 운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생산자 또는 다른 생산자단체의 시설 이용 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들의 이용을 촉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시행

사·도(시·군)

- 지원되는 보조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를 검증받은 후 실적보고서를 제출토록 조치(기본규정 제59조제3항)
 - 감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 가능
- 시설물의 등기(법인 또는 공동명의)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축물 등 부동산에 대한 '부기등기'를 실시하여야 함(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7조의2)
- 사후관리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지원목적대로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승인 없이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목적 외 사용금지
 - 유통일원화, 통합브랜드 등 통합마케팅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금 회수
- 사업자는 사후관리 해제 전까지 매년 등기부등본 1부를 발급하여 시·도지사(시장·군수)에 제출(6.30까지)
- 시장·군수는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설비·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관리대장 및 지원이력을 등록·관리하여야 함
 - 매년 4회 이상 현지 지도·점검 및 운영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제출(또는 열람 및 발급)한 등기부등본을 검토하여 근저당 설정 등을 확인하여야 함
- 시설물을 이전하거나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군수는 승인결과를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농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시·군을 달리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 부동산(토지, 건물, 비닐 하우스골조 등)	준공일	10년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 부동산의 종물(건물내 기계설비)	준공일	7년간	
- 주요기계·장비·자재	구입일	5년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담보제공 등 처분시 농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 승인이 필요하며 임의로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도록 지자체, 금융기관(농업보조금 취급기관) 홈페이지 등에 농업보조 시설 및 장비 등 관리대장을 공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과수거점APC지침 준용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사업추진현황, 정부지원자금의 활용현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추진 점검결과 지원 규모, 지원체계,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사업추진 지침 및 사업계획 등에 반영 추진
- 사업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점검일정
 - 점검대상 : 지원대상 조직
 - 점검일정 : 연 4회 이상(분기별)
 - 점 검 반 : 농림축산식품부(주관), 시·도(시·군)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점검항목
 - 사업비 집행현황 : 사업계획에 따른 자금의 적정 집행내역, 관리현황 등
 - 사업실적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등

채소류 출하조절 시설지원

I. 사업 개요

□ 목적

- 예냉(豫冷) 등 저온처리를 통해 농산물의 기능성·효능을 유지하고 유통 기간 연장으로 출하조절 및 수익성 개선

□ 사업내용

- 수급변동이 큰 주요 채소류(배추, 무, 건고추, 마늘, 양파)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산지에서 상시 출하를 조절할 수 있는 저온저장시설 및 가공시설 설치 지원

□ 지원 자격 및 요건

- 대상 품목 : 노지채소류 중 주요 생산 및 가격 변동이 심해 출하조절을 통한 수급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배추, 무, 건고추, 마늘, 양파)
- 출하조절시설 지원·관리 또는 출하조절시설 운영계획을 지자체 원예산업발전계획에 포함하거나 연도 내 포함할 계획이 있는 지자체
- 의무자조금 가입대상 품목의 경우 거출금 납부를 하지 아니한 업체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대상 : 저온저장시설, 예냉·예건시설, 가공시설 및 장비, 위생설비 및 장비, 선별시설, 포장장비 등
- '24년 예산(정부안) : 5,200백만원
* 2년차 1개소 2,000백만원, 1년차 2개소 3,200백만원(개소당 1,600백만원)
- 지원 기준
- 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총 2년, 연차별 50% 지원)

□ 사업 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신청서(증빙서류 첨부) 제출: 지자체(시·군·구)
- 선정 방법 : 지자체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추천한 사업대상자 중 공개발표 평가
- 신청 기간 : '23. 9.~11.('24년 신규대상자)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서기관 배민식 주무관 김형래	044-201-2232 044-201-2233

Ⅱ. 주요 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시행주체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등(컨소시엄 가능)
 - ※ 다만,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의 지분이 50% 이상 점유하여야 하며, 사후관리기간(저온시설 : 10년) 동안에도 충족해야 함
- 사업주관기관 : 지방자치단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대상 품목: 노지채소류 중 주요 생산 및 가격 변동이 심해 출하조절을 통한 수급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배추, 무, 건고추, 마늘, 양파)
 - * 저장시설 유효기간에 사업신청 품목 이외의 품목을 저장할 경우에는 농식품부 사전 승인 필요
 - 배추, 무: 계약재배사업에 참여하고 전년도 취급물량이 5천톤 이상이면서 향후 3년 이내에 10천톤 이상 취급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 법인(공모)
 - 건고추: 계약재배사업에 참여하고 전년도 취급물량이 3백톤 이상이면서 향후 3년 이내에 6백톤 이상 취급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 법인(공모)
 - 마늘, 양파: 계약재배사업에 참여하고 전년도 취급물량이 마늘 1천톤, 양파 3천톤 이상이면서 향후 3년 이내에 마늘 2천톤, 양파 5천톤 이상 취급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 법인(공모)
 - ※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으로 추진하는 모든 시설 및 장비는 에너지 절감을 위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한 녹색인증,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고효율에너지인증을 받은 장치 또는 장비의 우선 설비를 권장함
- 출하조절시설 지원·관리 또는 출하조절시설 운영계획을 지자체 원예산업발전 계획에 포함하거나 연도 내 포함할 계획이 있는 지자체
- 의무자조금 가입대상 품목의 경우 거출금 납부를 하지 아니한 업체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3. 지원대상

- 저온저장시설, 예냉·예건시설, 가공시설 및 장비, 위생설비 및 장비, 선별시설, 포장장비 등
 - ※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시설 설치 시 ICT융복합을 위한 입출고관리, 재고관리 등 스마트 관리 기반 포함 가능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저온저장시설 및 예냉·예건시설, 가공시설, 위생설비 및 장비 등 출하조절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부지대입비 제외)
 - 저온저장고 운영에 필요한 운반장비(지게차, 운반차량, 운반구, 파레트 등), 컨설팅(3천만원 이하), 설계, 감리, 성능검사 및 감사 비용 등 포함

5. 지원형태

- 국고보조 40%, 지방비 30%, 자부담 30%(연차별 50% 지원)
 - 지원사업자는 공급 불안에 따른 정부의 출하조절 명령 시 비축물량을 가락시장 등에 우선적으로 상장하는 등 출하조절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 출하조절시설: 주요 채소류(배추, 무, 건고추, 마늘, 양파) 연간 월별 비축의무를 상시 비축하여 정부의 출하명령을 이행하는 시설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총사업비 100억원 기준)

구 분		지원규모	사업비(백만원)		기준단가	비 고
			신규	개보수		
채소류 출하조절 시설	저온저장시설	3,300㎡	4,000	신규의 5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온저장시설: 120만원/㎡ ■ 예냉시설: 12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단가는 예시 기준으로 사업 집행 시에는 실 단가를 적용하며, 사업주관기관장 책임 하에 철저한 검토확인(산출근거,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필요 ■ 시설 및 장비 규모는 품목 특성, 지역 여건 및 사업비 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
	예냉·예건시설	330㎡	400			
	가공시설	3,300㎡	4,000			
	위생설비 및 장비 등	-	1,6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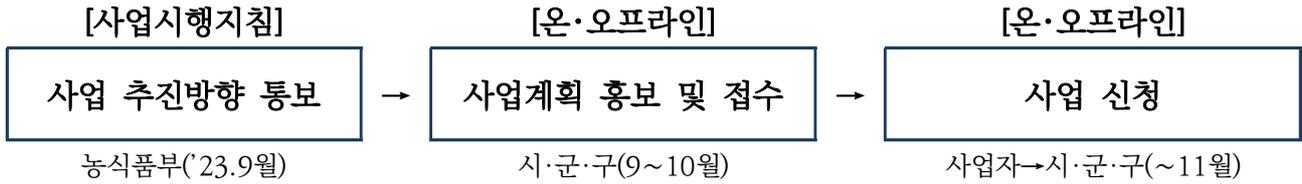
※ 위 사업비는 국고, 지방비, 자부담을 합한 총사업비이며, 사업 수요에 따라 개소당 100억 이내에서 총사업비 조정 가능

【참고사항】

- 상시 출하조절 등 출하조절시설 설치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단가 예시에 없는 시설장비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가 산출근거 제시
- 저온저장시설 및 가공시설 등의 건축, 기계설비 기술 검토
 - 운영주체가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포함)인 경우 세부시설 설치 전에 시설 설치 적정성에 대해 농협경제지주와 협의
 - 지자체가 사업주체가 되는 경우 시설장비 설치에 관하여 위탁운영주체와 충분히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기본계획(사업시행지침 등)을 수립하여 각 시·도에 시달(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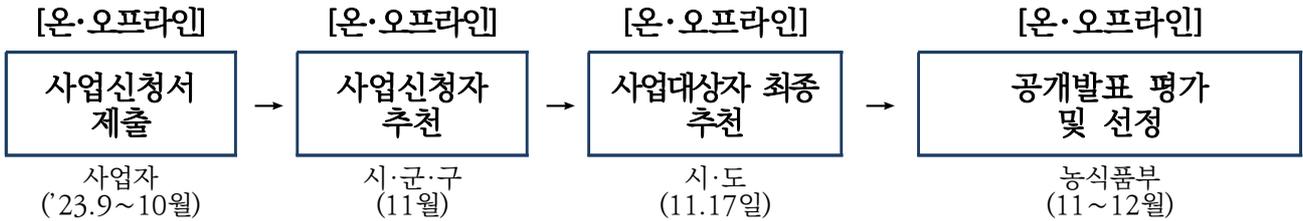
사업자(신청조직)

- 지원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 중 부지가 확보되어 사업기간 내 사업완료가 가능한 법인에 한해 사업신청서를 지자체(시·군·구)에 제출(10월)
 - * 운영주체가 농협인 경우 사업계획에 대한 농협경제지주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사업신청
 - ※ 부지확보 증빙 : 사업자 소유 토지등기부 등본, 부지 매매계약체결 또는 가등기 완료에 한해 인정
-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품목별 취급물량 증빙서류, 관할 시·군 생산량 또는 출하량, 계약재배실적 증빙서류 등
 - * 사업계획서(2개년): 사업목표, 자금 투자계획, 시설부지 확보계획, 사업추진 산지여건, 자체 계약재배 등 물량확보 계획, 취급물량 확대 계획, 추진사업 연계 시설활용 계획, 조직화 현황, 주산지 협의체 구성 및 수급관리 계획, 자체 수급관리 프로그램(고정 수요처 확보 및 교육 포함) 등
 - * 기존 법인 이외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사업신청서 제출 후 1개월 이내에 법인설립 완료

농협경제지주

- 회원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원물확보 및 비축 가능성 등 사업타당성)을 회원농협에 통보

2. 사업자 선정단계



○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

- 선정주체 : 지자체(시·군→시·도) 심의위원회에서 <붙임1>의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 부여 → 농식품부 사업자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 품목별 산지 여건, 수급관리 능력, 주산지 중심 협의체 운영 및 수급관리 프로그램 등을 종합 평가

시·군·구

-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접수된 서류 및 현장실사 등을 통해 사업신청자를 시·도에 추천(지방비 확보 계획 포함)
 - ※ 개발제한구역 등 토지 및 건축 관련 법령상 저촉여부 등 인허가 부서로부터 검토를 받은 경우(관련 증명서 첨부)에만 위 접수 배점. 인허가 부서로부터 검토를 받지 않은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 부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

시·도

-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시군에서 추천된 사업대상자 서류 등을 검토하여 적합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농식품부에 최종 추천(지방비 확보 계획 포함)
 - ※ 시·도는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표에 따라 평가하여 사업대상자 순위를 작성하여 신청서 제출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세부심사평가 절차(별첨)에 따라 심사평가를 실시하되, 선정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내·외부전문가에 의한 공개발표평가를 실시하여 사업대상자 선정(11~12월)
 - ※ 의무자조금을 납부한 사업대상자는 적정 배점 부여

세부 심사평가절차

가. 심사대상 사업계획 선정

-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대상 선정

나. 실무 사전검토

- 사업 담당부서에서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요건 검토
 - 사업내용의 미비점, 사업대상자의 적정성, 사업비 산정, 중복투자 여부 등
- 검토결과 조치
 - 사업계획이 전반적으로 부실한 사업은 심사제외
 - 부분적으로 미흡한 과제는 보완요청
 - 검토의견을 비공개 서면평가 자료로 제공

다. 심사 및 평가

- 전문 평가위원단을 구성하고 사업계획별 평가위원이 평가
 - 평가위원 지정 및 평가기준 제시 : 농림축산식품부

〈공개발표 평가〉

- 전문평가단이 평가기준에 따라 총괄평가
 - 평가단 구성 : 7명 내외
 - 공개발표 방법 : 사업시행주체(시·도 및 시·군·구) 또는 사업주체측에서 사업계획 발표 후 질의·응답
 - 주요 평가내용 : 사업계획 내용 정밀 확인 및 여건 확보 여부 등
 - 평가결과 조치
 - 총점 100점 기준으로 전체와 부분평균으로 나누어 각각 선정·적용
 - 전체 평가항목 평균 : 80점 미만의 사업계획은 선정 제외
 - 평가항목별로 하나의 항목이라도 0점을 받은 사업계획은 선정 제외
 - 평가단의 종합의견은 사업비 심의, 최종사업계획 선정시 반영
- * 심사평가 기준 : 붙임 1(채소류 출하조절시설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평가표) 참조

라. 사업비 심의·조정

- 단계별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사업규모·단가 등을 보완하는 등 사업비 조정

마. 사업계획 최종선정

- 우선순위 결정

- 공개발표평가의 점수에 따라 사업대상 순위 결정하되 동점 발생시 평가항목 5번 원물 확보 여건 및 방안을 기준으로 순위 결정

〈조건부 사업계획 선정〉

- 평가과정에서 제시된 미비점을 보완했을 경우 또는 보완이행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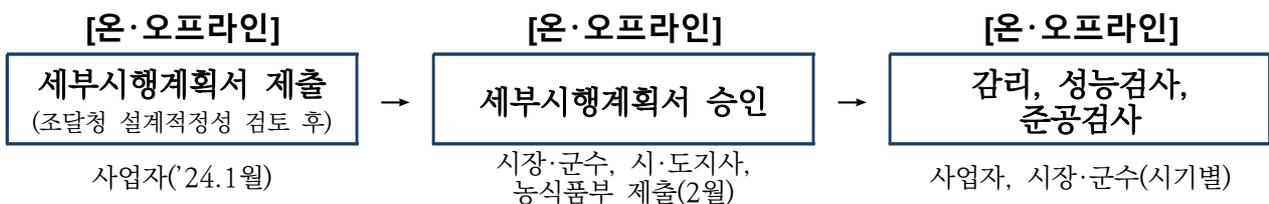
〈조건부 자금지원〉

- 사업계획 선정시 제시된 사항을 이행했을 경우 자금배정

〈사업 포기자 지원 제한〉

-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자와 해당 사업자를 추천한 시·군에 대하여는 포기 연도로부터 3년간 지원 제한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사업자(신청조직)

- 사업자로 확정되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여건에 맞도록 세부시행계획서(월별 공정계획 포함)를 작성하여 시·군에 승인 요청

* 사업계획 및 월별 공정계획 수립(서식 2호 월별 공정계획 참조)

시·군·구

- 시장·군수는 승인 결과 및 월별 공정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제출

-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시설공사로서 전기, 통신, 소방은 포함. 설계·감리비와 선별기 등 기계장비는 제외)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조달청에 설계 적정성 검토 요청(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도 포함)(재정사업관리규정 제57조)

시·도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승인한 세부시행계획 중 부적절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정정 지시할 수 있으며, 월별 공정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사업계획변경 절차》

시·도(시·군·구)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는 사업포기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사업포기에 따른 사업대상자 추가선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사업타당성 검토를 거쳐 실시
- 승인을 받은 세부시행계획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리
 - 대표자 변경, 기타 경미한 사항 : 시장·군수 승인(시·도에 보고)
 - 지원금액 범위내의 계획변경 : 시·도지사 승인(농림축산식품부 보고)
 - * 지원금액 범위내의 계획변경이란 당초 승인 비목 간의 계획을 변경하거나, 승인 목적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낙찰차액 등을 동일 사업 시설비, 주요장비 설치비 및 기타보완 사업비로 변경 가능
 - * 세부시행계획 변경 승인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자체 사업 타당성 검토를 반드시 실시하고, 사업대상자의 변경요청 사유 및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감리》

사업자(신청조직)

- 시공업체 선정과 함께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감리를 실시하여 부실공사를 방지
- 감리는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업체를 선정
 - 저온시설 및 공조설비의 감리는 반드시 공조냉동 기계설비 전문가(기술사)가 수행

《성능검사》

사업자(신청조직)

- 저온저장고 : 공조냉동 기계설비 전문가(기술사)가 설계하여 시공한 후 최종 성능 검사 실시
 - 저온저장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은 에너지 절감을 위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한 녹색인증,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고효율에너지인증을 받은 장치 또는 장비의 설비를 우선 권장함
- 선별시설 : 공공기관(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종합검정(기기의 구조, 성능, 안전성 및 조작의 난이도를 검정)에 적합 판정된 모델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후에는 선별시설 전체에 대하여 전문기관(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의 성능시험을 받아야 하고(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검정기준 참조), 상품화설비(선별시스템) 전체 예산이 3억원 이상일 경우, 상품화 설비 전체에 대한 검수*를 공인기관(농업실용화재단 등)에 받아야 함
 - * 상품화설비 검수 : 계약 후 최종 제출된 설계서, 규격서, 내역서와 동일하게 설치되었는지 최종 검수 후 승인
 - (설치 전) 종합검정 확인 → 선별기 설치 → (설치 후) 성능시험 → 검수 및 대금 지급
 - * 투입, 세척, 포장시설도 종합검정에 적합판정된 모델 설치
- 주요 기계·장비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보증을 받은 기계·장비를 구입

《준공검사》

사업자(신청조직)

- 토목·건축부문 준공검사는 시·군 기술직(토목, 건축) 공무원이 직접담당 다만, 감리업체가 준공검사를 실시한 경우는 기술직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준공검사 가능

《기타 사항》

사업자(신청조직)

- 세부시설별 사업비 표준단가는 예시이므로 집행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할 경우 실제가격을 적용할 수도 있음. 다만 지역간·사업장간·유사 세부시설 등에 대한 객관성과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단가 산출명세서 첨부)하여야 함

- 시설규모 산정을 위한 상담 및 문의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경제지주 등에 하고, 기술적인 내용과 공사 감리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식품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자문을 요청하여 건설한 공사가 되도록 하여야 함

시·군·구

- 시장·군수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에서부터 준공시까지 지도·감독을 하여야함
 - 지원시설물의 법인명의 등기 여부와 토지 또는 건물대장 등재여부 확인

《입찰의 방법》

* 국가계약법령 및 예산회계법령 등에서 별도로 규정(제한 또는 금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래의 내용을 준용하여 시행

가. 제한경쟁 입찰방식 선택의 경우

- 1) 설계 및 감리의 발주
 - 시공과 설계를 분리 발주할 경우 기본설계, 실시설계, 감리는 동일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엔지니어링기술 중 기술부문별 전문분야 면허를 소지한 엔지니어링사업자에 한하여 입찰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의 장은 도시계획 변경, 예냉설비, 염수시설 등 사업내용에 따라 필수 또는 선택적으로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소지면허를 추가할 수 있음
 - 예냉시설에 대한 감리는 농산물의 생산·유통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국식품연구원이 감리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음
 -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엔지니어링사업 대가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지급
 - 감리는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업체를 선정

2) 기본설계의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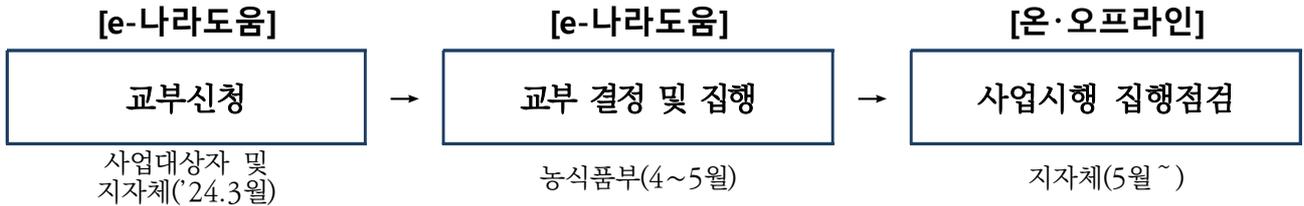
- 엔지니어링사업자는 기본설계 후 시설물의 최적화를 위해 적정성 검증을 해야 하며, 최적안을 도출하고 그 결과를 실시설계에 반영

- 적정성 검증내용에는 물류흐름, 입고에서 출하단계까지의 공정별, 설비별 최적화, 전체 공정 및 설비에 대한 최적화, 설비의 유연성이 포함되어야 함
- 적정성 검증방법은 일괄입찰방식에 준하여 실시
- 운영주체가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포함)인 경우 농협경제지주의 집중 자문을 받아야 함

나. 일괄입찰방식(Turn-key 방식) 선택의 경우

- 일괄입찰(일명 : Turn-key 방식)로 발주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9조(정의)제1항제6호에서 정의한 “기본설계입찰”이 원칙
-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4조(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에 입찰참가를 허용하되, 「국가계약법」 제7조(계약의 방법) 및 제25조(공동계약)에 따라 선별기 제조업체(국외업체의 경우 그 해당업체의 본사 또는 국내지점)와 공동계약(컨소시엄)을 해야 하며 주관업체는 국내업체로 해야 함
- 입찰방법, 입찰안내서,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심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되, 복합공종사업으로 공종별 내용을 심의할 수 있는 토목, 건축, 산업기계, 공조냉동, 기계공정, 정보통신 등의 전문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며 구성위원의 1/2이상은 아래와 같은 농산물관련 전문가로 구성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차장급 이상으로 농산물유통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자
 - 농촌진흥청(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 박사학위 소지자로 선별기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 한국식품연구원 박사학위 소지자로 예냉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자
 - 한국식품연구원 박사학위 소지자로 전처리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자(세척공정이 있는 경우)
 - 농협경제지주 차장급 이상으로 농산물유통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자(운영주체가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포함)인 경우 필수 참석)
- 감리는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4. 자금배정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지자체로부터 제출된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검토 후 소요사업비에 대한 교부 여부 결정
- 농식품부는 시·도 및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 교부 결정된 사항을 통지하고,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농식품부의 자금 지출 요구시 관련 규정에 따라 지출

지자체

- 지자체는 사업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전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 사업비 중 자부담액을 먼저 집행하게 한 후 보조금을 집행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사업자금 집행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 대조 등을 통한 자부담 전액을 실행한 증거(금융기관 거래자료 등)를 확인한 후 보조금 집행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전월 1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 신청
 - * 사업의 조기 추진 및 완료를 위해 사업대상자 자부담으로 우선 사업 추진 가능

5. 이행점검 단계

- 사업추진 실적 중간점검(사업집행단계)
 - 점검시기 : 매 분기[지방자치단체와 합동점검]
 - 점검내용: 사업계획 이행점검, 사업추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점검결과 조치 : 점검결과 미비사항은 사업계획 수정 및 보완 등 조치

6. 사후관리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후관리 합동점검
 - 점검시기 : 실집행 부진 등 사업추진 지연 시 농식품부와 합동점검[지방자치단체] (수시)하고 각 시·도는 추진실태 점검표를 작성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 점검내용 : 사업계획 이행점검, 사업추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점검결과 조치 : 점검결과 미비사항은 사업계획 수정 및 보완 등 조치

지자체(시·군·구 및 시·도)

- 중간점검
 - 매 분기 1회 이상 사업추진 상황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는 농식품부에 제출, 미비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
- 사업주관기관은 예산 이월·불용이 예상될 경우 이월·불용사유서 및 지출원인행위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10월말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 사업주관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 정산결과를 총괄 부서에 제출하고,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익년도 2월 10일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기간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0조(중요재산의 등록 등) 별표4를 준용하여 관리
- 사업주관기관은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2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보조금 통합 관리망(e-나라도움)을 통해 관리대장 및 지원이력 등록·관리 등 이행하여야 함
- 저장·가공시설 등에 대한 감리는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 업체를 선정
- 사업점검 결과 사업추진 부진, 보조금 취득재산 관리가 부실한 사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관계법령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운영평가》

- 지원사업체의 연간 취급실적 및 저장·가공 출하실적 등을 평가
 - 지자체는 사업종료 후 매 익년 2월까지 사업실적(해당지역 수급조절 등 효과 포함) 평가 분석하여 보고
- 출하조절시설 운영 실적 등 평가
 - 상시비축 실적 및 정부 출하명령 이행실적 등

《평가결과 환류》

- 우수조직: 노지채소 수급안정사업자금 우선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 부진 및 미흡조직: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 중단 등 필요한 조치 강구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I. 사업 개요

□ 목 적

- 규모화·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을 지원하여 소규모 유통시설의 중심축으로 육성

□ 사업내용

- 집하, 선별, 포장, 예냉·저온저장, 냉장수송시설, 위생시설, 신선편의시설, 가공시설 등 일괄 지원

□ 지원 자격 및 요건

- 연간 과일 선별물량을 5천톤~2만톤 내외로 조달가능하고, 원료조달 물량의 2배 이상(1~4만톤 내외)을 생산하는 지역에서 시·군단위 이상의 규모화된 마케팅사업이 가능한 운영주체를 확보한 경우

□ 지원내용 및 예산

- (공공) 국고 50%, 지방비 50, (일반) 국고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지원한도 : 15,000백만원 내외/개소(부지구입비 제외)
- '24년 예산 : 7,212백만원(국비 3,606, 지방비 3,606)

□ 사업 신청

- 장소 : 신청조직은 사업계획서 작성 후 시·군에 제출하고, 운영주체가 농협인 경우 사업계획에 대한 농협경제지주의 검토의견서 첨부
- 신청기간 : '24.1월

□ 대상자 선정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사업성진단 실시 이후 시·도지사 심사
- 농식품부 주관으로 세부 심사·평가 실시 통해 최종 선정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사무관 장 미 주무관 성원우	044-201-2254 044-201-225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통기획부	대리 김준수	061-931-1013

Ⅱ.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과수 생산·유통지원사업 지원대상자
 - 지방자치단체 및 생산자단체
 - * 농협(품목, 지역),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 연간 과일 선별물량을 5천톤~2만톤 내외로 조달 가능하고, 원료조달 물량의 2배 이상(1~4만톤 내외)을 생산하는 지역에서 수 개의 시·군 또는 군 단위의 규모화된 마케팅사업 운영이 가능한 운영주체를 확보한 경우
- 추가·보완사업은 사업대상 부지를 확보한 경우
- 원예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한 시·도 및 시·군
 - * 지자체 및 품목단위 원예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하는 사업자이면서 생산유통통합조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 우선 지원
 - * 지역행복생활권 계획과 연계된 경우 선정 평가 시 가점 부여
 - * 해당 지자체(시·군·구)에서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 되었거나 지역 푸드플랜 계획을 수립한 지자체 또는 먹거리 계획 협약을 맺은 경우 선정 심사 시 가점부여

<지원기준>

*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 지원

① 선(先) 조직화, 후(後) 시설지원 원칙 준수

- 운영주체가 정부지원 유통회사이거나,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지원 생산유통통합조직(출자출하조직 포함)일 경우

② 해당 시군에 경합되는 규모화된 조직이 없고 다음 조건 중 하나이상에 해당될 경우

- 농축산물 연간 생산액이 3천억원 이상인 시군
- 과실류의 연간 생산량이 3만톤 이상인 시군
- 운영주체가 매출액 100억원 이상이고, 조직화취급액*이 50억원 이상이며, 3년 이내 흑자가 가능한 경우

* 조직화 취급액 : 공동계산 수탁취급액 + 계약재배 매취급액

<지원제한기준>+

- 신규 일반APC, 신활력사업 등으로 과실류 전용 APC가 설립된 지역은 향후 5년간 신규시설 지원 제외. 다만 과실 품목 중 전국 생산량이 일부 시·군에 집중된 경우에는 신규시설 지원 가능

3. 지원대상

(1) 지원대상 사업규모

- 연간 과일 선별물량이 5천톤 ~ 2만톤 내외인 유통시설 설치 및 추가·보완

(2) 지원대상 사업의 종류

- 수 개의 시·군 또는 군 단위의 규모화된 마케팅사업 운영이 가능한 운영주체를 확보하고 원료조달 및 마케팅계획이 타당한 시설의 설치 및 추가·보완
- 과실브랜드육성지원 사업계획에 포함된 권역별 규모화 산지유통시설 설치 및 추가·보완

(3) 지원내용

- 집하선별·포장·예냉·저온저장·냉장수송시설, 위생시설, 신선편이시설, 가공시설 등을 원칙적으로 일괄지원
 - 예냉·냉장수송과 신선편이시설, 가공시설은 취급품목의 특성에 따라 일괄설치를 권장하거나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단, 신선편이시설은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독립적으로 설치할 수도 있음
 - APC의 취급품목 및 유통특성을 고려하여 시설활용도가 낮고 불필요한 시설 및 장비는 설치 제외
 - * ICT융복합 활성화를 위해 USN을 활용한 환경제어시스템, 선별기 등 자동화 기기, RFID를 활용한 생산이력 관리 등 지원 가능(ICT 융복합 사업 추진 시 농식품부 정보화담당관실 사전 협의 필요)
- 가동률 제고를 위해 과채류 등 부품목 취급은 가능하나 과일류 이외 품목의 설비와 장비는 자체 조달
- 다만, 정부예산의 범위에서 신규시설 설치 및 시설 보완사업의 사업비 한도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음

<일괄지원의 예외>

- 집하선별포장·예냉·저온저장·냉장수송 시설 중 일부가 이미 구비된 경우는 당해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만 지원
- 사업계획상 냉장업체 등과 계약을 통해 저온수송을 하고자 할 경우는 냉장탑차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만 지원

<소규모 분산투자 방지를 위한 지원규모 제한>

- 신규시설 중 집하·선별·포장장, 예냉·저온저장고는 각각 660㎡(기준시설 포함) 이상이어야 함
 - 다만, 예냉·저온저장고의 경우 품목의 특성상 저온저장이 불가능하거나 효율성이 낮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는 집하·선별·포장장으로 변경 가능

【참고사항】

-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단가예시에 없는 시설장비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가산출근거를 제시
-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의 건축 및 기계설비 기술 검토
 - 운영주체가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포함)인 경우 세부시설 설치 전에 시설 설치 적정성에 대해 농협경제지주와 협의
 - 지자체가 사업주체가 되는 경우 시설장비 설치에 관하여 위탁운영주체와 충분히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
- 사업비중 부지매입과 관련된 경비는 포함할 수 없음
- 경영지원시스템 구축은 개발업체와 협의하여 시스템 호환문제 등을 해결(관련된 사항은 별지 3-1 참고)
- 경영지원시스템(ERP)은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에서 개발한 「경영정보시스템 기술지침」을 참고하여 시설 및 품목 특성에 맞게 구축
 - 경영지원시스템 구축은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의 자문을 받아 추진(관련된 사항은 별지 3-1 참고)
- 선별방식 선정 : 농진청(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및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사업주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과수농협연합회, 농협중앙회, 산지유통전문가, 품목조합대표 등으로 구성된 선별방식 선정 협의체를 통하여 선정
 - 전처리(세척 등) → 선별(중량, 당도, 산도, 색택 등) → 포장 → 펠릿 적재 및 랩핑까지 자동일괄처리가 가능한 선별방식을 선정하되 별지 3-2호의 조건 충족
- 신규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할 경우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농산물(GAP)관리시설 기준에 적합한 위생요건 구비하고, GAP농산물 취급계획을 수립할 것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연간 과일 선별물량 5천~2만톤 내외의 유통시설 설치 및 보완(부지매입비 제외)
 - * 세부시설 및 사업비 표준단가 참조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지원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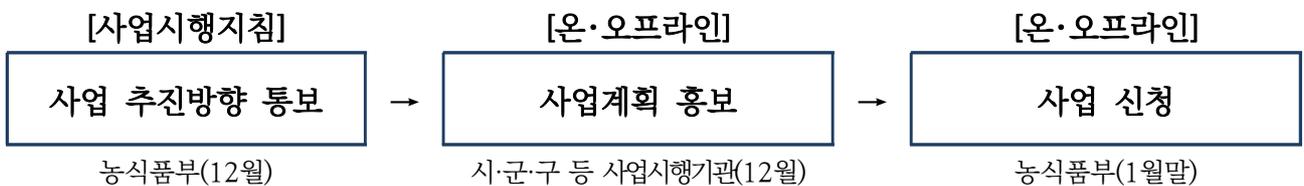
-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비율
 - 일반유형 : 국고보조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보완사업 : 국고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공공유형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 공공유형은 특별한 사유로 일반유형 지원이 곤란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 사업기간
 - 신규사업 : 2년(연도별 지원비율 : 1년차 40%, 2년차 60%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 추가·보완사업 : 1년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단가 : 15,000백만원 내외/개소(부지구입비 제외)
 - * 15,000백만원 이하의 중규모 시설도 지원 가능
 - 사업구역에 있는 기존시설의 활용, 구조조정 계획을 감안하여 신규시설 인정
 - 사업자의 능력과 사업성 등에 따라 사업비 증감 가능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기본계획(사업시행지침 등)을 수립하여 시·도 및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 시달(전년도 12월말)

사업자(신청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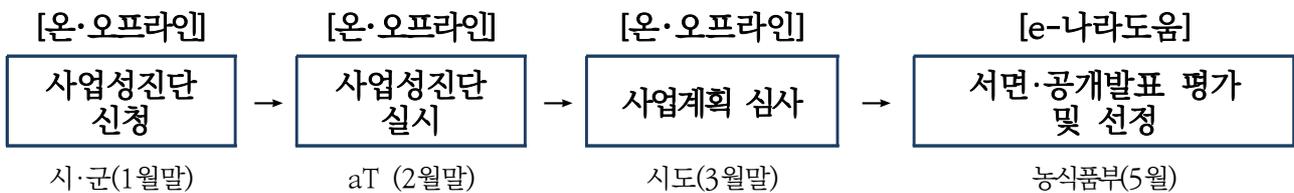
○ 사업계획서를 작성 후 시·군에 제출(1월말)

* 운영주체가 농협인 경우 사업계획에 대한 농협중앙회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사업신청

농협경제지주

○ 회원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의견(고정투자한도, APC필요성, 과투자, 원물확보 등)을 회원농협에 통보

2. 사업자 선정단계



시·군

○ 신규 및 추가·보완사업으로 신청할 사업에 대해서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사업성 진단을 실시 받고 다음년도 사업으로 신청

- 사업성 진단 기관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필요에 따라 농협중앙회, 시도 등에서 진단에 참여할 수 있음

* 운영주체가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인 경우 농협중앙회(산지유통부) 사전검토 보고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함

- 사업성 진단 신청 :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시·도지사를 통하여 농식품부와 유통공사에 신청(1월말 기한, 산지유통시설관리시스템(에그릭스)을 통한 사업신청 병행)

* 신청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출근거, 설계개요, 기계배치도, 배치도, 평면도, 정면도, 측면도, 단면도, 투시도(조감도), 부지전경사진, 유통사업 입증서류, 농가조직화 입증서류 등

* 사업계획서의 과수면적, 생산량, 사업량 등 통계자료에 대해서는 통계청의 자료인용 또는 검토의견을 첨부

○ 사업성 진단 참여기관과 협의하여 진단일정을 수립하여야 하며, 신청자별 사업계획서, 현지 확인 방문계획을 준비하여 사업성 진단에 차질 없도록 함

○ 사업성 진단 결과는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지방자율) 신청시 첨부물로 제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신청현황 보고 및 통보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신청 현황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고 신청기관에 통보(2월 5일 기한)
- 진단결과 보고 및 통보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진단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고 신청기관에 통보(2월 말일 기한)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2. 지원자격 및 요건」, 「3. 지원대상」에 부합되지 않은 사업성 진단 요청이 있을 경우, 그 현황과 사유를 농식품부에 보고하고 신청기관에 통보한 후 사업성 진단에서 제외
- 사업성 진단서는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 신청자 심사기준표의 심사항목에 따라 시·도에서 심사시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 내용을 기재(단, 수지전망은 향후 3개년 분석)
 - 사업성 진단에 참여한 진단자(유통공사, 농협 등)는 진단서 하단에 직위·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시·도

- 시·도지사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사업성 진단 결과를 토대로 신청자를 심사(사업성 진단을 받지 않은 신청자 또는 지원불가 진단된 사업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 시·도지사는 신청자에 대한 심사결과를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 계획서에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사업성 진단결과 반영현황은 사업 신청자별로 작성)
- 총사업비(10% 이상), 운영주체, 취급물량(20% 이상), 사업부지 등은 사업성 진단 이후 변경 불가
 - 사업성 진단 이후 주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심사평가에서 제외

<심사항목 외 시·도지사가 고려할 우선순위>

- ① 우선지원대상 사업자 : 생산유통통합조직, 자조금 조성단체 추천조직 등
 - * 투자 효율성, 지원방향의 일관성, 중복투자 방지, 운영능력이 검증된 사업자를 선정
- ② 농지가 아닌 곳에 사업장 부지를 이미 확보한 경우(확보된 농지의 전용 등 행정절차가 완료된 경우 포함)
- ③ 조직원의 결속도가 높고, 공동출하 등 유통사업 실적이 있으며, 경영장부(경영일지)의 기록 실적이 양호하고, 재무제표를 구비하고 있는 법인
- ④ 농지 중 지목이 “답”이 아닌 곳에 설치하는 경우
 - * 농업진흥지역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지역여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시·도지사가 판단하여 허용
 - * 농업진흥지역밖에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할 경우 농지조성비를 감면하고 있음(농지법시행령에 규정)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세부심사·평가 절차(별첨)에 따라 심사·평가를 실시하되, 선정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내·외부전문가에 의한 공개발표평가를 실시하여 사업대상자 선정(5월말)

세부 심사평가절차

가. 심사대상 사업계획 선정

-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대상 선정

나. 실무 사전검토

- 사업담당부서에서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요건 검토
 - 사업내용의 미비점, 사업대상자의 적정성, 사업비 산정, 중복투자 여부 등
- 검토결과 조치
 - 사업계획이 전반적으로 부실한 사업은 심사제외
 - 부분적으로 미흡한 과제는 보완요청
 - 검토의견을 비공개 서면평가 자료로 제공

다. 심사 및 평가

- 전문 평가위원단을 구성하고 사업계획별 평가위원이 평가
 - 평가위원 지정 및 평가기준제시 : 농림축산식품부

<1단계 : 비공개 서면평가>

- 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하여 비공개 서면평가 실시
 - 평가단 구성 : 7명 내외로 팀 구성
 - 주요평가내용 : 사업계획의 적정성, 혁신성, 성공가능성 등
- 평가결과 조치
 - 총점 100점 기준으로 전체와 부분평균으로 나누어 각각 선정적용
 - 전체 평가항목 평균 : 80점 미만의 사업계획은 선정 제외
 - 대분류 평가항목별 평균 : 60% 미만의 사업계획은 선정 제외
 - * 평균점수 : 평가위원별 합계점수의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

〈2단계 : 현장실사 및 공개발표 평가〉

- 전문평가단이 이전 단계의 평가내용을 종합하여 총괄평가
 - 평가단 구성 : 7명 내외(이전단계 평가 참여위원 포함)
 - 공개발표 방법 : 사업시행주체(시·도 및 시·군) 또는 사업주체측에서 사업계획 발표 후 질의·응답
 - 주요평가내용 : 이전 단계 평가내용을 종합하여 평가
 - 사업계획 내용 정밀 확인 및 여건 확보 여부 등
- 평가결과 조치
 - 총점 100점 기준으로 전체와 부분평균으로 나누어 각각 선정적용
 - 전체 평가항목 평균 : 80점 미만의 사업계획은 선정제외
 - 대분류 평가항목별 평균 : 60% 미만의 사업계획은 선정제외
 - 평가단의 종합의견은 사업비 심의, 최종사업계획 선정시 반영
 - * 심사평가기준 : [별지 3-13호 서식] 참조

라. 사업비 심의·조정

- 단계별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사업규모·단가 등을 보완하는 등 사업비 조정

마. 사업계획 최종선정

- 우선순위 결정
 - 비공개 서면평가 및 공개발표평가의 점수를 종합(가중치 : 서면평가 30%, 공개 발표평가 70%)하여 사업대상 순위 결정
 - 동점 발생시 13번 대분류 평가항목(유통사업실적)을 기준으로 순위결정

〈조진부 사업계획 선정〉

- 평가과정에서 제시된 미비점을 보완했을 경우 또는 보완이행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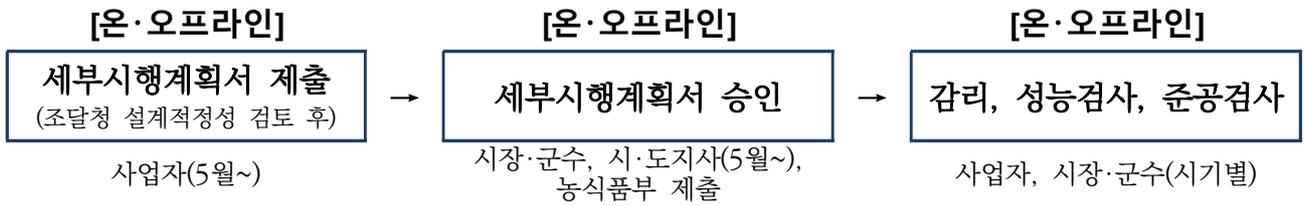
〈조진부 자금지원〉

- 사업계획 선정시 제시된 사항을 이행했을 경우 자금배정

〈사업 포기자 지원 제한〉

-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포기연도로 부터 3년간 지원 제한

3.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세부계획수립》

사업자(신청조직)

- 사업자로 확정되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여건에 맞도록 세부시행계획서(월별 공정계획 포함)를 작성하여 시·군에 승인 요청
 - * 사업계획 및 월별 공정계획 수립(월별 공정계획서식)

시·군

- 시장·군수는 승인 결과 및 월별 공정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제출
-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시설공사로서 전기, 통신, 소방은 포함. 설계·감리비와 선별기 등 기계장비는 제외)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조달청에 설계 적정성 검토 요청(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도 포함)(재정사업관리규정 제57조)

시·도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승인한 세부시행계획 중 부적절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정정 지시할 수 있으며, 월별 공정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사업계획변경 절차》

시·도(시·군)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는 사업포기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사업포기에 따른 사업대상자 추가선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사업타당성 검토를 거쳐 실시
- 승인을 받은 세부시행계획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리
 - 대표자 변경, 기타 경미한 사항 : 시장·군수 승인(시·도에 보고)
 - 지원금액 범위내의 계획변경 : 시·도지사 승인(농림축산식품부 보고)

- * 지원금액 범위내의 계획변경이란 당초 승인 비목 간의 계획을 변경하거나, 승인 목적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낙찰차액 등을 동일 사업 시설비, 주요장비 설치비 및 기타보완 사업비로 변경 가능
- * 사업시행주체가 시장·군수인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의 경우 완공 후 운영자(사업성 진단을 실시한 법인)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변경하여야 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 * 단, 세부시행계획 변경 승인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자체 사업 타당성 검토를 반드시 실시하고, 사업대상자의 변경요청사유 및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감리》

사업자(신청조직)

-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지원대상 사업자는 시공업체 선정과 함께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감리를 실시하여 부실공사를 방지
- 감리는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업체를 선정
 - 저온시설 및 공조설비의 감리는 반드시 공조냉동 기계설비 전문가(기술사)가 수행

《성능검사》

사업자(신청조직)

- 선별시설 : 공공기관(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종합검정(기기의 구조, 성능, 안전성 및 조작의 난이도를 검정)에 적합 판정된 모델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후에는 선별시설 전체에 대하여 전문기관(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의 성능시험을 받아야 하고(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검정기준 참조), 상품화설비(선별시스템) 전체 예산이 3억원 이상일 경우, 상품화 설비 전체에 대한 검수*를 공인기관(농업실용화재단 등)에 받아야 함

* 상품화설비 검수 : 계약 후 최종 제출된 설계서, 규격서, 내역서와 동일하게 설치되었는지 최종 검수 후 승인

- (설치 전) 종합검정 확인 → 선별기 설치 → (설치 후) 성능시험 → 검수 및 대금 지급

* 투입, 세척, 포장시설도 종합검정에 적합판정된 모델 설치

- 저온저장고 : 공조냉동 기계설비 전문가(기술사)가 설계하여 시공한 후 최종 성능 검사 실시
- 주요 기계·장비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보증을 받은 기계·장비를 구입
- 저온저장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은 에너지 절감을 위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한 녹색인증,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고효율에너지인증을 받은 장치 또는 장비의 설비를 우선 권장함

《준공검사》

사업자(신청조직)

- 토목·건축부문 준공검사는 시·군 기술직(토목, 건축) 공무원이 직접담당 다만, 감리업체가 준공검사를 실시한 경우는 기술직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준공검사 가능

《기타 사항》

사업자(신청조직)

- 세부시설별 사업비 표준단가는 예시이므로 집행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할 경우 실제가격을 적용할 수도 있음. 다만 지역간·사업장간·유사 세부시설 등에 대한 객관성과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단가 산출명세서 첨부)하여야 함
- 시설규모 산정을 위한 상담 및 문의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 등에 하고, 기술적인 내용과 공사 감리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식품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자문을 요청하여 건실한 공사가 되도록 하여야 함

시·군

- 시장·군수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에서부터 준공시까지 지도·감독을 하여야함
 - 지원시설물이 법인(공공유형 시설일 경우 시장·군수)명의로 등기여부와 토지 또는 건물대장 등재여부 확인

《입찰의 방법(공공 및 일반유형)》

* 국가계약법령 및 예산회계법령 등에서 별도로 규정(제한 또는 금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래의 내용을 준용하여 시행

가. 제한경쟁 입찰방식 선택의 경우

1) 설계 및 감리의 발주

- 시공과 설계를 분리 발주할 경우 기본설계, 실시설계, 감리는 동일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엔지니어링기술 중 기술부문별 전문분야 면허를 소지한 엔지니어링사업자에 한하여 입찰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의 장은 도시계획 변경, 예냉설비, 과실세척 설비, 과실봉지 소각설비 등 사업내용에 따라 필수 또는 선택적으로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소지면허를 추가할 수 있음
- 예냉시설에 대한 감리는 농산물의 생산·유통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국식품연구원이 감리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음
-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엔지니어링사업 대가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지급
- 감리는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업체를 선정

2) 기본설계의 검증

- 엔지니어링사업자는 기본설계 후 시설물의 최적화를 위해 적정성 검증을 해야 하며, 최적안을 도출하고 그 결과를 실시설계에 반영
 - 적정성 검증내용에는 물류흐름, 입고에서 출하단계까지의 공정별, 설비별 최적화, 전체 공정 및 설비에 대한 최적화, 설비의 유연성이 포함되어야 함
 - 적정성 검증방법은 일괄입찰방식에 준하여 실시
 - 운영주체가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포함)인 경우 농협중앙회의 집중자문을 받아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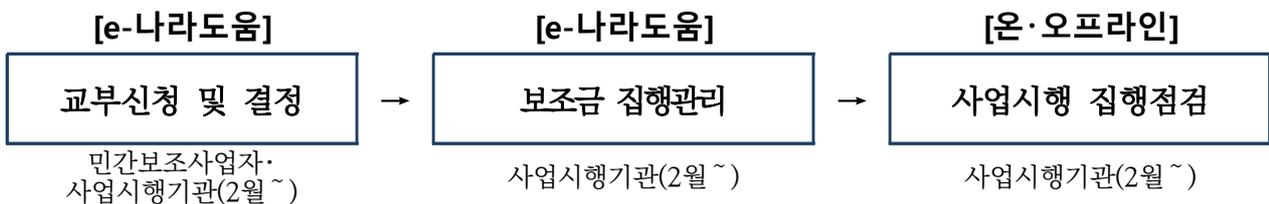
나. 일괄입찰방식(Turn-key 방식) 선택의 경우

- 일괄입찰(일명 : Turn-key 방식)로 발주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9조(정의)제1항제6호에서 정의한 “기본설계입찰”이 원칙
-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4조(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에 입찰참가를 허용하되, 「국가계약법」 제7조(계약의 방법) 및 제25조(공동계약)에 따라 선별기 제조업체(국외업체의 경우 그 해당업체의 본사 또는 국내지점)와 공동계약(컨소시엄)을 해야 하며 주관업체는 국내업체로 해야 함
- 입찰방법, 입찰안내서,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심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되, 복합공종사업으로 공종별 내용을 심의할 수 있는 토목, 건축, 산업기계, 공조냉동, 기계공정, 정보통신 등의 전문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며 구성위원의 1/2이상은 아래와 같은 농산물관련 전문가로 구성
 - 과수 수확 후 관리 분야를 전공한 조교수급 이상인 자
 - 과실 선별기 관련 분야를 연구하는 조교수급 이상인 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차장급 이상으로 농산물유통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 농촌진흥청(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 박사학위 소지자로 선별기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 한국식품연구원 박사학위 소지자로 예냉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 한국식품연구원 박사학위 소지자로 전처리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세척공정이 있는 경우)
- 한국과수농협연합회 부장급 이상으로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 농협중앙회 차장급 이상으로 농산물유통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운영주체가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포함)인 경우 필수 참석)
- 시설운영주체(기관)의 실무책임자로서 선별기의 사양, 성능 등에 지식이 있는 자 등

○ 감리는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4.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 보조사업자는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사업자 선정·확정통지를 받으면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비 중 자부담금을 보조금 전용 계좌에 입금 후 우선 집행

- 다만,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금을 예탁교부받은 경우 자부담금 우선집행 원칙을 따르지 아니하고, e나라도움 운용원칙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해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보조사업자가 정보취약계층인 경우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전용 계좌로 비예탁교부할 수 있으며, e나라도움 이용 관련 업무대행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집행관리)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사업비의 집행관리를 해야 함

* (계약) 1)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 제외)로서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 계약,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계약은 ①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 공개경쟁입찰 계약 ②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③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2)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인 사업인 경우 조달청의 조달서비스(위탁계약)를 신청하여 설계적정성 검토, 계약체결 등 수행

* (정산보고서 검증) 1) 농식품 보조금 3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정산보고서 검증 후 검증결과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2) 당해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 및 감사보고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e나라도움 운영 원칙 참고)

- 전자증빙서류를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사업시행기관의 사업담당자 문의하여 처리

* 사전교부형, 사후교부형, 「기본규정」 제53조2 8항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부터 농산물 등을 구입하는 경우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만 보조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재사용 가능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 및 사업시행기관은 집행현장점검의 시기와 방법을 명시

<자금배정>

시·도(시·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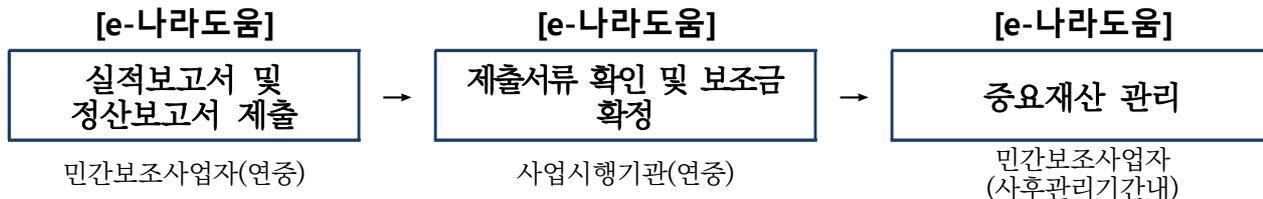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자금지원대상자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의 2 제5항 “사업자금 집행의 원칙”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운용규정」 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매월 사업자로부터 사업실적이 첨부된 자금배정신청서를 제출받아 사업추진상황을 확인하는 등 월별 소요자금을 정확히 파악한 후 사용 예정월의 전월 2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조금교부를 요구함

-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서 자금교부 요청을 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할 때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며, 지원비율이 지켜지는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 사업비는 자금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실적에 따라 집행

5.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신청
 - 정산보고서 검증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민간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에서 지정한 감사인에게 검증의뢰하거나 직접 감사인을 선정하여 검증결과를 제출 가능
 - 예탁교부를 받은 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잔액, 이자 등을 반납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보완 요청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의 현황은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별지 제3호에 따르면 부가적으로 사진 등을 등록
- 보조금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보조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
 - * 등록된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해서는 e나라도움에서 자동으로 부기등기사항 검증
다만, 비닐 하우스골조는 부기등기 대상에서 제외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의 확정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공공기관 등 민간사업일 경우 농식품부장관, 자치단체사업일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되며,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5에 따라 환수조치
- 사업시행기관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에 반드시 통보

- 농식품부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자(신청조직)

- 사업자는 시설물의 등기(법인 또는 공동명의)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산지유통센터 운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생산자 또는 다른 생산자단체의 시설 이용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들의 이용을 촉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시행
- 운영주체의 대표자(센터장)는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경영자과정, 마케팅과정 등과 같은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과수거점APC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함

시·도(시·군)

- 지원되는 보조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보조사업자가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를 검증받은 후 실적 보고서를 제출토록 조치(기본규정 제59조)
 - 감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 가능
- 공공유형 지원시설물(시장·군수 소유)은 과수거점APC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위탁 운영자의 선정기준, 운영기간, 운영방법, 위탁수수료 등을 명시하여 운영
 - 부지와 건물 등의 소유자가 각각 상이한 경우(예, 부지는 위탁운영자, 건축물은 시장·군수)에는 향후 재산권 분쟁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조례를 통해 명확히 해야 함

- 시장·군수는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설비·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관리대장 및 지원이력을 등록·관리하여야 함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시설완공 후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감독하여야 하며(농식품부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 참조),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시는 정도에 따라 보조금 회수조치(보조금 교부결정시 회수조건을 명기)
- 시장·군수는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 부진조직에 대한 경영클리닉에 참여하고, 시도지사는 매년(12월) 부진조직의 운영 및 경영개선 현황을 농식품부에 보고(익년 1월)
 - 경영클리닉 대상조직은 익년도에 경영개선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하고, 시도는 경영개선계획서를 취합하여 농식품부에 제출(2월)
 - 시장·군수는 경영클리닉 결과 용도변경 및 양수도 대상 권고조직에 대하여는 이행상황을 중점관리하고 용도변경, 양수도 이행 즉시 계통보고(시·군 → 시·도 → 농식품부)
- 사업자가 시장·군수인 경우 위탁운영자로부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이용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음
- 시설물을 이전하거나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군수는 승인결과를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농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시·군을 달리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 부동산(토지, 건물, 비닐 하우스골조 등)	준공일	10년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 부동산의 종물(건물내 기계설비)	준공일	7년간	
- 주요기계·장비·자재	구입일	5년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담보제공 등 처분시 농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 승인이 필요하며 임의로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도록 지자체, 금융기관(농업보조금 취급기관) 홈페이지 등에 농업보조 시설 및 장비 등 관리대장을 공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

- 시·도지사는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을 완료한 후 다음 해 3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사업실적 등)
- 기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용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0조에 따라 보조사업자에 대한 사업추진현황, 자금집행현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추진 점검결과 지원 규모, 지원체계,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사업추진 지침, 계획 등에 반영 추진
- 사업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일정
 - 대상조직 및 점검일정 : 시·도(시·군), 분기별 1회 이상 점검
 - 점검반 : 농림축산식품부(주관), 시·도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점검항목 : 사업추진 실적, 보조금 집행현황, 세부시행계획 적정성 등
 - * 사업점검 등 사후관리는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운용규정」에 따라 기금수탁관리자와 합동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

《제 재》

사업관리주체(시·도)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가 지원 자격에 미달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일정기간 동안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IV. 평가 및 환류

가. 원칙

-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에 대한 경영실적을 평가하여 우수조직에 대한 지원 확대와 부진조직에 대한 페널티 부과 등을 통해 경쟁촉진 및 사업성과 극대화를 도모하고, 경영컨설팅과 연계하여 산지유통센터 운영능력을 제고
 - 「산지유통종합평가」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산지유통의 규모화·전문화·광역화·조직화 등을 적극 유도

나. 2024년 사업실적 평가요령

- 평가 대상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관리중인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 * 신규사업자의 경우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후 운영 및 가동실적이 최소 6개월 이상 있는 경우에 한함
- 평가주관기관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평가기간 : 1~3월

- 평가기준 :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경영평가지표 참조
- 사업실적 평가 대상기간 :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또는 평잔 기준)까지
를 원칙으로 함(농협 이외 법인의 경우 결산일 기준)

다. 평가결과 환류

-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차등 지원
 - 산지유통활성화자금 무이자 운영자금 지원, 교육 및 컨설팅 비용 등 차등 지원

V. 202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5년도 사업수요조사

- '25년도 사업 예비계획서 제출('24.1월말)
 - 제출방법 : 예비계획서 작성(생산자단체 등) → 시·군 → 시·도 → 농식품부
 - * 예비계획서는 세부시행지침의 사업계획서를 준용하여 간략히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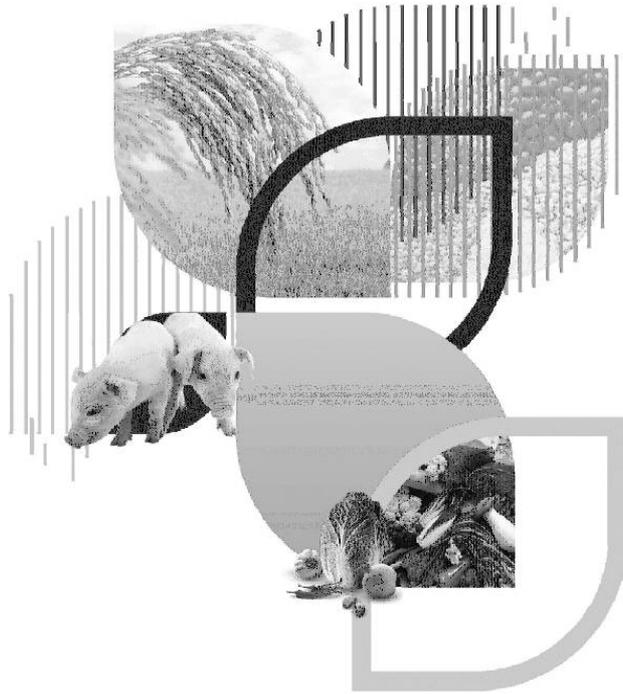
2. 202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4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VI. 주요 변경사항

사업명	현행(2021)	변경(2022)	변경사유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	<지원기준> ① 선(先) 조직화, 후(後) 시설지원 원칙 준수 - 운영주체가 정부지원 유통회사이거나,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지원 생산유통통합조직일 경우	<지원기준> ① 선(先) 조직화, 후(後) 시설지원 원칙 준수 - 운영주체가 정부지원 유통회사이거나,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지원 생산유통통합조직(<u>출자출하조직 포함</u>)일 경우	1. 출자출하조직도 사업 신청 필요

축 산



2024년도 축산분야 ICT 융복합확산사업 시행지침

I. 사업 개요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축산정책과	과 장 정경석 사무관 박광덕, 주무관 유호선(총괄)	044-201-2329·2321
소속기관/단체	축산물 품질평가원	유송원 유통지원본부장 권기문 빅데이터분석처장	044-410-7100 044-410-7101

* 본 사업은 FTA기금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내역사업임

I. 사업개요

1. 목적

- 축산농가에 생산비 절감, 사양관리 최적화, 악취·방역의 과학적 관리 등 생산성 제고 및 축산업 지속가능성 확충에 필요한 ICT 융복합 스마트축산 장비와 해당 장비 운영에 관한 솔루션 보급 지원
 - (개체관리) 칩 기반의 유전체 분석기, 개체 인식 또는 식별장치, 가축생체정보 수집장치 등 가축 건강·생체정보 및 개량 등에 필요한 장비·장치 등
 - (환경관리) 축사 내부(온도, 습도, 정전, 화재), 외부(온도, 습도, 풍향, 풍속), CCTV 등의 정보수집 및 원격 모니터링
 - (사양관리) 사료빈관리기, 출하돈선별기, 축산급이기, 자동급수기
 - (악취·방역) 악취감지 센서, 악취저감기, 환풍기, CCTV, NVR 등 활용
 - (솔루션) 축산데이터에 기반해 사양관리 최적화, 악취·탄소 저감, 가축의 과학적 방역에 필요한 다종의 스마트장비의 연계 운영에 관한 시스템 또는 응용 프로그램

2. 근거법령

- FTA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 계	96,000	67,200	78,400	69,000	56,952
국 고	36,000	25,200	29,400	25,875	21,357
용 자	60,000	42,000	49,000	43,125	35,595

Ⅱ. 주요 내용

1. 축산농가 대상 스마트축산장비 등의 보급

가. 사업대상자

-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축산업등록(사슴)을 한 자(축산법 제22조)
 - ※ 다만,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건축 허가를 받고 착공신고를 마친 경우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지원 가능
 - ※ 말의 경우, 「말산업육성법」제7조에 따른 말 등록기관에 세 마리 이상을 등록을 한 자에 한해 지원(축산업 허가·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축산업 허가·등록은 불필요)
- 곤충생산(사육)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누에를 사육하는 자, 양봉산업법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농가('20.8.28이후 시행)
 - 곤충의 경우 165㎡의 사육실을 보유하고 사육, 가공 전처리(선별, 세척, 건조) 장비를 일괄 도입하는 농가에 한함(단, 식품제조·가공업과 관련된 분쇄기 등 장비는 지원 불가)
 - 양봉의 경우 양봉농가로 등록된 농가이면서, 200군 이상을 보유한 자에 한함
 - ※ 지원 가능 가축의 종류 : 소, 말, 염소(유산양 포함), 돼지, 닭, 오리, 꿀벌, 사슴, 곤충(갈색 거저리유충, 흰점박이꽃무지유충, 누에)
 - ※ 산란계 농장의 경우, 케이지 사육밀도를 상향조정(0.05㎡/마리 → 0.075)한 농가에 한함

나. 지원자격 및 요건

〈기본 조건〉

- 현대화된 시설이 갖추어진 축사 또는 축사의 신·개축을 통해 현대화된 시설 구축이 예정되어 ICT 융복합 장비 적용이 가능하다고 사업주관기관(시·군·구)이 판단한 농업경영체
- 사업 완료 이후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품질평가원')이 총괄하는 축산 빅데이터 플랫폼('20~)에 ICT 융복합 장비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제공에 동의한 농업경영체
 - ※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동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농가도 적용
- 사업대상자는 지원한도 내에서 최대 3회까지 지원 가능하나, 2회 이상을 지원 받으려는 경우 반드시 사업시행기관장으로부터 관련 사업성과 평가를 받아야 함
 - 이 경우 사업시행기관장은 사업대상자가 도입한 스마트장비 운영실태 및 성과, ICT 융복합 장비에서 생성되는 축산데이터를 성실히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

- ※ 지원횟수는 `14년 이후 본 사업을 통해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횟수로 판단하되,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및 본 사업지침에 규정된 사후관리기간이 도과한 사업분은 지원 횟수에 산입하지 않음
- ※ 해당 사업의 보조금이 사용된 지방특화사업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의 유사자금에 해당되므로 유사자금 중복지원 규정을 준수
- 각 축종별 단위면적 당 적정사육기준 준수(축산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제14조의2 제2항 관련, 별표1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기준)
 - ※ 산란계 농장의 경우, 케이지 사육밀도를 상향조정(0.05㎡/마리 → 0.075)한 농가에 한함

〈우선 지원〉

- ICT 악취 측정장비(축산환경관리원 연계)을 설치한 자(`24년 사업으로 설치 예정인자 포함) * 곤충양봉 예외
 - ICT 악취 측정장비는 축산환경관리원의 현장 확인 이후 축사 내부, 환기구, 분뇨처리시설, 부지 경계 등 농장 여건에 따라 설치*
 - *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센서 등 스마트축산장비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제공
- 악취측정 및 모니터링 시스템, 악취저감 장비 및 시스템(단, 악취저감 장비 및 시스템은 악취측정 및 모니터링 장비·시스템을 이미 갖추고 있는 경우나 함께 도입하는 경우에 한함) 등을 도입하려는 농가
- 축산부문 후계농, 청년·창업 축산농가, 한국농수산대학을 졸업하고 5년 이내에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등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2024.3.29. 시행 예정)」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축산지구 내에 축사를 경영 중인 농가
 - ⇒ 지원 대상농가는 우선지원 조건 등을 감안하여 지자체에서 선정

〈지원 제외〉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표(첨부 4-1~4-13)의 평가 점수 상 부지와 시설이 미비하여 평가 항목 중 시설조건의 점수가 0점인 경우
 - ※ 현대화된 축사가 아닌, 비닐하우스 형태의 축사 지원 불가
- '20.1.1일 이후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징역, 벌금, 과태료 등 처분을 받은 농가
 - 대상 법령 :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악취방지법」, 「약사법」, 「곤충산업법」
 - * 「약사법」은 살충제성분 검출 관련 처분에 한함

- 지원 제한 기간

1) 징역(집행유예 포함), 벌금 : 3년

2) 과태료(동일 위반행위로 2회 이상 받은 경우), 과징금, 영업정지(조업중지·사용정지) : 2년

3) 과태료(1회), 시정명령 등 기타 행정처분* : 1년

* 다만,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가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4) 위반사항이 적발된 후 처분결정 미확정 : 처분 결정시까지 사업대상자 선정 보류

* 다만,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지 않은 이유로 처분을 받은 농가는 방역시설에 한해 지원가능

○ 「축산법」 제33조의2 제3항에 따른 축산업 교육(보수교육) 미이수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단, 축사 건축 허가를 받은 신규농가는 경영체 등록 전이라도 사업 완료 후 3개월 이내 축산업 허가 및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한다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

○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업경영체

* 축사·건축물 내 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 다만, 적법화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사업완료 시까지 적법화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

○ 전년도 해당 축종의 의무자조금(계란·닭고기·오리)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

* 축종별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를 통해 자조금납부확인서를 사업 신청 시 제출하여야함(참고 서식4)

* '23.1~12월 동안 납입 실적, 단 신규 농가는 제외

○ '20.1.1 이후 본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사업을 중단하거나 포기한 경우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부당사용 및 중도회수 사유로 확인된 자

○ 토지 또는 축사를 임차한 경우

- 다만, 사업 종료시점으로부터 5년이상 계약기간이 남아있고, 사후관리 기간 및 용자상환 기간 동안 장기간 임대계약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축산업을 지속할 수 있다고 사업주관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농림축산식품 재정사업관리규정 제76조(중요재산의 사후관리)에 따라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는 최소 5년이상의 사후관리를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함

○ 축사 신·증축 또는 시설현대화사업과 동시 추진 시, 축사신·증축 또는 시설현대화 인·허가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 장비도입에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관련 인허가가 완료되지 않은 농업경영체

- 가축전염병 예방 등을 위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업 지원에서 제외할 수 있음(단, 지자체 담당자는 지원 제외 대상자 선정시 가축방역 등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제외사유를 명시하여 사업신청 농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련 사항은 농식품부와 전담기관에 제출)

※ **농가 및 지자체 준수 사항**

- **농가 등 사업신청자** : 지원 제외 사유를 회피하기 위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본 사업을 신청하여서는 아니됨
- **지자체** : 사업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이상 유무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라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대상자의 지원 자금 전액을 환수(사업대상자 선정 무효) 조치하여야함

〈평가 시 가점부여〉

-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또는 유기 축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
- 후계농업경영인 지정을 받은 경우
- HACCP 인증을 받은 경우
- 저탄소 인증축산물 시범사업 지정을 받은 경우

다.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및 지원대상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축사 내외부의 환경조절 장비, 원격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장비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장비업체는 농식품부의 「ICT융복합 장비설치 규격 및 서비스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스마트팜코리아(www.smartfarmkorea.net)`에 등록하여야 하고, 축산물품질평가원과 데이터 연계가 가능한 장비이어야 함. 단, PC, CCTV 등 범용 장비는 제외
- ※ 'ICT융복합 장비설치 규격 및 서비스기준'은 전담기관(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정하고 스마트축산장비 검토 위원회 협의를 거쳐 농식품부에 보고

- ICT 융복합 시설을 도입하기 위한 축사 시설개선(개보수 포함) 비용은 지원 제외
 - 광역 축산악취개선사업을 통해 악취측정 ICT기계장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동 사업을 통한 악취 모니터링 장비 추가 지원 불가(단, 악취 저감장비는 지원 가능)
 - 축사시설현대화 등의 농림사업에서 지원받은 동일시설의 동류 장비의 경우, 중복지원 불가능하며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시스템 연계비용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가능함
- 농업경영체별 지원자금은 사전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 확정 결과에 따른 실제 소요액을 지원
 - 사업대상자는 총 사업비 기준으로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1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이나 조달청장 또는 지자체에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 물품과 공사의 구분은 계약담당자가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담기관이 제공하는 구분 기준 가이드라인을 참고할 수 있음
 - 센서 설치시에는 `20년 11월에 국가표준으로 제정된 `스마트축사를 위한 센서 인터페이스(KS X 3279:2020)`를 준수한 센서를 활용

〈지원대상〉

- 축사 내·외부의 환경 모니터링 및 조절 장비
 - 환경제어기, 환풍기, 냉난방기, 송풍기, 안개분무시스템, 농업용난방기, 통합 S/W 등
 - 악취측정 및 모니터링 시스템, 악취저감 장비 및 시스템 등
 - ※ 상기 장비는 컴퓨터 또는 모바일에서 농장환경정보의 모니터링 및 제어가 가능한 장비에 한함
- CCTV
 - 언제 어디서든 실시간 원격제어, 모니터링이 가능한 제품에 한함
 - ※ **축사 내부에서만 관찰** 가능하고 타 장비와 연계성이 없는 아날로그형 CCTV는 지원 제외
- 원격(또는 자동)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장비
 - (공통) 축사 방문차량 관리 및 차단 방역 장비(축산방역기)
 - ※ 상기 장비는 언제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차량의 출입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하고, 차량의 출입기록 등이 저장되는 제품에 한함

- (양돈) 사료자동(액상)급이기, 자동급수기, 사료빈관리기, 출하돈선별기, 생체정보 수집기, 축산용체중기, 유전체분석기 등
- (양계·오리) 사료자동급이기, 자동급수기, 난선별기, 사료빈관리기, 축산용체중기 등
- (낙농·한우) 자동착유기, 사료자동급이기, 사료빈관리기, 자동급수기, 발정탐지기 등 생체정보 수집기, TMR자동급이기, 송아지포유기, 축산용체중기, 원유냉각기, BCS측정기, 유전체 분석기 등
- (사슴·염소·말) 사료자동급이기, 자동급수기, 사료빈관리기 등

⇒ 상기 장비는 컴퓨터 또는 모바일에서 측정정보의 모니터링 및 제어가 가능하여야 함

- (곤충) 선별기, 배합기, 급이기, 세척기, 건조기, 컨베이어
- (꿀벌) 벌통 온도조절 시스템, 자동사양관리기

○ 생산경영관리 프로그램

- 번식, 질병, 사양, 경영 관련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농장경영관리프로그램

라.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지원조건)

○ 국고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비율 : 국고보조 30%, 국고융자 50%, 자부담 20%

- 융자금리 : 2%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융자금 일부 지방비 또는 자부담으로 대체 가능하나 자부담은 지방비 대체 불가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

마.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 기준

- * 돈사 전업농(1,000두), 계사 전업농(30,000수 단, 종계 10,000수), 낙농·한우(50두), 오리(15,000수), 말(10두), 흑염소·유산양(50두), 사슴(엘크 30두, 꽃사슴 100두, 레드디어 40두), 곤충(사육, 가공 전처리분야 도입 비용, 50평, 165m²), 양봉(200군)을 기준으로, 시설 및 사육수 증가에 따라 사업비 증액은 규격 및 서비스 기준을 준수하되, 사전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개별 농장 사정에 맞도록 실소요액을 반영

* 시설운영 컨설팅은 전담기관이 국고(100%)로 계획 수립 후, 대상 농가에 지원

○ 사업비 상한액 : 1,500백만원

2. 솔루션 중심, 축산스마트장비 패키지 보급

가. 사업대상자

- 축산데이터 등을 활용해 축산경영에 관한 솔루션(종합운영 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중 축산농가가 필요로 하는 현장 문제 해결형 솔루션*과 그 운영에 필요한 스마트축산장비**를 패키지형태로 보급이 가능한 업체
 - * 축사환경, 사양·번식·생산 효율화, 분뇨·악취저감, 가축건강·전염병 예방 관리 등 스마트 축산장비 검토 위원회의 승인을 통과한 솔루션에 한정
 - ** 솔루션 업체가 개발한 장비 외에 타 업체가 개발한 스마트축산 장비를 포함할 수 있음

나. 지원자격 및 요건

-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주관하는 '스마트축산 장비 검토 위원회' 승인을 받아 스마트팜코리아(www.smartfarmkorea.net)에 등록을 마친 솔루션 서비스 제공 업체

※ 솔루션도 장비검토위원회의 검증과 스마트팜 코리아(www.smartfarmkorea.net)에 등록하는 것이 원칙이나, '23년 및 '24년 시범사업에 한해,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된 솔루션'은 스마트축산장비 검토 위원회 승인을 통과한 것으로 간주

- 제공업체는 솔루션을 중심으로 그 운영에 필요한 스마트장비를 패키지로 지원 하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관련 계획에는 해당 솔루션 및 축산장비 도입을 희망하는 5호 이상의 축산 농가를 확보하고 관련 장비 및 솔루션 세부 설치계획을 포함하여야 함
- 스마트축산장비 및 솔루션을 지원 받으려는 축산농가는 '1.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스마트 보급사업'에서 정한 지원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다만,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에서 수행배제된 대표자(기업 포함) 등 다음의 자는 지원에서 제외 됨

〈지원제외 대상자〉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배제된 대표자(기업 포함) 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라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대표자(기업 포함)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른 지원제한을 3회 이상 받은 대표자(기업 포함)
-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정수급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대표자(기업 포함)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에 따른 집행잔액 등 반납금, 제77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른 환수금, 제78조제4항에 따른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또는 회수금, 제85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대표자(기업 포함)
- 사업 공모일로부터 신청기업 및 대표자가 정부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사정기관에서 수사중이거나 기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다.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및 지원대상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현장 문제 해결형 솔루션 도입·운영과 이에 필요한 스마트축산장비 패키지 도입 경비
 - 솔루션 및 스마트장비는 품질평가원과 데이터 연계가 가능하여야 함
- 사양 등 생산성 향상 외에 악취저감, 에너지 효율 제고, 방역 강화, 가축복지 제고 등을 위한 솔루션 제공 및 이에 필요한 축사 시설개선* 비용도 포함
 - * 솔루션 도입·운영에 불가피한 환기시스템 등 축사설비를 확충·개선하는 경우에 한함
- 다만, 광역 축산악취개선사업을 통해 악취측정 ICT기계·장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동 사업을 통한 악취 모니터링 장비 추가 지원 불가(단, 악취저감장비는 지원 가능)
 - 축사시설현대화 등의 농림사업에서 지원받은 동일시설의 동류 장비의 경우,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며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시스템 연계비용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가능함
- 지원자금은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사업대상자 선정 심사결과에 따른 실제 소요액을 지원
- 센서 설치시에는 `20년 11월에 국가표준으로 제정된 `스마트축사를 위한 센서 인터페이스(KS X 3279:2020)`를 준수한 센서를 활용

〈지원대상〉

- 솔루션 도입·운영경비, 이에 필요한 스마트축산장비* 설치 경비 등
 - 축산데이터를 활용해 온·습도/풍향·풍속 등 축사환경 제어, 사양·번식·생산(낙농, 산란) 효율화, 분뇨·악취·탄소저감, 가축건강·전염병 예방관리 등에 필요한 스마트축산장비*와 그 운영에 관한 솔루션 도입 경비 등
- * 대상장비는 `1.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스마트 보급사업`에 따라 보급이 가능한 장비여야 함

라.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지원조건)

- 국고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비율 : 국고보조 30%, 국고용자 50%, 자부담 20%
 - 용자금리 : 2%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 용자금 일부 지방비 또는 자부담으로 대체 가능, 자부담은 지방비 대체 불가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 다만, 지원대상 솔루션업체 및 해당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축해 지원한 축산농가 선정과 지원 금액은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주관하되, 컨소시엄 축산농가의 스마트축산장비 지원자격 및 대상자 변경, 사업비 세부 집행 등은 <1.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스마트 보급사업>에 따라 시·군·구에서 최종 검토·심사하여 추진
 - *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사업대상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 심사기준을 정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마.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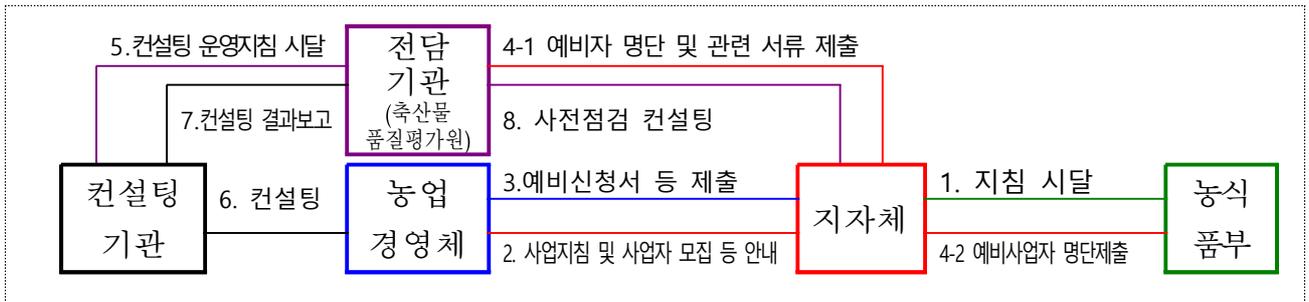
- 지원 기준 : 솔루션 및 관련 스마트축산장비 도입 경비, 해당 솔루션 서비스 용역을 받는데 필요한 경비 등
 - * 솔루션 서비스 이용 경비는 서비스 종류 등을 감안하여 설치한 날을 기준으로 최대 2년까지만 지원
- 기준 사업비 : 7,500백만원 내외(솔루션 설치 및 패키지)

Ⅲ. 사업 신청 및 선정

□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축산농가 대상 스마트장비 보급

가.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을 시·도에 시달(23.12월)

시·도

- 시·도지사는 시·군·구가 접수하여 제출한 사업대상자를 일괄 취합하여 농식품부 및 전담기관에 제출(24.3월)

시·군

- 시·군·구는 사업대상자 공모 및 1차 선발(23.12~24.2월)
 - 시·군·구는 예비사업자 신청 및 사전컨설팅을 전년도 10월부터 진행하여 본사업 대상자 선발 준비를 추진 할 수 있음
 - 시·군·구는 예비사업자 명단과 관련 서류를 전담기관(축산물품질평가원)에 제출 하고, 스마트팜코리아(웹페이지)에 해당 서류 및 정보를 등록한 뒤, 사전컨설팅 추진을 웹으로 요청
 - 전담기관은 컨설팅 운영기관 통해 사전컨설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군·구에 제출
 - 시장·군수는 컨설팅 결과보고서 및 경영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신청서에 대해 본 시행지침의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사업계획서를 시·도지사 및 전담기관에 제출(24.2월)

경 영 체

- 경영체(축산농가)는 도입하려는 스마트축산장비 및 솔루션이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스마트장비 검토위원회를 통과한 지원대상 장비인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
- 농장 현황, 사육현황, 사업계획, 정보활용 동의서 등이 담긴 사업계획 신청서와 사업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필수 서류) 시·군으로 제출(24.2월)
 - * 단, 컨설팅 기관이 협력해 작성해야 하는 서류 및 컨설팅 기관이 발행하는 서류는 제외
- 용자 희망농가는 거래 농협은행(농·축협 포함)을 통해 대출가능여부 및 가능금액 확인('23.10~'24.2월)

전담기관(축산물품질평가원)

- 2024년 컨설팅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컨설팅 운영기관을 선정(24.1월 중순)하여 지자체 및 사업신청 대상자에게 컨설팅 신청 절차 안내(24.1월 중순)
- 사업전담기관은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의 컨설팅 선정기관, 규격 및 서비스 기준과 국비지원 가능 장비(스마트팜코리아에 등록된 장비와 솔루션) 목록을 경영체와 지자체에 안내
- 컨설팅기관에서 실시한 컨설팅 결과를 검토하여, 시·도, 시·군에 통보
- 컨설팅 등에 관한 세부지침을 수립하여 이 지침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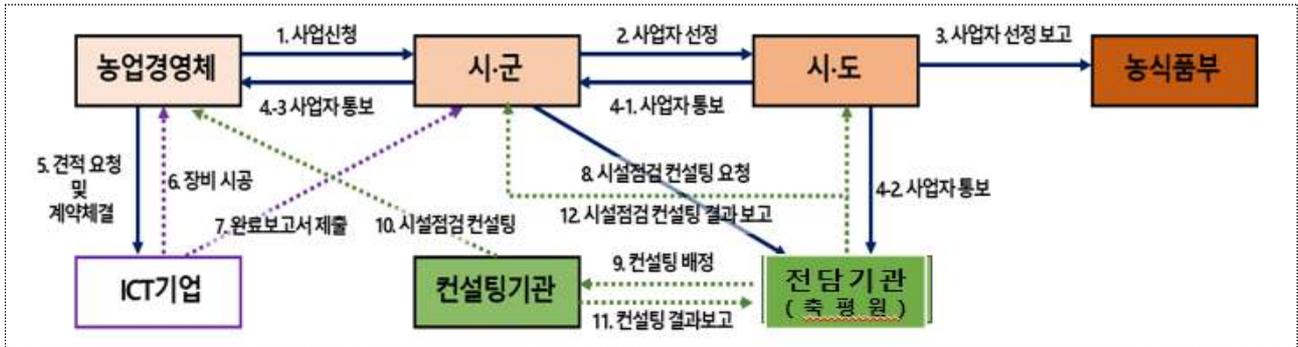
컨설팅 운영기관

- 컨설팅 운영기관은 농업경영체의 현장에서 필요한 ICT 융복합 시설 및 종류 등에 대한 사전컨설팅을 실시하고 결과를 전담기관에 통보
 - * 컨설팅 기관은 농업경영체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장비업체

- 품목명, 모델명,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부가세 관련사항(환급, 영세율, 부가세 과세대상) 등 내용이 기재된 견적서를 견적 요청한 경영체에 제출

나.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의 사업수요 및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24.1월)
 - * 컨설팅결과 및 사업비 신청내용에 등에 대한 전담기관의 검토의견을 고려하여 사업내역 및 비용조정 등

시·도

- 시·도지사는 시·도별 확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일괄 취합하여 사업자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비사업자를 최종 선정하여 농식품부 및 전담기관에 제출(24.3월)
 - 사업자 선정위원회는 본 시행지침상의 우선지원 요건과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표를 토대로 적격 여부, 사업대상자 및 지원 규모를 선정해 해당 시·도에 보고(24.3)

※ 「사업자 선정위원회」는 시·도에 두는 것으로 하고,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사업 지원 대상 농가 선정, 지원 장비 및 총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심사

- 선정 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축산, ICT 스마트장비 전문가 포함 3인~5인 이하로 구성
- 전담기관은 사도내 선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 경비(위원수당)를 지원할 수 있음

* 1인당 × 20만원(관계 공무원은 수당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 1년 최대 2회까지 지원 가능

- 정책방향과 사업목표 등이 상이한 대상자는 시·도 검토 시 신청에서 제외
 - 시·도지사는 예산 집행 상황에 맞게 사업자 선정 농가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시 · 군

- 시·도에서 배정된 예산 및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를 사업대상자에게 통보

전담기관(축산물품질평가원)

- 컨설팅기관의 사전컨설팅 결과 및 시도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신청 농업경영체별 사업추진 내역 및 비용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농식품부로 보고하여야 함

컨설팅 운영기관

- 컨설팅 기관은 농업경영체가 도입한 ICT 융복합 장비 및 솔루션에 대한 시설 설치 컨설팅을 실시하고 결과를 전담기관에 통보

장비업체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본 사업지침에 따라 수의계약/입찰을 구분하여 농업경영체와 계약을 진행
- 계약 사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나라장터 계약서), 세금계산서, 세부견적서, 하자 보수이행증권, 장비 설치 전·후 사진, 통장사본 등을 포함한 사업완료보고서를 시·군 제출(수시). **평가 및 환류단계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스마트 보급 사업' 규정을 준용**

IV. 사업 운영 및 관리

다.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지자체

- 농업경영체는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당해 시·군에 변경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하고, 시장·군수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여부 결정
-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의 세부시설간 물량조정 및 지원단가 총액 조정, 지원단가 내 품명과 세부단가 등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주관 기관(시·군 또는 시·도)에서 변경하여 집행 가능
 - * 단, 상기의 사유 외에 사업규모의 증액, 사업예정지 변경 등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사전 점검 컨설팅을 받아야 함
- 세부시설별 지원단가 및 내역 등은 반드시 농식품부의 규격 및 서비스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 적용하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산출근거를 첨부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계약에 관한 사항(계약서 사본, 계약내용 등 계약서류 일체)를 농식품부와 전담기관에 통지(계약 변경의 경우에도 동일)

사업변경절차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지역, 지원품목, 조직 등의 변경사항 발생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군 예산 범위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시·도로 제출(시·도는 농식품부와 전담기관에 제출)
 - 시·군 단위 총사업비 증가가 있는 경우나 사업대상자 변경 등의 경우, 시·도는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와 전담기관에 제출
- 시·도 단위 전배가 필요한 경우,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예산 등을 고려하여 농식품부에서 변경 승인
- 사업시행주체는 부득이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당해 사업주관기관(시·군)에 변경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사업계획 변경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계획 변경이나,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된 보조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며, 착공일 기준으로 3년간 동 사업 참여 제한

라. 자금배정단계

〈자금집행 체계 및 절차〉

◇ 기성고(준공) 확인 신청(사업자→시장·군수) ⇒ 보조금 및 융자금 신청 및 배정(지자체→농식품부) ⇒ 융자대출 신청 및 대출(사업자→대출기관) ⇒ 보조금신청 및 지급(지자체→농식품부) ⇒ 결산·정산보고(지자체→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시·도의 사업자금 신청을 근거로 소요자금 한도액 배정

지 자 체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자금집행관련 사항은「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과「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사업자금 집행의 원칙” 등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8조 2항」에 따라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게 하여야 함
 1. 연간 사업비에 대한 자부담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이고 연간 자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자부담 금액은 사업 착수 시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집행하고, 연간 사업량의 100분의 50에 해당할 때부터 기성고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집행시마다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합한 금액의 집행 비율 이상 자부담 금액 집행
 2. 제1호 외의 경우는 공사 종류별 또는 사업 내용별 연간 자부담 금액 전액을 사업을 착수할 때부터 집행

- 단,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4조 제4항에 따라 보조금통합관리망(e-나라도움)을 통해 예약교부하는 사업대상자는 자부담 우선집행 원칙을 적용받지 않음(따라서, 지급된 국비(30%)를 우선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지도, 보조금통합관리망에 집행한 실적을 등록할 것
- 보조금 교부결정이 확정된 사업대상자 명단을 전담기관에 제출(수시)
- 시·군은 자부담이 우선 집행된 농업경영체에 대해서는 자부담 집행 여부, 장비 공급 계약서 등을 검토한 후 「국고금 관리법」 제26조 및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선급금 지급 가능
- 부가가치세 환급 품목에 대해서는 환급 받는 경우에는 사업비 정산할 때 부가세 환급금을 빼고 정산을 하고, 환급금은 지원비율(국고, 지방비, 자부담 등)에 따라 환수 조치
 - 단, 부가세 환급이 예상됨에 따라 환급될 금액만큼을 자부담에 더하여 사업비로 쓸 경우, 사업대상자는 해당 지자체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군수가 종합적으로 검토·결정하여 추진

마. 이행점검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사업대상자의 사업추진 상황,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상황 등을 점검
 - 점검일정 : 연 2회(반기별 1회)
 - 점검반 : 농식품부, 전담기관(품질평가원)과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점검내용
 - 사업계획 및 진척도, 시설장비 선정의 적합성, 지자체 및 자부담 조달계획 등
 - * 점검결과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차년도 사업물량 우선배정 등

지자체

- 시장·군수(시·도지사)는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검정을 실시하고 사업비를 정산하여야 함

- 사업비 정산은 컨설팅 기관의 시설설치컨설팅 결과보고서(증빙서류, 현장사진 등 포함)를 활용한 현장 확인 실시 후 집행
 - 사업비 정산 시 사업비 집행 실적(영수증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부당 집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반납 조치
- 시장·군수(시·도지사)는 전담책임자를 지정함은 물론 정기적 실태조사, 현장점검 등을 통한 사후관리 감독 철저
-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도록 지도
- 시장·군수(시·도지사)는 정기적으로 사업추진현황을 파악하여 농식품부에 보고하고, 사업목표 달성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계획을 수립
- 사업자 선정 이후부터 실집행금액 등 사업추진현황을 파악하여 매월 말일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컨설팅 기관

- 컨설팅 기관은 농업경영체에 시설이 효과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시설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설치확인 사항을 포함하여 단계별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전담기관에 제출

전담기관

- 컨설팅기관의 사전 컨설팅(서류점검, 사전점검), 시설설치 컨설팅, 사후관리 컨설팅에 대한 추진현황 점검 및 확인
- 컨설팅 추진현황 파악하여 매월 말일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 컨설팅기관이 실시한 시설점검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지자체에 통보 특히, 부당 계약 사항(입찰 미실시), 본사업자 미선정자의 사업 진행, 미등록 업체(장비 포함)의 계약은 지자체에 공문으로 통보
- 농식품부의 점검일정에 따라 합동으로 현지방문 점검 실시

《사후관리》

- 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 의무를 다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사업실시규정 관계규정(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 관리 기간		중요재산의 처분의 제한
	부터	까지	
-기계 장비	구입일	5년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 2년)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하게 중요재산에 대한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이 필요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7조에 따라 별지 제19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건물 내 고정식 기계설비, 고정식 ICT설비		10년간 (사업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 3년)	

- 장비업체는 계약시 약정한 하자보증기간 내 발생하는 하자보수를 성실히 이행

《제재 및 처벌내용》

사업관리주체(시·도 및 사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자의 사업 실적부진 및 부실집행, 무단 용도변경을 확인 시에는 자금회수 및 예산지원 축소 등의 조치를 취함
- 시장·군수는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후 불가피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 업체탐색, 견적서 접수, 계약을 위한 실시설계 등을 하지 않거나 사업자 선정 후 2개월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단, 총 사업비를 기준으로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1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3개월) 해당 사업대상자를 탈락시키고, 지체없이 다시 선정하여 추진 가능

* 자연재해, 가축질병 발생(신축축사 인허가는 불가피한 사유에서 제외)

- 시·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사업비가 이월·불용되지 않고 연내에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대상자 독려, 불성실 사업대상자에 대한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 하여 결과를 시·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익년도 2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 및 융자금의 부당사용 사유 등이 확인된 때에는 사업대상자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 환수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훈령 제337호) 제78조 및 제79조 지원의 제한을 적용하여 일정기간 농림사업 참여 제한 조치후 농식품부 보고
- * 업체와 연관된 부당사용의 경우는 업체도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농림사업 참여 제한 조치

장비업체

- 전담기관(축평원)은 장비업체의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 주의 경고 후 보완 조치 하고 불이행 시 스마트팜코리아 등록업체에서 제외 가능
- * 주의 조치 3회 이상의 경우, 스마트팜코리아 등록 제외 및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참여제한 가능
- 결격사유가 다음과 같이 중대한 경우, 해당 사업에서 5년간 참여 제한
 - 표준계약서 및 기타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 컨설턴트를 매수하여 장비선택을 유도 하였을 경우
- 장비 보증 기한 내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대 1년간 해당사업 참여 제한 가능

컨설턴트

- 컨설턴트가 축산농가에게 특정 장비 선택을 부당하게 강요하는 경우 해당 컨설턴트의 사업참여를 3년간 제한

공통

- 기타 보조사업 수행배제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 31조의2 규정에 따름

- 지자체 승인 없이 보조금 교부 목적과 상이한 장비가 설치된 경우가 2회 이상일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향후 3년간 해당사업 참여 제한 가능

바. 성과측정단계(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주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평가시기 : 차년도 12월말 기준(구축 전후비교)
- 평가방법
 - 전담기관 및 시장·군수(시도지사)의 평가결과를 제출받아 현장평가
 - 평가내용 : 사업목표 달성여부, 사업성과, 축산농가 만족도 등
-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지자체별 물량 배정 조정, 컨설팅 운영기관 및 컨설턴트, 스마트장비 및 솔루션 업체 등의 사업제한 참여 제한 등의 조치

시·도(지자체)

- 주관기관 : 시장·군수(시도지사)
- 평가시기 : 구축 후 2개월 이내
- 사업목표 달성여부 평가 및 사업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 후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 컨설팅 결과보고서의 기대효과 등을 활용하여 자체평가계획에 따라 결과보고

전담기관

- 사업성과 지표 개발 및 측정, 운영현황조사 및 현장실사(주관기관 적극 협조)
 - 전담기관은 컨설팅결과의 기대효과 및 지자체의 자체평가결과를 기준으로 사업 성과 지표에 따라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축산농가 대상 컨설턴트 및 스마트축산장비업체에 대한 만족도 조사 실시

경영체(축산농가)

- 경영체(축산농가)는 동 사업을 통해 생산되는 ICT 데이터를 전담기관이 지정한 규격에 맞춰 지정된 서버나 클라우드 등 저장매체에 전송하여야 함
- 정부주관의 사업 효과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및 농장 경영정보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실하게 응해야 함(예: 설치 전후 출하성적, 생산비 증감 등)

2. 솔루션 업체 중심, 스마트장비 패키지 보급

가.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솔루션 중심 스마트축산장비 패키지 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통보

축산물품질평가원

- 스마트축산 솔루션 업체 대상 공모,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심사위원회 구성
- 10개 지원 활용, 현장 실사 지원 등

솔루션 업체 등

- 솔루션 및 장비 설치 희망 축산농가와 함께*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품질평가원 제출
 - * 각 솔루션 업체 등 컨소시엄 주관기업체는 보다 많은 축산농가가 해당 컨소시엄에 참여 할 수 있도록, ①컨소시엄 목적, ②도입 솔루션 성능 또는 기대효과, ③사용할 ICT 장비의 종류·기능·가격 등에 관한 정보를 전국한우 협회 등 관련 축종별 생산자 단체 등에 사전 설명회 또는 안내 공문 발송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함

나. 사업선정단계

- 외부 전문가를 심사위원회로 위촉하고 품질평가원이 마련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다.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자금배정단계, 이행점검단계, 성과측정단계(사업평가) 및 환류단계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스마트 보급사업' 규정을 준용

V. 평가 및 환류

농림축산식품부

- 주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평가시기 : 차년도 12월말 기준(구축 전후비교)
- 평가방법
 - 전담기관 및 시장·군수(시도지사)의 평가결과를 제출받아 현장평가
 - 평가내용 : 사업목표 달성여부, 사업성과, 축산농가 만족도 등
-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지자체별 물량 배정 조정, 컨설팅 운영기관 및 컨설턴트, 스마트장비 및 솔루션 업체 등의 사업제한 참여 제한 등의 조치

시·도(지자체)

- 주관기관 : 시장·군수(시도지사)
- 평가시기 : 구축 후 2개월 이내
- 사업목표 달성여부 평가 및 사업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 후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 컨설팅 결과보고서의 기대효과 등을 활용하여 자체평가계획에 따라 결과보고

전담기관

- 사업성과 지표 개발 및 측정, 운영현황조사 및 현장실사(주관기관 적극 협조)
 - 전담기관은 컨설팅결과의 기대효과 및 지자체의 자체평가결과를 기준으로 사업성과 지표에 따라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축산농가 대상 컨설턴트 및 스마트축산장비업체에 대한 만족도 조사 실시

경영체(축산농가)

- 경영체(축산농가)는 동 사업을 통해 생산되는 ICT 데이터를 전담기관이 지정한 규격에 맞춰 지정된 서버나 클라우드 등 저장매체에 전송하여야 함
- 정부주관의 사업 효과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및 농장 경영정보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실하게 응해야 함(예: 설치 전후 출하성적, 생산비 증감 등)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과 장 서준한 사무관 김보민	044-201-2351 044-201-2355

I.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개요

◇ 아래 내용은 각 내역사업에서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동일하게 적용된다.

1. 사업목적

- 국산 조사료 생산·이용을 활성화하여 생산비 절감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
 - 사일리지 제조비, 조사료용 기계·장비 등 지원을 통해 부존자원 활용 및 양질의 조사료 생산·유통기반 확충 도모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초지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낙농진흥법」 제3조제3항, 「사료관리법」 제3조제1항 및 제3항,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4조제1항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4년
합 계	119,608	104,263	97,093	87,384	83,679	80,170	80,506	86,359	85,898
보 조	81,326	81,839	80,435	76,577	76,742	76,779	77,958	84,280	84,858
용 자	38,282	22,424	16,658	10,807	6,937	3,391	2,548	2,079	1,040

4. 사업대상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또는 시장·군수가 그에 준하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조사료를 생산·이용하려는 자
 - * 농업인, 농업법인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로 한정

5.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 경종 농가, 한우·젓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 허가 농가 등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 * 말·토끼·염소·사슴·가금 등 초식가축을 방목하여 사육하는 농업인을 포함한다.
- 농업법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본 사업에서는 조사료 생산·이용에 참여하는 법인으로서 이하 '경영체'라 한다)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및 [별표 6]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생산자단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 품목조합 등
- 비영리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사일리지제조비, 품질등급제, 조사료 이용촉진비에 한함)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④ 조사료 품질검사 및 등급제 [별표 1]의 생산이력현황 스티커를 포장 단위별로 부착하여야 한다.(자가소비용 제외)

6. 지원조건

내역사업명		기금보조	지방비	기금융자	자부담	용자조건	
조사료 생산	사일리지제조비	30	60	-	10	-	
	종자구입비	30	-	-	70	-	
	전문단지	사일리지제조비	50	40	-	10	-
		품질등급제	50	40	-	10	-
		종자구입비	50	-	-	50	-
		퇴·액비	50	50	-	-	-
		입모중파종	50	30	-	20	-
	품질관리	50	50	-	-	-	
시설 및 기계장비	경영체 기계·장비	10	30	30	30	연리 2% (2년거치 3년상환)	
	농가 기계·장비	-	-	80	20	연리 2% (2년거치 3년상환)	
	전문단지 기계·장비	30	30	30	10	연리 2% (2년거치 3년상환)	
	가공시설·유통센터	30	30	-	40	-	
	운영자금	-	-	100	-	연리 2% (2년거치 일시상환)	
조사료 유통	조사료 이용촉진비	40	-	-	60	-	
	교육·홍보	100	-	-	-	-	

* 지방비(시·도비, 시·군비) 분담 비율은 1:1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비는 10~50% 범위 내에서 재정 여건에 따라 편성

Ⅱ. 2024년 사업 시행 주요내용

⑤ 기계·장비 지원

1. 사업대상자

- 'I. 사업개요'의 '4. 사업대상자'에 부합하는 자로 국내산 조사료를 생산·이용하려는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 경영체, 생산자단체: 법인이 아닌 한우협회, 낙농육우협회 등은 제외하고,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의 법인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타 법인 등의 기존 조사료 재배지 이외의 신규 재배지를 확보한 경우로 한정한다. 단, 장비지원 후 사후관리기간 동안 확보한 재배면적을 유지해야 한다.
- 전문단지
- 시·군: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업단

3. 지원대상

- 조사료 생산·이용에 필요한 트랙터, 운반·예취·집초기, 곤포장비 (베일러, 베일피복기, 적재기), 진압기, 반전기, 채종기(종자단체에 한함), 이동식 계근장비, 농업용 무인항공기 등
- * 논 하계조사료(전략작물직불제 연계)를 사일리지로 생산하려는 자에게 우선 지원

조사료용 기계·장비 종류(예시)

작업명	기계·장비명(규격)	비고
동력원	농용트랙터(135HP내외)	
곤포장비	베일러	원형베일러(드럼폭174cm내외), 자주식 옥수수 수확기 베일러
	베일피복기	랩피복기(100cm*100cm 내외)
	적재기	적재기(로더, 그래플 포함)
부속작업기	경운	플라우(4연)
	파종	파종기(12조), 진압기
	시비	퇴·액비살포기(4톤), 비료·농약살포기
	예취	모우어(2.4m) 및 컨디셔너 하베스트(1~3조)
	정지	로타베이터리(80HP이상)
	방제	동력분무기(주행형, 600ℓ)
	운반	트레일러(4톤), 로다 등
	반전 및 집초	반전기(2로터 이상), 레이크(3.0m)
기타	수확기, 절단기, 곤포사일리지 커터, 농가용 조사료배합기, 농기계 및 조사료 보관창고, 농업용 무인항공기 등	

* 본 표는 예시로서 기계·장비 및 규격은 조사료 재배규모 등에 따라 선택 가능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조사료 생산·수확 및 사일리지 제조 등을 위한 기계·장비 구입비

5. 지원형태

- **경영체, 생산자단체, 시·군** : 축산발전기금 보조 10%, 지방비 30%, 용자 30%(연리 2%, 2년 거치 3년 상환), 자부담 30%
 - * 용자 30%는 자부담으로 대체 가능(지자체 포함)하며, 대출 시점에 신청인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
 - * 시·군은 사업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지급을 위임받아 공급업체에 지급 가능
- **농업인** : 축산발전기금 용자 80%(연리 2%, 2년 거치 3년 상환), 자부담 20%
 - * 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등에서 용자지원을 희망할 경우 농업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 가능
- **전문단지** : 축산발전기금 보조 30%, 지방비 30%, 용자 30%(연리 2%, 2년 거치 3년 상환), 자부담 10%
 - * 용자 30%는 자부담으로 대체 가능하며, 대출 시점에 신청인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
 - * 전문단지로 지정되어 기계장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사후관리기간(부속장비 5년, 트랙터 8년)까지 경영체 기계장비와 중복지원 불가
 - * 전문단지 선정 이후 5년이 지난 사업대상자가 기계장비 추가 지원을 희망할 경우, 농식품부 공모를 통해서만 선발·지원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공통사항) 지원받은 지 5년 이상 경과된(수확면적이 기존 수확면적만큼 유지된 경우에 한함) 부속장비(부속작업기, 베일러 등)의 경우 추가면적 확보 없이 교체 및 추가 지원 가능
 - 지원받은 지 8년 이상 경과(수확면적이 기존 수확면적만큼 유지된 경우에 한함)된 트랙터의 경우 추가면적 확보 없이 교체 및 추가 지원 가능
 - 기계장비를 기 지원받은 실적이 있는 경영체가 이동식 계근장비 구입을 희망하는 경우 지원 가능
 - 트랙터는 기본적인 곤포장비와 반전기를 구비한 경우에만 지원
- (경영체) 1세트당 지원 한도 **150백만원**(수확면적 20ha당 1세트 기준이며, 10ha 미만인 경우 보조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나 임야 면적비율이 66% 이상 시·군은 일부 예외로 한다.)
 - * 수확면적은 하나의 경영체가 수확 작업한 면적에 한한다.

- 옥수수, 총채벼 등 하계 사료작물 수확용 기계장비 지원한도는 300백만원 (수확면적 20ha당 1세트 기준이며, 10ha 미만인 경우 보조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나 임야 면적비율이 66% 이상 시·군은 일부 예외로 한다.)

〈 지원금 산정 예시〉

- 사업대상자 확보 면적이 15ha일 경우
 - 20ha당 사업비를 기준으로 확보 비율(75%)만큼 사업비 조정(200백만원 × 75%=112.5백만원)하여 지원금 산정
- 사업대상자 확보 면적이 10ha미만의 지역일 경우
 - 10ha 기준으로 지원

- 경영체 평가 결과 우수 농업법인·생산자단체에 1.5억원 추가 지원, 지자체 참여시 3억원, 조사료 생산 거점 지역조합, 품목조합에서 50ha이상을 직접 재배(작업)하는 경우 3억원 이내 지원
- 경영체 수확면적에 따른 지원 가능 사업비 내에서 장비 중복 지원 가능. 단, 작업별 기종(브랜드, 규격 등)이 다른 장비에 한해 중복지원 가능

* 예) A업체의 예취기 B모델을 사용하다 트랙터와 호환 문제 등으로 교체를 희망할 시 A업체의 C모델 또는 D업체의 E모델 등으로만 지원 가능

- (전문단지) 1세트당 지원 한도 300백만원(재배면적 70ha당 1세트 기준이며, 기존 경영체 기계·장비지원을 받고 사후관리 기간 내에 있는 필지는 지원대상 재배 또는 수확면적에서 제외)

- 옥수수·총채벼 등 하계사료작물 수확용 기계장비 지원 한도는 500백만원
- 단, 광역단지·특화단지에 한해 지역특성 및 여건에 따라 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00ha당 1세트 기준으로 기계장비 지원 한도 600백만원, 옥수수·총채벼 등 하계사료작물 수확용 기계장비 지원 한도는 1,000백만원으로 지원 가능

- (용자지원) 기 용자지원분(농업종합자금 및 축산정책자금)을 포함한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

-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및 협업체의 개별농가 포함) : 5억원 이내
- 경영체 : 자기자본의 200% 이내
- 생산자단체 : 자기자본의 400% 이내

7. 기계·장비 구입 및 사후관리

- 경영체는 재배농가와 축산농가로부터 받은 영수증 및 기계·장비 구입 영수증, 사진, 법인통장 입출금 내역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 보조금 지급 신청
 - 대상자 선정에 따른 기계·장비 구입시 농협경제지주 및 시중 은행 본점에 사전 확인하여 이중으로 지원(보조·융자)되지 않도록 조치
 - 시·도(시·군)는 기계·장비에 대한 보조금 집행 시 농협 등의 융자 집행내역을 확인하여 집행 여부를 결정하고, 농협경제지주는 일선 지역조합에서 기계·장비 보조내역 및 기대번호 등을 확인한 후 융자 집행 여부 결정
 - 시·도(시·군)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관리해야 하며, 사업대상자는 제57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조달청장에게 위탁, 지자체에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 1.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 추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
4.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 추정가격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
- 기계·장비 공급자는 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 보증기관의 공급 및 사후관리 보증서를 발급받아 기계·장비와 함께 공급
 - 융자지원 사업은 농업종합자금사업의 농기계구입 지원사업에 등재된 융자지원 한도액 범위내 실거래 가격 준용
 - 기계·장비는 농기계구입 지원사업의 정부지원대상 농기계의 지원을 권장하며, 사업 추진상 정부지원 대상이 아닌 일부 대형 농기계가 필요한 경우 지원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지원 (지원상한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부담 처리)
 - 기계·장비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2조(안전관리)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 등을 받아야 하되, 점검대상이 아닌 기계·장비는 안전장치 부착 확인
 - 보증기관은 지원대상 기계·장비의 공급 및 사후관리 보증체계를 구축하고, 사후관리대장(별도서식)을 작성·비치, 관리실태 및 점검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익년 4월)

- 보증기관은 우수한 기계·장비 공급, 효율적인 사후관리, 품질향상 등을 위해 '공급 및 사후관리 보증서 관리대장'을 상시 비치·관리하여야 함
- * 기계·장비의 사후관리 및 행정사항 중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농업기계 구입지원 사업 시행지침'을 준용(농기계공업협동조합 홈페이지 참조)

- 제조·수입업자는 지원 기계·장비의 제조번호 및 형식표지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부착(농업기계 구입지원 사업 시행지침 참조)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2조(사업의 관리책임 등) 제4항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 이행

- 조사료 재배면적이 기계·장비를 지원받은 때보다 특별한 이유 없이 감소하거나, 재배하지 않는 경우 사업대상자로부터 사유서 징구 및 재배목표 부여 관리
- 공급 및 사후관리 대장 [서식 2] 조사료 생산·유통 경영체 지원사업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고, 연 1회 이상 관리실태 조사
- * 조사료 재배 의지가 없는 등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경우 사업비 회수 방안 등 강구 및 조치

○ 보조금(용자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 기간

구 분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비 고
	부터	까지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보조금 교부일	5년 (트랙터 8년)	양도	지진, 산사태 등 천재·지변 및 사업자의 질병 및 사망, 전업·폐업 등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유지·관리가 어려울 경우 시장·군수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7조 준용 처리

- (시·군) 보증기관에서 발급한 보증서 첨부 및 보증서와 기계·장비(품명, 형식명, 기대번호 등)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기계·장비의 제조번호를 농협경제지주 및 시중 은행 본점에 통보하고, 이미 지원되었던 기계인지 여부를 검색·확인
- 자금지원을 신청한 기계·장비와 농가에게 공급된 기계의 일치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

Ⅲ. 사업추진체계(공통)

※ 기본적인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지침,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름

1. 사업 신청단계

농식품부

- 사업별 선정기준 등 세부 사업시행 지침을 마련하여 통보(1월)

시·도(시·군)

- 시·도는 농식품부의 가내시 사업비 내에서 자체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에 시달(전년도 6~7월)
 - 지방비 확보, 사업신청·선정 및 계약(체결)기간 등 명시, 농가교육·지도 실시
- 시·군은 사업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보고(전년도 7~8월)
- 시·도는 시·군의 사업수요조사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전년도 9월)
- 사업희망자는 사업신청서를(필요시 사업계획서 포함) 관할 시·군에 제출(전년도 7월말까지)

2. 사업 선정단계

시·도(시·군)

- 시·군은 사업신청서류에 대한 적합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 가축사육두수 및 사료포 확보면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규모가 적합한 수준인지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정심의회 심의 등 사업자 선정위원회 개최를 통해 매년 사업 물량의 2~3배수를 예비대상자로 선정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당해연도 사업대상자 선정
 - *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실시하며 사업대상자 선정위원회는 반드시 개최하고, 미개최 시 보조금 삭감 가능
- 농식품부의 시·도별 사업비 배정(1월)에 따라 시·군은 예산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 후 사업자 확정

- 시·군은 사업자 선정 결과를 시·도에 제출, 시·도는 취합하여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2월 말까지)
- 최종 보조사업자는 사업자로 선정된 후 3개월 내에 사업을 착수(계약체결 등)해야 하며, 미이행 시 사업자 선정 취소 및 보조금 회수, 차순위 신청자를 사업자로 선정

□ 지원제한 및 후순위 지원(예시)

-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징역, 벌금, 과태료, 인증·지정취소 등 제재처분을 받은 사업대상자 지원 제한
- 대상 제재 처분
 - 「축산법」제22조 및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 등록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농업경영체, 제33조2에 따라 축산업 교육(보수교육 포함) 이수하지 아니한 농업경영체('23.1.1. 이후 법령위반자에 한하며, '22년까지 법령위반자에 대해서는 후순위 지원)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조(가축소유자 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제11조(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제17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를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농가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가축분뇨 및 퇴비·액비의 처리 의무)를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농가
 -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가「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인증의 취소 등)에 따라 인증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지원 제한대상 및 기간
 - i) 징역(집행유예 포함), 벌금 : 3년
 - ii) 과태료(동일 위반행위로 2회 이상 받은 경우), 과징금, 영업정지 : 2년
 - iii) 과태료(1회), 시정명령 등 기타 행정처분*, 인증·지정 취소 : 1년
- * 위반사항이 발견된 후 처분결정이 미확정인 경우 : 처분 결정 시까지 사업대상자 선정 보류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시·도(시·군)

- 각 시·도 책임하에 시·군에서 사업대상자별 지원
 - 지원단가 및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자부담 추진
 - 시장·군수는 선정된 사업대상자가 사업계획대로 추진하지 않는 경우 1회 보완 조치하고, 미보완 시 시·군 판단하에 축산발전기금 운영요령에 따라 자금지원 중단 및 기 지원분 회수 조치
- 최종 보조사업자는 계약 체결 후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국고금 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제40조제1항제15호에서 정한 비율(70~80%) 내에서 선금 지급이 가능하니, 사업추진에 참고
 - 의무 지급비율(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4조(기재부 계약예규))

공사	계약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30%
	계약금액이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40%
	계약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50%
물품 구매, 용역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30%
	계약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40%
	계약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50%

*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거나 최종보조사업자가 지자체에 계약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지방회계법」 제44조에서 정한 비율(70~80%) 이내에서 선금 지급 가능

□ 공통사항 : 사업계획의 변경 및 사업비 지원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계획의 일부 변경 또는 사업포기 등 사유로 사업계획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 시·군 사업비 범위 내에서는 시장·군수가 승인하여 사업 변경
 - 시·군 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시·도지사가 승인하여 사업 변경
 - 시·도 간의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
 - 시·군 및 시·도의 조정변경 내용은 직 상위기관에 사후 보고

□ 협조사항

<지방자치단체>

- 사업대상자에게 사업추진에 따른 정부 시책 방향 등에 대한 교육·홍보
- 사료 작물재배 대상지에는 퇴·액비를 사용토록 지도하고 액비를 살포할 경우 농업 기술센터는 살포대상지 토양분석, 시비 처방서 발급, 살포량 및 살포방법 지도
-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인·허가 등의 제한사항 해소에 적극 협조
 - 대규모 휴경지, 간척지, 하천부지, 벼 채종포, 미활용 공단부지 등의 확보 등
- 관내에 보급된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를 가능한 임대 활용하도록 조치
- **경영체가 한우협회, 낙농육우협회 등과 계약하여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알선**
- 사업자금이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련 증빙 서류 확인 등 사업비 집행 철저

<농협경제지주 등 생산자단체>

- 사업수행에 필요한 종자 등 기자재 구매 알선 및 지도

<농촌지도기관(축산과학원 등) 및 관련단체>

-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조사료생산이용 기술교육 및 경영지도 실시
 - 사료작물의 파종·시비, 조사료 생산 및 이용, 기계·장비의 사용 방법, 곤포 사일리지 제조방법 등에 관한 기술지도 실시
- * 청보리 등 사료작물 재배시 퇴·액비를 사용토록 유도

4. 자금배정단계

농식품부

- 시·도 및 농협경제지주에 사업비 배정 통보(1월)
 - 전년도 실집행을 등을 참고하여 '24년 예산을 배정하고 실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보조금 교부

시·도(시·군)

- 시·도는 자체 계획에 따라 시·군별 사업비 배정(1월), 시·군은 사업추진 정도에 따라 사업비 집행

5. 이행점검단계(사후관리 및 제재조치)

농식품부

-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사업이 추진되는지 여부와 사후관리 실태 등에 대하여 점검(수시)
 - 점검항목 : 사업대상자 선정 및 세부사업 항목별 사업비 적정 집행여부와 사후관리 실태 및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등 확인

시·도(시·군), 농협경제지주(일선조합), 축산단체

- 사업계획에 맞게 사업추진을 하는지 수시로 현장점검(반기 1회 이상)하고, 사업비 집행실적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관
 - 시·도별 자체 집행을 제고 방안 추진
 - * 예) 실집행 점검회의 월 2회 개최, 현장점검 월 1회 실시 및 보고 등
 - 지원자금이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 사료작물 파종 및 재배실적 확인
- 시·군에서는 사업진척도를 수시 확인하고 그 결과를 용자기관에 통보, 사업비 집행(매월 소요액을 시·도를 통해 농식품부에 신청)
 - 최종 보조사업자 및 지자체는 보조금 실집행 실적을 주 1회 보조금 통합관리망(e나라도움)에 등록 협조
- 사업완료시 [서식 3] 또는 농식품부 별도 제공 양식에 따라 정산하고, 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류(자부담분 포함)를 구비하도록 하여야 함. 관련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자금회수 또는 미집행 처리
- 사업대상자가 보조금 교부조건을 미준수하거나, 부득이한 이유없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등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보조금 회수 또는 사업 취소 등 조치
- 보조(용자)금 부정수급, 안전성 문제에 따른 적정조치 미이행 시* 동 사업에서 제외 및 보조(용자)금 회수 조치 후 농식품부에 보고
 - * 사업대상자가 유통·공급한 조사료(볏짚 포함)에서 안전성 문제 발생시 행정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향후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시·도에서는 연 1회 이상 이중지원에 대한 점검 실시(농협경제지주 협조)

* 시·도(시·군)에서는 보조지원 받은 경영체에 대한 상호명 등 관련 정보를 농협에 통보하고, 농협은 보조지원 받은 경영체가 용자를 받으려 할 경우 해당 시·도(시·군)에 통보하고 해당 시·도에서는 경고 조치

○ 보 고

- 시·군은 [서식 1~8]을 작성·관리하고, 농식품부에서 자료 요구 시 성실히 제출토록 한다.

보 고 사 항	보고기한	보고기관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결산 보고 (기계장비 등 세부사업별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계획대비 실적) * [서식 1], [서식 2], [서식 3]	사업 다음연도 1월	시·도, 농협경제지주

* ① 전년도 사업추진실적 보고 시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 등에 의하여 보조금을 집행하고 그 정산결과를 함께 보고

* ② 사업추진실적 보고 시 본사업과 이월사업을 별도 보고

농생명산업



I. 사업 개요

□ 목 적

- 농업 현장에서 농업인이 직면하고 있는 생산성 향상, 비용 절감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데이터 기반 솔루션·서비스를 농가에 적용 및 고도화 지원

□ 사업내용

- 스마트팜 관련 기업 등 민간에서 상용화(제품화)가 완료된 데이터 기반 서비스·솔루션을 농가에 적용 및 고도화 지원

□ 지원 자격 및 요건

- 스마트팜 관련 기업, 연구기관 등과 농업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데이터 활용 스마트농업 서비스가 제품화(상용화) 되어있는 기업 중 재무 건전성, 사회적 의무 이행, 기술력 등에 문제없는 기업, 연구기관 등
 -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충족되는 농업인, 법인, 조합 등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내용 : 농업 현장에서 농업인이 직면하고 있는 생산성 향상, 비용 절감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데이터 기반 솔루션·서비스를 농가에 적용 및 고도화 비용 지원
- 지원기준 : 국고 70~100%, 참여기업 자부담 30%
 - 21개 컨소시엄(1개 이상 기업과 50호 내외 농가로 구성, 2년차 5개 포함)
 - 2개 우수 컨소시엄(1개 이상 기업과 180호 내외 농가로 구성) 지원
- '23년 예산 : 국비 6,235백만원
- 사업시행기관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사업 신청

- 장소 : 보조사업자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
- 신청기간 : 보조사업자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

□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항목은 과제 목표 타당성, 추진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운영 계획의 적정성 및 지속성, 활용성 및 시장성, 성과 노력 제고 등이며 대상자 선정 세부 계획은 보조사업자가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대상자 평가 및 선정
- 선정기준에 따라 보조사업자,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24년 1분기)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농업정책과	사무관 강태원	044-201-2421
		주무관 이정은	044-201-2426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스마트농업본부	본부장 김옥일	063-919-1700
		팀 장 구자현	063-919-1710

II. 주요 내용

농업 현장에서 농업인이 직면하고 있는 생산성 향상, 비용 절감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데이터 기반 솔루션·서비스를 농가에 적용 및 고도화 지원

1. 사업대상자

○ 스마트팜 관련 기업, 연구기관 등과 농업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용화된 서비스·솔루션 보급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스마트농업, ICT, 데이터·AI 관련 기업(1개 이상) 등이 50호(우수 컨소시엄의 경우 180호) 내외 농가와 사전에 구성한 컨소시엄

※ 50호(우수 컨소시엄의 경우 180호) 농가 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제공하는 서비스·솔루션 모델 비용, 컨소시엄 당 할당된 비용 등에 따라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농가 수는 기준에 따라 조정 가능

- (기업 등) ①지원받고자 하는 서비스 판매 실적 10건 이상 또는 판매금액 1억 이상에 대한 증빙을 제출할 수 있으며, ②부적격 사항이 없는 기업 또는 연구기관
- * 사업에 선정된 컨소시엄의 기업체는 참여 농가에 보급된 서비스(솔루션)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스마트팜코리아(www.smartfarmkore.net)에 데이터를 연계할 의무를 가짐(서비스 보급 이후 5년 간)

< 주요 부적격 사항 >

- 휴·폐업 중인 기업 또는 연구기관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또는 연구기관
-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 중인 기업 또는 연구기관
- 지원하는 데이터 기반 서비스·솔루션과 농가의 장비가 연동이 안 되는 경우
-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이 되는 경우

- (농업인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등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충족되며, 신규로 참여하는 농업인

* 신규로 참여하는 농업인의 기준 : 본 사업을 통해 지원받고자 하는 기준연도의 2년 전까지 해당 데이터 기반 서비스·솔루션을 사용하지 않고 본 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

※ 단, '22~'23년 본 사업에 참가한 농업인은 데이터 연속성 등을 목적으로 계속 관리대상이 될 수 있음

**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 등이 농업인이 지원받는 형태로 참여하려는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충족되어야 함

- <농업인,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 등 기준>
- 농업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농식품부 훈령 제337호) 제35조제9항에 따라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충족
 - 영농조합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 동일 사업에 대해 중복으로 다른 사업의 보조금을 수령 하는 경우 지원 불가
- 컨소시엄별로 지원 가능한 금액 범위 내에서 한 개 기업당 한 개의 서비스·솔루션 모델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사업에 신청한 기업이 부족하고 확산하려는 서비스·솔루션 모델이 다른 경우, 보조사업자가 수립한 우선순위에 따라 한 개 기업이 2개 이상의 모델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

< 컨소시엄 >

- 스마트팜 기업, 데이터·AI 관련 기업 등 민간에서 상용화(제품화)가 완료된 데이터 기반 서비스·솔루션*을 농가에 적용 지원
 - *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또는 솔루션
 - ** 서비스·솔루션을 적용하여 지원하는 계획이 사업종료 기간 내 완료되어야 정산 가능
 - 데이터 기반 서비스·솔루션 적용·연동에 필요한 기자재·센서 등 지원 가능
 - * 다만, 단순 자동화·기계화를 위한 장비·제어기·센서 등은 지원 불가
- 참여기업의 데이터 기반 서비스·솔루션의 기능 개선 및 추가 등 고도화 지원
- 일관되고 유용한 데이터 수집·공개를 위해 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표준* 적용에 필요한 시설·기자재·시스템 구축 지원
 - * 시설원에 분야 데이터 수집 표준, ICT 기자재 설치 가이드, 서비스(솔루션)별 데이터 정의서 등 보조사업자(농진원)가 요구하는 표준 및 정의 항목

- < 지원 불가한 사항 >
- 토지구입, 부지조성, 기본 전기통신/상하수 인입, 서버 구축, 드론구입 등 기업체 자산성 장비구입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소모성 자재(시설, 장비, 기자재 등) 구입·구축 비용
 - 전기세, 통신비, 수도세, 가스비 등 공과금

< 보조사업자 >

-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컨소시엄 선정·평가 등 사업 전반의 효과성·전문성 등 제고 지원
-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데이터 수집·공개, 성과분석, 과제조정, 사업 심의, 대국민 홍보 등 지원

4. 지원 형태 및 사업 범위

- 국고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특회계)
- 지원비율 : (컨소시엄) 국고 70%, 자부담 30%
(보조사업자) 국고 100%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컨소시엄별로 총사업비 340백만원(2년차 46, 우수 컨소시엄의 경우 1,190) 내에서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승인된 '24년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실소요액 집행 보조사업자가 마련한 기준에 따라 승인된 연간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실소요액 집행
 - 다만, 확산하고자 하는 모델 유형·단가, 사업 운영 기간 등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수립한 기준에 따라 지원 한도 일부 조정 가능

6. 지급대상자 의무사항 및 제재조치

<의무사항>

- 컨소시엄은 사전 승인받은 사업 수행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 사업수행 상 필요한 경우 요구되는 진도 점검, 현장실사, 사업평가 등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함
- 사업 수행계획 중 불가피하게 사업계획 변경(규모, 위치, 일정 등)이 필요한 경우, 상위기관에 변경 사유와 함께 변경요청을 신고하고 승인을 받은 후 추진

< 사업 수행계획 중 중요 변경사항(예시) >

- (사업비) 사업 규모에 변경사항이 없으나 국비 총 지원 규모 변동하는 경우 등
- (컨소시엄) 컨소시엄 기업 변경, 컨소시엄 참여 농가 10% 이상 변경 시 등
- (서비스·솔루션) 농가에 지원하거나 고도화하는 서비스·솔루션 주요 사항 변경 등
- (기타) 승인된 수행계획 중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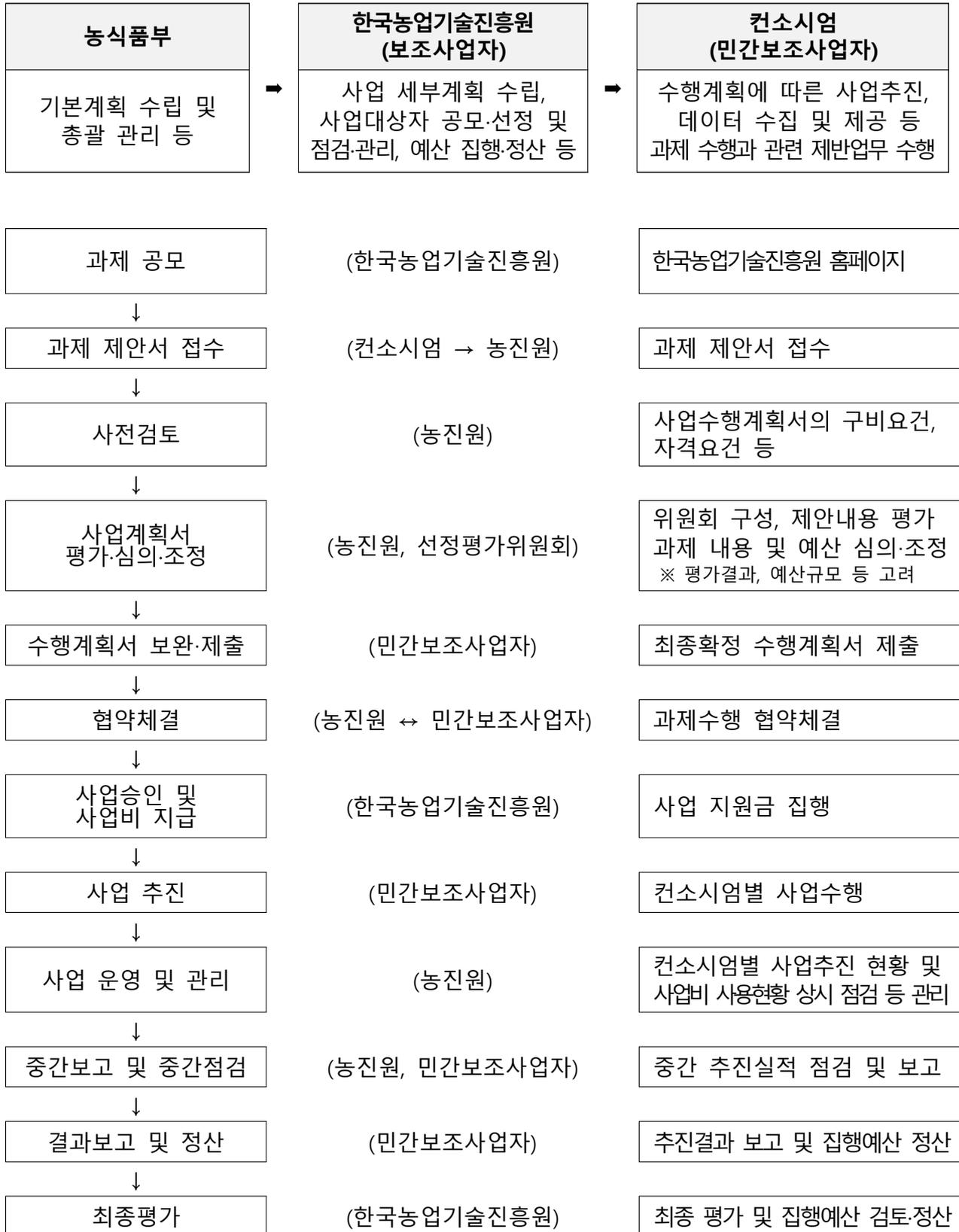
- 지원기업은 소요되는 사업비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계획 범위를 넘어선 용도로의 사용이 불가함
- 부정 사용 의심 건에 대해 농식품부 또는 상위기관의 요구에 따라 사용내역을 증명하여야 함

〈제재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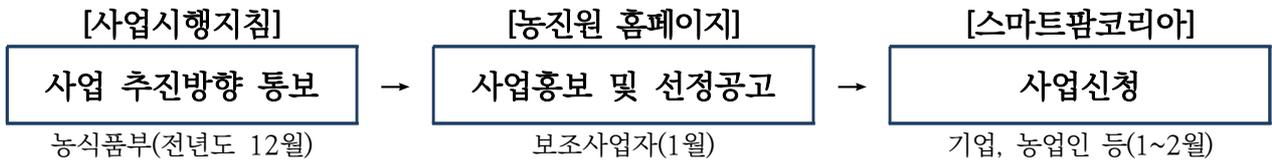
- 사업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상위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협약을 해지하고 참여 제한조치 등을 할 수 있음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협약을 해지하고 참여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한 경우, 협약을 해지하고 참여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 사업비를 사용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협약을 해지하고 참여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 상위기관의 승인 없이 사업 수행계획을 임의로 변경할 경우, 협약을 해지하고 참여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 사업비를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용 내용이 적발된 경우, 적발된 시점부터 현장점검·소명 등의 절차 진행
 - 현장점검·소명 등의 관련 절차를 거쳤으나 성실 사용 의무 이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용액을 환수
- 상위기관으로부터 사업비 상환조치를 통지받은 자는 해당 상위기관이 정한 기한 내에 지원받은 자금을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한을 경과한 경우 지체일 수 마다 지체상금을 이자로 지급
- 농식품부 또는 상위기관의 요구에 따라 사용내역을 증명하지 않으면 사업비 지급을 일시 정지하고, 3개월 내 소명하지 않을 경우, 상위기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부정사용 여부를 확인

Ⅲ. 사업 신청 및 선정

< 사업 추진체계 및 주요일정(안) >



1. 사업 공고 및 신청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사업 지원내용, 향후 일정, 평가 절차 등을 포함한 사업 기본계획 수립 (12.31까지)
- 농식품부는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 기본계획을 시달하고, 보조사업자가 신속히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공고를 하도록 요청(12.31까지)

한국농업기술진흥원(보조사업자)

- 보조사업자는 사업공고에 앞서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기본계획에 기반한 세부 추진계획, 공모계획 등을 수립 및 농식품부에 승인요청(1.15까지)
- 보조사업자는 농진원 홈페이지에 사업공고 안내(1.15까지)
 - 보조사업자는 신청서, 세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준비 등을 포함하는 공고문을 사업대상자에 자세히 안내하고, 사업설명회 및 유관기관 등을 통해 홍보
- 보조사업자는 농진원 홈페이지와 나라장터 게시판을 활용하여 공모 안내를 하고 신청자는 보조사업자에 서류를 우편(또는 이메일)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사업 대상자(컨소시엄)

- 사업공고를 확인 후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 하여 농진원에 제출
- 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 예비계획서, 농업인의 사업참여 협약서, 사업비 투자계획, 증빙자료 등과 기타 보조사업자가 요구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기간 내에 보조사업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
- 사업 신청 요건
 - 농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용화된 서비스·솔루션 보급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스마트농업, ICT, 데이터·AI 관련 기업(1개 이상) 등이 50호(우수 컨소시엄의 경우 180호) 내외 농가와 사전에 구성한 컨소시엄

※ 50호(우수 컨소시엄의 경우 180호) 농가 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제공하는 서비스·솔루션 모델 비용, 컨소시엄 당 할당된 비용 등에 따라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농가 수는 기준에 따라 조정 가능

- (기업) ①지원받고자 하는 서비스 판매 실적 10건 이상 또는 판매금액 1억 이상에 대한 증빙을 제출할 수 있으며, ②부적격 사항이 없는 기업 또는 연구기관
 - * 사업에 선정된 컨소시엄의 기업체는 참여농가에 보급된 서비스(솔루션)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스마트팜코리아(www.smartfarmkore.net)에 데이터를 연계할 의무를 가짐(서비스 보급이후 5년간)

< 주요 부적격 사항 >

- 휴·폐업 중인 기업 또는 연구기관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또는 연구기관
-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 중인 기업 또는 연구기관
- 지원하는 데이터 기반 서비스·솔루션과 농가의 장비가 연동이 안 되는 경우
-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이 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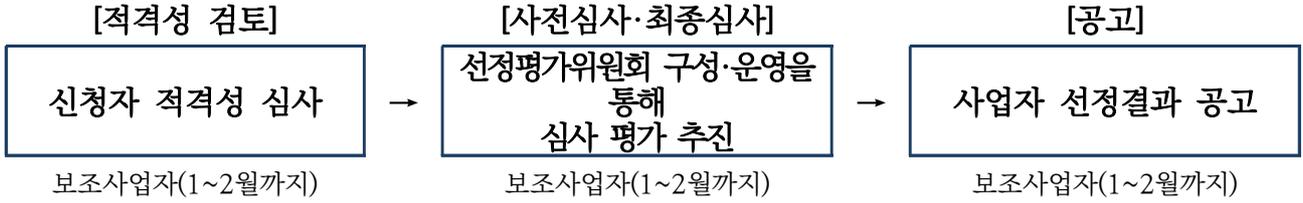
- ② (농업인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등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충족되며, 신규로 참여하는 농업인
 - * 신규로 참여하는 농업인의 기준 : 본 사업을 통해 지원받고자 하는 기준연도의 2년 전까지 해당 데이터 기반 서비스·솔루션을 사용하지 않고 본 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
 - ※ 단, '22~'23년 본 사업에 참가한 농업인은 데이터 연속성 등을 목적으로 계속 관리대상이 될 수 있음
 - **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 등이 농업인이 지원받는 형태로 참여하려는 경우,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충족되어야 함

<농업인,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 등 기준>

- 농업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농식품부 훈령 제337호) 제35조제9항에 따라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충족
- 영농조합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 시행기관에 사업 신청 또는 사업등록을 해야 한다.
 - * 제출되는 서류는 시스템에 등록 가능한 전자문서일 것(*.hwp, *.pdf 등)
- 사업신청자가 농업인, 농업법인 등 농업경영체일 경우,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 등록해야 함.

2. 사업자 선정



한국농업기술진흥원(보조사업자)

-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 기준·절차 등을 마련하여 컨소시엄이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적격성 검토, 사전심사, 최종심사 등 추진

< 사업대상자 평가·선정 절차(안) >

적격성 검토	사전심사	최종심사	평가결과 공고
신청 요건 및 자격 검토	모델 적합성, 컨소시엄 적정성 등 서면 평가	사업계획 실현 가능성, 효과성 등 대면 평가	평가 결과발표 및 농정원과 컨소시엄 간 협약
농진원	농진원	농진원	농진원

* 단, 지원자 현황, 추진여건 등에 따라 평가 방식은 변경될 수 있음

- (적격성 검토) 수요기업이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사업에 신청한 컨소시엄의 기본 요건에 대한 적격 여부 검토
- (사전심사) 수요기업이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를 기반으로 사업계획 타당성, 컨소시엄 구성 적정성, 운영계획 적정성 등 평가
- (최종심사) 사업계획 실현 가능성, 사업의 효과성 등 평가(발표평가로 진행되며, 필요 시 기업 현장평가 등이 추가될 수 있음)
- (공고) 평가 결과는 농진원 홈페이지에서 발표되며, 협약과 관련한 제출서류 준비 등을 위해 향후 별도 공지

- 유사 자금* 지원 제한(「기본규정」 제35조제8항제3호)

* 동일한 내용의 재정 지원이 동일한 대상(기자재, 장비 등)에 투자되는 것

** 「기본규정」 제정·시행일('14.1.1.) 이후 지원된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하여 적용

- 보조사업자는 사업신청서 검토 시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를 선정대상에서 제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3조, 「기본규정」 제35조 제6항)

- 1) 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보조금법」 제31조의2)
 - 2) 집행잔액 등 반납금,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른 환수금,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또는 회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 3) 「통합관리지침」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른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자
 - 4)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정보를 수정하지 아니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기본규정」 제35조제7항)
 - 5) 기타 사업시행지침에서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
- 보조사업자는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증·검토 후 선정평가위원회 상정을 해야 한다.
- 자격 검증 결과 부적합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보조사업자는 농업인, 농법법인이 농식품사업자금을 신청할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필요할 경우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20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
 - 신청자의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재무안정성, 중복편중지원여부, 지원 제외 대상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
 - * 사업 시행기관은 필요한 경우 전문가, 유관기관 등의 사업 검토의견을 수렴 반영할 수 있음
- 보조사업자는 선정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자금 지원 우선순위를 심의
- 선정평가위원회 구성원 중 심의대상 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외
 - * 필요한 경우 심의는 사업신청서, 현장검증, 지원대상자 발표 등을 통해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함
 - 선정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e나라도움에 등록·공개하되 심의위원명 등은 공개하지 아니함
- 보조사업자는 사업자를 확정된 경우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사업별 지원계획 및 자금 지원대상자 명단을 보조사업자의 홈페이지에 공개
- 지원대상자의 자금지원 우선순위안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자금지원 우선순위의 차순위자 또는 선순위자로 변경 가능(「기본규정」 제51조제2항)
 - * 사업의 포기, 업종의 변경, 교모의 현저한 감소 등으로 자금 지원의 효과가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컨소시엄)

- 사업지원 대상(컨소시엄) 선정평가 참석 및 발표자 보고
 - 서류평가, 대면평가 등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발표 및 보고
 -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시, 대상 컨소시엄은 결과발표 후 3일 이내 이의 신청서를 제출
- 선정 후 협약
 - 선정 후 평가위원 평가의견을 반영하여 사업내용 수정 후 협약
 - 구비서류 : 농정원과 컨소시엄 간 사업협약서 등 농정원이 요청하는 제반 서류
- 민간보조사업자는 승인된 사업 수행계획 대비 기능별·사업별 사업내용 또는 사업비 배분을 변경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나, 변경 원칙과 절차,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모두 준수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만 가능

< 사업 수행계획 중 중요 변경사항(예시) >

- (사업비) 사업 규모에 변경사항이 없으나 국비 총 지원 규모 변동하는 경우 등
- (컨소시엄) 컨소시엄 기업 변경, 컨소시엄 참여 농가 10% 이상 변경 시 등
- (서비스·솔루션) 농가에 지원하거나 고도화하는 서비스·솔루션 주요 사항 변경 등
- (기타) 승인된 수행계획 중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

< 사업 수행계획 변경 원칙 >

- 변경 주체 : 사업 수행자(컨소시엄 등)
 - * 승인 : 보조사업자 기관장(농진원장) 또는 농식품부 장관 / 사전검토 : 보조사업자 기관장(농진원장)
- 변경 원칙
 - ① 사업 수행계획 대비 총 국비지원액의 20% 이상 변경 시 : 보조사업자 사전검토, 농식품부 승인
사업 수행계획 대비 총 국비지원액의 20% 이하 변경 시 : 보조사업자 사전검토·승인
 - * 국비지원액의 변경은 국비 증감액의 합(절대값)의 변경을 의미
 - ② 사업비 확보·집행 현황 및 변경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비 집행계획 제출
 - 사업비 명세서, 용역 등 발주·계약방법 및 일정 등 집행계획 증빙자료 포함
 - ③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컨소시엄 내 참여하는 기업, 농업인 등 의견수렴 및 검토 결과 제출

IV. 사업 시행 및 관리

1. 사업 시행 계획수립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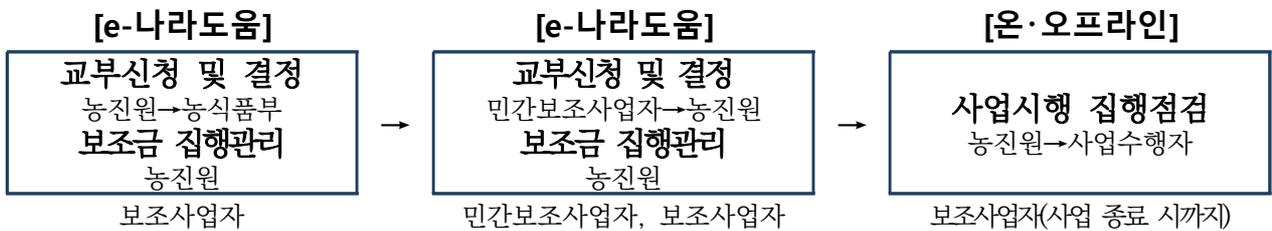
한국농업기술진흥원(보조사업자)

- 민간보조사업자가 농정원에 제출한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지원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협의를 거쳐 최종 검토·승인한 결과를 선정된 사업자에게 통보(당해년도 1분기 내)

민간보조사업자(선정된 컨소시엄 등)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 세부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서면 제출 (사업 시행 전에 제출 필요, 당해년도 1분기 내)

2. 자금 교부 및 집행 단계



< 사업비 집행기준 >

- 사업비 집행 시에는 아래 규정 등을 적용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국가·지방계약법 및 계약예규
-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함
- 보조금 사용방식은 보조금 입·출금 계좌에서의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만을 인정(보조금 지출거래 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
- 보조사업자 또는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 및 자부담금을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집행증빙자료 형태로 증빙하여야 함(민간보조사업자는 아래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
 - 보조사업 전용 계좌를 통한 이체와 이와 관련된 증빙자료, 전자세금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증빙자료, 보조사업 전용 계좌와 연계된 보조사업 전용카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계약 선수금 또는 정산금 요청 관련 서류 일체
- 교부 받은 보조금은 아래의 목적·규정·용도로는 사용 불가
 - 사업과 상관없는 경비, 자부담해야 하는 부지 조성 및 기자재 구입비, 사유화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한 지원(기업체 자산성 장비 구입 등), 사업목적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위한 지원, 기타 사업취지 및 정책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비, 법령에 의해 보조금 지원이 제외되는 사업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에서 제출한 사업 세부 추진계획 및 보조금 신청 내역에 따라 국고보조금 교부(당해년도 1분기)
 - 선급금은 총사업비의 70%,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잔금은 자금집행 계획서에 따라 사업 기간 내 지급
- 농림축산식품부는 보조사업자의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사업 수행계획 변경 필요성·적절성, 사업 기간 내 사업 완료 가능성 등을 판단한 후 보조사업자에게 변경 승인 여부 통지
- 농림축산식품부는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 이행, 추진상황, 집행현황 등을 점검(연 2회 이상)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에 적합한 조치 요구할 수 있음

한국농업기술진흥원(보조사업자)

- 보조사업자는 민간보조사업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교부조건은 사업별 특성에 맞게 기술하되,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명시
 - * (집행관리)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사업비의 집행관리를 해야 한다는 사항
 - * (정산보고서 검증) 1) 농식품 보조금 3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정산보고서 검증 후 검증결과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2) 당해 교부받은 보조금이 5억원 이상일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 및 감사보고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 * (중요재산)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 등기하여야 하며, 보조금법 제35제제3항에 따라 중요재산을 승인 없이 보조금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담보제공을 할수 없음
 - * (부정수급자 제재)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부과(부정수급액의 5배~2배)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5년 이내), 명단 공표(1~2년) 등의 추가 제재를 받음
- 민간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국고보조금 선급금 교부신청서를 검토·승인한 후 선급금 지급

- 선급금은 총 사업비의 70%,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잔금은 중간점검 결과에 따라 사업 기간 내 지급
- 보조사업자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보고한 사업계획 주요내용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보조사업자 승인 후 1개월 이내 농식품부로 보고될 수 있도록 조치)
- 보조사업자는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변경내용 유무, 관련 법령* 및 사업시행지침 등의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확인하여 협의를 진행하고, 협의내용**을 정리하여 민간보조사업자에 송부
 -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재부공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농식품부훈령)」 등
 - ** 협의내용은 ①변경사항별 변경 타당성·적성성, ②관련 법령 준수 여부, ③사업시행지침 준수 여부, ④기타사항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제시
- 보조사업자는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 수행계획 변경요청 시, 변경원칙 및 사업목적 충족 여부, 법적 제약 유무, 변경 필요성·적절성, 기한 내 사업 완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이 필요·적절하여 사업 기간 내 사업 완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조사업자가 별도 마련한 변경원칙에 따라 승인
- 보조사업자는 민간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 이행, 추진상황, 집행현황 등을 점검(연 2회 이상)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민간보조사업자 등에 적합한 조치 요구
 - 점검 시기 : 사업 초기 및 집중 기에 실시(연 2회 이상)
 - 점검 대상 : 민간보조사업자
 - 점검내용 및 방법 : 사업계획 이행, 추진상황 등을 현장 모니터링
 - 점검 결과 조치 : 사업계획 및 추진상 애로사항 등 보완조치
 -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검토결과, 부당 또는 목적 외에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 조치할 수 있으며, 이에 보조사업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 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 및 보조사업자는 집행 현장점검 시기와 방법을 명시

민간보조사업자(선정된 컨소시엄 등)

○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자(농진원)으로부터 사업자 선정·확정 통지를 받으면 사업 계획에 따라 사업비 소요액을 편성하여 보조사업자에 제출하고, e-나라도움 보조금 예탁교부 신청

- 선급금은 보조사업자에게 승인받은 자금집행계획에 따라 신청(보조사업자와 협상·협약이 완료된 시점에서 10일 이내로 선급금 신청)

○ 보조사업자가 승인한 사업계획에 따라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비 집행

◇ 보조사업자는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서 사업비를 집행(www.gosims.go.kr)

◇ 국고보조금은 별도의 계정(계좌)을 설정하여 관리(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하며 국고와 자부담 비율을 준수하여 지원사업 운영

- 당초 계획에 없는 항목으로는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으며, 예상치 못한 사정 등으로 제출한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보조사업자의 사전 승인 후 집행

* 승인 상황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사전에 협의 후 진행하여 변경

- 동 계정과 연결된 별도 통장, e나라도움 전용 신용카드 발급받아 관리

◇ 모든 사업비의 지출은 e나라도움 전용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e나라도움을 통한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

* 국고 통장과 연계되어 발급된 신용카드 외 개인카드 사용 불가

○ 민간보조사업자는 승인된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나, 변경 원칙과 절차,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모두 준수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만 가능

< 사업계획 중 중요 변경사항(예시) >

- (사업비) 사업 규모에 변경사항이 없으나 국비 총 지원 규모 변동하는 경우 등
- (컨소시엄) 컨소시엄 기업 변경, 컨소시엄 참여 농가 10% 이상 변경 시 등
- (서비스·솔루션) 농가에 지원하거나 고도화하는 서비스·솔루션 주요 사항 변경 등
- (기타) 승인된 수행계획 중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

< 사업계획 변경원칙 >

○ 변경 주체 : 사업 수행자(컨소시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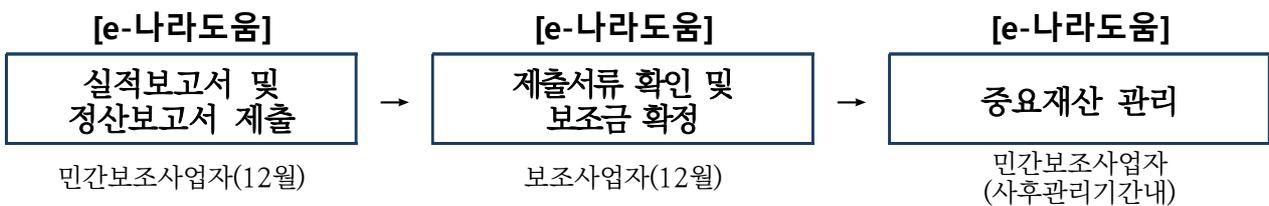
* 승인 : 보조사업자 기관장(농진원장) 또는 농식품부 장관 / 사전검토 : 보조사업자 기관장(농진원장)

○ 변경 원칙

- ① 사업 수행계획 대비 총 국비지원액의 20% 이상 변경 시 : 보조사업자 사전검토, 농식품부 승인
사업 수행계획 대비 총 국비지원액의 20% 이하 변경 시 : 보조사업자 사전검토·승인
* 국비지원액의 변경은 국비 증감액의 합(절대값)의 변경을 의미
- ② 사업비 확보·집행 현황 및 변경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비 집행계획 제출
- 사업비 명세서, 용역 등 발주·계약방법 및 일정 등 집행계획 증빙자료 포함
- ③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컨소시엄 내 참여하는 기업, 농업인 등 의견 수렴 및 검토 결과 제출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 수행계획 변경 승인을 통지받은 후 변경한 수행계획을 보조사업자에게 고시 후 사업에 착수(고시 전 해당 변경사항과 연관된 사업비 집행 금지)
-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기본규정 제28조 및 제58조 참고)
 - 전자증빙서류를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보조사업자의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처리
-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신청 전에도 최초 정산 시 미리 공제하도록 변경하고, 보조사업자의 장이 환급금 재투자를 승인하는 경우 환급금 중 보조비율 만큼을 자부담금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변경

3.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한국농업기술진흥원(보조사업자)

- 보조사업자는 민간보조사업자별로 운영 결과를 검토하여 사업비 정산
 - 운영 결과 중간점검(1회 이상), 사업 결과보고·정산(사업 종료 시)
 - 구비서류 : 자체 중간 점검표, 사업 결과보고서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보조사업자는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보조사업자는 민간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의 확정하고, 정산결과를 다음해 2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보조사업자는 민간보조사업자의 보조금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함
 -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와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보조사업자는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부서에 통보
-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계획에따른 지원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 환수조치
- 당해연도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지원 사업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사후관리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준용

민간보조사업자(선정된 컨소시엄 등)

- 민간보조사업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보조사업자에 제출
- 최종평가에서 보조사업자에게 사업 적합 통보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보조사업자에게 사업비 정산결과보고서가 포함된 관련 서류 구비 및 제출하여야 하며, 외부 회계감사 결과를 보고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

* 지원사업별 사업비 이자는 '별도' 반납 요청 후 처리

< 사업비 정산 관련 구비서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과 보고 및 정산 요청 공문 · 결과보고서 · 사업비 지출 내역 및 증빙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 기타 보조사업자가 제출 요구하는 자료
---	---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신청
- * 민간의 경우 사업비의 이월은 원칙적으로 원인행위(계약, 조달 지연 등)의 타당성이 인정 될 경우 가능
- 정산보고서 검증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민간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에서 지정한 감사인에게 검증 의뢰하거나 직접 감사인을 선정하여 검증 결과를 제출 가능
- 보조금이 예탁된 경우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 비예탁의 경우 민간보조사업자가 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잔액, 이자 등을 수기로 입력 및 반납
- 컨소시엄 참여 농가가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컨소시엄 지원기업은 농가의 중요재산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의 현황보고 및 공시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제46조에 따르면 부가적으로 사진 등을 등록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5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보조사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민간보조사업자의 사업비 사용내역을 사용 목적별로 기록·관리·유지하고, 점검기관(농림축산식품부, 농진원 등)에서 점검, 모니터링 등의 목적으로 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 등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 제출

V. 평가 및 환류

1. 성과 측정 및 분석단계

- 보조사업자는 사업추진 실적, 기업·농업인 대상 설문조사 등을 성과 측정
 - 사업 완료 후 사업 만족도 및 개선사항 등 기본조사 실시
 - 사업 완료 후 사업 수행자(컨소시엄 등)에게 사업 성과 요청·정리
- 민간보조사업자는 과제종료 1개월 내 사업결과를 평가하고 내용을 정리하여 보조사업자(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제출

- 보조사업자가 요구하는 양식(자체중간점검표, 결과보고서)를 준용하여 민간보조사업자는 작성 및 제출

2. 성과 환류단계

- 보조사업자는 성과 분석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 예산편성 방향과 제도 개선사항 등을 환류
-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 지원 사업을 통해 발굴된 우수사례에 대해 집중 홍보 등을 통해 인식 개선 촉진

3. 2025년 사업신청 등 공지사항

- 2025년 사업신청 세부사항은 별도 공고('25.1월)를 참조하며, 공고 내용 이외의 사항은 2024년 사업시행지침을 준용

해양수산분야



① 양식장친환경에너지보급(히트펌프·인버터)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과 장 서진희 사무관 우승하 주무관 조재황	044-200-5610 044-200-5392 044-200-5621

I. 사업개요

1. 목 적

-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을 활용한 에너지절감시설을 양식어가에 보급하고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양식분야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에너지 이용 비용 절감을 통해 어가 경영 안정을 도모

2. 근거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촉진법」 제9조(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사업비의 조성) 및 제10조(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등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26조(어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업경영체의 소득·경영안정 및 수산업의 경영구조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구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조(정부와 에너지사용자·공급자등의 책무) 및 제 14조 (금융·세제상의 지원)
 - 정부는 에너지의 수급안정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 '25년까지 에너지절감시설 및 신재생에너지 722천kW 설치 지원

성과지표	2024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20년	21년	22년	23년		
연간 설비보급용량(천kW)	65	74	65	70	57	익년 2월	시설대수 * 장비별용량(KW) * 한국농어촌공사 추진실적 (당해년도 사업 12월 기준)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 계	30,881	34,314	34,314	34,314
- 국 비	18,529	20,588	20,588	20,588
- 지방비	6,176	6,863	6,863	6,863
- 자부담	6,176	6,863	6,863	6,863

* 연도별 재정투입계획은 확정 예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Ⅱ. 202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어업인, 어업법인 및 수산관련 생산자단체
- 「양식산업발전법」과 「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기르는 어업을 경영 중인 자 또는 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
 - 「양식산업발전법」과 「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양식어업(종자생산어업, 시험어업 포함) 면허·허가를 필하거나 면허·허가 예정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등
- * 개별어장을 기준으로 하되, 어촌계 등 생산자단체의 면허일 경우 단일 어장으로 간주(어촌계 등 생산자단체의 면허어장 내에 2인 이상의 지분 또는 행사자 등 경영체가 달라서 전원 동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각 지분 또는 행사자가 경영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단일어장으로 간주)
- ** 의무자조금 품목(김, 전복, 광어, 민물장어, 송어, 향어, 메기, 관상어) 생산어가의 경우 해당 품목의 자조금을 완납하여야 함(자조금 완납확인서 제출 필요)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의무거출금 미납자에 대한 지원제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농수산업자에 대하여 해당 농수산물의 생산, 유통, 수급조절 등을 위한 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 인버터의 경우,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자 중 고수온 특약 가입자 최우선 선정(사업 신청 당시 유효한 보험증권 사본 소지자)

2. 사업자격 및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사업자선정

-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 사업자 선정 시 사업대상 양식장의 환수량에 맞는 적정설비가 당해연도에 모두 설치되도록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자를 선정
- 시설 부지 등을 임차한 어업인의 경우 임차 잔여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하되, 관련법에 따라 임차 잔여기간(사용허가)이 5년 이하로 정하여 있는 경우도 사업지원대상자에 포함(단, 시설부지가 임차인 경우 시설물은 반드시 자가 소유여야 함.)

○ 대체사업자 선정

-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양식순기 등 불가피한 사유없이 3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시 대체 사업자 선정

○ 사업추진 제한지역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기간 연수(年數) 이내에 개발될 예정인 지역(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필히 확인)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최근 2년간 사업자로 선정된 후 자부담 미납으로 인해 사업을 포기한 경우 2년간 지원 제한
-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16조에 따라 수산정책자금 부당사용한 자로 지원제한 기간 미 경과자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당해 양식어업(종자생산어업, 시험어업 포함)의 면허, 허가가 취소된 자
- 말라카이트 그린 등 양식시설 사용금지 물질을 의도적으로 사용한 자는 「수산생물질병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해당되는 불법행위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3년간 지원 제한
- 사업에 신청한 양식어업 재해보험 가입자가(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 해당 양식장 공동경영인, 피고용인 포함)가 보험사기(미수 포함)에 관련된 경우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정에서 제외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영체는 선정 제외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① 지원대상

-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
 - 가온 또는 냉각을 필요로 하는 어류 등을 양식하는 양식장의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 설치 지원
- 에너지절감시설(인버터)
 - 해수 취수를 필요로 하는 어류 등을 양식하는 양식장의 에너지절감시설(인버터) 설치 지원

② 대상시설 요건

- 에너지절감시설의 설치를 위한 시설 토지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대상자가 필요면적(기계실 부지 등) 사업선정 전까지 확보하지 못한 경우 사업선정에서 제외해야 한다
 - 시설부지는 신청자 소유의 토지를 원칙으로 하나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5년 이상 해당 토지 임대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
 - * 시설물은 반드시 자가 소유이어야 함
 -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의 현장조사결과 토지의 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업신청자는 현황측량 성과도를 첨부하여 신청서류 보완
 - * 사업신청자는 에너지절감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소음, 진동 등 주변 환경 및 토지경계 등의 문제가 없도록 확보하여야 함
- 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 설치 시 기존 가온 또는 냉각시설을 반드시 존치하여 시스템 가동 중단 및 기온 급강하 등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은 해수·담수 직(간)접이용 양식시설로서 수조 전체 환수량 100㎥/일 이상 또는 水(수)면적 300㎡이상인 시설
 - * 단, 위 (수)면적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지자체는 반드시 히트펌프(기존 양식장은 농어촌공사 현장확인, 신규 양식장의 경우 설계서 등의 확보계획서 제출 등) 열원 확보여부를 판단하여 지원을 결정하여야 함
 - ** 미 허가(신고) 지하수 관정 및 취수시설 등은 열원으로 활용 불가
- 에너지절감시설(인버터)은 해수 직(간)접이용 양식시설로서 수조 전체 水(수)면적 1,000㎡이상 또는 사용전압 440V이하 취수펌프 3상 전동기 전체용량이 150kW이상인 시설
- 에너지절감시설은 아래와 같은 제품으로 지원
 - <수열원 히트펌프 적용 기준>
 -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 등 공인시험기관에서 한국농어촌공사의 「수산분야 히트펌프 시험방법 및 성능기준」에 따른 성능인증시험을 받은 제품
 - * 공인시험기관 시험설비·장비의 시험한계를 초과하는 경우 현장에서 한국냉동공조인증 센터의 성능 시험을 받은 제품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

<공기열원 히트펌프 적용 기준>

-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 등 공인시험기관에서 '농업용냉난방기 검정방법'에 따른 성능인증시험을 받은 제품
 - * 공인시험기관 시험설비·장비의 시험한계를 초과하는 경우 현장에서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의 성능 시험을 받은 제품
- 공기열원 히트펌프는 공기 대 물(공급) 방식을 적용
- 한랭지 난방효율(COP) 2.0 이상인 제품

<인버터 적용 기준>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6조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받은 제품

③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

○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

- 전년도에 지원자금의 한계로 적정시설 규모보다 작게 지원된 경우는 가용 예산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자를 우선순위로 지원
- 전년도 신청했으나 예산부족으로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로 당해년도 재신청 사업자를 2순위로 지원
- 사업대상자가 자부담 때문에 적정설비의 일부만 설치받기를 원하는 경우는 후순위로 지원
- 전력량계 설치 및 에너지 사용량 증빙자료 제공 등 양식장 에너지 소비 실태조사 참여에 협조하는 사업자를 우선순위로 지원

○ 에너지절감시설(인버터)

- 양식어업 재해보험 가입자가 최우선 지원
- 사업시행 전년도에 실시한 사업수요조사 시 신청한 자를 우선순위로 지원
- 최대 조수간만의 차가 큰 지역

○ 경합 시 우선순위

1. 정부연구사업 참여업체(현장시험 등) 지원
2. 환경친화형 배합사료를 100% 사용하는 자
3. 양식장 HACCP 등록양식장
4. 친환경 수산물 인증을 받은 자

- 5. 최근 2년간 수출실적이 있는 자
- 6. 유류사용 또는 환수량이 많은 양식시설
- 7. 태풍 등 재해를 입은 어가

* 동일순위자간 우선순위는 허가된 수면적이 적은 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공통사항

- 양식장 신축 또는 증축 등 사업계획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설 확장을 고려한 지원 가능

* 사업계획서에 설계도면 및 시공사의 계약서와 인허가 승인서류 등을 첨부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

- 히트펌프 가동에 필요한 토목공사, 천공, 그라우팅, 열교환기 및 스케일 제거장치, 히트펌프, 배관, 기존 가온·냉각 연계 설비, 전기설비, 전기 용량 증설(한전 용량 공사비 포함, 한전 거리공사비 제외), 제어, 시스템 보호를 위한 기계실 등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설비에 한 함

* 열원설비의 주요구성(히트펌프, 열교환기, 전원설비 및 주 배관 설비)를 제외한 부대설비(기계실, 축열 및 폐열조, 여과설비)는 전체공사비의 30%이하로 지원 가능

* 보급되는 장비 및 구조물의 용량은 열원설비(히트펌프)의 용량에 부합하여야 한다.

○ 에너지절감시설(인버터)

- 인버터 가동에 필요한 인버터가 설치된 배전반, 제어장치 및 부속설비, 배관·배선, 기존 설비와 연계시설, 온도저감시설 등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설비에 한 함

* 취수설비(펌프, 취수배관) 교체 및 보수보강은 지원 제외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① 지원형태

- 지원조건(재원) : 국비보조 60%, 지방비 20%, 자담 20%

구 분		국고	지방비	자부담
에너지절감시설 (히트펌프)	(해)수열원, 공기열원 히트펌프	60%	20%	20%
에너지절감시설 (인버터)	인버터	60%	20%	20%

○ 지원규모 : 국비보조 18,529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비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30,881	18,529	6,176	6,176
에너지절감시설 (히트펌프)	29,070	17,442	5,814	5,814
에너지절감시설 (인버터)	1,811	1,087	362	362

- 사업시행기관 : 시·군·구청장(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시행)
- 사업 진행 중 설계변경 사유로 인한 형식변경 또는 사업비 증가, 사업 취소가 필요한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의 검토결과에 따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 또는 취소
- 사업진행 중 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해당 투입비율대로 조정한 후 시행
- 다만, 당초 사업비를 초과하는 사업비는 사업자 자부담으로 추진 가능
- 사업신청 어가의 주소지와 에너지절감시설의 설치사업장과의 행정구역상 시·군·구가 다른 경우는 사업장 소재 시·군·구에 신청함(해당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방비 확보 및 지원 가능여부 사전 확인)

② 사업의무량

- 사업의무량 : 당해 연도 정부예산으로 내시된 사업물량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지원 사업비는 지역별 최저온도와 시설특성을 감안하여 산출된 설치 희망 시설용량(kW)에 따라 지원
- 시설특성 : 생육적정 온도조건, 양식어가의 수조 환수량, 운영방법, 지역적 특성 등
- 사 업 비 : 시설용량(kW) × 지원한도

구 분			지원한도(천원/kW)
설비 형식	(해)수열, 공기열	열교환기-히트펌프	850

* 해수열·공기열 히트펌프의 단위별 최소 지원사업비 : 120백만원

* 열교환기-히트펌프 설비는 열교환기를 제외하고 히트펌프 단독으로 보급가능 (열교환기 단독 보급 불가)

* 설비형식별 적용단가는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원별 기준단가 공고에 따라 변경적용 할 수 있다.

* 히트펌프의 지원 한도 용량은 양식장에 확보되는 (해)수열원·공기열원 용량 기준

○ 에너지절감시설(인버터)지원 사업비는 각 인버터 용량과 대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정하여 지원

- 사업비(지원한도) = $\sum(\text{인버터 용량에 따른 금액} \times \text{대수}) \times 1.5$

구	분	금액(천원)
사용전압	인버터용량(kW)	
380	3.7	4,080
380	5.5	4,600
380	7.5	5,020
380	11	5,600
380	15	6,020
380	18.5	6,410
380	22	6,980
380	30	7,553
380	37	8,665
380	45	9,331
380	55	10,551
380	75	11,299
380	90	13,623
380	110	16,776
380	132	19,234
380	160	21,851
380	185	26,444
380	220	29,724

* 인버터는 전동기보다 한 단계 상위규격 선정(예 전동기 3.7kW → 인버터 5.5kW)

* 인버터 설치에 필요한 부대비용 별도 가산(1.5배)

* 인버터 용량 220kW 초과인 경우 직선보간법을 적용

7. 중요재산 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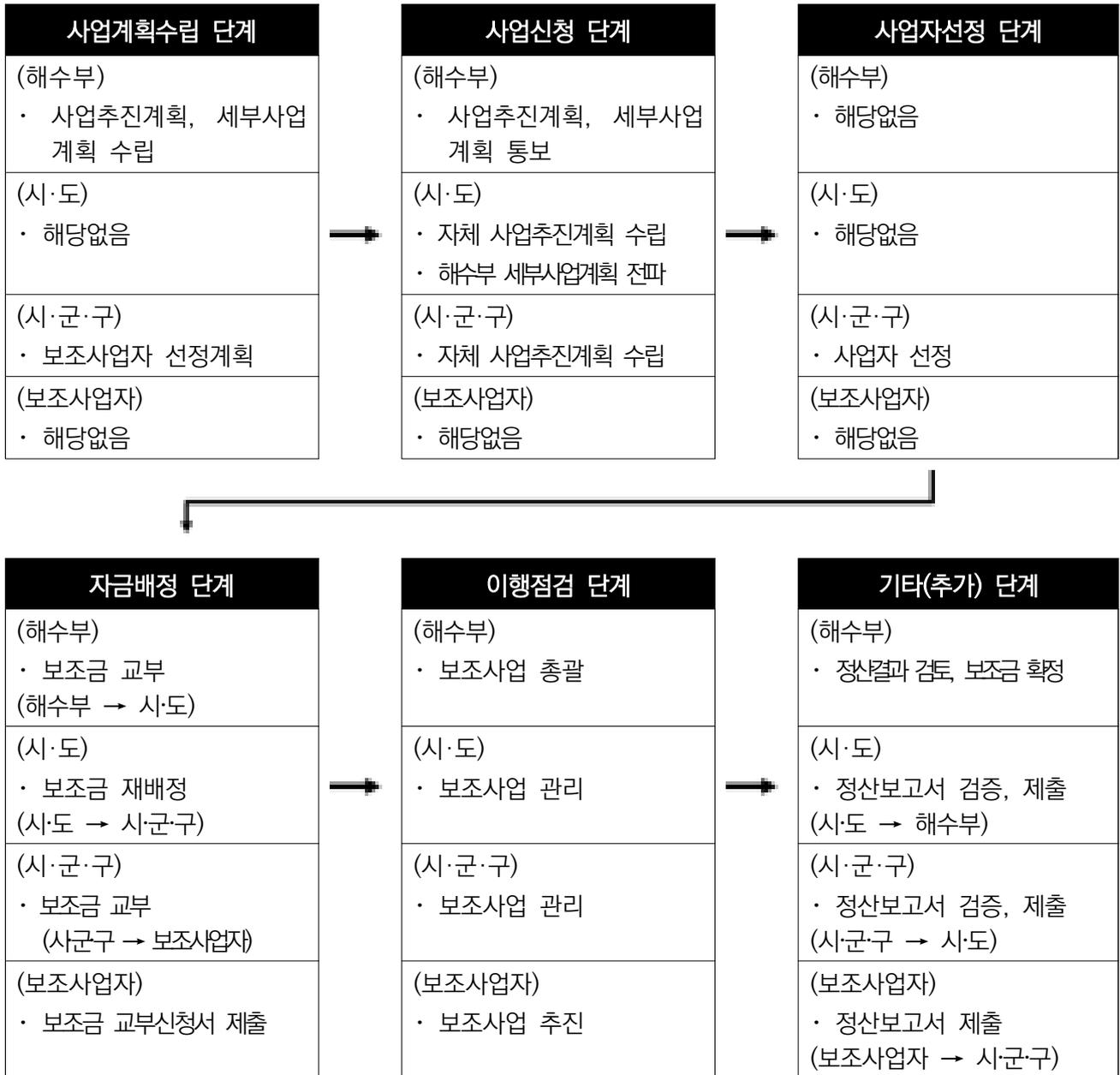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기계·장비	조달청 내용연수+5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없이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의 제공 불가

* 단,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장비일 경우 유사 장비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는 관리를 아니할 수 있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추진절차의 개요



2.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시행지침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시·도에 통지(사업시행 전년도 12월)

- 시·도의 사업수요 등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배정 통보(예산 확정 시)

* 집행 상황에 따라 필요시 시·도간 지원금 조정 배정

3. 사업신청 단계

시·도

- 해양수산부로부터 확정된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 예산 한도 내에서 별도의 자체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시·군·구별 사업량 및 예산 배정 통보(사업시행 전년도 12월)

시·도(시·군·구)

- 어업인, 어업법인 생산자 단체 등 사업대상자를 대상으로 사업 홍보(계속)
- 어가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세부사업계획서) 등 사업신청 자료를 접수하고 현장조사 후 사업성 검토서를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사업시행년도 2월)
 - 시·군·구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성을 검토[별지 제1호서식]
 - 시·군·구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원을 의뢰하여 현장조사 시행[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 * 다만, 사업수요가 사업량에 비해 많을 경우 시·군·구에서 자체기준을 마련하여 사업량의 3배수 이내로 현장조사 대상지를 선정할 수 있음

한국농어촌공사(위탁시행기관)

-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서 작성 지원(~사업시행년도 1월)
-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현장조사 지원 의뢰를 받아 현장조사(~사업시행년도 2월)

사업대상자

- 한국농어촌공사, 수산기술보급기관 등의 검토를 받아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사업시행년도 2월)
 - 사업신청서 작성 시 가온 또는 냉각부하를 산출하고 시설용량과 사업비를 결정하여 신청

- 제출서류 :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세부계획서[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4. 사업자선정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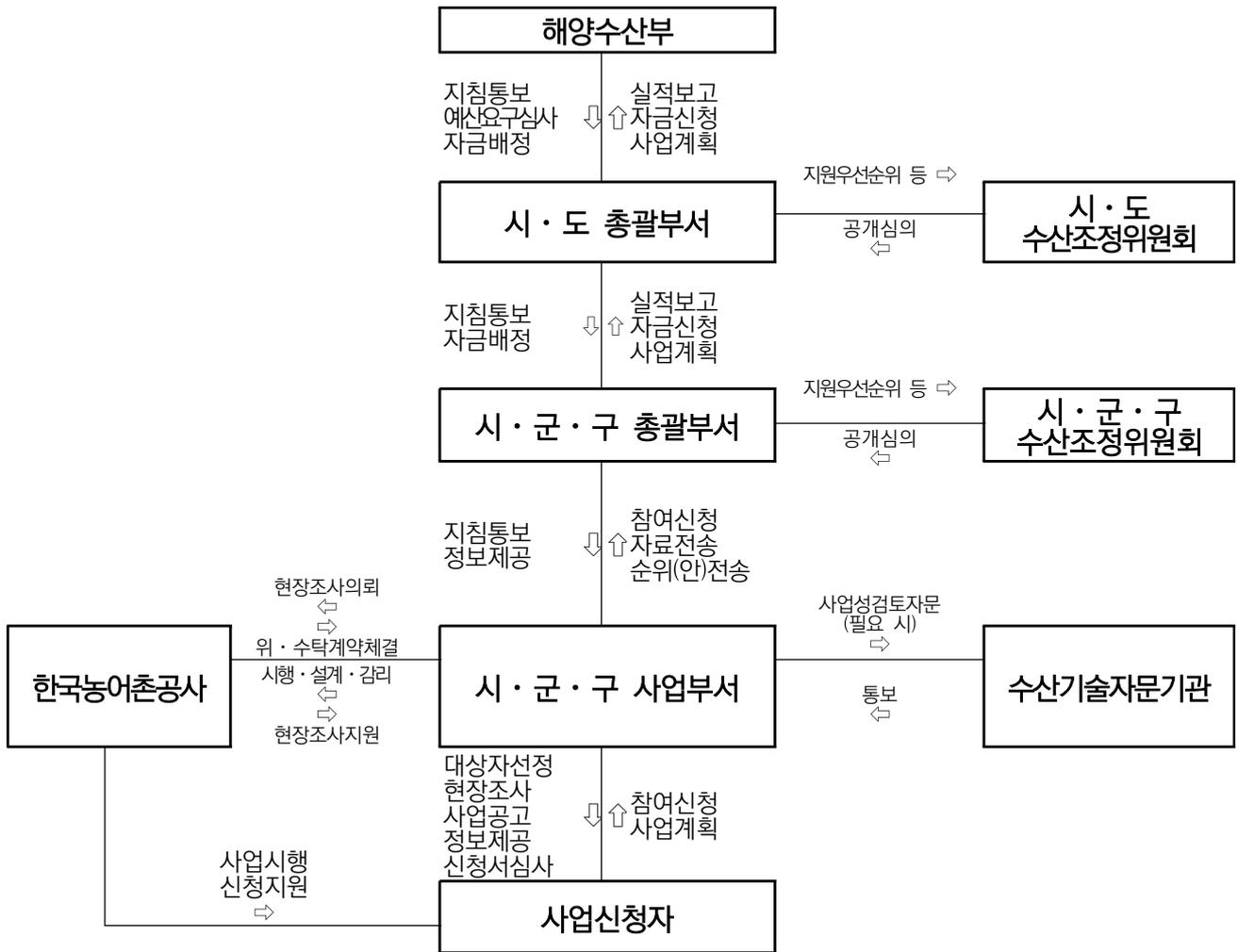
시·도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신청 자료 등을 검토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사업시행년도 2월~계속)

시·군·구

- 시·도에 사업신청 및 예산요구(사업시행년도 1월~계속)
 - 제출서류 : 사업성 검토서[별지 제1호서식], 현장조사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세부계획서[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사업 추진 체계도)



* 수산기술자문기관은 어업기술센터, 국립수산물과학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기술보급기관 등

5.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 시·도별 선정 결과에 따라 국비지원 사업비를 지자체로 배정

시·도(시·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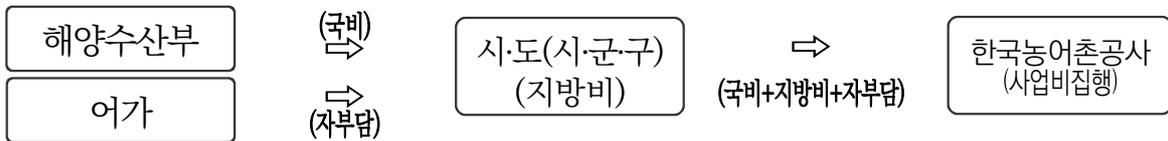
- 시장·군수·구청장은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의 내용에 따라 사업 시행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교부신청 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계약대행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민간 대행하여 시행(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조건을 확인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 대상자(어업인 등)의 자부담을 예치받아 지방비와 함께 사업비를 위탁시행자(한국농어촌 공사)에게 보조금 교부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일괄 교부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대상자의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여부 및 환급예상액을 사전에 확인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통지

한국농어촌공사(위탁시행기관)

-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비를 요청하고 설계도서가 완성된 이후 사업수지예산서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함

< 자금 흐름도 >



6. 이행점검단계

- 기본방향 :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위탁시행
 - 시장·군수·구청장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지원받은 국고 보조금과 어가에서 예치한 자부담을 위탁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로 이체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사업비 집행함

시·도(시·군·구)

- 시장·군수·구청장은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 시행에 대한 감독을 행하고, 사업 시행을 점검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해양수산부로 추진상황을 보고(분기별 익월 10일까지)하여야 함[별지 제9호서식]
- (사업 변경 시)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대상자가 경영상황 등 여건변화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지방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변경·승인 할 수 있음
 - 사업시행 중 사업비를 초과하지 않는 설계 변경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자율적으로 변경·승인하고 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여야 함

- 사업계획 변경을 위해 국고보조금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를 통해 해양수산부와 사전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변경
- (사업 포기 시) 보조사업자 사업 포기 발생 시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을 받아야 함
 - 사업포기서(사유포함) 및 사업 책임부서의 검토의견서[별지 제13호 서식]을 첨부하여 총괄부서(시·도)를 통해 해양수산부로 포기 승인 요청. 단, 부정수급 등 법률 위반사항이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는 포기절차를 이행할 수 없음
 - 포기 승인 시 해당 사업비에 대한 반납 및 정산절차를 조속히 이행
-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업자로 선정된 이후 양식순기 등 불가피한 사유없이 3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시 지원요건을 만족하는 대상자로 교체 선정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선정된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여 지원대상자 교체가 필요한 경우 지원요건을 만족하는 대상자로 교체 선정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배정된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등 사업계획의 중요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에 보고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이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 시·군·구 담당자를 준공검사에 입회하여 확인
-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부담을 우선 집행하게 하고 자부담금에 대한 사업실적을 확인 후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비율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한국농어촌공사(위탁시행기관)

- 한국농어촌공사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사업을 수탁 받아 시행
 - 사업비 집행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사업비를 교부받아 사업 진도율에 따라 집행
 - 사업 준공 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준공 완료 보고하여야 함
-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시행 시 사업 대상 어업인의 요구 및 현장여건 변화 등으로 사업비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시·군·구의 승인을 받아 시행
 -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위·수탁 협약 시 별도로 정함
-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및 각 지역본부는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조직을 구성하여 운영

-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의 위탁시행 및 시행 기간 중 전반적인 관리감독, 감리, 하자관리 등을 담당
- 한국농어촌공사의 설계·감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사업 관리비는 농어촌정비법의 기준을 준용하여 집행
- 세부설계, 공사감리 및 사업관리비 요율 한도

(단위 : %)

대상액 구분	5억원 이하	10억원	20억원	30억원	50억원	100억원
계	8.83	7.98	7.35	7.10	6.89	6.64
세부설계	2.436	2.201	2.009	1.929	1.850	1.760
공사감리	5.302	4.791	4.465	4.333	4.244	4.119
사업관리	1.092	0.988	0.876	0.838	0.796	0.761

* 대상액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5의 적용방법에 따른다

** 세부항목별 비율은 농어촌정비법 위탁요율 기준의 비율을 적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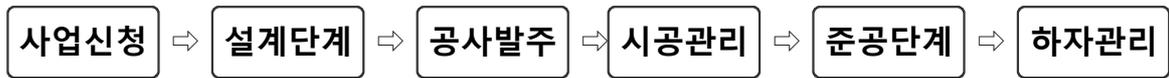
- 설계, 감리, 사업관리비 등은 대상액이 확정되면 사업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집행
- 요율적용은 위·수탁 협약시 사업대상자(어가)별 대상액으로 각각 결정
- 공사비가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은 공사비 대상액에 따라 요율 산출하여 적용(직선보간법)

《한국농어촌공사 역할 및 단계별 추진사항》

① 사업전담반 주요 역할

- 사업 각 단계별 시·군·구 지원 및 사업신청자에 대한 자문과 위탁사업 시행
- 건설관련 법령·규칙과 이에 준하는 기준, 공법 등에 의거 시설물의 품질·강도·안전·성능 등 유지를 위한 설계조건 적용으로 적정 성과품 보장
- 시공 시 공법, 품질, 성능 등의 적정성 및 공사 시공자가 사용하는 자재가 관련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 기타 공사감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및 준공 후 하자 관리 등

② 업무 추진단계



- 한국농어촌공사는 단계별 추진사항 또는 분기별 추진사항을 시장·군수에게 보고

③ 단계별 업무 내용

1) 사업 신청 단계

-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서 작성을 지원
- 시장·군수·구청장의 현장조사 업무 지원요청에 따라 기술지원 실시
 -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대상 시설, 토지 및 환경조건 검토
 - 입지조건 확인(기계실과의 거리, 주변 환경, 토지 확보 여건 등)
 - 주변 500m 이내 타 에너지절감시설 설치 시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여 의견 제출
- * 선정부지가 적합하지 못할 경우 해당 문제점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후속조치

2) 설계 단계

- 설계도서는 한국농어촌공사의 기술심의규정에 따라 검토
- 설계도서는 작성 전 현장조사를 통해 해당시설의 특성을 파악하고 사업대상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설계도서 작성
- 사업대상자에게 설계도서를 설명하고 확인을 받음

3) 발주 단계

- 공사의 성질 규모 등에 따라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발주방법 결정, 발주공고, 업체 선정 등 발주시행

4) 시공 단계

- 에너지절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설설치·관리 등에 관한 기준은 「신·재생 에너지설비의 지원·설치·관리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준하여 시공기준을 마련
 - * 시공기준은 사업시행지침, 시방기준 순서에 의하며, 고시에 없거나 다른 경우 지침과 시방 기준에 의함.
- 공사착수 전 업무 : 실시설계 단계에서 관련법에 의한 협의·인허가 등의 취득 및 협의결과 반영 여부 확인
- 공사 중 업무 : 공사시행 과정 중 설계도서에 의거 주요자재에 대한 검사 및 현장 시공 상태 확인과 시공과정 중 주요 사항 확인

5) 준공 단계

- 준공검사 요청 시 공사감리자의 확인이 있는 시공회사의 준공계 및 준공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준공검사 실시
- 사업위탁시행자(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대상자(어업인, 어업법인 등) 및 시·군·구 담당자 입회하에 시운전 실시, 이상 유무 확인 후 사업 준공 및 사업 수지예산서에 따라 사업비 정산
- 준공검사 입회자 : 사업대상자, 시·군·구 담당자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설계, 감리, 사업의 시행 등과 하자관리를 위한 계약대행을 신청
- 사업대상자가 경영상황 등 여건변화에 따라 사업포기 또는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시·군·구에 사업 포기/변경 신청서[별지 제1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변경사항은 승인을 받아야 함

6. 사업비 정산·사후관리 단계

해양수산부

- 점검시기 : 사업담당자는 연 1회 이상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사업 추진 점검
- 점검내용 및 방법 : 사업계획 이행실태, 추진상황 등 현장점검
- 점검결과 조치 : 사업계획 및 추진상 미비점 등 보완조치 등
- 사업완료 익년 7~8월중 전년도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예산집행, 에너지절감 효과 등을 평가하여 우수 시·도 또는 어가는 중점 관리하여 사업성과 극대화
 - 평가기준 : 시·도별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추진성과 보고
- 우수사례에 대하여 집중적인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방향과 제도개선사항을 환류

시·도(시·군·구)

- 시장·군수·구청장은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하며, 시·도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3개월 이내에 정산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여야 함
- 시·군·구는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경영 장부를 기록 비치하게 하고 사업진행 상황과 경영성과를 분석평가하게 하고 그 결과를 사업완료 후 익년 3월말 까지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는 해양수산부로 취합 제출[별지 제16호서식]
-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장평가회 등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어업인 대상 기술 지원 자료로 활용
- 에너지절감시설 보급사업장에 대한 현장 기술지원 및 교육 등 생산 기술 지도가 필요한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수산기술자문기관에 협조를 요청
- 사업대상자가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하였거나 허위 신청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당해 보조금의 교부결정 취소 후 반환조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법령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및 제31조(보조금의 반환)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기간은 5년으로 하며, 시장·군수는 사후 관리 기간 중 법인의 파산, 해산 등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처분해야 할 경우 또는 시설이 목적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시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실시(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적용)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 기간	처분제한기준
에너지절감시설	5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을 금함

* 구)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으로 취득한 에너지절감시설에 대해서도 사후관리기간을 동일시 적용

- 시장·군수·구청장은 하자보증기간에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문제를 일으킨 사업자에 대해 입찰참가 제한 등의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 신고하여야 함

한국농어촌공사(위탁시행기관)

- 사업완료 후 익년 3월까지 사업추진결과를 시·도 및 해양수산부에 제출[별지 제15호서식]
- 설치완료 후에도 하자관리 등 전문기술지원 실시
 - 준공 후 하자발생 시 현장기술지원 및 업체 하자보수 지시 등 시행
- 시·도(시·군·구)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성과 발표회 등으로 관련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홍보 및 모니터링·점검 등 실시

사업대상자

- 에너지절감시설 운영현황 효과에 대한 자료를 사업완료 후 익년 2월까지 시·군·구 제출[별지 제17호서식]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등)
- 사업장을 개방하여 인근지역 어업인들의 현장교육장으로 활용
- 규정된 표찰 설치로 사업성과 홍보와 확대보급 유도[별지 제19호서식]

IV. 202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5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군·구는 사업수요조사 시 한국농어촌공사에 현장조사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 한국농어촌공사는 시·군·구 요청 시 현장조사를 지원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시·도지사는 추진할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사업시행 전년도에 해양수산부에 제출(~사업시행 전년도 4월)

- 수산조정위원회 심의 후 해양수산부에 수요조사 결과 제출 및 예산요구
- 해양수산부 사업담당자는 시·도 수요조사 결과를 기초로 예산요구안 작성
 - 시·도지사는 수요조사 결과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의 예산안 사전통지(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9월 15일까지) 이전에 변동된 수요조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2. 기타사항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 보조금 관련규정, 보조금 교부조건, 행정지시(통보)에 따라 적법·적합하게 시행하여야 함

③ 수산가공분야 에너지절감시설보급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과장 강희정 사무관 장용호 주무관 김보라	044-200-5480 044-200-5485 044-200-5486

I. 사업개요

1. 목적

- 수산가공시설의 에너지 다소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에너지 절감설비를 보급하여 수산가공업계의 경영 개선 및 수출 경쟁력 향상
- 수산가공분야에서 유류 및 전기 사용을 줄여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고, 에너지절감 시설 보급 촉진을 통해 국가 에너지정책 부흥

2. 근거법령

-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45조(수산물의 수출 진흥)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금융·세제상의 지원)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4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20년	21년	22년	23년		
연간 설비보급 수량(대수)	미정	10	7	7	7	'25.1월	보급수량(대수)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 원)

구분	합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6년
합계	13,200	3,300	3,300	3,300	3,300
- 국비	6,600	1,650	1,650	1,650	1,650
- 지방비	3,960	990	990	990	990
- 자부담	2,640	660	660	660	660

* 연도별 사업예산은 추진상황 및 국회예산 반영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2024년 지원규모

(단위 : 백만 원)

사업내역	지원규모 (개소)	지 원 액			
		계	국고	지방비	자담
에너지절감시설 (히트펌프식 김 건조설비)	평균 4~5대/개소 (마른김 가공시설 10개소 내외)	4,100	1,650	990	660

※ 지자체의 사업대상자 선정결과에 따라 지원규모(개소)는 조정 시행될 수 있음

Ⅱ. 202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신청일 기준 최근 2년간 건조설비를 이용하여 김, 멸치 등 수산물 원료를 수산가공품으로 직접 가공한 자
- 또는 사업신청일 기준 최근 2년간 조미 김, 김 스낵 등 2차 김 가공품을 수출하는 업체에 건조설비를 이용하여 김을 비롯한 해조류를 해조제품으로 직접 가공하여 납품한 실적이 있는 자

* 김, 멸치 등을 세척, 이물 제거 후 건조한 제품

2. 사업대상자 선정 및 선정 제외대상

- 사업대상자 선정
 - 지자체장은 에너지절감시설 사업자 선정 시 사업대상 수산물가공시설에 필요한 적정설비가 당해 연도에 모두 설치되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
 - 지자체장은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수산조정위원회 등) 심의를 통해 사업대상자를 선정
- * 최종 사업자 선정 : [별표 제1호] 기준에 의거 사업자 최종 선정
- 「해양수산물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다음 순위자를 대체자로 선정·지원
 - 사업대상자로 선정(확정)된 후 1개월내에 사업 미착수(자부담 미확보 및 한국농어촌공사 사업 미위탁) 시, 해당 지자체는 지체 없이 선정을 취소하고 다음 순위자를 대체자로 선정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에 따른 제외 대상자
 - 사업 성과측정을 위한 경영 장부 공개 등 관련자료 제출에 동의하지 않는 자
 - 최근 2년간 수산분야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불가피한 사정없이(자부담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한 자 포함) 사업을 포기한 경우

3. 지원대상

-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식 건조기 등)
 - 고온·감습 환경을 조성하여 수산 건제품을 생산하는 가공시설의 에너지 절감 설비 설치 지원
- 가공시설은 반드시 사업 신청자의 소유를 원칙으로 하고, 시설부지는 사업 신청자가 부지를 임차한 사업자의 경우 사업완료 시점부터 임차 잔여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함
 - 부지를 임차한 자는 부지 소유자로부터 6년 이상 해당 토지 임대차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
 - * 시설물은 반드시 신청자 소유이어야 함(임대시설 또는 소유자가 다른 경우 신청 불가)
- 사업신청자는 에너지절감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소유, 진동 등 주변 환경 및 토지경계 등의 문제가 없도록 확보하여야 함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원료 수산물을 건제품으로 가공하는 시설에 에너지절감시설인 히트펌프식 건조설비과 동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주요 구성품 등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설비 지원
 -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식 건조설비) : 히트펌프 식 건조기, 열교환기, 덕트류, 각종 배관, 기존 가열설비 연계, 전기 용량 증설 및 자동제어 설비 등 운영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설비
 - 부대설비(온실가스 감축량 모니터링 설비, 먼지필터, 벽체단열보강, 메인송풍기, 바닥뎀퍼(공기분배기), 실외설비(비가림시설 등)는 지원사업비의 10% 이하로 지원 가능

- 건축물의 증·개축, 부지확보비, 기존시설 철거비, 한전거리공사비는 지원 제외
-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식 건조설비)은 아래와 같이 공인시험기관 등에서 성능시험 및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에 한함

< 히트펌프식 건조설비 자재 성능 기준 >

-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 등 공인시험기관에서 한국농어촌공사의 「히트펌프식 건조기 시험방법」에 따른 성능시험을 받은 제품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

5.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 지원형태 : 지자체자본보조(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구 분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에너지절감시설 (히트펌프식 건조설비)	100%	50%	30%	20%
	3,300백만원	1,650백만원	990백만원	660백만원

- 사업시행기관 : 시·군·구청장(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시행)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식 건조설비)지원 사업비는 시설특성 및 사업대상자의 운영여건을 고려하여 건조설비에 필요한 제습부하량(kg/h)에 따라 지원
 - 시설특성 : 시설에 필요한 온·습도 조건, 일 생산량, 운영방법 등
 - 사 업 비 : 제습부하량(kg/h) × 지원한도(612천원)

구 분	지원단가 한도[(천원)/(kg/h)]
히트펌프식 건조설비	612

* '24년 사업은 10개소 내외 지원 계획, 평균 사업비 4.5억원/개소

7. 중요재산 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지원 목적대로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해당 시·군의 승인없이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이전 또는 구조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

- 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6조[별지 제3호서식]중요재산 현황을 작성하여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보고하여야 하며, 중요재산 처분제한기간 이전까지 주기적으로 변동사항을 보고하여야함
- 사업관리기관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고한 중요재산 취득 현황 및 변동현황을 확인·점검 후 1개월 이내 보조금시스템에 공시하여야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6조)
- 보조시설물에 대해 보조금 범위 내 부기등기 또는 근저당권 설정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구입일	재산처분 제한기간은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됨(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등) ○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의2 등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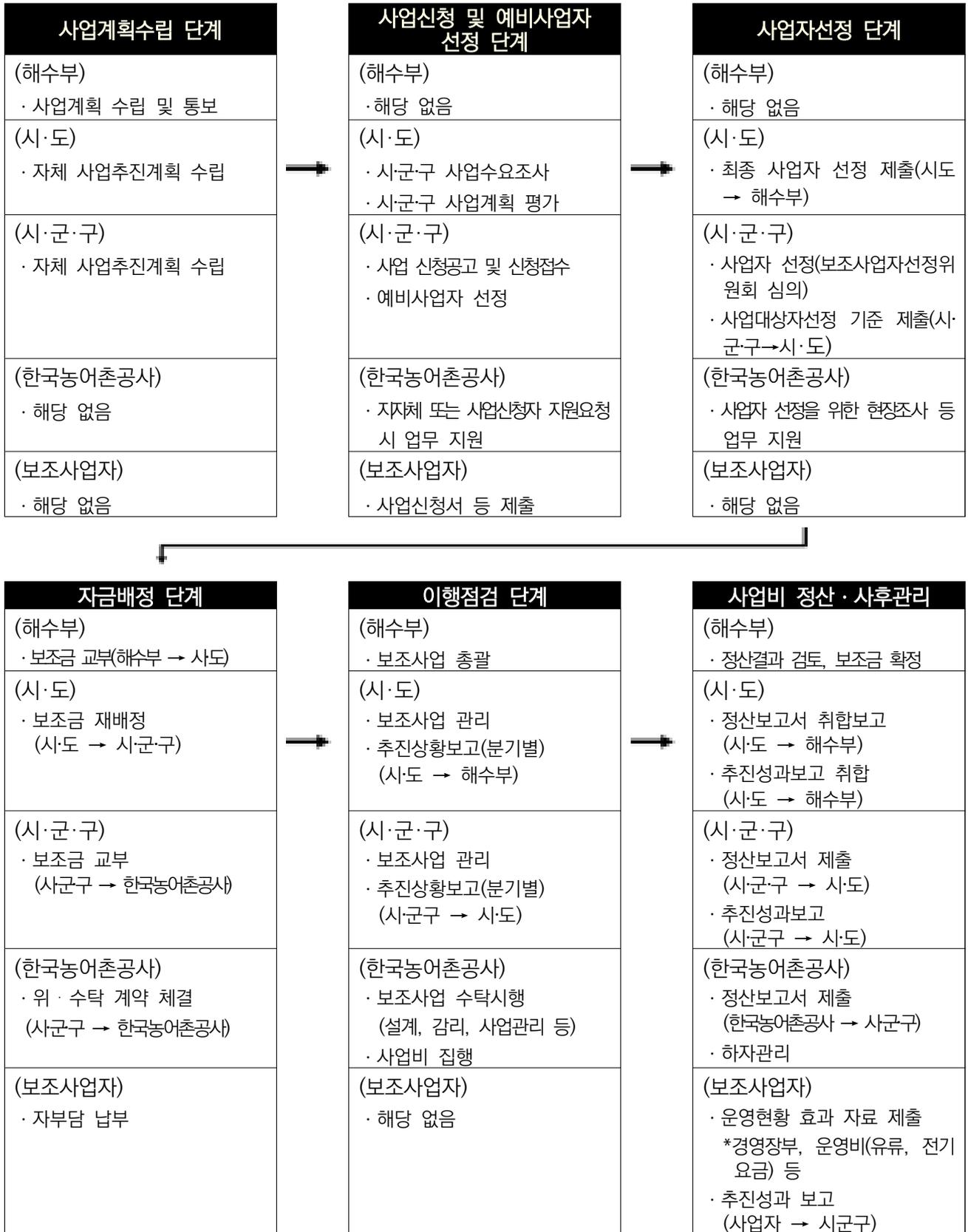
<참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의 별표7(중요재산 표준내용연수)

분류	구분		내용연수
		대상	
부동산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 또는 강구조건축물	50년
		그 외의 건축물	35년
고가 동산 (5천만원이상)		선박, 항공기	30년
		차량	20년
		그 외 기계류 등	15년
기타 동산		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동산 (단, 수산가공분야 에너지절감시설 5년)	조달청 내용연수 +5년

* 부동산 중 토지는 내용연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추진절차의 개요



2.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시행지침을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에 통지
- 시·도의 사업 수요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배정* 통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보조금 예산의 통지)에 따라 국회 예산 확정 후 예산의 변경이 있거나, 사업수요 및 집행상황을 검토하여 필요 시 시·도간 지원예산 조정 배정

3. 사업신청단계

시·도

- 시·도에 배정된 지원 예산 한도 내에서 별도의 자체 배정기준을 마련하여 시·군·구별 사업량 및 예산 배정* 통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보조금 예산의 통지)에 따라 국회 예산 확정 후 예산의 변경이 있거나, 사업수요 및 집행상황을 검토하여 필요 시 시·군·구간 지원 예산을 조정 배정하고 결과를 해수부에 보고

- 해수부 사업시행지침 통지 시 시·군·구에 예비사업자 선정 요청
- 시·군·구에서 제출한 예비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해수부에 제출

시·군·구

-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해 사업계획 및 사업신청 방법 등을 안내 및 공고
 -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고문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등 위반 행위 시 보조금 환수요건을 명시하고 사업신청서 접수 시 이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함

*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등

- 사업대상자의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등 사업신청을 접수
-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2배수 이상 예비사업자를 선정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을 참고하여 시·도에 제출

- 시·군·구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자 선정 심사항목 및 배점표 기준[별표 제1호]을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예비 사업자 선정 기준 및 선정 절차를 마련하여 예비사업자 선정

사업대상자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신청서 작성 시 시설에 필요한 희망 설비 용량 규모로 신청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수산가공분야 에너지절감시설보급 사업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 사업계획서에는 희망설비 용량규모 및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등)를 첨부하여야 하며, 한국농어촌공사에 사업비 산출에 대한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참고) 사업비 산출 예시

사업용량(kg/h) = $\frac{1\text{일 생산량(kg)}}{\text{수율}(\%) \times 1\text{일 가공시간(h)}}$

* 수율* = 건조실에 투입한 원물 대비 가공품의 무게 비율(%)

- [예시1] 마른김 5,000 속/일 가공시설(하루 24시간 가공, 1속당 280g, 수율 8%)
 - (사업용량) $(0.28 \text{ kg/속} \times 5,000 \text{ 속}) \div 0.08 \div 24 \text{ h} = 729 \text{ kg/h}$
 - (사업비) $729 \text{ kg/h} \times 612 \text{ 천원/(kg/h)} = 446,148 \text{ 천원}$
- [예시2] 자반김 250 박스/일 가공시설(하루 24시간 가공, 1box당 7kg, 수율 8%)
 - (사업용량) $(7 \text{ kg/box} \times 250 \text{ box}) \div 0.08 \div 24 \text{ h} = 911 \text{ kg/h}$
 - (사업비) $911 \text{ kg/h} \times 612 \text{ 천원/(kg/h)} = 557,532 \text{ 천원}$
- [예시3] 미역 1.5 톤/일 가공시설(하루 8시간 가공, 수율 15%)
 - (사업용량) $1,500 \text{ kg} \div 0.15 \div 8 \text{ h} = 1,250 \text{ kg/h}$
 - (사업비) $1,250 \text{ kg/h} \times 612 \text{ 천원/(kg/h)} = 765,000 \text{ 천원}$

4.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

- 시·도에서 제출한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등을 검토하여 시·도별로 보조금 교부* 결정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24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 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

시·도

- 시·군·구별 선정된 사업대상자에 대해 지원 요건 및 사업자 선정기준 등을 준수하여 선정되었는지 확인하고,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 및 보조금 교부 신청
- 시·도지사는 해양수산부로부터 보조금 교부액을 통보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시·군·구별 보조금 교부액을 확정 통보

시·군·구

- 예비 사업자별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사업신청 자료를 토대로 현장조사 후 사업성 검토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
 - 시·군·구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성 검토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현장조사 지원을 의뢰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현장조사 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
 - * 시·군·구 사업부서는 사업성 검토 시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지 제5호 서식]의 “사업 검토 항목” 조정 가능
- 시·군·구는 2인 이상의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사업취지 및 목적에 맞는 사업대상자를 우선하여 선정하고 결과를 시·도에 보고
 - 심의 시 사업자 선정 심사항목 및 배점표[별표 제1호 서식] 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사업자를 선정
- 사업대상자가 확정되면 시·도에 사업 신청 및 예산 요구
 -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사업성 검토서[별지 제5호 서식], 현장조사 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
- 시·도로부터 배정된 예산에 따라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통지
 - 지원계획, 사업 시행 일정 및 추진 방법 등을 사업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자부담 확보 등 신속하게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지도

한국농어촌공사(위탁시행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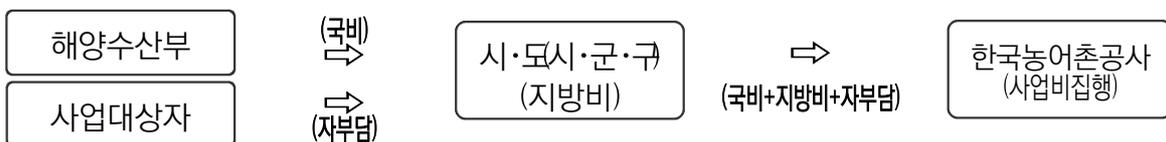
- 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한 현장조사 수행
- 지자체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은 경우 해수부에 보고

사업대상자

- 관할 시·군·구 및 한국농어촌공사의 현장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사업계획서 등 사업신청 서류 보완이 필요할 경우 지체 없이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은 예비 사업자에게 현장조사 일정을 안내하고, 현장조사 협조 불응 시 사업대상에서 제외
 - 서류보완 미이행 및 사업대상자 선정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
- 예비사업자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사업대상자로 선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설계, 감리, 사업의 시행 등과 하자관리를 위한 계약대행을 신청*하고, 사업대상자로 선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자부담 확보 및 사업이 착수되도록 준비
 - * 신청절차, 제출서식 등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사업대상자는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식 김 건조설비 등) 설치 시 기존 건조시설을 반드시 존치하여 시스템 가동 중단 등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예방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5. 자금배정단계

< 자금 흐름도 >



해양수산부

- 시·도에서 제출한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등을 검토하여 시·도별로 보조금 교부 결정*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24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

시·도(시·군·구)

- 시·도지사는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 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조금 교부를 신청
- 시장·군수·구청장은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의 내용에 따라 사업 시행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 대상자의 자부담을 세입·세출외 현금계좌로 받아 지방비와 함께 사업비를 위탁시행자(한국농어촌공사)에게 지체 없이 위탁시행 기관에 일괄 교부
- 기 선정된 사업대상자가 사업포기서[별지 제8호 서식]를 제출 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선정을 취소하고 다음 순위자를 대체자로 선정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가 경영상황 등 여건변화에 따라 사업포기 또는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에 사업 포기/변경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변경사항은 시장·군수·구청장 승인을 받아야 함

한국농어촌공사(위탁시행기관)

-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비를 요청
- 설계도서가 완성된 이후 사업수지예산서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 시행

6. 이행점검 단계

- 기본방향 : 시장·군수·구청장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지원받은 국고 보조금과 사업대상자가 예치한 자부담을 위탁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로 이체하고,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처리

해양수산부

- 점검시기 : 연 2회 이상(상·하반기 각 1회) 사업추진 점검
- 점검내용 및 방법 : 사업계획 이행실태, 추진상황 등
- 점검결과 조치 : 사업계획 및 추진상 미비점 보완조치 등

시·도(시·군·구)

- 시장·군수·구청장은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 시행에 대한 감독을 행하고, 사업시행을 점검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해양수산부로 분기별 추진상황을 보고(익월 10일까지)하여야 함[별지 제7호 서식]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대상자가 경영상황 등 여건변화에 따라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할 경우, 국비 예산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자율적으로 변경·승인 할 수 있음
 - 사업시행 중 기 승인 된 사업비를 초과하지 않는 설계 변경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자율적으로 변경·승인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자로 선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자부담 미확보 및 한국농어촌공사 사업 미위탁) 또는 선정된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여 대상자 교체가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지원요건을 만족하는 대상으로 교체 선정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배정된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발생 등 사업계획의 중요 변경이 있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와 협의한 후 필요한 경우 관련 내용을 해양수산부에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함
- 사업이 완료되어 한국농어촌공사가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 시·군·구 사업부서 담당자는 준공검사에 입회하여야 함

한국농어촌공사(위탁시행기관)

- 한국농어촌공사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사업을 수탁 받아 시행
 -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비를 교부받아 사업 진도율에 따라 집행
 - 사업 준공 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준공 완료 보고
-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시행 시 사업대상자의 요구 및 현장여건 변화 등으로 사업비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시·군·구의 승인을 받아 시행
 -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위·수탁 협약 시 별도로 정함
-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의 위탁시행 및 시행 기간 중 전반적인 관리감독, 감리, 하자관리 등을 담당
- 한국농어촌공사의 설계·감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농어촌정비법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
 - 세부설계, 공사감리 및 사업관리비 효율 한도

(단위 : %)

구분 \ 대상액	5억원	10억원	20억원
사업관리 효율	8.83	7.98	7.35

- 설계, 감리, 사업관리비 등은 대상액이 확정되면 사업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집행
- 효율적용은 위·수탁 협약시 사업대상자별 대상액(공사비)으로 각각 결정
- 공사비가 중간에 있을 때의 효율은 공사비 대상액에 따라 직선보간법을 적용하여 산출

$$y = y_1 - \frac{(x - x_1)(y_1 - y_2)}{(x_2 - x_1)}$$

x : 당해 대상액, x_1 : 작은 대상액, x_2 : 큰 대상액
 y : 당해 효율, y_1 : 작은 대상액 효율, y_2 : 큰 대상액 효율

※ 사업관리비 산출 예시

·당해 대상액(공사비)이 7.5억원의 경우

·당해효율 = $8.83 - \frac{(7.5 - 5)(8.83 - 7.98)}{(10 - 5)} = 8.405\%$

《한국농어촌공사 역할 및 단계별 추진사항》

① 사업전담반 주요 역할

- 사업 각 단계별 시·군·구 지원 및 사업신청자에 대한 기술지원과 사업을 수탁하여 일괄 시행
- 건설관련 법령·규칙과 이에 준하는 기준, 공법 등에 의거 시설물의 품질·강도·안전·성능 등 유지를 위한 설계조건 적용으로 적정 성과품 보장
- 시공 시 공법, 품질, 성능 등의 적정성 및 공사 시공자가 사용하는 자재가 관련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 기타 공사감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및 준공 후 하자 관리 등

② 업무 추진단계



- 한국농어촌공사는 단계별 추진사항 또는 분기별 추진사항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

③ 단계별 업무 내용

1) 사업 신청 단계

-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서 작성기술 지원
- 시장·군수·구청장의 현장조사 업무 지원요청에 따라 기술지원 실시
 - 대상 시설 현황을 조사하여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일치 여부 확인
 - 대상시설이 위치한 입지조건 확인(주변 환경 등)
 - 대상지가 적합하지 못할 경우 해당 문제점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도록 조치

〈 현장조사 주요내용 〉

- 사업신청자의 시설 및 입지에 대한 기술적인 분야(별지 제6호 서식 '시설현황'에 한함)
- 신청자의 인적사항 및 주소 등 신청 내용 현지 확인
- 사업 신청자 사업장의 건축입지, 재해 피해현황(해당 시), 전력 신청 여건
- 에너지절감시설 관련 설치 공간 등 현장 여건 및 적용 공법 검토
- 기타 사업 시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추가 사항 조사하고 신청서류와 상이할 경우 보완 또는 제외사유가 있는지 조사

2) 설계 단계

- 설계도서는 한국농어촌공사의 기술검토규정에 따라 검토
- 설계도서는 작성 전 현장조사를 통해 해당시설의 특성을 파악하고 사업대상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작성
- 사업대상자에게 설계도서(설계서, 도면, 시방서, 공사비내역서 등)를 설명하고 확인을 받음

3) 발주 단계

- 공사의 성질 규모 등에 따라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발주방법 결정, 발주공고, 업체 선정 등 발주시행

4) 시공 단계

- 공사착수 전 업무 : 실시설계 단계에서 관련법에 의한 협의·인허가 등의 취득 및 협의결과 반영 여부 확인
- 공사 중 업무 : 공사시행 과정 중 설계도서에 의거 주요자재에 대한 검사 및 현장 시공 상태 확인과 시공과정 중 주요 사항 확인

5) 준공 단계

- 준공검사 요청 시 공사감리자의 확인이 있는 시공회사의 준공계 및 준공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준공검사 실시
- 사업위탁시행자(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대상자 및 시·군·구 사업부서 담당자의 입회하에 시운전 실시, 이상 유무 확인 후 사업 준공 및 승인된 사업수지 예산서에 따라 사업비 정산
- 준공검사 입회자 : 시·군·구 사업부서 담당자

<사업비 정산·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점검시기 : 연 1회 이상 사업추진 점검
 - 점검내용 및 방법 : 사업계획 이행실태, 운영상황 등
 - 점검결과 조치 : 사업계획 및 추진상 미비점 보완조치 등
 - 제재 : 사업지도·감독이 미흡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비 이월 등이 발생한 시·도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사업량 배정 등 불이익을 부여할 수 있음
 - 사업효과의 귀속 등
 - 에너지절감시설을 운영함으로써 발생하는 가치* 중 국고 보조분에 해당하는 소유권은 탄소중립 정책목표달성 등 사업 장려를 위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양도함
- * 에너지 절감액, 온실가스 감축실적(배출권) 등이며, '20년 사업부터 소급 적용

시·도(시·군·구)

- 사업실적 및 정산 보고
 - 시장·군수·구청장은 회계연도가 끝났거나 사업이 완료하였을 때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 제27조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사업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관련 증빙 서류 첨부)를 시·도에 제출
 - 시·도지사는 시·군·구에서 제출한 사업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증빙 서류 첨부)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보조사업 정산결과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 *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내에 제출
- 사업대상자 경영 장부 기록 비치 및 경영성과 등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경영 장부를 기록 비치하게 하고, 사업진행상황과 경영성과를 분석평가하게 하고, 그 결과를 사업완료 후 익년 3월말까지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는 취합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별지 제 11호 서식]
 - 사업대상자 기술지원 및 교육
 - 시장·군수·구청장은 에너지절감시설 보급사업장에 대한 현장 기술지원 및 교육 등 생산 기술지도가 필요한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 협조를 요청

○ 현장점검

- 시·군·구 사업담당부서는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사후관리 기간 동안 연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운영 상황과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한국농어촌공사(위탁시행기관)

- 해당년도 12월말까지 사업추진결과를 시·도 및 해양수산부에 제출[별지 제10호 서식]
 - 해당연도 사업 완료 후 자체 측정한 운영성과를 해수부에 제출
- 설치완료 후에도 하자관리 등 전문기술지원 실시
 - 준공 후 하자발생 시 현장기술지원 및 업체 하자보수 지시 등 시행

사업대상자

- 에너지절감시설 운영현황 및 사업효과 등에 대한 자료를 사업완료 후 익년 2월까지 시·군·구 제출*[별지 제13호 서식]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등)
-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현장을 점검 하거나, 수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교육을 실시할 경우 사업장 개방에 응하여야 함
- 사업성과 분석을 위하여 사업대상자는 사후관리기간 종료 시까지 매월 에너지소비량 기록·관리 및 증빙서류(전기세 납부 고지서 등)를 보관하여야 함
- 규정된 표지판 설치로 사업성과 홍보와 확대보급 유도[별지 제14호 서식]

IV. 202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5년도 사업수요조사

- 2024년도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시·도지사는 2025년도 추진할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 해양수산부 사업담당자는 시·도 수요조사 결과를 기초로 2025년도 예산요구안 작성

2. 기타사항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자금 집행, 제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본 지침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세부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음

【사업 추진 단계별 주요일정】

단 계	일정	수 행 방 법	비 고
사업공고	'2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지침서 통지('23.1월) 	해양수산부 시·도(시·군·구)
신청·접수	'2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신청 공고·접수 ■ 작성지원 : 한국농어촌공사 	시·군·구 사업신청자
대상자 예비선정	'2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사업자(2배수 이상) 선정 - 사업자 선정 심사항목 및 배점표[별표 제1호]를 참고하여 자체기준 등을 마련하여 예비사업자 선정 	시·도(시·군·구)
현장조사	'2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신청서 및 계획, 자격요건 등 검토 ■ 사업신청자, 대상시설 현장 확인 조사(지원) 	시·도(시·군·구) 〈한국농어촌공사〉
심의 및 선정	'2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자 선정 ■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시·도(시·군·구)
대상자 통보 및 자금 배정	'2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 교부 결정 → 시·도(시·군·구)에 통지 ■ 사업대상자 확정 통지 	해양수산부 시·도(시·군·구) 사업대상자
사업위탁시행	'24.3~ 2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대행(사업대상자→지자체) ■ 위·수탁 협약 체결(지자체↔한국농어촌공사) ■ 사업시행, 설계, 감리(한국농어촌공사) 	사업대상자 시·도(시·군·구) 한국농어촌공사
진도보고 및 점검	'24.3 ~ '2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진도, 사업비 사용실적 제출 (한국농어촌공사→시·도(시·군·구)) ■ 사업 진도 및 점검결과 해양수산부 제출 	해양수산부 시·도(시·군·구) 한국농어촌공사
최종점검	'24.9.~ 24.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공 및 시운전, 인수·인계 ■ 사업추진현황, 자금집행적정성, 관리현황 점검 	시·도(시·군·구) 사업대상자 한국농어촌공사
사업비 정산	사업 완료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실적, 정산 및 준공 보고 	해양수산부 시·도(시·군·구) 한국농어촌공사
성과점검 및 사후지원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성과, 사후관리 및 점검 ■ 기술지원 및 하자관리 	해양수산부 시·도(시·군·구) 한국농어촌공사

참 고 자 료



보증제도 안내

품질보증 및 사후관리이행보증 제도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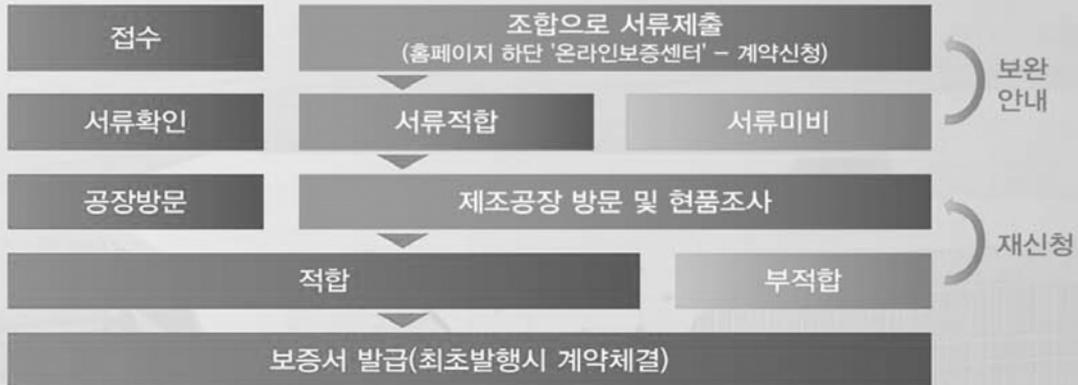
우량 농기계의 공급촉진과 불량 농기계 유통을 근절시켜 대농민 피해예방 및 기계에 대한 품질 및 사후관리기능 강화를 통한 농기계업계의 건전한 발전과 농민의 권익을 보호코자 조합에서 보증하는 제도

○ 보증서 종류

구 분	사후관리이행보증서	품질보증서	사후관리보증서	공급 및 사후관리보증서 (조사료기계장비)
사업 내용	농업자금지차보전 (농업기계구입지원사업)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사업 등	원예시설현대화사업,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사업,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사업 등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사업
보증 내용	보증제품의 A/S 보증	보증제품의 A/S보증	보증제품의 A/S 보증	보증제품의 공급 및 사후 관리 확인
사용처	정부옹자지원대상기종 확인용	보조사업 확인용	보조사업 확인용	조사료기계장비 확인용
대상 기종	정부옹자지원대상기종	히트펌프, 관수관비기, 환풍기, 파종기 등	히트펌프, 다검보온커튼 및 알루미늄스크린, 동력캐페기 등	농업용트랙터, 로타베이터, 농업용로더, 사료배합기, 결속기 등

- ※ 1. 보증서 발급근거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
- 2. 조합 홈페이지(www.kamico.or.kr) 상단 '품질보증'-'보증기준' 참고

○ 보증서 발급 신청절차



※ 서류접수 후 현장상태조사는 약 14일(근무일기준)이내에 진행되며, 부적합의 경우 20일내로 제조업체는 조합으로 보증서 재신청

○ 문의사항

- 스마트농업진흥팀 T.041-411-2153-5

KAMICO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KOREA AGRICULTURAL
 MACHINERY INDUSTRY COOPERATIVE

품질보증 및 사후관리이행보증 증지 서식

품질보증서

- 1. 제조 업체명 :
- 2. 보증서 번호 :
- 3. 보증 기간 : 보증기대 판매일로부터 엔진(모터, 배터리 제외) 및 동력전달장치 2년, 그 외 장치 1년간
- 4. 판매 일자 : 년 월 일
- 5. 기 종 명 세

기 종 명	형 식 명	수 량	금액 (원) (부가가치세 별도)

※ 제조번호 :

※ 비고 :

6. 품질보증범위 :

소비자가 사용설명서에 따라 정상적으로 관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체의 부도·폐업 등으로 사후관리를 받지 못할 경우, 조합이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 당조합이 「농기자재 시험·검사 및 보증 규약」 제8조(보증 및 사후봉사기간)에 의거 구입후 1년 이내는 무상수리, 1년 이후 발생하는 고장에 대하여는 유상수리 할 것을 보증함.

단, 아래의 경우에는 적용받지 아니함

- ① 천재지변·전쟁·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변란으로 사후관리를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우.
- ②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예 : 성능 및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품구조의 임의변경 및 수리, 용도와 사용 등 기타)로 인한 경우.
- ③ 제품의 수리보증 이외 고장 및 수리의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대인 및 대물에 대한 손해배상은 당조합이 보증하지 않음
- ④ 설치 및 공사 등으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된 경우

*주) ① 이 증서는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보증서 사용 시 보증기대 판매일자를 기재하여 사용.

(판매일자가 기재되어있지 않고 발급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경우는 보증효력이 없음)

② 이 증서는 사본 및 금융기관대출용으로 사용 할 수 없음.

위와 같이 품질보증을 함.

년 월 일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위 변 조 방 지 마 크

사후관리이행보증서

(금융기관 대출용)

1. 제조 업체명 :
2. 보증서 번호 :
3. 보증 기간 : 보증기대 판매일로부터 엔진(모터, 배터리 제외) 및 동력전달장치 2년, 그 외 장치 1년간
4. 판매 일자 : 년 월 일
5. 기 종 명 세 : (상품코드 :)

기 종 명	형 식 명	수량	금액 (원) (부가가치세 별도)

※ 제조번호 :

※ 비고 :

6. 사후관리이행보증범위

소비자가 사용설명서에 따라 정상적으로 관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체의 부도·폐업 등으로 사후관리를 받지 못할 경우, 조합이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 당조합이 「농기자재 시험·검사 및 보증 규약」 제8조(보증 및 사후봉사기간)에 의거 구입후 1년 이내는 무상수리, 1년 이후 발생하는 고장에 대하여는 유상수리 할 것을 보증함.

단, 아래의 경우에는 적용받지 아니함

- ① 천재지변·전쟁·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변란으로 사후관리를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우.
- ②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예 : 성능 및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품구조의 임의변경 및 수리, 용도외 사용 등 기타)로 인한 경우.
- ③ 제품의 수리보증 이외 고장 및 수리의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대인 및 대물에 대한 손해배상은 당조합이 보증하지 않음
- ④ 설치 및 공사 등으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

*주) ① 이 증서는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구입시 용자지원을 받을 경우만 보증효력 있음.

② 이 증서는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보증서 사용 시 보증기대 판매일자를 기재하여 사용.

(판매일자가 기재되어있지 않고 발급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경우는 보증효력이 없음)

③ 이 증서는 사본으로 사용 할 수 없음.

위와 같이 사후관리이행보증을 함.

년 월 일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위 변 조 방 지 마 크

2024년도 농식품사업 시행지침서(발췌본) 2권

발행일 : 2024년 1월 2일

발행인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발행처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정자1길 180

전화 : 041-411-2100

팩스 : 041-555-4491